

조사통계 2013-04

EDI

# 2013 장애인통계



-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 : 031-728-7108 Fax : 031-728-7143



## 머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요구되는 정책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환경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의 생산방법, 개념과 정의 등에 있어서도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13 장애인 통계」는 「2012 장애인 통계」에 수록된 내용을 근간으로 국내외 가장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제영역별로 「그림으로 보는 주요통계」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장애인 현황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통계를 수집, 번역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권기돈



# 목 차

• 일러두기	1
--------	---

---

## 제1장 개요 ..... 3

---

제1절 작성개요	5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5
2. 작성목표	6
3. 작성원칙	6
4. 작성의 한계	7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8
1. 국내 장애인 통계	8
2. 해외 장애인 통계	18

---

##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 ..... 23

---

제1절 장애인구	25
1. 장애인구	29
2. 장애인가구와 가족	36
3. 장애특성	44
제2절 고용	51
1. 경제활동	55
2. 장애인 고용 현황	72
3. 기업체 특성	90
4. 장애인기업 특성	101
5. 고용서비스	108
제3절 경제	115
1. 경제수준	119
2. 경제적 생활수준	126

제4절 교육 .....	137
1. 교육수준 .....	141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	143
3. 특수교육 .....	150
4. 직업훈련 .....	158
제5절 보건 .....	161
1. 건강상태 및 행태 .....	165
2. 보건의료이용 .....	169
3. 보건의료제도 .....	176
제6절 복지 .....	181
1. 복지서비스 .....	185
2. 사회보장 .....	192
3. 복지시설 .....	201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207
1. 일상생활 .....	211
2. 문화 및 여가활동 .....	221
3. 사회참여 .....	226
<b>제3장 해외 장애인 통계 .....</b>	<b>237</b>
제1절 OECD .....	239
제2절 독일 .....	259
제3절 미국 .....	271
제4절 일본 .....	281
제5절 프랑스 .....	303
제6절 영국 .....	315
<b>부 록 .....</b>	<b>325</b>
1. 수록 통계 소개 .....	327
2. 주요 용어 해설 .....	357

## 표 목차

〈표 2-1- 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29
〈표 2-1- 2〉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	30
〈표 2-1- 3〉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	31
〈표 2-1- 4〉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	32
〈표 2-1- 5〉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	33
〈표 2-1- 6〉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	34
〈표 2-1- 7〉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	35
〈표 2-1- 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	36
〈표 2-1- 9〉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	37
〈표 2-1-10〉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	38
〈표 2-1-11〉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	39
〈표 2-1-12〉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	40
〈표 2-1-13〉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	40
〈표 2-1-1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	41
〈표 2-1-15〉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	42
〈표 2-1-16〉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	43
〈표 2-1-17〉 장애발생원인 .....	44
〈표 2-1-18〉 장애발생시기 .....	45
〈표 2-1-1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작(ADL) .....	46
〈표 2-1-20〉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작(IADL) .....	47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	48
〈표 2-1-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	50
〈표 2-2- 1〉 경제활동상태 - 성별 .....	55
〈표 2-2- 2〉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	56
〈표 2-2- 3〉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	57
〈표 2-2- 4〉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	57
〈표 2-2- 5〉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	58
〈표 2-2- 6〉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	58
〈표 2-2- 7〉 취업자 인적구성 .....	59

〈표 2-2- 8〉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60
〈표 2-2- 9〉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61
〈표 2-2-10〉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62
〈표 2-2-1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63
〈표 2-2-1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3
〈표 2-2-13〉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64
〈표 2-2-14〉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4
〈표 2-2-1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2-2-16〉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2-2-17〉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6
〈표 2-2-18〉 실업자 인적구성	67
〈표 2-2-19〉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2-2-20〉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2-2-21〉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9
〈표 2-2-22〉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70
〈표 2-2-23〉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71
〈표 2-2-24〉 구직단념자 구성비	71
〈표 2-2-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2
〈표 2-2-26〉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3
〈표 2-2-27〉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4
〈표 2-2-28〉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5
〈표 2-2-29〉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6
〈표 2-2-3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7
〈표 2-2-31〉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78
〈표 2-2-32〉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79
〈표 2-2-3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80
〈표 2-2-3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81
〈표 2-2-35〉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82
〈표 2-2-36〉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83
〈표 2-2-37〉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84
〈표 2-2-38〉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85
〈표 2-2-39〉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86
〈표 2-2-40〉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87

〈표 2-2-41〉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	88
〈표 2-2-42〉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	89
〈표 2-2-4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	90
〈표 2-2-4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	91
〈표 2-2-45〉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	91
〈표 2-2-46〉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	92
〈표 2-2-47〉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	93
〈표 2-2-48〉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 .....	93
〈표 2-2-49〉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	94
〈표 2-2-50〉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중복응답) .....	95
〈표 2-2-51〉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	96
〈표 2-2-52〉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	96
〈표 2-2-5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	97
〈표 2-2-54〉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사항 .....	98
〈표 2-2-55〉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	99
〈표 2-2-56〉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	100
〈표 2-2-57〉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	101
〈표 2-2-58〉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	102
〈표 2-2-59〉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	102
〈표 2-2-60〉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	103
〈표 2-2-61〉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	104
〈표 2-2-62〉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	105
〈표 2-2-63〉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	106
〈표 2-2-64〉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	106
〈표 2-2-65〉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	107
〈표 2-2-66〉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	107
〈표 2-2-67〉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	108
〈표 2-2-68〉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	109
〈표 2-2-69〉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110
〈표 2-2-70〉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	110
〈표 2-2-71〉 고용서비스 유형 .....	111
〈표 2-2-72〉 고용서비스 기관 .....	111
〈표 2-2-73〉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	112

〈표 2-2-74〉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	112
〈표 2-2-75〉 자격증 보유 .....	113
〈표 2-2-76〉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	113
〈표 2-2-77〉 자격증 도움정도 .....	114
〈표 2-3- 1〉 주관적 소속 계층 .....	119
〈표 2-3- 2〉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	120
〈표 2-3- 3〉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	121
〈표 2-3- 4〉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	122
〈표 2-3- 5〉 최소한의 생활비 .....	123
〈표 2-3- 6〉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124
〈표 2-3- 7〉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	125
〈표 2-3- 8〉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	126
〈표 2-3- 9〉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	127
〈표 2-3-10〉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128
〈표 2-3-11〉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129
〈표 2-3-12〉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	130
〈표 2-3-13〉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	131
〈표 2-3-14〉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	132
〈표 2-3-15〉 컴퓨터 보유율 .....	133
〈표 2-3-16〉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	133
〈표 2-3-17〉 인터넷 이용률 .....	134
〈표 2-3-18〉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134
〈표 2-3-19〉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	135
〈표 2-3-20〉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	136
〈표 2-4- 1〉 학력구성비 .....	141
〈표 2-4- 2〉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	142
〈표 2-4- 3〉 보육시설 형태 .....	143
〈표 2-4- 4〉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	144
〈표 2-4- 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	145
〈표 2-4- 6〉 유치원 형태 .....	146
〈표 2-4- 7〉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	147
〈표 2-4- 8〉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	148
〈표 2-4- 9〉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	149

〈표 2-4-10〉 특수교육 규모	150
〈표 2-4-11〉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151
〈표 2-4-12〉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152
〈표 2-4-1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153
〈표 2-4-1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54
〈표 2-4-1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155
〈표 2-4-1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56
〈표 2-4-17〉 특수교육예산 현황	157
〈표 2-4-1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158
〈표 2-4-19〉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58
〈표 2-4-20〉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159
〈표 2-4-21〉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160
〈표 2-5- 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2-5- 2〉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2-5- 3〉 평소 건강상태	166
〈표 2-5- 4〉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167
〈표 2-5- 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168
〈표 2-5- 6〉 건강검진 수진율	169
〈표 2-5- 7〉 건강검진 유형	170
〈표 2-5- 8〉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171
〈표 2-5- 9〉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172
〈표 2-5-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173
〈표 2-5-11〉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174
〈표 2-5-12〉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175
〈표 2-5-13〉 건강보험 가입 여부	176
〈표 2-5-14〉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177
〈표 2-5-15〉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78
〈표 2-5-1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179
〈표 2-6-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185
〈표 2-6- 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186
〈표 2-6-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이용희망률	187
〈표 2-6- 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88
〈표 2-6- 5〉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90

〈표 2-6- 6〉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91
〈표 2-6-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192
〈표 2-6- 8〉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193
〈표 2-6- 9〉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194
〈표 2-6-10〉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195
〈표 2-6-11〉 장애수당 수급자 수	196
〈표 2-6-12〉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197
〈표 2-6-13〉 가입한 연금 종류	198
〈표 2-6-14〉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199
〈표 2-6-15〉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200
〈표 2-6-1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201
〈표 2-6-1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202
〈표 2-6-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203
〈표 2-6-1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4
〈표 2-6-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5
〈표 2-6-2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206
〈표 2-7- 1〉 일상생활 만족정도	211
〈표 2-7- 2〉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212
〈표 2-7- 3〉 도와주는 사람 여부	213
〈표 2-7- 4〉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214
〈표 2-7-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215
〈표 2-7- 6〉 외출의 빈도	216
〈표 2-7- 7〉 외출의 목적	217
〈표 2-7- 8〉 교통수단	218
〈표 2-7- 9〉 저상버스 도입현황	219
〈표 2-7-10〉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220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221
〈표 2-7-12〉 생활체육 참여율	223
〈표 2-7-13〉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224
〈표 2-7-14〉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225
〈표 2-7-15〉 선거 투표 여부	226
〈표 2-7-16〉 장애인에 대한 견해	227
〈표 2-7-17〉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228

〈표 2-7-18〉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229
〈표 2-7-19〉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30
〈표 2-7-2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231
〈표 2-7-2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232
〈표 2-7-2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233
〈표 2-7-2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235
〈표 3-1- 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41
〈표 3-1- 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243
〈표 3-1- 3〉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244
〈표 3-1- 4〉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246
〈표 3-1- 5〉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247
〈표 3-1- 6〉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248
〈표 3-1- 7〉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250
〈표 3-1- 8〉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252
〈표 3-1- 9〉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253
〈표 3-1-10〉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254
〈표 3-1-1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256
〈표 3-2- 1〉 독일 중증장애인 수	261
〈표 3-2- 2〉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62
〈표 3-2- 3〉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62
〈표 3-2- 4〉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263
〈표 3-2- 5〉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264
〈표 3-2- 6〉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265
〈표 3-2- 7〉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265
〈표 3-2- 8〉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3-2- 9〉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3-2-10〉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267
〈표 3-2-11〉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68
〈표 3-2-1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3-2-13〉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3-2-14〉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270
〈표 3-2-15〉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270
〈표 3-2-16〉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270

〈표 3-3- 1〉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	273
〈표 3-3- 2〉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	273
〈표 3-3- 3〉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	274
〈표 3-3- 4〉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	274
〈표 3-3- 5〉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	275
〈표 3-3- 6〉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	275
〈표 3-3- 7〉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	276
〈표 3-3- 8〉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	276
〈표 3-3- 9〉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277
〈표 3-3-10〉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	277
〈표 3-3-11〉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	278
〈표 3-3-12〉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	279
〈표 3-4- 1〉 일본 장애인 수 .....	283
〈표 3-4- 2〉 일본 신체장애인 수 .....	284
〈표 3-4- 3〉 일본 지적장애인 수 .....	284
〈표 3-4- 4〉 일본 정신장애인 수 .....	284
〈표 3-4- 5〉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285
〈표 3-4- 6〉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286
〈표 3-4- 7〉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	287
〈표 3-4- 8〉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	288
〈표 3-4- 9〉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	288
〈표 3-4-10〉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	289
〈표 3-4-11〉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	289
〈표 3-4-12〉 일본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0
〈표 3-4-13〉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1
〈표 3-4-14〉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1
〈표 3-4-15〉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2
〈표 3-4-16〉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2
〈표 3-4-17〉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2
〈표 3-4-18〉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293
〈표 3-4-19〉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	294
〈표 3-4-20〉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	294
〈표 3-4-21〉 일본 복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295

〈표 3-4-22〉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	296
〈표 3-4-23〉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	297
〈표 3-4-24〉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	298
〈표 3-4-25〉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	298
〈표 3-4-26〉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299
〈표 3-4-27〉 일본 Hello Work 취직률 .....	299
〈표 3-4-28〉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	300
〈표 3-4-29〉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	301
〈표 3-5- 1〉 프랑스 장애인 수 .....	305
〈표 3-5- 2〉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	306
〈표 3-5- 3〉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307
〈표 3-5- 4〉 프랑스 장애인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	308
〈표 3-5- 5〉 프랑스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현황 .....	309
〈표 3-5- 6〉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현황 .....	310
〈표 3-5- 7〉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	311
〈표 3-5- 8〉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	312
〈표 3-5- 9〉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313
〈표 3-5-10〉 프랑스 공공부문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313
〈표 3-5-11〉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314
〈표 3-5-12〉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314
〈표 3-6- 1〉 영국 장애인 수 .....	317
〈표 3-6- 2〉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	317
〈표 3-6- 3〉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	318
〈표 3-6- 4〉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319
〈표 3-6- 5〉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320
〈표 3-6- 6〉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	321
〈표 3-6- 7〉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	322
〈표 3-6- 8〉 영국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 .....	322
〈표 3-6- 9〉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	323

## 그림 목차

[그림 2-1- 1]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	25
[그림 2-1- 2]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	26
[그림 2-1- 3]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	26
[그림 2-1- 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27
[그림 2-1- 5] 평균 가구원 수 .....	28
[그림 2-1- 6]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	28
[그림 2-2- 1] 경제활동상태 .....	51
[그림 2-2- 2] 경제활동상태 - 성별 .....	51
[그림 2-2- 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52
[그림 2-2- 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52
[그림 2-2- 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53
[그림 2-2- 6]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	54
[그림 2-2- 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	54
[그림 2-3- 1]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	115
[그림 2-3- 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	116
[그림 2-3- 3]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	116
[그림 2-3- 4]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17
[그림 2-3- 5]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17
[그림 2-3- 6] 인터넷 이용률 .....	118
[그림 2-4- 1] 학력구성비 .....	137
[그림 2-4- 2] 특수교육 규모 .....	138
[그림 2-4- 3]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	139
[그림 2-4- 4] 특수교육예산 현황 .....	140
[그림 2-5- 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	161
[그림 2-5- 2] 건강검진 수진율 .....	162
[그림 2-5- 3]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	163
[그림 2-6- 1]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181
[그림 2-6- 2]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181

[그림 2-6-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82
[그림 2-6- 4] 국민연금 수급자 수	183
[그림 2-6- 5] 장애인 복지시설 수	184
[그림 2-7- 1] 일상생활 만족정도	207
[그림 2-7- 2] 여가활용방법	208
[그림 2-7- 3] 투표율	209
[그림 2-7-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10
[그림 3-1- 1]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39
[그림 3-1- 2]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고용률 격차	239
[그림 3-2- 1] 독일 중증장애인 수	259
[그림 3-2- 2]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59
[그림 3-2- 3]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0
[그림 3-2- 4] 독일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60
[그림 3-3- 1] 미국 장애인 수	271
[그림 3-3- 2]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1
[그림 3-3- 3]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2
[그림 3-3- 4]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2
[그림 3-4- 1] 일본 장애인 수 및 취업비율	281
[그림 3-4- 2]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1
[그림 3-4- 3]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82
[그림 3-4- 4]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82
[그림 3-5- 1] 프랑스 장애인 수	303
[그림 3-5- 2]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03
[그림 3-5- 3]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3-5- 4]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3-6- 1] 영국 장애인 수	315
[그림 3-6- 2]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5
[그림 3-6- 3]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16
[그림 3-6- 4]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비율	316



## 일 러두기

1. 「2013 장애인 통계」에 수록된 각종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일본 후생노동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 발행연도
  -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 자료 : 게시기관, 「자료출처」
  -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한 경우 - 자료 : 관련기관(작성연도)
2.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가급적 원안대로 수록하였으므로 모든 통계표에 있어 형태(표측, 표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일부 통계표에서 발견된 합계 계산 등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음
3.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통계표의 메타정보(생성방법, 용어정의, 출처 등)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통계표 하단에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음
4.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 계와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이번 호에서 정정된 것임
6.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0 : 단위 미만
  - - : 해당숫자 없음



# 1

## Chapter

# 개요

-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2. 작성목표
  3. 작성원칙
  4. 작성의 한계
-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2. 해외 장애인 통계



## 제1장 개요

### 제1절 작성개요

####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 천명에서 약 162% 급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1·2차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인이 다수 유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기준 도입으로 2011년말 대비 장애인구는 0.3% 감소하였다.

장애인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장애인 통계 인프라는 점차 보강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구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sup>1)</sup>」의 조사주기가 5년에서 2008년부터 각각 3년, 2년으로 단축되었고, 개인적·환경적 경제활동 요인 파악을 위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가 2007년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6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올해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단위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통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1) 기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와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실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함

「2013 장애인 통계」는 「2012 장애인 통계」에 이어 현 시점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작성자들에게는 향후 장애인 통계 기획 시 장애인 통계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작성목표

「2013 장애인 통계」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종합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인구, 경제, 고용, 복지 등 통상적인 주제별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해외 장애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장애인 통계자료도 수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비장애인(가구포함)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속해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고자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를 주제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 통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장애인 실업률 지표를 예로 들면, 미국의 장애인 및 실업률의 정의, 자료 생성방법, 해석 시 주의사항 등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서는 주석, 해석 등을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조사와 지표,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아 이용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 3. 작성원칙

본 「2013 장애인 통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통계자료는 국내외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sup>2)</sup>에서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2) 정부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본 JEDD 등 장애인 관련 대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OECD 등 국제기구에 포함

통계로 한정하였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일회성 조사로 생산된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가급적 제외하되, 특별조사로 진행되었거나 주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해외 통계의 경우 장애인 통계 생산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별조사 형식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아 예외로 하였다.

둘째,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메타정보(통계생성정보, 작성기준, 용어정의 등)를 최대한 자세히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해당 통계의 원시자료나 메타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 통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성한 장애인 통계를 우선적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국제기구 통계의 경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일괄 생성, 수집하기 때문에 정리시간이 오래 소요돼 국가별 최신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넷째,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급적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원안대로 게재하였다. 원시자료 분석 시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통계법 상의 공표기준이나 해당 통계생산 기관의 통계공표 정책과도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차변수는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를 상대중요도에 따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4. 작성의 한계

첫째, 통계 간 비교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초 국내 통계와 해외 통계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나, 통계 간 문항, 보기, 정의, 생성년도, 생성방법, 생성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메타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 국가별 발표하는 통계의 종류가 다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든 해외든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록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표의 종류와 내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 1. 국내 장애인 통계

#### 가. 장애인구

##### 1) 장애인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2-1- 1	29
		연도별, 성별		표 2-1- 2	30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2-1- 3	31
		장애유형별, 성별		표 2-1- 4	32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2-1- 5	33
		장애인유형별, 장애 등급별		표 2-1- 6	34
	장애인등록연도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 7	35

##### 2) 장애인가구와 가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 8	36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2-1- 9	37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연도별		표 2-1-10	38	
가족형성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11	39	
	평균 초혼 연령	성별		표 2-1-12	40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인유형별		표 2-1-13	40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장애인 유형별		표 2-1-14	41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연령			표 2-1-15	42	
				표 2-1-16	43	

## 3) 장애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발생	장애발생원인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1-17	44
	장애발생시기			표 2-1-18	45
장애정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장애정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1-19	46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2-1-20	47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별		표 2-1-21	48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장애유형별		표 2-1-22	50

## 나. 고용

## 1) 경제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상태	성별		표 2-2- 1	55
		연령별		표 2-2- 2	56
		장애유형별		표 2-2- 3	57
		장애정도별		표 2-2- 4	57
		교육정도별		표 2-2- 5	58
		지역별		표 2-2- 6	58
취업자 특성	취업자 인적구성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2- 7	5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표 2-2- 8	60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표 2-2- 9	6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표 2-2-10	6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표 2-2-11	63
		종사상 지위별		표 2-2-12	63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표 2-2-13	64
		종사상 지위별		표 2-2-14	64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구성비		표 2-2-15	65
		-		표 2-2-16	65
실업자 특성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2-17	66
	실업자 인적구성	-		표 2-2-18	67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구직기간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2-19	68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성별, 취업경험 유무별		표 2-2-20	68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실업자 특성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2-21	69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2-2-22	70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성별, 활동상태별		표 2-2-23	71
	구직단념자 구성비	성별		표 2-2-24	71

## 2) 장애인 고용 현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5	72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6	7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7	7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8	7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부문별		표 2-2-29	76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2-2-30	77
	정부부문 장애인 수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2-2-31	78
		기관형태별, 장애 유형별		표 2-2-32	79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2-2-33	80
		산업별		표 2-2-34	81
		지역별		표 2-2-35	82
1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민간부문 사업체 수	기관형태별, 이행 정도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표 2-2-36	83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2-2-37	84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기관형태별, 장애 유형별		표 2-2-38	85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규모별		표 2-2-39	86
		산업별		표 2-2-40	87
		지역별		표 2-2-41	88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성별, 종사상 지위별		표 2-2-42	89

### 3) 기업체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모집과 채용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규모별, 이행정도별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표 2-2-43	90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표 2-2-44	91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표 2-2-45	91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고려사항(1순위)			표 2-2-46	92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표 2-2-47	9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표 2-2-48	93
노무관리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표 2-2-49	94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사항 사항(중복응답)			표 2-2-50	95
	장애인 고용에 대한 도움 정도			표 2-2-51	96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표 2-2-52	9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표 2-2-53	97
법 제도에 대한 인식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조덕 지원사항			표 2-2-54	98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표 2-2-55	99
산재보험 장해급여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연도별	산재보험 사업연보	표 2-2-56	100

### 4) 장애인기업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업 현황	장애인기업 수	연도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2-57	101
		연도별, 규모별		표 2-2-58	102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산업별		표 2-2-59	102
재무 현황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표 2-2-60	103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창업 현황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2-61	104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표 2-2-62	105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표 2-2-63	106
창업 현황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2-2-64	106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표 2-2-65	107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		표 2-2-66	107

## 5) 고용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서비스 현황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연도별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표 2-2-67	108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		표 2-2-68	109	
서비스 이용경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2-69	110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표 2-2-70	110	
	고용서비스 유형	경제활동상태별		표 2-2-71	111	
	고용서비스 기관			표 2-2-72	111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2-2-73	112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표 2-2-74	112	
자격증 보유	자격증 보유	-		표 2-2-75	113	
	자격증 도움정도	경제활동상태별		표 2-2-76	113	
	-			표 2-2-77	114	

## 다. 경제

### 1) 경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속계층	주관적 소속계층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3- 1	119
소득과 지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연도별		표 2-3- 2	120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득과 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3- 3	121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표 2-3- 4	122
	최소한의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3- 5	123
	장애인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표 2-3- 6	124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3- 7	125

## 2) 경제적 생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거 수준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소득계층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표 2-3- 8	126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		표 2-3- 9	127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소득계층별, 장애유형별		표 2-3-10	128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특수 수요계층별		표 2-3-11	129
소유 차량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3-12	130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장애유형별		표 2-3-13	131
정보와 통신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3-14	132
	컴퓨터 보유율	연도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 2-3-15	133
		거주규모별, 소득별, 가구구성형태별		표 2-3-16	133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표 2-3-17	134
		성별, 장애유형별, 학력별, 소득별		표 2-3-18	134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일상활동별		표 2-3-19	135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연도별		표 2-3-20	136

## 라. 교육

## 1) 교육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교육수준	학력 구성비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1	141
	장애인가구의 교육수준	장애유형별		표 2-4- 2	142

##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보육시설	보육시설 형태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3	143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4	144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설립주체별	보육통계	표 2-4- 5	145
유치원	유치원 형태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4- 6	146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7	147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표 2-4- 8	148
재활치료 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2-4- 9	149

## 3) 특수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 규모	연도별		표 2-4-10	150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표 2-4-11	151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표 2-4-12	152
	장애인 유형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4-13	153
졸업생 진로현황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연도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2-4-14	15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표 2-4-15	155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표 2-4-16	156
	특수교육 예산 현황			표 2-4-17	157

## 4) 직업훈련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훈련	공공/민간기관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4-18	158
	직업능력개발 경험	경제활동 상태별		표 2-4-19	158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2-4-20	159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		표 2-4-21	160

## 마. 보건

### 1) 건강상태 및 행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관적 건강평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 1	165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		표 2-5- 2	165
	평소 건강상태	장애유형별		표 2-5- 3	166
장애치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표 2-5- 4	167	
만성질환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장애유형별	표 2-5- 5	168

### 2) 보건의료이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예방	건강검진 수진율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 6	169
	건강검진 유형			표 2-5- 7	170
외래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장애유형별		표 2-5- 8	17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표 2-5- 9	172
스트레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표 2-5-10	173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표 2-5-11	174
기타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1순위)			표 2-5-12	175

### 3) 보건의료제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5-13	176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연도별	건강보험 통계연보	표 2-5-14	177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표 2-5-15	178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표 2-5-16	179

## 바. 복지

## 1) 복지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서비스 이용	장애인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 1	18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		표 2-6- 2	186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률 · 이용희망률	-		표 2-6- 3	187	
서비스 욕구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장애인유형별	사회조사	표 2-6- 4	188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연도별, 장애등급별		표 2-6- 5	190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표 2-6- 6	191	

## 2) 사회보장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 7	192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연도별		표 2-6- 8	193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		표 2-6- 9	194
장애인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연도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표 2-6-10	195
	장애인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지역별		표 2-6-11	196
	장애인 아동수당 수급자 수	장애인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표 2-6-12	197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폐이지
연금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6-13	198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연도별	국민연금 통계연보	표 2-6-14	199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성별, 연령별		표 2-6-15	200

### 3) 복지시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폐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 별, 장애유형별	보건복지 통계연보	표 2-6-16	201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연도별		표 2-6-17	202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연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표 2-6-18	203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연도별		표 2-6-19	204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연도별	장애인편의시설	표 2-6-20	20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	실태전수조사	표 2-6-21	206

## 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1) 일상생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폐이지
일상생활 에서의 도움	일상생활 만족정도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 1	211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7- 2	212
	도와주는 사람 여부	장애인유형별		표 2-7- 3	213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7- 4	2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연도별,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백서	표 2-7- 5	215
외출 및 이동	외출의 빈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 6	216
	외출의 목적	장애인유형별		표 2-7- 7	217
	교통수단	장애인유형별		표 2-7- 8	218
	저상버스 도입현황	지역별	교통약자이동 편의실태조사	표 2-7- 9	219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지역별		표 2-7-10	220

## 2)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1	221
	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표 2-7-12	223
문화 및 여가활동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표 2-7-13	224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4	225

## 3)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정치참여	선거 투표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15	226
사회적 인식	장애인에 대한 견해	연도별	사회조사	표 2-7-16	227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표 2-7-17	228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2-7-18	229
차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2-7-19	23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장애인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2-7-20	2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표 2-7-21	23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2-7-22	23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장애인유형별		표 2-7-23	235

## 2. 해외 장애인 통계

## 가. OECD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표 3-1- 1	241
		국가별, 연령별		표 3-1- 2	243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경제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국가별, 연도별 국가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3-1- 3	244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국가별		표 3-1- 4	246
				표 3-1- 5	247
고용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국가별, 연도별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표 3-1- 6	248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	국가별		표 3-1- 7	250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국가별		표 3-1- 8	252
교육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국가별		표 3-1- 9	253
복지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3-1-10	254
	각 국가별 근로가능 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표 3-1-11	256

## 나. 독일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중증장애인 통계	표 3-2- 1	261
		연도별, 연령별		표 3-2- 2	262
		장애인형별		표 3-2- 3	262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3-2- 4	263
		장애인인별		표 3-2- 5	264
고용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연도별	연례보고서	표 3-2- 6	265
	통합사무소 지출			표 3-2- 7	265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2- 8	266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기관형태별		표 3-2- 9	266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규모별		표 3-2-10	267
		연도별, 산업별		표 3-2-11	268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2-12	269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기관형태별		표 3-2-13	269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연도별	연례보고서	표 3-2-14	270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표 3-2-15	270
	조정금 수입 규모			표 3-2-16	270

## 다. 미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성별	American Community Survey	표 3-3- 1	273
		연령별		표 3-3- 2	273
		장애인유형별		표 3-3- 3	274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3-3- 4	274
경제	장애인의 빈곤수준	-	American Community Survey	표 3-3- 5	275
	장애인의 소득수준	-		표 3-3- 6	275
	장애인의 중위소득	-		표 3-3- 7	276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연령별		표 3-3- 8	276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Current Population Survey	표 3-3- 9	277
		장애인유형별		표 3-3-10	277
		월별		표 3-3-11	278
교육	장애인의 교육수준	연령별	Current Population Survey	표 3-3-12	279

## 라. 일본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령별	장애인 백서	표 3-4- 1	283
	신체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4- 2	284
	지적장애인 수	장애정도별		표 3-4- 3	284
	정신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4- 4	284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취업현황	장애인의 취업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표 3-4- 5	285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직종별		표 3-4- 6	286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 유형별, 취업 형태별		표 3-4- 7	287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장애인 유형별		표 3-4- 8	288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표 3-4- 9	288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표 3-4-10	289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1	289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표 3-4-12	290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표 3-4-13	291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4	291	
고용의무 현황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3-4-15	292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			표 3-4-16	292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7	292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연도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표 3-4-18	293	
	일본 특례회사 현황	기업규모별		표 3-4-19	294	
	Hello Work 서비스 현황	연도별		표 3-4-20	294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3-4-21	295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표 3-4-22	296	
	Hello Work 취직건수			표 3-4-23	297	
	Hello Work 취직률			표 3-4-24	298	
고용 서비스	Hello Work 취직건수	장애인 유형별, 산업별		표 3-4-25	298	
	Hello Work 취직률	장애인 유형별, 직종별		표 3-4-26	299	
				표 3-4-27	299	
				표 3-4-28	300	
				표 3-4-29	301	

## 마. 프랑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Atlas National	표 3-5- 1	305
	장애인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		표 3-5- 2	306
고용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정 방법별	Insee 프랑스 통계 및 경제연구소	표 3-5- 3	307
		연령별	Atlas National	표 3-5- 4	308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연도별	Draes-Analyse Novembre N 070	표 3-5- 5	309
	장애인 근로자 현황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근로형태별, 사업별, 직위별, 근속 기간별		표 3-5- 6	310
	장애인 구직자 현황	연도별	Agefiph 연례보고서	표 3-5- 7	311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구직자 특성	연령별, 주장애별, 교 육수준별, 장애인정 별, 고용상태별	Atlas National	표 3-5- 8	3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FIPHEP 연례보고서	표 3-5- 9	313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5-10	313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3-5-11	31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민간부문 의무 고용현황	표 3-5-12	314

## 바. 영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도별	Family Resources Survey	표 3-6- 1	317
		연도별, 성별		표 3-6- 2	317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6- 3	318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연도별	Labor Force Survey	표 3-6- 4	319
	장애인의 고용률	연도별, 근로시간제별		표 3-6- 5	320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3-6- 6	321
취업자 특성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연도별	Labor Force Survey	표 3-6- 7	322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표 3-6- 8	322
	표 3-6- 9			323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 2

## Chapter

### 국내 장애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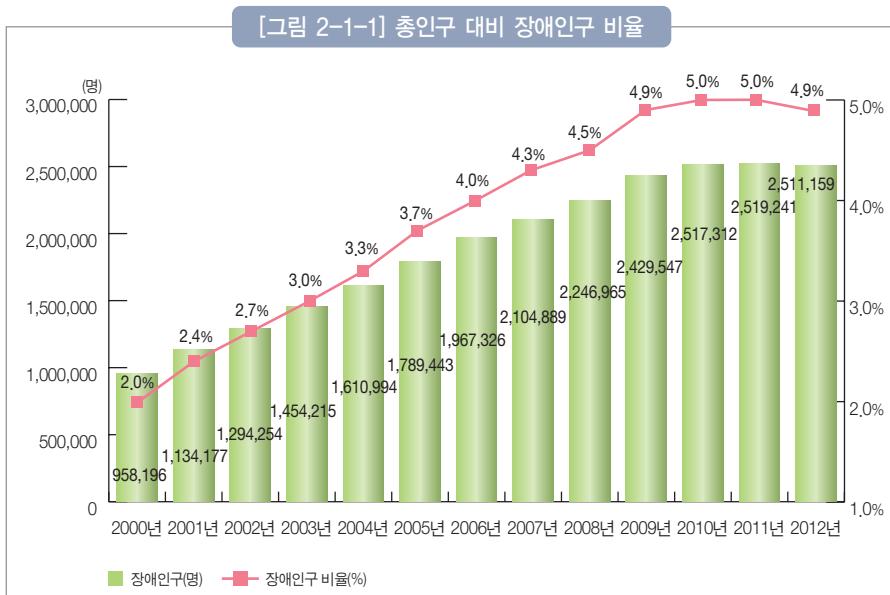
- 제1절 장애인구
- 제2절 고 용
- 제3절 경 제
- 제4절 교 육
- 제5절 보 건
- 제6절 복 지
-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

### 제1절 장애인구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 주 1) 장애인구 비율(%) = (등록장애인 수/주민등록인구 수) × 100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2012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1,159명으로 총인구(통계청, 2012년 주민등록인구 50,948,272명)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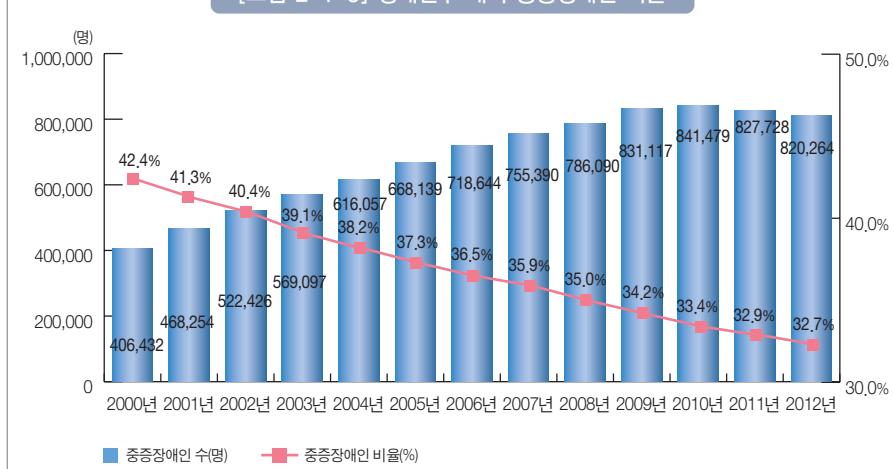
- 1·2차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장애인 비율은 2000년 2.0%에서 2012년 4.9%로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2]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주 : 여성장애인 비율(%) = (여성장애인 수/등록장애인 수) × 100

[그림 2-1-3]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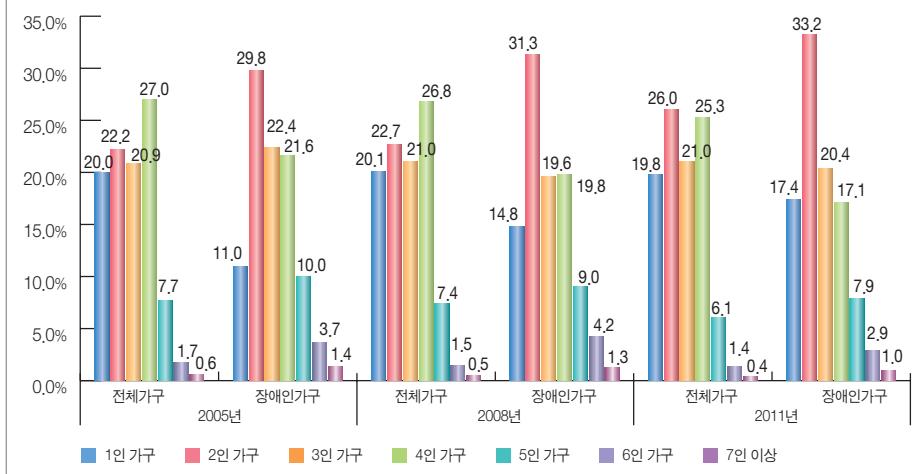
- 주 1)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간질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2) 중증장애인 비율(%) = (중증장애인 수/등록장애인 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2012년 여성장애인 비율은 41.8%로 매년 증가하고, 중증장애인 비율은 32.7%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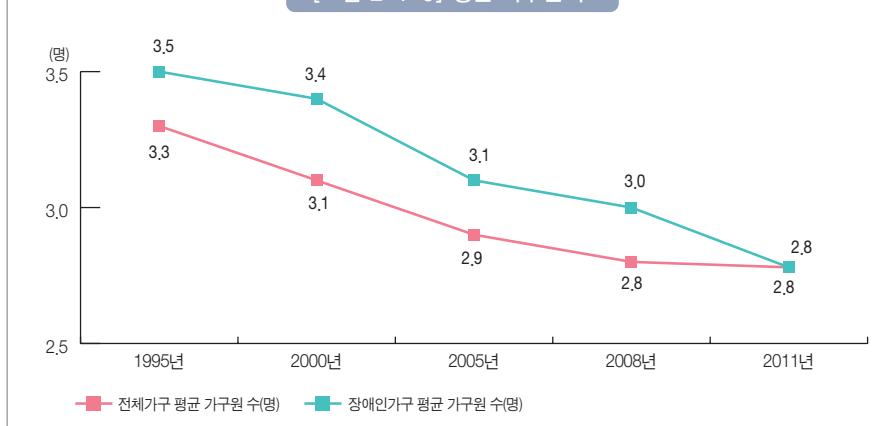
-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 3) 2008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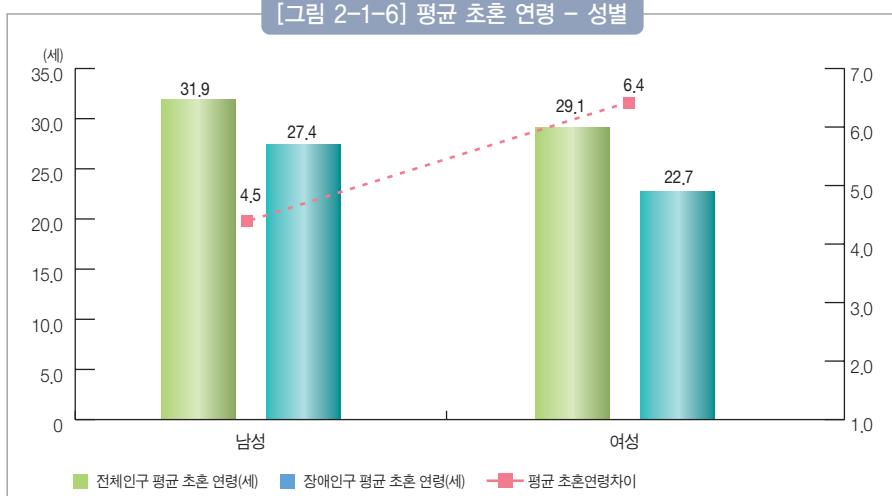
2011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인 가구'가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가구도 '2인 가구'의 비율이 26.0% 가장 높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남

[그림 2-1-5] 평균 가구원 수



주 1) 평균 가구원 수(명) = 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2) 2008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그림 2-1-6]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20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전체가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장애인구의 초혼 평균 연령은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4.5세, '여성' 6.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남

## 1. 장애인구

### 가. 등록장애인 현황

#### 1) 등록장애인 수

〈표 2-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천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 애 인 구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증가율)	(37.4)	(18.4)	(14.1)	(12.4)	(10.8)	(11.1)	(9.9)	(7.0)	(6.7)	(8.1)	(3.6)	(0.1)	(△0.3)
등 록 인 구	47,733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비율)	(2.0)	(2.4)	(2.7)	(3.0)	(3.3)	(3.7)	(4.0)	(4.3)	(4.5)	(4.9)	(5.0)	(5.0)	(4.9)
지 체	606,422	682,325	754,651	813,916	883,296	965,014	1,049,936	1,114,094	1,191,013	1,283,331	1,377,722	1,383,429	1,322,131
뇌 병 변*	33,126	64,950	91,998	117,514	142,804	168,585	195,253	214,751	232,389	251,818	261,746	260,718	257,797
시 각	90,997	115,911	135,704	152,857	170,107	189,933	196,507	216,881	228,126	241,237	249,259	251,258	252,564
청각/언어	87,387	105,711	123,823	139,325	155,382	175,587	205,155	218,206	238,560	262,050	277,610	278,530	276,332
지 적	86,793	94,951	103,640	112,043	119,207	127,881	137,596	142,589	146,898	154,953	161,249	167,479	173,257
자 폐 성*	1,514	2,516	4,014	5,717	7,740	9,518	10,926	11,874	12,954	13,933	14,888	15,857	16,906
정 신*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642	75,058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94,638
신 장*	23,427	28,118	32,094	34,884	38,175	41,823	44,571	47,509	50,474	54,030	57,142	60,110	63,434
심 장*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807	13,739	14,352	14,732	15,127	12,864	9,542	7,744
호 흡 기**	-	-	-	7,039	9,768	11,728	13,035	14,289	14,984	15,860	15,551	14,671	13,879
간**	-	-	-	3,108	4,072	5,160	5,875	6,329	6,968	7,730	7,920	8,145	8,588
안 면**	-	-	-	673	1,114	1,490	1,863	2,149	2,337	2,505	2,696	2,715	2,709
장루·요로**	-	-	-	6,585	8,182	9,575	10,461	11,184	11,740	12,437	13,072	13,098	13,374
간 질**	-	-	-	3,262	5,180	6,700	7,891	8,721	9,166	9,760	9,772	8,950	7,806

주 1) 증가율(%)은 전년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말함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10개 유형\*(2000.1)→15개 유형\*\* (2003.7)

3) 장애유형 용어변경(2008.2) : 정신지체→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511,159명으로 총인구(50,948,272명) 대비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12년 감소로 전환됨
  - 등록장애인 수는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점인 2000년 37.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까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6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도입으로 2012년 말에는 0.3% 감소함

〈표 2-1-2〉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196	100.0	669,762	69.9	288,434	30.1
2001년	1,134,177	100.0	779,356	68.7	354,821	31.3
2002년	1,294,254	100.0	872,739	67.4	421,515	32.6
2003년	1,454,215	100.0	964,363	66.3	489,852	33.7
2004년	1,610,994	100.0	1,047,562	65.0	563,432	35.0
2005년	1,789,443	100.0	1,138,641	63.6	650,802	36.4
2006년	1,967,326	100.0	1,223,644	62.2	743,682	37.8
2007년	2,104,889	100.0	1,284,089	61.0	820,800	39.0
2008년	2,246,965	100.0	1,345,557	59.9	901,408	40.1
2009년	2,429,547	100.0	1,425,896	58.7	1,003,651	41.3
2010년	2,517,312	100.0	1,468,333	58.3	1,048,979	41.7
2011년	2,519,241	100.0	1,466,460	58.2	1,052,781	41.8
2012년	2,511,159	100.0	1,460,490	58.2	1,050,669	41.8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1,460,490명(58.2%), ‘여성’ 1,050,669명(41.8%)으로, 매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3〉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중 중		경 증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196	100.0	406,432	42.4	551,764	57.6
2001년	1,134,177	100.0	468,254	41.3	665,923	58.7
2002년	1,294,254	100.0	522,426	40.4	771,828	59.6
2003년	1,454,215	100.0	569,097	39.1	885,118	60.9
2004년	1,610,994	100.0	616,057	38.2	994,937	61.8
2005년	1,789,443	100.0	668,139	37.3	1,121,304	62.7
2006년	1,967,326	100.0	718,644	36.5	1,248,682	63.5
2007년	2,104,889	100.0	755,390	35.9	1,349,499	64.1
2008년	2,246,965	100.0	786,090	35.0	1,460,875	65.0
2009년	2,429,547	100.0	831,117	34.2	1,598,430	65.8
2010년	2,517,312	100.0	841,479	33.4	1,675,833	66.6
2011년	2,519,241	100.0	827,728	32.9	1,691,513	67.1
2012년	2,511,159	100.0	820,264	32.7	1,690,895	67.3

주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간질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 820,26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4〉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511,159	100.0	1,460,490	58.2	1,050,669	41.8
지 체	1,322,131	52.6	765,820	57.9	556,311	42.1
뇌 병 변	257,797	10.3	147,871	57.4	109,926	42.6
시 각	252,564	10.1	150,815	59.7	101,749	40.3
청 각	258,589	10.3	142,029	54.9	116,560	45.1
언 어	17,743	0.7	12,807	72.2	4,936	27.8
지 적	173,257	6.9	104,770	60.5	68,487	39.5
자 폐 성	16,906	0.7	14,370	85.0	2,536	15.0
정 신	94,638	3.8	49,891	52.7	44,747	47.3
신 장	63,434	2.5	36,240	57.1	27,194	42.9
심 장	7,744	0.3	4,834	62.4	2,910	37.6
호 흡 기	13,879	0.6	10,587	76.3	3,292	23.7
간	8,588	0.3	6,319	73.6	2,269	26.4
안 면	2,709	0.1	1,573	58.1	1,136	41.9
장루 · 요루	13,374	0.5	8,281	61.9	5,093	38.1
간 질	7,806	0.3	4,283	54.9	3,523	45.1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52.6%,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10.3%, ‘시각장애’ 10.1%, ‘지적장애’ 6.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안면장애, 간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5〉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전 체	2,511,159 (100.0)	23,102 (0.9)	69,708 (2.8)	91,101 (3.6)	185,658 (7.4)	349,387 (13.9)	543,161 (21.6)	526,391 (21.0)	529,193 (21.1)	193,458 (7.7)
지 체	1,322,131 (100.0)	1,262 (0.1)	6,609 (0.5)	24,312 (1.8)	88,878 (6.7)	197,576 (14.9)	328,071 (24.8)	304,079 (23.0)	289,695 (21.9)	81,649 (6.2)
뇌 병 변	257,797 (100.0)	6,228 (2.4)	7,838 (3.0)	5,974 (2.3)	9,745 (3.8)	18,368 (7.1)	44,287 (17.2)	62,021 (24.1)	76,130 (29.5)	27,206 (10.6)
시 각	252,564 (100.0)	944 (0.4)	3,303 (1.3)	7,720 (3.1)	20,164 (8.0)	33,275 (13.2)	49,783 (19.7)	57,420 (22.7)	56,827 (22.5)	23,128 (9.2)
청 각	258,589 (100.0)	1,741 (0.7)	3,943 (1.5)	4,909 (1.9)	9,427 (3.6)	18,883 (7.3)	37,267 (14.4)	52,689 (20.4)	75,164 (29.1)	54,566 (21.1)
언 어	17,743 (100.0)	912 (5.1)	751 (4.2)	694 (3.9)	1,677 (9.5)	2,642 (14.9)	3,622 (20.4)	3,502 (19.7)	3,175 (17.9)	768 (4.3)
지 적	173,257 (100.0)	8,457 (4.9)	36,340 (21.0)	37,955 (21.9)	32,634 (18.8)	27,438 (15.8)	19,585 (11.3)	7,364 (4.3)	3,044 (1.8)	440 (0.3)
자 폐 성	16,906 (100.0)	3,011 (17.8)	9,383 (55.5)	3,979 (23.5)	434 (2.6)	76 (0.4)	20 (0.1)	3 (0.0)	0 (0.0)	0 (0.0)
정 신	94,638 (100.0)	8 (0.0)	230 (0.2)	2,997 (3.2)	14,111 (14.9)	32,824 (34.7)	29,576 (31.3)	11,176 (11.8)	3,346 (3.5)	370 (0.4)
신 장	63,434 (100.0)	40 (0.1)	324 (0.5)	1,248 (2.0)	5,449 (8.6)	11,727 (18.5)	18,075 (28.5)	14,344 (22.6)	10,045 (15.8)	2,182 (3.4)
심 장	7,744 (100.0)	163 (2.1)	463 (6.0)	299 (3.9)	291 (3.8)	562 (7.3)	1,298 (16.8)	2,144 (27.7)	2,008 (25.9)	516 (6.7)
호 흡 기	13,879 (100.0)	33 (0.2)	36 (0.3)	65 (0.5)	268 (1.9)	897 (6.5)	2,885 (20.8)	4,456 (32.1)	4,370 (31.5)	869 (6.3)
간	8,588 (100.0)	195 (2.3)	194 (2.3)	108 (1.3)	314 (3.7)	1,418 (16.5)	3,641 (42.4)	2,357 (27.4)	349 (4.1)	12 (0.1)
안 면	2,709 (100.0)	28 (1.0)	95 (3.5)	203 (7.5)	491 (18.1)	585 (21.6)	645 (23.8)	451 (16.6)	172 (6.3)	39 (1.4)
장루·요루	13,374 (100.0)	34 (0.3)	37 (0.3)	86 (0.6)	234 (1.7)	749 (5.6)	2,247 (16.8)	3,646 (27.3)	4,652 (34.8)	1,689 (12.6)
간 질	7,806 (100.0)	46 (0.6)	162 (2.1)	552 (7.1)	1,541 (19.7)	2,367 (30.3)	2,159 (27.7)	739 (9.5)	216 (2.8)	24 (0.3)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21.6%, ‘60대’ 21.0%, ‘70대’ 21.1%로 나타남

- 4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85.3%, 50세 이상은 71.4%, 60세 이상은 49.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6〉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체	2,511,159 (100.0)	204,284 (8.1)	343,328 (13.7)	432,406 (17.2)	384,389 (15.3)	530,012 (21.1)	616,740 (24.6)
지 체	1,322,131 (100.0)	36,908 (2.8)	74,574 (5.6)	163,859 (12.4)	260,357 (19.7)	392,731 (29.7)	393,702 (29.8)
뇌 병 변	257,797 (100.0)	59,672 (23.1)	60,203 (23.4)	62,353 (24.2)	31,695 (12.3)	24,432 (9.5)	19,442 (7.5)
시 각	252,564 (100.0)	33,135 (13.1)	7,742 (3.1)	12,750 (5.0)	13,727 (5.4)	21,183 (8.4)	164,027 (64.9)
청 각	258,589 (100.0)	6,698 (2.6)	47,085 (18.2)	43,875 (17.0)	57,156 (22.1)	64,216 (24.8)	39,559 (15.3)
언 어	17,743 (100.0)	91 (0.5)	1,765 (9.9)	7,440 (41.9)	8,441 (47.6)	4 (0.0)	2 (0.0)
지 적	173,257 (100.0)	49,252 (28.4)	58,928 (34.0)	65,076 (37.6)	1 (0.0)	-	-
자 폐 성	16,906 (100.0)	8,620 (51.0)	5,628 (33.3)	2,658 (15.7)	-	-	-
정 신	94,638 (100.0)	3,682 (3.9)	35,057 (37.0)	55,887 (59.1)	6 (0.0)	3 (0.0)	3 (0.0)
신 장	63,434 (100.0)	3,282 (5.2)	46,048 (72.6)	52 (0.1)	460 (0.7)	13,592 (21.4)	-
심 장	7,744 (100.0)	234 (3.0)	1,037 (13.4)	6,029 (77.9)	22 (0.3)	419 (5.4)	3 (0.0)
호 흡 기	13,879 (100.0)	2,158 (15.5)	3,602 (26.0)	8,089 (58.3)	2 (0.0)	28 (0.2)	-
간	8,588 (100.0)	329 (3.8)	633 (7.4)	800 (9.3)	173 (2.0)	6,653 (77.5)	-
안 면	2,709 (100.0)	102 (3.8)	414 (15.3)	926 (34.2)	1,244 (45.9)	21 (0.8)	2 (0.1)
장루 · 요루	13,374 (100.0)	9 (0.1)	119 (0.9)	808 (6.0)	5,708 (42.7)	6,730 (50.3)	-
간 질	7,806 (100.0)	112 (1.4)	493 (6.3)	1,804 (23.2)	5,397 (69.1)	-	-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 : 357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등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1급' 8.1%, '2급' 13.7%, '3급' 17.2%, '4급' 15.3%, '5급' 21.1%, '6급' 24.6%를 차지하고 있음

## 2) 장애등록연도

〈표 2-1-7〉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1988~1989년	1990~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단위 : 명, %) 2011년~
전 체	2,517,110	100.0	3.1	4.4	17.7	30.9	40.9	3.0
지 체	1,295,819	100.0	3.3	6.2	20.4	31.0	37.4	1.7
뇌 병 변	305,008	100.0	0.7	2.3	14.0	32.0	45.4	5.4
시 각	248,158	100.0	1.7	2.3	18.8	36.1	37.9	3.2
청 각	259,335	100.0	5.8	1.8	16.2	25.7	47.6	2.8
언 어	18,443	100.0	1.3	15.5	12.8	22.0	41.3	7.0
지 적	152,135	100.0	7.8	6.6	15.7	23.9	41.7	4.3
자 폐 성	15,793	100.0	-	-	1.7	30.3	59.4	8.6
정 신	99,803	100.0	-	-	14.2	30.7	48.0	7.1
신 장	56,398	100.0	-	-	14.0	29.3	50.4	6.3
심 장	12,864	100.0	-	-	6.1	57.4	36.5	-
호흡 기	17,218	100.0	-	-	9.7	36.2	52.1	2.0
간	8,117	100.0	-	-	2.4	27.0	70.1	0.5
안 면	2,426	100.0	-	-	-	88.8	11.2	-
장루·요루	13,508	100.0	-	-	2.2	47.4	40.4	10.0
간 질	12,085	100.0	-	-	7.5	32.9	53.2	6.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3.1%는 장애인등록제 도입 초창기인 '1988~1989년'에 등록하였고, '1990~1995년'은 4.4%, '1996~2000년'은 17.7%, '2001~2005년'은 30.9%, '2006~2010년'은 40.9%, 2011년 이후 등록자는 3.0%로 나타남

## 2. 장애인가구와 가족

### 가. 가구구성

〈표 2-1-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12.7	10.3	15.5	9.5	20.0	11.0	20.1	14.8	19.8	17.4
2인 가구	16.9	23.0	19.1	24.0	22.2	29.8	22.7	31.3	26.0	33.2
3인 가구	20.3	42.0 <sup>4)</sup>	20.9	20.0	20.9	22.4	21.0	19.6	21.0	20.4
4인 가구	31.7		31.1	24.7	27.0	21.6	26.8	19.8	25.3	17.1
5인 가구	12.9	21.1 <sup>4)</sup>	10.1	13.0	7.7	10.0	7.4	9.0	6.1	7.9
6인 가구	3.8		2.4	6.1	1.7	3.7	1.5	4.2	1.4	2.9
7인 이상	1.7	3.7	0.9	2.7	0.6	1.4	0.5	1.3	0.4	1.0
평균 가구원 수	3.3	3.5	3.1	3.4	2.9	3.1	2.8	3.0	2.8	2.8

-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3) 평균 가구원 수(명)=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4) 1995년의 경우 5개 항목(1인/2인/3~4인/5~6인/7인 이상)으로 조사됨  
 5) 2008년, 2011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38/327페이지 참조  
 ☐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33.2%, '3인 가구'20.4%, 1인 가구'17.4%, '4인 가구'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평균가구원 수는 1995년 3.5명에서 2000년 3.4명, 2005년 3.1명, 2008년 3.0명, 2011년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가구에서도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2-1-9〉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단위 : 명, %)

구 分	2005년	2008년			2011년
		전 체	중증(1-2급)	경증(3-6급)	
전 체	1,944,791	2,137,226	553,750	1,583,476	2,442,442
부부	22.4	24.3	16.6	26.9	24.1
기타 1세대	1.2	0.6	1.0	0.5	1.0
부부 + 미혼자녀	33.4	31.0	34.5	29.8	29.5
부부 + 기혼자녀	0.6	0.9	1.3	0.7	0.2
편부 + 미혼자녀	2.1	1.5	1.9	1.4	2.7
편모 + 미혼자녀	6.1	5.8	7.9	5.1	7.2
부부 + 양친	0.1	0.4	0.2	0.5	0.2
부부 + 편부모	2.3	2.3	1.1	2.7	1.7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0.6	0.6	0.5	0.6	0.7
조부모 + 손자녀	1.6	1.4	1.5	1.3	1.2
기타 2세대	2.7	1.9	2.6	1.7	2.2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	2.7	3.2	2.5	3.4	2.0
부부 + 자녀(미혼·기혼) + 편부모	7.5	5.7	5.7	5.8	5.3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5.5	5.5	5.1	5.7	4.6
1인 가구	11.0	14.8	17.3	13.9	17.4
비혈연가구	0.4	0.1	0.4	0.1	0.2

주: 「2008 장애인 실태조사」<표5-1-16>에서 제시하는 2005년 수치는 「2005 장애인 실태조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 보고서 해석에 준하여 「2005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중증' 설명 보기 : 358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29.5%,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1%, '장애인 1인 가구'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2-1-10〉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 체	100.0	100.0	100.0	100.0
본 인	49.9	53.3	55.0	53.9
그 외	50.1	46.7	45.0	46.1

주 1)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성비를 표기함

2)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가구주인 경우를 말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인 실태조사」, 199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가구주'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49.9%, 2000년 53.3%, 2005년 55.0%로 증가하다가 2008년 53.9%로 소폭 감소함

## 나. 가족형성

## 1) 혼인

〈표 2-1-11〉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단위: 명, %)
								기타(미혼포함)
전 체	2,520,859	100.0	13.5	58.1	19.1	8.1	1.2	0.0
지 체	1,316,266	100.0	8.2	63.0	19.9	7.4	1.3	0.1
뇌 병 변	304,767	100.0	10.5	59.0	19.8	10.2	0.4	0.0
시 각	251,077	100.0	10.1	59.4	21.8	7.0	1.6	0.0
청 각	275,078	100.0	5.8	60.7	27.2	5.4	0.9	0.0
언 어	17,182	100.0	11.3	71.8	7.6	6.0	3.1	0.0
지 적	112,007	100.0	71.5	17.7	3.9	6.3	0.6	0.0
자 폐 성	4,617	100.0	100.0	0.0	0.0	0.0	0.0	0.0
정 신	103,641	100.0	52.8	24.9	3.3	16.7	2.3	0.0
신 장	58,285	100.0	15.8	58.9	11.2	13.3	0.7	0.0
심 장	16,041	100.0	5.2	66.2	10.5	18.0	0.0	0.0
호 흡 기	19,042	100.0	3.1	65.0	18.1	13.9	0.0	0.0
간	9,223	100.0	6.8	75.5	2.6	10.6	4.5	0.0
안 면	2,355	100.0	60.8	39.2	0.0	0.0	0.0	0.0
장루 · 요루	16,705	100.0	0.0	53.5	42.1	4.4	0.0	0.0
간 질	14,573	100.0	26.0	44.9	5.0	24.1	0.0	0.0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이 대상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혼인상태’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1년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58.1%, ‘사별’19.1%, ‘미혼’13.5%, ‘이혼’8.1%, ‘별거’1.2%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기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미혼’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75.5%), 언어장애(71.8%), 심장장애(66.2%), 호흡기장애(65.0%), 지체장애(63.0%)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음

〈표 2-1-12〉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차이
전체인구	31.9	29.1	2.8
장애인구	27.4	22.7	4.7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9/327페이지 참조

〈표 2-1-13〉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구 분	평균초혼연령	전국추정수	전 체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25.3	2,179,951	100.0	13.1	69.5	15.2	1.7	0.5
지 체	25.3	1,206,524	100.0	13.5	69.0	15.5	1.6	0.5
뇌 병 변	25.0	272,869	100.0	13.5	70.6	14.5	1.1	0.3
시 각	26.0	225,659	100.0	11.5	69.9	15.5	2.1	1.0
청 각	24.7	259,104	100.0	17.9	67.3	12.2	2.3	0.3
언 어	27.7	15,233	100.0	4.5	78.4	9.8	7.3	0.0
지 적	28.3	31,957	100.0	2.4	59.5	31.2	6.9	0.0
정 신	26.4	48,876	100.0	4.7	76.9	15.4	1.9	1.1
신 장	25.7	49,065	100.0	8.1	72.7	18.8	0.3	0.2
심 장	25.1	15,200	100.0	16.7	73.6	9.7	0.0	0.0
호흡기	26.4	18,456	100.0	2.8	71.9	25.3	0.0	0.0
간	25.9	8,595	100.0	0.0	95.5	4.5	0.0	0.0
안 면	26.3	923	100.0	0.0	95.6	4.4	0.0	0.0
장루·요루	23.2	16,705	100.0	17.3	72.6	9.6	0.6	0.0
간 질	25.6	10,785	100.0	5.5	82.2	11.1	1.3	0.0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구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4.5세, ‘여성’6.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8.3세), 언어장애(27.7세), 호흡기 및 정신장애(26.4세) 등의 순이고, 장루·요루장애(23.2세), 청각장애(24.7세), 뇌병변장애(25.0세) 등은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남

〈표 2-1-1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단위: 명, %)

구 분	전국총정수	본인 장애유무		배우자 장애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180,678	22.6	77.4	2.5	97.5
지 체	1,207,252	22.5	77.5	1.7	98.3
뇌 병 변	272,869	4.6	95.4	0.8	99.2
시 각	225,659	35.8	64.2	3.1	96.9
청 각	259,104	25.0	75.0	4.7	95.3
언 어	15,233	34.8	65.2	2.4	97.6
지 적	31,956	84.3	15.7	25.4	74.6
정 신	48,877	25.2	74.8	4.4	95.6
신 장	49,065	8.2	91.8	0.6	99.4
심 장	15,200	16.6	83.4	0.0	100.0
호흡 기	18,457	14.6	85.4	9.0	91.0
간	8,595	2.3	97.7	0.0	100.0
안 면	923	7.2	92.8	0.0	100.0
장루 · 요루	16,704	3.4	96.6	4.6	95.4
간 질	10,784	67.5	32.5	1.3	98.7

주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결혼 시 본인 장애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시점에 장애가 없었다가 77.4%를 보였고, 결혼 시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로 나타남
  - 지적장애는 '결혼 시 장애'가 있거나(84.3%)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이(25.4%)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출산

〈표 2-1-15〉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유자녀율	자녀 수					유장애인 자녀율
			1명	2명	3명	4명	5~10명	
전 체	2,520,859	82.5	11.8	35.2	22.5	15.2	15.3	5.9
지 체	1,316,266	88.5	11.7	38.2	21.6	14.1	14.3	5.2
뇌 병 변	304,767	85.9	8.4	29.7	24.4	18.3	19.2	7.2
시 각	251,077	85.2	10.0	37.2	24.3	16.3	12.2	4.7
청 각	275,079	90.5	9.6	27.6	23.8	16.0	23.0	7.5
언 어	17,182	84.4	14.2	33.3	28.1	14.3	10.1	6.6
지 적	112,008	18.1	45.3	36.2	12.1	1.9	4.5	19.9
자 폐 성	4,617	0.0	-	-	-	-	-	-
정 신	103,641	36.8	28.6	30.8	19.6	12.7	8.3	7.9
신 장	58,284	81.7	18.8	39.8	17.8	16.8	6.8	2.4
심 장	16,041	94.8	18.1	22.8	33.3	14.2	11.6	16.1
호 흡 기	19,043	96.9	20.3	13.5	32.9	18.6	14.7	9.2
간	9,223	93.2	19.6	57.2	15.8	7.4	0.0	0.0
안 면	2,355	39.2	0.0	47.0	18.0	35.0	0.0	10.8
장루·요루	16,704	97.5	6.1	16.8	17.5	35.2	24.5	2.1
간 질	14,572	66.6	9.5	47.3	27.8	7.7	7.7	22.0

주 1)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유자녀율 및 유장애인자녀율을 표기함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82.5%가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자녀 중 5.9%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유자녀율이 90% 이상인 장애유형으로는 장루·요루장애(97.5%), 호흡기장애(96.9%), 심장장애(94.8%), 간장애(93.2%), 청각장애(90.5%) 등의 순이며, 안면장애(39.2%), 정신장애(36.8%), 지적장애(18.1%) 등은 상대적으로 유자녀율이 낮았음
  - 자녀가 장애가 있는 유장애인자녀율을 살펴보면, '간질장애' 22.0%, '지적장애' 19.9%, '심장장애' 16.1%, '안면장애'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16〉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단위 : 명, %, 세)

구 分	전국 추정수	임신 경험률	출산율	출산연령					
				평균연령	소 계	13~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전 체	119,884	57.6	89.3	29.4	100.0	0.9	18.4	42.2	31.1
지 체	56,699	60.9	89.6	30.1	100.0	0.5	15.6	40.3	33.0
뇌 병 변	6,821	47.7	100.0	28.5	100.0	0.0	33.4	24.8	41.8
시 각	10,738	68.9	93.2	29.5	100.0	0.0	19.6	34.5	38.0
청 각	10,094	68.4	88.2	29.4	100.0	1.6	24.3	36.3	34.5
언 어	1,132	100.0	100.0	26.7	100.0	0.0	36.2	63.8	0.0
지 적	8,991	86.8	87.5	27.1	100.0	0.0	31.9	53.0	7.4
자 폐 성	-	-	-	-	-	-	-	-	-
정 신	14,665	35.5	79.3	27.3	100.0	7.9	0.0	71.7	20.4
신 장	6,554	12.0	45.5	26.0	100.0	0.0	0.0	100.0	0.0
심 장	825	0.0	-	-	100.0	-	-	-	-
호 흡 기	-	0.0	-	-	100.0	-	-	-	-
간	63	0.0	-	-	100.0	-	-	-	-
안 면	392	0.0	-	-	100.0	-	-	-	-
장루 · 요루	-	0.0	-	-	100.0	-	-	-	-
간 절	2,910	71.1	100.0	32.5	100.0	0.0	0.0	24.4	75.6
									0.0

주 1) 장애상태에서의 임신경험률 및 출산율을 표기함

2)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임신할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임신 시 전체의 57.6%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하고, 마지막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89.3%가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연령은 평균 29.4세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신경험률을 보면, '언어장애'100%, '지적장애'8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질장애(100.0%), 뇌병변장애(100.0%), 언어장애(100.0%), 시각장애(93.2%), 지체장애(89.6%)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 임신시 출산연령은 만 26~30세가 42.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1~35세가 31.1%임
  - 간질장애(32.5세), 지체장애(30.1세), 시각장애(29.5세)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신장장애(26.0세), 언어장애(26.7세), 지적장애(27.1세), 정신장애(27.3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최종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 3. 장애특성

#### 가. 장애발생

〈표 2-1-17〉 장애발생원인

(단위: 명, %)

구 分	전국추정수	전 체	선천적 원인	출산시 원인	후천적원인			원인불명
					소 계	질 환	사 고	
2005년	2,085,311	100.0	4.0	0.7	89.0	52.4	36.6	6.3
2008년	2,135,512	100.0	4.9	0.5	90.0	55.6	34.4	4.6
2011년	2,609,372	100.0	4.6	0.9	90.5	55.1	35.4	4.0
지 체	1,325,002	100.0	1.6	0.3	97.6	44.2	53.4	0.5
뇌 병 변	316,308	100.0	2.2	2.3	94.8	82.1	12.7	0.7
시 각	256,839	100.0	4.6	0.4	90.8	53.5	37.3	4.2
청 각	278,337	100.0	3.5	0.8	91.2	75.7	15.5	4.5
언 어	21,049	100.0	24.2	5.2	64.1	57.8	6.3	6.5
지 적	152,457	100.0	35.9	5.3	21	11.2	9.8	37.8
자 폐 성	16,237	100.0	22.6	-	12.7	12.7	-	64.8
정 신	103,893	100.0	1.1	-	97.9	83.0	14.9	1.0
신 장	58,500	100.0	-	-	99.7	99.5	0.2	0.3
심 장	18,508	100.0	22.3	-	77.7	77.7	-	-
호 흡 기	19,249	100.0	-	-	100.0	100.0	-	-
간	9,289	100.0	0.7	-	99.3	99.3	-	-
안 면	2,426	100.0	2.9	-	97.1	52.6	44.5	-
장루 · 요루	16,705	100.0	-	-	100.0	100.0	-	-
간 질	14,573	100.0	3.2	1.1	81.8	60.4	21.4	13.9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 90.5%,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명' 4.0%, '출산 시 원인'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1%)이 사고(35.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53.4%)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 호흡기장애(100.0%), 장루·요루장애(100.0%), 신장장애(99.5%), 간장애(99.3%)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18〉 장애발생시기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돌 이전	돌 이후
2005년	1,994,357	100.0	2.2	2.1	95.7
2008년	2,135,765	100.0	1.9	1.4	96.7
2011년	2,877,112	100.0	3.2	2.9	93.9
지 체	1,372,612	100.0	1.4	1.3	97.4
뇌 병 변	330,157	100.0	3.7	3.6	92.7
시 각	285,585	100.0	3.1	3.7	93.3
청 각	311,993	100.0	1.9	2.7	95.4
언 어	103,880	100.0	8.4	7.2	84.4
지 적	181,126	100.0	12.0	6.6	81.4
자 폐 성	21,421	100.0	2.8	3.8	93.4
정 신	109,839	100.0	0.7	-	99.3
신 장	64,176	100.0	-	-	100.0
심 장	22,219	100.0	11.1	3.4	85.5
호흡 기	20,116	100.0	-	-	100.0
간	9,972	100.0	-	0.7	99.3
안 면	3,502	100.0	2.0	-	98.0
장루 · 요루	20,101	100.0	-	-	100.0
간 질	20,413	100.0	0.8	10.3	89.0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돌 이후'가 93.9%로 가장 많고,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3.2%, '돌 이전'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12.0%), 심장장애(11.1%)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97.4%), 정신장애(99.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장애정도

〈표 2-1-19〉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

구 分	전 체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소 계	중증 (1-2급)	경증 (3-6급)
옷 벗고 입기	100.0	87.1	60.2	95.1	9.2	26.4	4.2	3.7	13.4	0.8
세수하기	100.0	92.2	73.8	97.6	4.8	15.4	1.6	3.0	10.8	0.8
양치질하기	100.0	92.5	74.5	97.8	4.5	14.7	1.5	3.0	10.8	0.7
목욕하기	100.0	83.6	54.7	92.1	10.7	25.6	6.3	5.7	19.6	1.6
식사하기	100.0	91.2	71.3	97.1	6.8	21.1	2.6	2.0	7.6	0.4
체위변경하기	100.0	95.1	84.5	98.2	2.9	8.2	1.4	2.0	7.2	0.4
일어나 앓기	100.0	93.7	81.5	97.3	3.9	9.8	2.2	2.4	8.7	0.5
옮겨 앓기	100.0	93.9	80.5	97.8	3.6	10.6	1.5	2.5	8.9	0.7
방밖으로 나가기	100.0	90.8	75.7	95.2	5.5	11.6	3.8	3.7	12.7	1.0
화장실 사용하기	100.0	91.7	73.1	97.2	5.0	15.5	2.0	3.3	11.5	0.9
용변	100.0	91.7	73.2	97.2	4.9	15.2	1.9	3.3	11.7	0.9
대변 조절하기	100.0	94.5	82.7	98.0	3.0	8.7	1.3	2.5	8.6	0.7
소변 조절하기	100.0	94.2	83.1	97.5	3.2	8.5	1.7	2.5	8.4	0.8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ADL, IADL'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80% 이상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목욕하기, 옷 벗고 입기 등 개인위생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20〉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

구 分	전 체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소 계	중증 (1-2급) (3-6급)	경증
전화사용하기	100.0	81.0	49.6	90.2	13.1	29.7	8.2	5.9	20.7	1.6
물건사기(쇼핑)	100.0	77.7	41.5	88.4	14.7	32.4	9.3	7.7	26.1	2.3
식사준비	100.0	72.8	34.0	84.3	15.7	29.2	11.7	11.5	36.8	4.0
집안일	100.0	67.9	32.2	78.5	23.5	40.7	18.4	8.6	27.2	3.1
빨래하기	100.0	74.8	41.2	84.7	13.1	21.1	10.7	12.1	37.7	4.5
약 챙겨먹기	100.0	85.6	56.2	94.2	7.1	18.0	3.8	7.4	25.8	1.9
금전관리	100.0	77.0	42.8	87.1	12.2	22.6	9.2	10.7	34.6	3.7
교통수단 이용하기	100.0	73.0	34.1	84.5	22.0	48.9	14.1	5.0	17.0	1.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ADL, IADL'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하기와 같은 가사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정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 장애인보조기구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단위 : %)

구 分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전 체	중 중	경 중	전 체	중 중	경 중
지 체 및 뇌병변	상지의지	1.4	2.2	1.2	1.1	2.9	0.7
	하지의지	1.3	2.0	1.1	1.3	2.5	1.0
	척추보조기	3.5	1.5	3.7	3.6	2.0	3.6
	상지보조기	0.8	2.2	0.6	0.7	2.7	0.4
	하지보조기	2.7	7.3	1.9	2.6	7.3	1.8
	정형외과용 구두	2.9	4.6	2.6	2.1	4.5	1.7
	지팡이	22.3	33.0	19.6	23.3	35.9	20.4
	목발	4.2	8.2	3.4	6.0	10.4	5.2
	보행기	6.8	10.2	6.0	6.0	9.6	5.2
	자세보조기구	2.0	5.0	1.4	1.5	2.6	1.3
	전동휠체어	6.9	19.6	4.4	3.6	13.7	1.8
	수동휠체어	9.0	37.6	3.4	8.1	36.4	2.6
시 각	전동스쿠터	5.3	13.1	3.8	2.6	7.1	1.8
	기타	3.9	4.7	3.5	3.1	3.5	3.0
	안경(콘텍트렌즈)	50.2	26.0	54.0	48.5	27.9	51.7
	저시력보조기	9.6	11.1	8.8	5.6	5.1	5.7
	시각장애인용 휠지팡이	9.3	44.2	2.2	7.3	36.3	1.4
	의안	10.7	9.4	11.3	9.4	7.2	10.2
	스크린 리더	1.6	8.9	0.1	1.4	8.5	0.0
	화면 확대기	6.5	6.4	6.6	2.6	4.1	2.4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3.2	17.6	0.0	1.5	8.6	0.0
	음성손목/탁상시계	5.8	21.2	2.2	1.9	10.0	0.2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1.0	5.9	0.0	-	-	-
	점자프린터	1.5	7.7	0.0	-	-	-
언 어	화면해설기	3.2	18.5	0.1	0.7	4.2	0.0
	기타	3.9	3.0	4.1	3.3	1.5	3.7
	인공후두(성대)	3.6	-	-	4.2	0.0	0.6
지적 및 자폐성	의사소통보조기	1.7	0.0	2.1	5.9	0.0	2.7
	기타	-	-	-	-	-	-
	스위치	1.2	1.8	0.0	-	-	-
터치모니터	터치모니터	3.0	4.4	0.4	0.1	0.0	0.4
	기타	0.2	0.2	0.0	-	-	-

〈표 2-1-21〉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계속)

(단위 : %)

구 分	장애인보조기구	필 요			소 지		
		전 체	중 중	경 중	전 체	중 중	경 중
청 각	보청기	74.3	57.3	78.0	66.0	55.3	68.9
	화상전화기	7.9	21.0	5.0	2.8	11.2	0.8
	골도전화기	1.6	4.0	1.1	0.8	3.3	0.2
	문자전화기	3.0	6.6	2.3	1.6	2.7	1.5
	문자송수신기	1.6	5.0	0.9	0.7	2.7	0.2
	음성증폭기	3.9	3.1	4.0	0.8	0.0	1.1
	인공와우	3.9	11.3	1.9	2.5	9.2	0.8
	자막수신기	6.0	11.0	4.4	2.0	6.2	1.1
	기타	0.3	0.0	0.4	0.3	0.0	0.4
신 장	복막투석기구	10.6	11.2	0.0	12.1	13.2	0.0
	기타	-	-	-	-	-	-
호흡기	산소발생기	49.6	71.6	39.3	36.0	64.2	16.4
	인공호흡기	17.2	8.6	30.0	3.2	7.1	0.0
	기타	11.0	8.8	7.4	11.0	8.8	7.4
안 면	압력옷	12.9	0.0	25.0	12.9	0.0	25.0
	기타	11.2	0.0	21.7	11.2	0.0	21.7
장루 · 요루	장루주머니	88.9	-	88.2	88.9	-	88.2
	피부보호관	88.4	-	89.8	86.1	-	87.0
	기타	14.5	-	10.8	14.5	-	10.8
전체	호흡 산소발생기	0.3	0.8	0.1	0.2	0.5	0.0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0.4	0.0	0.1	0.3	0.0
	욕창방지용매트	2.9	9.7	0.7	1.8	6.2	0.4
	욕창방지용방석	1.8	6.7	0.4	1.0	4.0	0.1
	기저귀매트	2.2	6.6	0.7	1.3	4.0	0.4
	목욕 의자	4.4	10.6	2.5	1.6	5.4	0.5
	특수 키보드	0.2	0.7	0.1	0.0	0.0	0.0
	특수 마우스	0.2	0.6	0.1	0.0	0.0	0.0
	스위치, 음성인식장치	0.2	0.7	0.0	0.1	0.3	0.0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2	0.6	0.1	0.1	0.2	0.0
	환경제어장치	0.1	0.4	0.0	-	-	-
	이동변기	3.0	8.0	1.2	2.3	6.7	0.7
	기타	0.3	1.0	0.1	0.3	1.1	0.1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표 2-1-2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외부지원 경험률	지원형태				
			비용 전액 지원	비용 일부 지원	무상 임대	유상 임대	기타
전 체	1,171,230	38.8	39.8	56.5	2.4	1.1	0.2
지 체	501,784	34.8	50.0	46.6	2.2	1.1	0.1
뇌 병 변	218,987	50.9	42.2	53.8	2.5	1.2	0.2
시 각	178,367	23.0	46.3	51.0	1.9	0.0	0.8
청 각	205,458	50.2	19.3	80.3	0.4	0.0	0.0
언 어	2,020	15.7	100.0	0.0	0.0	0.0	0.0
지 적	8,892	46.2	20.6	45.3	34.1	0.0	0.0
자 폐 성	201	0.0	-	-	-	-	-
정 신	2,684	0.0	-	-	-	-	-
신 장	17,648	34.9	30.8	26.5	25.8	16.9	0.0
심 장	2,122	4.7	0.0	100.0	0.0	0.0	0.0
호흡 기	11,759	43.6	53.6	33.4	0.0	13.0	0.0
간	490	0.0	-	-	-	-	-
안 면	635	0.0	-	-	-	-	-
장루 · 요루	16,705	40.6	18.9	81.1	0.0	0.0	0.0
간 절	3,478	47.8	35.5	64.5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보조기구' 설명 보기 : 359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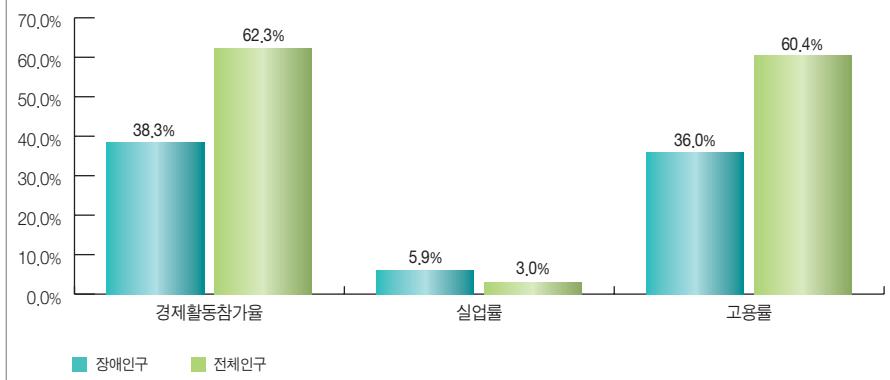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011년 전체의 38.8%로 나타났으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6.5%,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9.8%,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각각 2.4%와 1.1%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지원이 구입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임대를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임

## 제2절 고용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2-1] 경제활동상태



주 : 2013년 5월 기준임

[그림 2-2-2] 경제활동상태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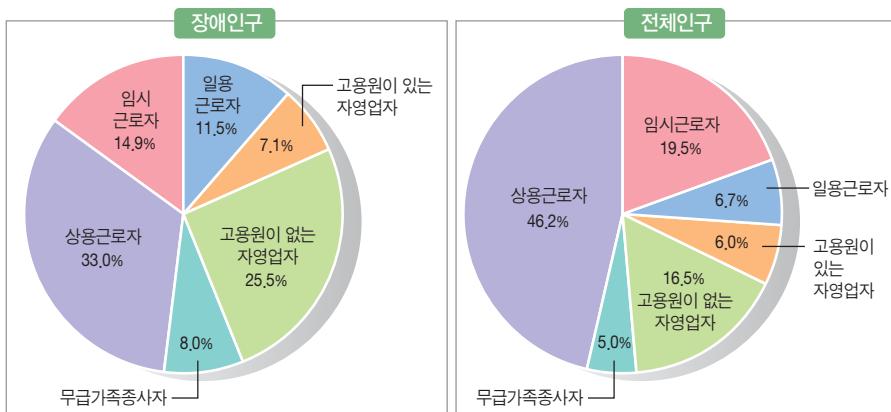


주 :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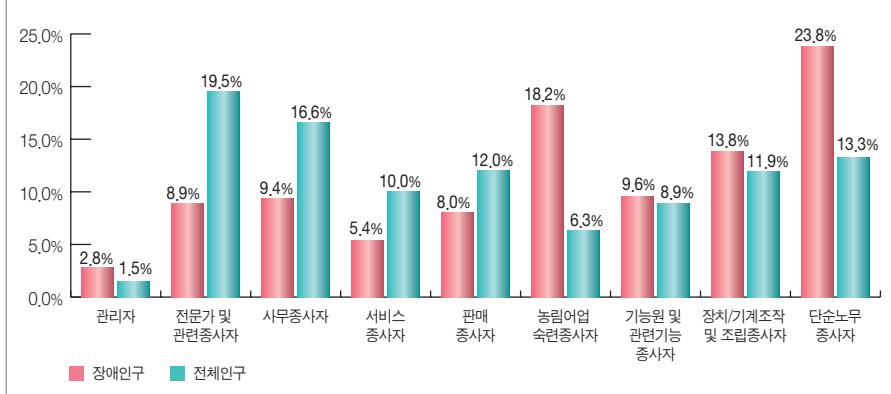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0.4%p 낮음

[그림 2-2-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주 : 2013년 5월 기준임

[그림 2-2-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 기준임

2) '모름/응답거절'은 제외함

3)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종사상지위별 장애인의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5%, '임시근로자' 14.9%, '일용근로자' 11.5%, '무급가족종사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3.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함
-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명 이상으로 확대됨
-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적용됨
- 4)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2%에서 3%로 상향조정
- 5) 2012년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2.3%에서 2.5%로 상향조정(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적용한 고용률
- 7) 2010년부터 정부부문 고용률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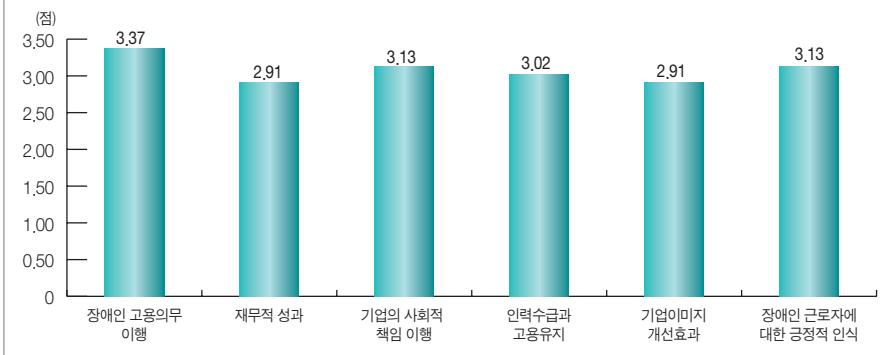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2년 2.35%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66%에서 2012년 2.61%로 약 4배 증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2년 2.30%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2-6]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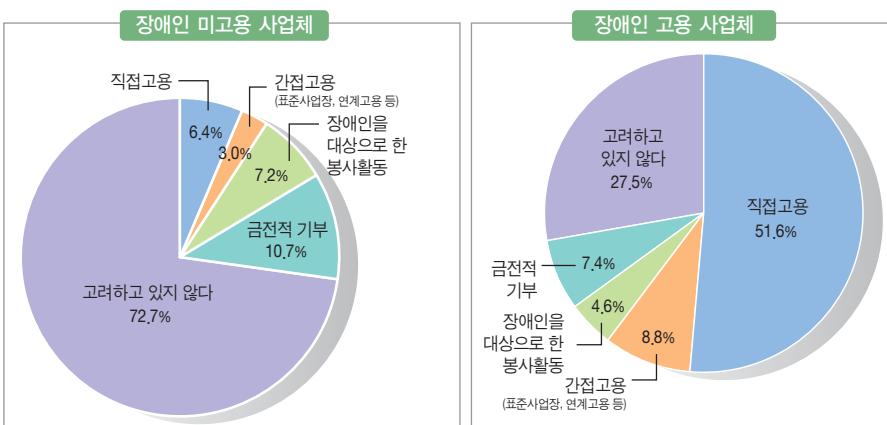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임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기준임

[그림 2-2-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3.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도움’(3.37점)이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3.13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3.13점), ‘인력수급과 고용유지’(3.0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방식으로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51.6%가 ‘직접 고용’을 선호한 반면, 미고용기업체는 6.4%만이 ‘직접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 경제활동

### 가. 경제활동상태

〈표 2-2-1〉 경제활동상태 – 성별

(단위 : 명, 천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남 성	1,425,957	711,915	669,426	42,489	714,042	49.9	6.0	46.9
여 성	1,031,669	228,465	215,599	12,866	803,204	22.1	5.6	20.9
전체인구	42,047	26,195	25,398	797	15,853	62.3	3.0	60.4
남 성	20,557	15,195	14,715	480	5,362	73.9	3.2	71.6
여 성	21,490	11,000	10,683	317	10,490	51.2	2.9	49.7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 2)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 3)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4)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5)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 6)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7)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남
  -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실업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실업률은 0.4%p 낮음

〈표 2-2-2〉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단위 : 명, 천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15~29세	126,958	42,015	36,342	5,673	84,943	33.1	13.5	28.6
30~39세	183,002	109,932	103,495	6,437	73,070	60.1	5.9	56.6
40~49세	341,361	215,717	201,992	13,725	125,644	63.2	6.4	59.2
50~59세	540,646	267,330	252,497	14,833	273,316	49.4	5.5	46.7
60세이상	1,265,660	305,385	290,699	14,686	960,275	24.1	4.8	23.0
전체인구	42,047	26,195	25,398	797	15,853	62.3	3.0	60.4
15~29세	9,550	4,133	3,826	307	5,417	43.3	7.4	40.1
30~39세	7,856	5,940	5,759	181	1,916	75.6	3.0	73.3
40~49세	8,478	6,814	6,671	143	1,665	80.4	2.1	78.7
50~59세	7,641	5,763	5,654	109	1,878	75.4	1.9	74.0
60세이상	8,523	3,546	3,488	58	4,977	41.6	1.6	40.9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2-1〉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13.5%로 타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률은 2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3〉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신체 장애	지체장애	1,318,905	617,603	590,789	26,814	701,302	46.8	4.3	44.8
	지체 외	249,615	30,798	28,002	2,796	218,817	12.3	9.1	11.2
감각 장애	시각장애	250,336	107,544	98,282	9,262	142,792	43.0	8.6	39.3
	시각 외	271,443	96,263	92,343	3,920	175,180	35.5	4.1	34.0
정신적 장애		253,572	60,652	50,431	10,221	192,920	23.9	16.9	19.9
내부장애		113,754	27,520	25,178	2,342	86,234	24.2	8.5	22.1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2-1〉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표 2-2-4〉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중 중		776,749	167,117	149,004	18,113	609,632	21.5	10.8	19.2
경 증		1,680,879	773,264	736,022	37,242	907,615	46.0	4.8	43.8

-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2-1〉 참조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낮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실업률이 가장 높음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나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음

## 〈표 2-2-5〉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중졸이하	1,523,153	462,749	437,763	24,986	1,060,404	30.4	5.4	28.7
고졸	659,018	311,537	288,662	22,875	347,481	47.3	7.3	43.8
대졸이상	275,454	166,093	158,600	7,493	109,361	60.3	4.5	57.6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2-1〉 참조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 〈표 2-2-6〉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단위 : 명, %)

구 分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체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수도권	1,021,232	403,665	375,179	28,486	617,567	39.5	7.1	36.7
광역시권	465,826	156,651	143,602	13,049	309,175	33.6	8.3	30.8
기타 시도	970,568	380,063	366,244	13,819	590,505	39.2	3.6	37.7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3)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산식은 〈표 2-2-1〉 참조

4)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0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나 실업률은 고졸에서 가장 높음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기타 시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실업률은 '광역시권'에서 8.3%로 가장 높음

## 나. 취업자 특성

〈표 2-2-7〉 취업자 인적구성

구 분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단위 : 명, %)
전 체		885,025	100.0	100.0	
성별	남 성	669,426	75.6	58.0	
	여 성	215,599	24.4	42.0	
연령별	15~29세	36,342	4.1	5.2	
	30~39세	103,495	11.7	7.4	
	40~49세	201,992	22.8	13.9	
	50~59세	252,497	28.5	22.0	
	60세 이상	290,699	32.8	51.5	
장애 정도별	중 증	149,004	16.8	31.6	
	경 증	736,022	83.2	68.4	
장애 유형별	신체장애	590,789	66.8	53.7	
	지체 외	28,002	3.2	10.2	
	감각장애	98,282	11.1	10.2	
	시각 외	92,343	10.4	11.0	
	정신적 장애	50,431	5.7	10.3	
지역별	내부장애	25,178	2.8	4.6	
	수도권	375,179	42.4	41.6	
	광역시권	143,602	16.2	19.0	
학력별	기타 시도	366,244	41.4	39.5	
	중졸 이하	437,763	49.5	62.0	
	고졸	288,662	32.6	26.8	
	대졸 이상	158,600	17.9	11.2	

-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에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에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표 2-2-8〉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취업자 중 비율	임금/비임금 내 비율	취업자 중 비율	임금/비임금 내 비율
전 체	100.0	-	100.0	-
임금 근로자	소 계	59.4	100.0	72.4
	상용근로자	33.0	55.5	46.2
	임시근로자	14.9	25.1	19.5
비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11.5	19.4	6.7
	소 계	40.6	100.0	27.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1	17.4	6.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5	62.9	16.5	59.9
	무급가족종사자	8.0	19.7	5.0
				18.3

주 :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종사상 지위' 설명 보기 : 361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33.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5%, '임시근로자' 14.9%, '일용근로자' 11.5%, '무급가족종사자'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상용, 임시, 일용의 순이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순임

〈표 2-2-9〉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16.2	27.7	6.8	6.5	7.3
제조업	18.4	19.2	15.9	16.4	19.9	1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2	0.3	0.0	0.4	0.6	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	0.2	0.0	0.3	0.4	0.1
건설업	7.9	10.3	0.5	7.1	11.3	1.3
도매 및 소매업	11.7	11.5	12.5	14.5	13.6	15.7
운수업	7.1	9.1	1.0	5.5	8.7	1.2
숙박 및 음식점업	4.4	3.2	8.4	7.6	4.5	1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2.1	0.8	2.7	3.4	1.8
금융 및 보험업	1.8	1.7	2.3	3.4	2.9	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	3.0	1.7	1.9	2.1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3.2	0.4	4.0	4.9	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4	4.6	3.5	4.8	4.6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	5.4	3.5	4.0	4.3	3.5
교육 서비스업	2.6	2.1	4.4	6.9	4.0	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	2.6	11.0	6.2	1.9	1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1.1	0.8	1.6	1.7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4.1	2.8	5.2	4.6	5.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0.5	0.0	2.1	0.7	0.0	1.6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0.0	0.0	0.0
모름/응답거절	0.3	0.2	0.6	0.0	0.0	0.0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기준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산업, 직업' 설명 보기 : 361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제조업' 18.4%, '도매 및 소매업' 11.7%, '건설업'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10〉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2.8	3.7	0.1	1.5	2.4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9	9.1	8.5	19.5	18.0	21.6
사무종사자	9.4	10.6	5.6	16.6	15.3	18.4
서비스종사자	5.4	3.8	10.2	10.0	5.9	15.7
판매종사자	8.0	7.4	9.9	12.0	10.4	14.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2	15.4	26.8	6.3	6.2	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6	11.2	4.5	8.9	13.3	2.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	16.7	4.8	11.9	17.8	3.6
단순노무종사자	23.8	22.0	29.4	13.3	10.7	16.8
모름/응답거절	0.1	0.1	0.2	0.0	0.0	0.0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 기준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산업, 직업’ 설명 보기 : 361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장애인(22.0%)과 여성장애인(29.4%) 모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시간)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시간 미만	29.1	23.7	46.1	30.7	24.9	38.7
1~17시간	7.6	5.7	13.7	4.7	2.5	7.6
18~35시간	21.5	18.0	32.5	26.0	22.4	31.0
36시간 이상	70.4	75.8	53.6	68.3	74.5	59.7
지난 주 일시 휴직자	0.5	0.5	0.3	1.1	0.7	1.7
평균 취업시간	41.1	42.7	36.1	41.5	43.8	38.3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주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취업시간’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2-1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 시간)

구 分	장애인구		
	소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100.0	100.0	100.0
36시간 미만	29.1	26.3	33.3
1~17시간	7.6	10.1	4.0
18~35시간	21.5	16.2	29.3
36시간 이상	70.4	73.5	65.8
지난 주 일시 휴직자	0.5	0.2	0.9
평균 취업시간	41.1	40.5	42.1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주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취업시간’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2-13〉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년/개월)

구 분	장애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년 미만	16.8	14.9	22.9
1~3년 미만	15.1	15.2	14.9
3~10년 미만	24.4	24.8	23.3
10년 이상	39.9	41.7	34.5
모름/응답거절	3.7	3.4	4.5
평균 근속기간	12년 9개월	12년 8개월	13년 1개월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근속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근속기간'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2-14〉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 년/개월)

구 分	장애인구		
	소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100.0	100.0	100.0
1년 미만	16.8	25.6	3.9
1~3년 미만	15.1	19.5	8.8
3~10년 미만	24.4	27.2	20.5
10년 이상	39.9	25.4	61.1
모름/응답거절	3.7	2.3	5.7
평균 근속기간	12년 9개월	7년 1개월	21년 3개월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근속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근속기간'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2년 9개월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는 7년 1개월인데 반해 비임금근로자는 21년 3개월로 길게 나타남

〈표 2-2-1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단위 : 명, 천명,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525,941	100.0	17,743	100.0
정규직	215,296	40.9	12,012	67.7
비정규직	310,645	59.1	5,732	32.3
한시적	177,129	33.7	3,331	18.8
시간제	129,814	24.7	1,757	9.9
비전형	154,251	29.3	2,208	12.4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천명 단위임

2) 비정규직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합계는 불일치함

3)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3년 3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근로형태’ 설명 보기 : 363페이지 참조

〈표 2-2-16〉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단위 : %, 만원)

구 分	장애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49만원	14.1	9.1	32.9
50~99만원	17.7	12.3	37.8
100~149만원	22.3	23.0	19.6
150~299만원	13.0	15.4	3.9
200~299만원	20.2	24.8	3.2
300만원 이상	12.7	15.4	2.6
평균 임금	156.6	177.4	78.5

주 1) 2013년 5월 기준임

2) 평균 임금은 범주형 응답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 ‘평균 임금’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2-17〉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단위 : %)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취업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3.7	6.2
	제조업	15.8	18.9
	도매 및 소매업	10.1	15.0
	건설업	7.8	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9	6.5
	운수업	5.8	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3	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12.7
	숙박 및 음식점업	4.3	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	7.2
종사하고 있는 직종	관리자	1.5	2.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5	3.9
	사무종사자	6.7	4.0
	서비스종사자	5.6	8.2
	판매종사자	8.9	7.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3.0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1.6	6.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7	3.2
	단순노무종사자	29.5	62.1
	상용근로자	26.0	15.5
종사상 지위	임시근로자	16.8	44.5
	일용근로자	14.4	2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1	9.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9	1.5
	무급가족종사자	7.9	1.8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2)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으며 따라서 각 비율의 합계는 100.0이 되지 않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신규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 실업자 특성

〈표 2-2-18〉 실업자 인적구성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55,354	100.0	100.0
성별	남 성	42,489	76.8	58.0
	여 성	12,866	23.2	42.0
연령별	15~29세	5,673	10.2	5.2
	30~39세	6,437	11.6	7.4
	40~49세	13,725	24.8	13.9
	50~59세	14,833	26.8	22.0
	60세 이상	14,686	26.5	51.5
장애 정도별	중 증	18,113	32.7	31.6
	경 증	37,242	67.3	68.4
장애 유형별	신체장애	지체장애	48.4	53.7
		지체 외	5.1	10.2
	감각장애	시각장애	16.7	10.2
		시각 외	7.1	11.0
	정신적 장애		18.5	10.3
지역별	내부장애		4.2	4.6
	수도권	28,486	51.5	41.6
	광역시권	13,049	23.6	19.0
학력별	기타 시도	13,819	25.0	39.5
	중졸 이하	24,986	45.1	62.0
	고졸	22,875	41.3	26.8
	대졸 이상	7,493	13.5	11.2

〈표 2-2-19〉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명, 천명, %)

구 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55,354	100.0	797	100.0
3개월 미만	20,420	36.9	493	61.9
3~6개월 미만	18,347	33.1	253	31.7
6~12개월 미만	4,638	8.4	42	5.3
12개월 이상	10,274	18.6	9	1.1
모름/응답거절	1,676	3.0	0	0.0

주 1)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2)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구직기간」 설명 보기 : 362페이지 참조

〈표 2-2-20〉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 무경험 실업자	8.2	6.4	14.2	5.6	6.3	4.4
취업 유경험 실업자	91.8	93.6	85.8	94.5	93.8	95.6

주 :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2013년 5월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27.0%, '12개월 이상' 18.6%로 나타나 전체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 실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5월 장애인의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은 91.8%로 전체인구(93.8%)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21〉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구 분		취업 유지	(단위 : %) 취업→미취업
종사하고 있던 일자리의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95.4	4.6
	제조업	89.5	10.5
	건설업	96.0	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7.7	1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8	19.2
	운수업	97.9	2.1
	숙박 및 음식점업	94.6	5.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5.0	15.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4.8	15.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9.6	20.4
종사하고 있던 직종	관리자	93.3	6.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0.8	9.2
	사무종사자	91.5	8.5
	서비스종사자	91.3	8.7
	판매종사자	94.1	5.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5.3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5.3	4.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9.6	0.4
종사상 지위	단순노무종사자	85.1	14.9
	상용근로자	94.2	5.8
	임시근로자	86.4	13.6
	일용근로자	85.2	14.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4.1	5.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4.1	5.9
무급가족종사자		97.4	2.6

주 1) 4차 조사(2011년) 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각 항목의 대상, 세부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원 보고서 참조

3)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여 각 비율의 합계는 100.0이 되지 않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취업자였으나 현재 미취업상태인 장애인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음

## 라.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2-2-22〉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비 율	인구분포
전 체		1,517,246	100.0	100.0
성별	남 성	714,042	47.1	58.0
	여 성	803,204	52.9	42.0
연령별	15~29세	84,943	5.6	5.2
	30~39세	73,070	4.8	7.4
	40~49세	125,644	8.3	13.9
	50~59세	273,316	18.0	22.0
	60세 이상	960,275	63.3	51.5
	중 중	609,632	40.2	31.6
장애정도별	경 중	907,615	59.8	68.4
	신체장애	701,302	46.2	53.7
	지체 외	218,817	14.4	10.2
	감각장애	142,792	9.4	10.2
	시각 외	175,180	11.5	11.0
	정신적 장애	192,920	12.7	10.3
지역별	내부장애	86,234	5.7	4.6
	수도권	617,567	40.7	41.6
	광역시권	309,175	20.4	19.0
	기타 시도	590,505	38.9	39.5
	중졸 이하	1,060,404	69.9	62.0
	고졸	347,481	22.9	26.8
교육정도별	대졸 이상	109,361	7.2	11.2

- 주 1)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지체 외 신체장애에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권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타시도는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페이지 참조

〈표 2-2-23〉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단위 :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육 아	0.7	0.0	1.3	9.2	0.1	13.8
가 사	11.3	0.1	21.3	36.7	2.4	54.3
재학·수강 등	3.1	4.1	2.2	27.3	42.9	19.3
연 로	12.7	11.9	13.5	11.4	21.5	6.2
심신장애	38.1	43.5	33.3	2.6	4.8	1.5
그 외	34.1	40.4	28.5	12.8	28.3	4.9

주 1) 재학·수강 등 : 정규교육기관 통학(재학)+입시학원 통학(수강)+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수강) 등

2) 그 외 : 학원·기관 통학(수강)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대기 + 결혼준비 + 쉬었음 등

3)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설명 보기 : 364페이지 참조

〈표 2-2-24〉 구직단념자 구성비

(단위 : 명, 천명, %)

구 分	장애인구		전체인구	
	구직단념자	비율	구직단념자	비 율
전 체	11,088(58,100)	100.0(100.0)	175	100.0
남 성	10,415(39,461)	93.9(67.9)	112	64.0
여 성	673(18,638)	6.1(32.1)	63	36.0

주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함

2) 팔호 안의 수치는 EDI 기준의 구직단념자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를 말함

3)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4)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1/340페이지 참조

☞ ‘구직단념자’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2. 장애인 고용 현황

### 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1)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5〉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1991년	2,427,301	26,128	10,462	0.43
1992년	2,432,231	38,959	10,735	0.44
1993년	2,294,250	44,639	11,024	0.48
1994년	2,371,854	46,153	11,406	0.48
1995년	2,529,815	49,299	12,147	0.48
1996년	2,549,774	50,145	12,742	0.50
1997년	2,546,410	49,484	13,634	0.54
1998년	2,229,501	43,645	14,038	0.63
1999년	2,230,987	44,283	17,588	0.79
2000년	2,251,698	44,975	18,499	0.82
2001년	2,292,414	44,804	22,060	0.96
2002년	2,378,485	46,490	25,385	1.07
2003년	2,390,768	46,801	28,139	1.18
2004년	3,847,875	69,108	52,753	1.37
2005년	4,000,662	71,875	61,862	1.55
2006년	5,801,788	107,369	79,480	1.37
2007년	5,807,665	107,012	89,546	1.54
2008년	6,035,950	111,043	104,132	1.73
2009년	6,091,555	120,277	114,053	1.87
2010년	6,511,624	145,535	145,981(126,416)	2.24(1.94)
2011년	6,909,276	154,432	157,468(133,451)	2.28(1.93)
2012년	7,199,417	172,190	168,991(142,022)	2.35(1.97)

주 1)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를 모두 포함

2)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

3) 2006년부터 정부부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적용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2년 2.35%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2-26〉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단위 : 명, %)
1991년	256,403	5,128	1,698	0.66	
1992년	279,480	5,548	1,987	0.71	
1993년	280,887	5,580	2,181	0.78	
1994년	279,849	5,568	2,309	0.83	
1995년	291,325	5,794	2,565	0.88	
1996년	294,594	5,851	2,926	0.99	
1997년	305,542	6,073	3,303	1.08	
1998년	277,002	5,500	3,413	1.23	
1999년	270,985	5,380	3,591	1.33	
2000년	274,702	5,452	4,065	1.48	
2001년	274,488	5,490	4,420	1.61	
2002년	281,454	5,631	4,676	1.66	
2003년	289,158	5,830	5,421	1.87	
2004년	297,505	5,996	6,079	2.04	
2005년	305,067	6,147	6,853	2.25	
2006년	812,656	16,292	12,219	1.50	
2007년	822,590	16,497	13,142	1.60	
2008년	824,164	16,526	14,468	1.76	
2009년	822,749	24,723	16,232	1.97	
2010년	1,029,075	29,305	24,638(21,403)	2.39(2.08)	
2011년	1,071,671	29,856	26,579(22,998)	2.48(2.15)	
2012년	1,092,283	31,443	28,545(24,354)	2.61(2.23)	

- 주 1) 2006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 적용대상 확대(교원·판사 등)  
 2)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3)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4) 2010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66%에서 2012년 2.61%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고용의무 적용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2-27〉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1991년	2,178	2,808,557	2,170,898	21,000	8,764	0.40
1992년	2,242	2,885,010	2,152,751	33,411	8,748	0.41
1993년	2,158	2,640,209	2,013,363	39,059	8,843	0.44
1994년	2,141	2,719,944	2,092,005	40,585	9,097	0.43
1995년	2,229	2,922,444	2,238,490	43,505	9,582	0.43
1996년	2,227	2,917,096	2,255,180	44,294	9,816	0.44
1997년	2,184	2,907,897	2,240,868	43,411	10,331	0.46
1998년	1,919	2,537,312	1,952,499	38,145	10,625	0.54
1999년	1,925	2,526,972	1,960,002	38,903	13,997	0.71
2000년	1,891	2,592,819	1,976,996	39,523	14,434	0.73
2001년	2,090	2,589,763	2,017,926	39,314	17,640	0.87
2002년	2,159	2,673,494	2,097,031	40,859	20,709	0.99
2003년	2,141	2,683,546	2,101,610	40,971	22,718	1.08
2004년	16,950	4,480,296	3,550,370	63,112	46,674	1.31
2005년	17,414	4,642,624	3,695,595	65,728	55,009	1.49
2006년	19,068	4,989,132	-	91,077	67,261	1.35
2007년	20,375	4,985,075	-	90,515	76,404	1.53
2008년	22,027	5,211,786	-	94,517	89,664	1.72
2009년	22,128	5,268,806	-	95,554	97,821	1.86
2010년	22,876	5,482,549	-	116,230	121,343(105,013)	2.21(1.92)
2011년	23,709	5,837,659	-	124,040	130,889(110,453)	2.24(1.89)
2012년	25,083	6,107,134	-	140,747	140,446(117,668)	2.30(1.93)

- 주 1) 1990년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고용의무율 : 1%(1991년)→1.6%(1992년)→2%(1993년)→2.3%(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2) 2004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주에서 5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  
3) 2006년부터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률 산정  
4) 2003년부터 산재장해자 10~14급 제외, 2009년부터 산재장해자 제외  
5) 1999년, 2000년 산재경증을 제외하여 고용률 재산정, 2001년, 2002년 고용률은 2004년에 재산정  
6)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0%에서 2012년 2.30%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2-28〉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구 분	대상기관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단위 : 개소, 명, %)	
					고용률	
1997년	45	149,265	2,962	1,223	0.82	
1998년	44	137,968	2,740	1,210	0.88	
1999년	47	91,083	1,800	904	0.99	
2000년	48	94,052	1,881	1,816	1.93	
2001년	88	158,078	3,125	2,901	1.84	
2002년	83	126,118	2,477	2,444	1.94	
2003년	85	124,357	2,444	2,063	1.66	
2004년	133	122,178	2,381	2,452	2.01	
2005년	135	141,833	2,776	3,528	2.49	
2006년	136	177,762	3,484	3,839	2.16	
2007년	250	288,331	5,643	5,650	1.96	
2008년	253	288,225	5,645	5,899	2.05	
2009년	250	292,086	5,723	6,156	2.11	
2010년	260	294,245	7,791	7,538(6,775)	2.56(2.30)	
2011년	257	305,971	8,224	8,332(7,427)	2.72(2.43)	
2012년	261	302,435	8,398	8,467(7,548)	2.80(2.50)	

주 1)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적용

3) 2010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용의무율 3%로 상향 조정

4)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7년 0.82%에서 2012년 2.80%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6년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 2012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2-2-29〉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25,688	7,199,417	142,022	1.97(1.93)	2.35(2.28)
정부부문	605	1,092,283	24,354	2.23(2.15)	2.61(2.48)
공무원	312	831,469	18,725	2.25(2.20)	2.57(2.52)
비공무원	293	260,814	5,629	2.16(1.96)	2.75(2.35)
민간부문	25,083	6,107,134	117,668	1.93(1.89)	2.30(2.24)
공공기관	261	302,435	7,548	2.50(2.43)	2.80(2.72)
민간기업	24,822	5,804,699	110,120	1.90(1.86)	2.27(2.22)

주 1) 대상사업주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42,022명이며, 고용률은 2.35%로 전년 대비 8,571명, 0.07%p 증가함
  -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정부부문' 2.61%, '민간부문' 2.30%로 나타남

## 가) 정부부문

〈표 2-2-30〉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分	기관 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2배수 미적용	중증2배수 적용
전 체	605	1,092,283	24,354	2.23(2.15)	2.61(2.48)
공무원	소 계	312	831,469	18,725	2.25(2.20)
	중앙행정기관	47	169,615	4,805	2.83(2.77)
	현 법 기 관	4	22,721	501	2.21(2.07)
	지방자치단체	244	249,100	8,306	3.33(3.31)
	교 육 청	17	390,033	5,113	1.31(1.26)
비공무원	소 계	293	260,814	5,629	2.16(1.96)
	중앙행정기관	30	38,953	786	2.02(1.91)
	현 법 기 관	3	5,255	137	2.61(2.67)
	지방자치단체	243	76,318	3,495	4.58(4.78)
	교 육 청	17	140,288	1,211	0.86(0.36)

주 1)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에서 3%로 상향조정, 시험설시기관장은 장애인공무원이 3%에 도달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4) 2010년부터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 시행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표 2-2-31〉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 分	전체			경 중	중 중
	전 체	남성	여성		
공무원	18,725 (100.0)	15,161 (81.0)	3,564 (19.0)	16,069 (85.8)	2,656 (14.2)
중앙행정기관	4,805 (100.0)	4,160 (86.6)	645 (13.4)	4,068 (84.7)	737 (15.3)
현 법 기 관	501 (100.0)	421 (84.0)	80 (16.0)	451 (90.0)	50 (10.0)
지방자치단체	8,306 (100.0)	7,005 (84.3)	1,301 (15.7)	7,106 (85.6)	1,200 (14.4)
교 육 청	5,113 (100.0)	3,575 (69.9)	1,538 (30.1)	4,444 (86.9)	669 (13.1)
비공무원	5,629 (100.0)	4,149 (73.7)	1,480 (26.3)	4,065 (72.2)	1,564 (27.8)
중앙행정기관	786 (100.0)	552 (70.2)	234 (29.8)	618 (78.6)	168 (21.4)
현 법 기 관	137 (100.0)	99 (72.3)	38 (27.7)	102 (74.5)	35 (25.5)
지방자치단체	3,495 (100.0)	2,837 (81.2)	658 (18.8)	2,799 (80.1)	696 (19.9)
교 육 청	1,211 (100.0)	661 (54.6)	550 (45.4)	546 (45.1)	665 (54.9)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312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18,725명, 고용률은 2.57%로 전년대비 0.05%p 상승함.
- 공무원 중증장애인은 2,656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4.2%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중증장애인은 1,564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여성장애인은 3,564명이며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19.0%를 차지하고, 비공무원 여성장애인은 1,480명으로 전체 비공무원 장애인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32〉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중앙행정기관	현 법 기관	시 · 도	교 육 청
공 무 원	18,725(100.0)	4,805(100.0)	501(100.0)	8,306(100.0)	5,113(100.0)
지 체	12,355(66.0)	3,050(63.5)	299(59.7)	5,748(69.2)	3,258(63.7)
시 각	2,320(12.4)	508(10.6)	92(18.4)	992(11.9)	728(14.2)
청각·언어	900(4.8)	205(4.3)	29(5.8)	404(4.9)	262(5.1)
뇌 병 변	593(3.2)	125(2.6)	11(2.2)	301(3.6)	156(3.1)
신 장	542(2.9)	114(2.4)	10(2.0)	270(3.3)	148(2.9)
기 타	2,015(10.8)	803(16.7)	60(12.0)	591(7.1)	561(11.0)
비 공무원	5,629(100.0)	786(100.0)	137(100.0)	3,495(100.0)	1,211(100.0)
지 체	3,438(61.1)	468(59.5)	83(60.6)	2,360(67.5)	527(43.5)
시 각	536(9.5)	75(9.5)	12(8.8)	370(10.6)	79(6.5)
지 적	456(8.1)	16(2.0)	4(2.9)	109(3.1)	327(27.0)
청각·언어	443(7.9)	64(8.1)	8(5.8)	299(8.6)	72(5.9)
뇌 병 변	279(5.0)	41(5.2)	13(9.5)	175(5.0)	50(4.1)
기 타	477(8.5)	122(15.5)	17(12.4)	182(5.2)	156(12.9)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8,725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는 5,629명임
  - 장애인공무원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6.0%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12.4%, 청각·언어장애인이 4.8%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1.1%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9.5%, 지적장애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민간부문

〈표 2-2-3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중증2배수미적용	중증2배수적용
전 체	25,083	6,107,134	117,668	1.93(1.89)	2.29(2.24)
공공기관	261	302,435	7,548	2.50(2.43)	2.80(2.72)
공기업	28	105,432	3,091	2.93(2.80)	3.21(3.05)
준정부기관	83	87,791	2,631	3.00(3.08)	3.41(3.55)
기타공공기관	150	109,212	1,829	1.67(1.62)	1.91(1.84)
민간기업	24,822	5,804,699	110,120	1.90(1.86)	2.27(2.22)
100인 미만	12,483	879,980	16,502	1.88(1.93)	2.35(2.42)
100~299인	9,282	1,520,334	33,915	2.23(2.19)	2.69(2.63)
300~499인	1,415	537,584	11,145	2.07(2.00)	2.47(2.38)
500~999인	987	668,115	13,392	2.00(1.93)	2.38(2.29)
1,000인 이상	655	2,198,686	35,166	1.60(1.55)	1.88(1.78)
30대 기업집단	662	1,219,491	19,734	1.62(1.60)	1.84(1.80)

주 1) 30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소속회사 중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이며, ( )는 201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근로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주는 25,083개소,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7,66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9%임
  - 전년 대비 0.05%p 증가하여 상승추세를 이어감
  - 기관형태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7,54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0%로 나타났고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110,120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2.27%로 나타남

〈표 2-2-3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11년 고용률
전 체	25,083(100.0)	6,107,134	140,747	117,668(100.0)	2.30	2.24
농업, 임업 및 어업	92(0.4)	15,402	341	212(0.2)	1.58	1.64
광업	23(0.1)	5,753	148	151(0.1)	2.82	2.68
제조업	9,030(36.0)	2,002,801	45,397	37,216(31.6)	2.22	2.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0(0.3)	61,957	1,739	1,652(1.4)	2.93	2.8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1(0.5)	14,028	289	436(0.4)	3.59	3.33
건설업	1,164(4.6)	306,848	7,128	3,858(3.3)	1.40	1.30
도매 및 소매업	1,386(5.5)	432,580	10,098	4,786(4.1)	1.35	1.33
운수업	2,057(8.2)	409,393	9,398	12,856(10.9)	3.54	3.53
숙박 및 음식점업	378(1.5)	149,128	3,534	1,822(1.5)	1.84	1.6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43(5.8)	337,574	7,703	3,460(2.9)	1.24	1.27
금융 및 보험업	994(4.0)	392,563	9,414	5,083(4.3)	1.43	1.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2(1.4)	84,626	1,950	1,739(1.5)	2.30	2.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6(5.3)	282,042	6,527	4,813(4.1)	1.99	1.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14(10.4)	769,358	17,901	22,121(18.8)	3.29	3.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0(1.4)	125,559	3,084	2,875(2.4)	2.88	2.65
교육 서비스업	820(3.3)	237,378	5,520	3,680(3.1)	1.85	1.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90(8.3)	359,975	7,948	8,034(6.8)	3.16	2.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2(1.0)	38,770	861	647(0.5)	1.86	1.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0(2.0)	79,755	1,736	2,190(1.9)	3.87	4.45
기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0.1)	1,644	31	37(0.0)	3.47	0.50

주 1)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산업으로 산업을 분류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9,030개소(3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14개소(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90개소(8.3%) 등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비율이 가장 많음

– 장애인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37,216명(3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121명(18.8%), '운수업'12,856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5〉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11년 고용률
전 체	25,083(100.0)	6,107,134	140,747	117,668(100.0)	2.30	2.24
강 원	435(1.7)	76,045	1,681	1,642(1.4)	2.70	2.51
경 기	4,887(19.5)	1,066,242	24,312	20,696(17.6)	2.30	2.29
경 남	1,814(7.2)	279,057	6,036	5,515(4.7)	2.30	2.29
경 북	1,272(5.1)	220,368	4,904	4,287(3.6)	2.34	2.40
광 주	543(2.2)	95,006	2,096	2,307(2.0)	3.06	3.05
대 구	923(3.7)	158,500	3,488	3,594(3.1)	2.75	2.73
대 전	563(2.2)	173,518	4,239	4,096(3.5)	2.72	2.57
부 산	1,514(6.0)	265,277	5,875	6,529(5.5)	2.91	2.91
서 울	7,755(30.9)	2,917,010	69,453	50,085(42.6)	2.06	1.97
세종시	59(0.2)	9,406	206	187(0.2)	2.30	1.97
울 산	797(3.2)	136,465	3,003	2,938(2.5)	2.50	2.65
인 천	1,107(4.4)	206,386	4,611	5,374(4.6)	3.04	3.03
전 남	690(2.8)	91,607	1,931	1,898(1.6)	2.33	2.23
전 북	660(2.6)	94,238	2,018	2,284(1.9)	2.90	2.65
제 주	182(0.7)	28,130	606	698(0.6)	3.35	2.88
충 남	1,091(4.3)	169,611	3,689	3,134(2.7)	2.28	2.21
충 북	791(3.2)	120,268	2,599	2,404(2.0)	2.58	2.72

주 1) 본사 소재지로 지역을 분류함

2) 2012년 12월 말 기준

3)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7,755개소(30.9%), '경기'4,887개소(19.5%) 등으로 전체 사업체의 50.4%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50,085명(42.6%), '경기'20,696명(17.6%) 등으로 전체 근로자의 60.2%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제주'3.35%, '광주'3.06%, '인천'3.04% 순으로 고용의무률을 초과 달성한 반면, 고용의무사업체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은 2.06%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2-2-36〉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5%미만	1.3%이상 2%미만	0%초과 1.3%미만	0%
전 체	25,083 (100.0)	5,917 (23.6)	1,769 (7.1)	2,086 (8.3)	3,855 (15.4)	4,040 (16.1)	7,416 (29.6)
공공기관	261 (100.0)	82 (31.4)	43 (16.5)	39 (14.9)	49 (18.8)	35 (13.4)	13 (5.0)
공기업	28 (100.0)	19 (67.9)	5 (17.9)	3 (10.7)	1 (3.6)	0 (0.0)	0 (0.0)
준정부기관	83 (100.0)	50 (60.2)	19 (22.9)	4 (4.8)	8 (9.6)	2 (2.4)	0 (0.0)
기타공공기관	150 (100.0)	13 (8.7)	19 (12.7)	32 (21.3)	40 (26.7)	33 (22.0)	13 (8.7)
민간기업	24,822 (100.0)	5,835 (23.5)	1,726 (7.0)	2,047 (8.2)	3,806 (15.3)	4,005 (16.1)	7,403 (29.8)
300인 미만	21,765 (100.0)	5,243 (24.1)	1,427 (6.6)	1,695 (7.8)	3,176 (14.6)	2,893 (13.3)	7,331 (33.7)
300인 이상	3,057 (100.0)	592 (19.4)	299 (9.8)	352 (11.5)	630 (20.6)	1,112 (36.4)	72 (2.4)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고용률에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가 반영된 것임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5%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공공기관 261개소중 3%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82개소(31.4%), 2.5%이상~3%미만 고용한 사업체는 43개소(16.5%), 미고용사업체는 13개소(5.0%)로 나타남
- 민간기업 24,822개소 중 2.5% 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7,561개소(30.5%), 1.3%이상~2.5%미만 사업체는 5,853개소(23.5%), 미고용사업체는 7,403개소(29.8%)임

〈표 2-2-37〉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경증	중증
전 체	117,668 (100.0)	98,058 (83.3)	19,610 (16.7)	94,453 (80.3)	23,215 (19.7)
공공기관	7,548 (100.0)	6,775 (89.8)	773 (10.2)	6,628 (87.8)	920 (12.2)
공기업	3,091 (100.0)	2,958 (95.7)	133 (4.3)	2,798 (90.5)	293 (9.5)
준정부기관	2,631 (100.0)	2,298 (87.3)	333 (12.7)	2,265 (86.1)	366 (13.9)
기타공공기관	1,826 (100.0)	1,519 (83.2)	307 (16.8)	1,565 (85.7)	261 (14.3)
민간기업	110,120 (100.0)	91,283 (82.9)	18,837 (17.1)	87,825 (79.8)	22,295 (20.2)
300인 미만	50,417 (100.0)	41,623 (82.6)	8,794 (17.4)	38,990 (77.3)	11,427 (22.7)
300인 이상	59,703 (100.0)	49,660 (83.2)	10,043 (16.8)	48,835 (81.8)	10,868 (18.2)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남성 98,058명(83.3%), 여성 19,610 (16.7%)으로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증장애인은 94,453명(80.3%), 중증장애인은 23,215(19.7%)으로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

〈표 2-2-38〉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117,668 (100.0)	7,548(100.0)	110,120(100.0)
등록 장애인	소계	110,692(94.1)	6,377(84.5)
	간	383(0.3)	59(0.8)
	간질	107(0.1)	6(0.1)
	뇌병변	3,469(2.9)	237(3.1)
	시각	10,713(9.1)	752(10.0)
	신장	1,781(1.5)	190(2.5)
	심장	274(0.2)	22(0.3)
	안면	211(0.2)	19(0.3)
	언어	843(0.7)	43(0.6)
	자폐성	308(0.3)	7(0.1)
	장루·요루	245(0.2)	9(0.1)
	정신	1,298(1.1)	18(0.2)
	지적	5,805(4.9)	22(0.3)
	지체	75,345(64.0)	4,656(61.7)
	청각	9,708(8.3)	329(4.4)
	호흡기	202(0.2)	8(0.1)
국가유공	상이등급	6,976(5.9)	1,171(15.5)
			5,805(5.3)

주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를 미반영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3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설명 보기 : 365페이지 참조

- 고용의무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110,692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6,976명으로 등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4.1%를 차지하고 있음

## 나.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표 2-2-39〉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기업체 수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215,966	65,715	5.4	11,873,457	185,998	1.57
비고용의무사업체	1,192,929	50,689	4.2	6,247,080	77,369	1.24
1~4인	792,448	18,645	2.4	1,828,854	20,362	1.11
5~49인	400,481	32,044	8.0	4,418,226	57,007	1.29
고용의무사업체	23,037	15,025	65.2	5,626,377	108,630	1.93
50~299인	20,032	12,399	61.9	2,171,442	50,596	2.33
300~999인	2,332	1,993	85.5	1,189,843	23,970	2.01
1000인 이상	673	633	94.1	2,265,093	34,064	1.50
부당급 남부대상(100인이상)	11,760	9,622	81.8	4,862,436	93,318	1.92

주 1)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기업체'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2012년 6월 30일 현재 상시 1인 이상 기업체 1,215,966개 중 65,715개(5.4%)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근로자 수는 185,998명, 장애인 고용률은 1.57%로 나타남.
  - 상시 50인 미만 기업체 1,192,929개 중 50,689개 기업체(4.2%)에서 77,3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 50인 이상 기업체 23,037개 중 15,025개 기업체 (65.2%)에서 108,6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표 2-2-40〉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 명)

구 分	기업체 수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215,966	67,715	5.4	11,873,457	185,998(100.0)	1.57
제조업	196,634	21,649	11.0	3,377,218	59,248(31.9)	1.75
서비스업	955,194	39,784	4.2	7,576,988	114,358(61.5)	1.51
기타	64,138	4,282	6.7	919,251	12,392(6.7)	1.35

주 1) 제조업 : 제조업만 포함

- 2)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 기타 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 5)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기업체’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산업(6.7%), 서비스업(4.2%)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 1.57%보다 0.18%p 높은 1.75%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1.51%)과 기타 산업(1.3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2-4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기업체 수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장애인고용	비 율			
전 체	1,215,966	65,715(100.0)	5.4	11,873,457	185,998(100.0)	1.57
수도권	673,143	31,678(48.2)	5.0	6,966,210	101,272(54.4)	1.45
광역시권	239,982	11,870(18.1)	4.9	2,126,158	35,715(19.2)	1.68
기타지역	338,841	22,167(33.7)	6.5	2,781,089	49,011(26.4)	1.76

주 1)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분류, 광역시권은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묶은 개념임

2) 다수의 사업장(공장·지점·영업소 등)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에 본사의 지역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함

3)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4)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기업체’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기업체 65,715개의 48.2%인 31,678개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장애인근로자도 185,998명의 과반수가 넘는 101,272명(54.4%)이 ‘수도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45%로서 ‘광역시권’(1.68%)이나 ‘기타지역’(1.76%)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표 2-2-4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

구 分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수	비 율	근로자 수	비 율	
전 체	11,873,457	100.0	185,998	100.0	1.57
남 성	7,569,574	63.8	139,702	75.1	1.85
여 성	4,303,883	36.2	46,296	24.9	1.08
상용직	10,347,513	87.1	176,702	95.0	1.71
임시직	495,617	4.2	5,553	3.0	1.12
일용직	1,030,327	8.7	3,744	2.0	0.36

주 1) 근로자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로 한정함

2)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장애인 근로자’ 설명 보기 : 366페이지 참조

- 상시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36.2%인 반면, 장애인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24.9%임
  -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1.08%로 남성장애인 고용률(1.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직’87.1%, ‘임시직’4.2%, ‘일용직’8.7%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근로자는 ‘상용직’95.0%, ‘임시직’3.0%, ‘일용직’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상용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1.71%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1.57%를 상회하는 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12%, 0.36%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3. 기업체 특성

#### 가. 모집과 채용

〈표 2-2-43〉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4.6	3.4	6.8	5.4	11.9	14.8	8.0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17.9	6.8	38.0	35.9	45.7	51.7	45.2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장려금 등) 때문에	2.2	2.1	2.5	2.3	3.4	2.1	2.5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63.3	72.3	46.8	50.0	35.0	28.8	39.7
기타	1.7	2.1	0.9	1.0	0.6	0.0	0.6
없음	10.3	13.3	5.0	5.4	3.4	2.7	3.9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의 비율이 63.3%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체 규모별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의 비율은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44〉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단위 : %)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당금 납부처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로 자체모집	72.4	76.8	64.2	65.3	59.2	60.3	61.4
주로 취업알선 기관 의뢰	10.6	9.9	11.8	11.6	12.7	12.1	13.2
주로 자체모집하고 취업알선기관을 병행	12.2	8.9	18.2	18.0	19.4	18.4	19.4
주로 취업알선기관으로 모집하고 자체모집을 병행	3.8	3.3	4.8	4.1	7.0	9.2	5.2
기타	1.1	1.2	1.0	1.0	1.6	0.0	0.8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표 2-2-45〉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단위 : %)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당금 납부처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직업능력개발원)	28.9	25.2	34.2	30.3	37.2	73.7	38.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32.7	30.4	36.0	39.9	24.9	18.3	34.0
지방자치단체(일자리센터)	7.3	9.3	4.3	5.2	2.0	0.0	2.6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3.0	4.1	1.4	1.6	1.0	0.0	1.1
장애인 기관(복지관, 장애인단체)	3.2	3.4	3.0	3.1	3.4	0.0	2.9
학교(일반학교, 특수학교 포함)	0.1	0.0	0.3	0.0	1.8	0.0	0.4
민간 취업알선기관	23.6	26.6	19.3	18.8	26.1	6.5	19.1
국가보훈처	0.4	0.0	0.9	0.3	3.8	1.6	1.3
기타	0.8	1.0	0.5	0.6	0.0	0.0	0.5
모름/무응답	0.0	0.0	0.1	0.1	0.0	0.0	0.0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표 2-2-46〉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사항	25.3	23.7	28.1	27.6	29.6	32.4	28.4
자격증 취득사항(기술보유)	13.2	12.2	15.1	15.1	15.3	14.8	15.0
성품·태도	32.9	34.5	29.9	30.2	28.9	28.1	29.5
뚜렷한 목표의식	2.3	2.2	2.6	2.2	2.9	8.4	3.0
의사전달 능력	3.3	3.5	2.9	2.8	3.7	3.1	3.2
순발력 및 대처능력	3.3	3.0	3.8	3.7	5.6	0.6	4.1
기타	0.9	0.6	1.4	1.4	1.1	1.3	1.3
없음	18.8	20.3	16.1	16.9	13.0	11.4	15.6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고려사항(1순위)에 대해 '성품, 태도'의 응답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사항'(25.3%), '없음'(18.8%), '자격증 취득사항'(기술보유)'(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47〉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산점 부여	6.0	4.3	9.1	7.7	13.8	18.6	10.8
연령제한 완화	2.3	1.8	3.2	3.1	2.6	7.1	3.7
학력제한 완화	1.6	1.1	2.4	2.2	3.4	4.0	2.6
정당한 편의제공(학대시험지,시험기간 연장등)	1.5	1.1	2.3	1.8	2.4	10.1	2.5
자격요건 완화(토익, 자격증 등)	1.7	1.6	1.8	1.1	4.5	5.4	2.1
신체검사 규정 완화	1.6	1.0	2.6	2.2	3.9	4.3	2.5
기타	0.0	0.0	0.1	0.0	0.5	0.3	0.1
없음	87.8	90.4	83.1	85.4	74.9	67.9	81.2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표 2-2-48〉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

(단위 : %)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채용계획 있음	19.8	18.9	35.4	34.1	38.7	53.5	37.1
(장애인 채용계획 있음)	(6.3)	(4.8)	(20.3)	(20.7)	(19.0)	(18.4)	(21.5)
채용계획 없음	52.8	54.3	25.7	26.9	21.5	13.7	22.9
미정	27.4	26.7	38.9	39.0	39.9	32.7	40.0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3) ‘장애인 채용계획 있음’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이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체로 산출함

4)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은 2013년 기준임

-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특별히 제공했던 사항에 대해 ‘없음’이 8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그 외 ‘가산점 부여’6.0%, ‘연령제한 완화’2.3%, ‘자격요건 완화’1.7% 등의 순임
- 2013년에 신규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19.8%로 나타났으며, 그 중 6.3%는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노무관리

〈표 2-2-49〉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단위 : %)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업금 납부여부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업무실적 향상	23.4	24.5	21.3	22.3	19.9	9.6	21.0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24.9	24.0	26.6	25.3	29.5	40.6	26.7
건강관리	8.3	8.0	8.8	8.7	9.8	8.1	9.1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1.7	1.3	2.5	2.5	2.2	3.0	2.7
장기근속	5.2	5.6	4.4	4.1	3.9	11.6	4.6
기타	0.2	0.3	0.1	0.1	0.0	0.0	0.0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36.2	36.2	36.2	37.0	34.7	27.1	35.8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특별히 바라는 사항 없음' 36.2%,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24.9%, '업무실적 향상'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50〉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업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고용지원인력배치(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사 등)	0.7	0.2	1.7	1.1	2.7	8.8	2.1
타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2.2	2.0	2.5	2.4	3.0	3.2	2.5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	1.4	1.2	1.7	1.7	1.3	2.8	1.9
장애인 근로자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나 장치, 교육 등 조치	1.1	1.0	1.3	1.3	0.9	2.4	1.3
건강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0.6	0.4	0.9	0.9	1.0	0.7	0.9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2.8	1.7	4.9	3.5	10.8	11.5	6.6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지원	1.1	0.9	1.5	1.4	0.9	4.7	1.9
기타	0.3	0.4	0.1	0.1	0.0	0.4	0.1
없음	91.9	93.7	88.5	90.4	83.1	73.4	86.0

주 1)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0%를 넘을 수 있음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사항을 살펴보면, '별도 지원사항 없음'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2.8%, '타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2.2%,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 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표 2-2-51〉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정도

(단위 : 점)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3.37	3.27	3.48	3.43	3.62	3.75	3.54
재무적 성과	2.91	2.84	2.99	2.96	3.05	3.24	3.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3.13	3.07	3.26	3.21	3.42	3.54	3.31
인력수급과 고용유지	3.02	2.98	3.09	3.07	3.12	3.20	3.10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	2.91	2.86	3.01	2.98	3.14	3.22	3.06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3.13	3.08	3.23	3.20	3.34	3.43	3.26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렇다'임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표 2-2-52〉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근무태도	3.50	3.51	3.49	3.47	3.55	3.59	3.51
대인관계	3.40	3.40	3.39	3.38	3.42	3.44	3.41
생산성 및 업무능력	3.46	3.45	3.46	3.46	3.49	3.47	3.48
전반적인 만족도	3.53	3.53	3.53	3.52	3.59	3.48	3.54

주 1) 5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매우 불만족이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만족한다'임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3.37점)이 가장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도움'(3.13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3.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3.53점) 부분에서 평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라. 법 제도에 대한 인식

〈표 2-2-5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단위 : %)

구 분	계	장애인고용여부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100인 이상)
		고용	미고용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 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고용	11.7	51.6	6.4	9.7	48.4	47.3	53.6	54.8	55.9
간접고용	3.7	8.8	3.0	3.4	9.1	8.5	12.6	10.9	10.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6.9	4.6	7.2	6.9	6.5	5.7	8.1	19.7	6.9
금전적 기부	10.3	7.4	10.7	10.3	10.6	11.2	9.5	2.2	8.0
고려하지 않음	67.4	27.5	72.7	69.7	25.2	27.0	16.2	12.5	19.0
기타	0.0	0.0	0.0	0.0	0.1	0.1	0.0	0.0	0.2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67.4%, '직접 고용' 11.7%, '금전적 기부'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51.6%가 '직접 고용'을 선호한 반면, 미고용기업체의 경우 6.4%만이 '직접 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54〉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사항

(단위 : %)

구 分	계	고용의무 여부		규모별			부담금 납부대상 (100인 이상)
		비의무 (5~49인)	의무 (50인이상)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32.1	30.9	52.8	53.0	54.8	41.5	55.9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6.4	6.2	9.1	8.5	8.0	26.9	10.1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	7.7	7.7	7.1	7.4	5.9	3.6	6.9
세금감면	46.9	48.2	24.1	24.2	25.1	18.3	20.9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2.0	1.8	5.2	4.9	6.0	9.7	5.3
기 타	0.6	0.5	1.4	1.6	0.1	0.0	0.8
모름/무응답	4.4	4.6	0.3	0.3	0.0	0.0	0.1

주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결과를 추정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2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관해 '세금감면'이 전체의 46.9%,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32.1%),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의 확대'(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항목의 경우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마. 산재보험 장해급여

〈표 2-2-55〉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分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급자	금 액										
전 체	61,894	1,067,385	67,227	1,170,647	70,580	1,265,916	74,584	1,291,084	88,863	1,397,872	91,906	1,509,245
1급	1,409	56,067	1,554	66,138	1,686	68,592	1,827	73,965	2,309	86,687	2,645	97,392
2급	2,137	74,576	2,364	83,376	2,633	83,577	2,903	86,643	3,351	96,756	3,680	105,648
3급	2,481	70,658	2,727	83,053	2,928	84,084	3,082	84,373	3,409	90,848	3,769	97,964
4급	1,607	34,934	1,808	45,177	2,028	47,686	2,116	50,862	2,306	55,267	2,392	58,170
5급	4,954	96,370	5,660	117,604	6,453	128,786	6,777	136,555	7,587	148,261	7,920	157,059
6급	9,035	148,023	10,726	185,891	12,400	210,294	12,870	214,027	14,156	239,870	14,458	248,760
7급	7,415	109,914	8,675	134,622	10,228	152,987	11,065	164,741	12,989	182,428	13,671	193,721
8급	3,574	124,350	3,340	108,896	2,988	108,508	1,990	70,612	2,100	69,958	1,903	66,660
9급	2,026	52,877	1,867	48,622	1,941	54,673	2,031	57,725	2,276	59,115	2,412	61,811
10급	5,137	103,788	5,234	106,002	5,678	122,554	5,332	117,440	5,400	119,910	4,866	109,558
11급	3,730	54,005	3,673	53,346	3,952	61,346	4,845	77,008	7,782	80,761	8,485	105,015
12급	8,846	97,200	9,232	94,119	8,708	99,454	9,195	104,830	9,723	108,734	9,442	110,994
13급	2,081	14,153	2,023	14,248	2,127	15,253	2,796	20,025	6,567	23,064	7,476	56,096
14급	7,722	30,470	8,623	29,553	7,085	28,125	8,029	32,279	9,180	36,207	9,584	40,397

주 1)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2)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해급여 수급자는 91,906명으로 전년 대비 3,043명, 3.4%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1,509,2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373백만원, 8.0% 증가함

〈표 2-2-56〉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일시금		연 금	
	수급자 수	금 액	수급자 수	금 액
2000년	19,400	223,749	8,380	136,706
2001년	23,799	278,884	10,428	168,120
2002년	24,484	302,845	12,499	211,553
2003년	28,105	371,292	15,157	254,930
2004년	31,361	429,629	18,250	322,658
2005년	33,394	505,783	22,427	416,402
2006년	34,150	531,305	27,772	536,080
2007년	34,888	503,267	32,368	667,380
2008년	33,420	543,319	37,174	722,598
2009년	35,250	542,928	39,349	748,156
2010년	37,274	553,512	52,272	844,360
2011년	36,278	536,757	56,016	972,488
전년 대비 증감률	△2.7	△3.0	7.2	15.2

주 : 1~3급 산재장애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 4~7급까지의 산재장애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8~14급까지의 산재장애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11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4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 장해급여'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해급여 일시금 수급자는 36,278명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연금 수급자는 56,016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일시금 지급액은 536,75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한 반면, 연금은 972,48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 장애인기업 특성

### 가. 기업 현황

〈표 2-2-57〉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단위 : 개소, %)

구 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기업 수	기업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전 체	32,808	32,027	100.0	32,685	100.0
도소매업	10,904	10,921	34.1	11,108	34.0
숙박음식업	5,033	4,803	15.0	4,892	15.0
운수업	1,648	1,507	4.7	1,538	4.7
제조업	4,273	5,862	18.3	5,954	18.3
부동산 및 임대업	924	704	2.2	718	2.2
사업서비스업	552	671	2.1	685	2.1
교육서비스업	622	576	1.8	592	1.8
보건/사회복지사업	487	447	1.4	465	1.4
오락/운동관련사업	819	832	2.6	849	2.6
통신업	20	33	0.1	33	0.1
금융/보험업	164	128	0.4	131	0.4
건설업	862	993	3.1	1,012	3.1
농업/어업	23	33	0.1	34	0.1
광업	33	33	0.1	34	0.1
기타/수리/개인서비스업	6,444	4,484	14.0	4,636	14.2

주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기업 모집단 조사결과, 2009년도 대비 658개소가 증가한 32,685개인 것으로 추정  
– 산업별 분류시 '도소매업' 34.0%로 장애인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58〉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단위 : 개소, %)

구 분	장애인기업					
	2007년		2009년		2011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 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32,808	100.0	32,027	100.0	32,685	100.0
소상공인	30,450	92.8	29,945	93.5	30,519	93.4
소기업	1,750	5.3	1,602	5.0	1,653	5.1
중기업	608	1.9	480	1.5	510	1.6

주 : 규모별 장애인기업 규정은 중소기업법(2009.5, 중소기업청) 종사자 규모별주에 따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소상공인(10인 미만), 소기업(10~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 그 밖의 모든 업종 :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5~10인 미만), 중기업(10인 이상)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표 2-2-59〉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

구 분	현 종사자 수	현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3.14	1.27	40.6
소상공인	1.59	1.04	65.5
소기업	15.74	2.94	18.7
중기업	36.18	7.28	20.1
제조업	8.15	1.84	22.6
도/소매업	1.46	1.10	75.1
숙박/음식점업	1.54	1.02	66.0
개인서비스업	1.64	1.22	74.1
기타	3.72	1.30	34.9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93.4%, ‘소기업’5.1%, ‘중기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장애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3.14명이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평균 1.27명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40.6%로 나타남

## 나. 재무 현황

〈표 2-2-60〉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부채액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 체	165.4	163.4	217.6	237.8	32.1	35.3	63.4	65.7
소상공인	110.8	107.5	97.3	115.8	20.7	27.0	36.8	42.5
소기업	569.8	574.6	1,200.7	1,237.6	131.9	114.7	336.8	301.6
중기업	315.3	377.1	1,596.5	1,472.7	138.4	81.3	256.8	228.8
제조업	345.3	339.1	681.6	644.3	78.9	79.2	185.3	164.6
도/소매업	77.0	85.6	101.1	136.9	18.8	22.0	35.4	44.7
숙박/음식점업	140.7	127.3	48.3	48.8	18.4	17.3	29.5	34.9
개인서비스업	76.1	81.7	55.2	69.5	16.0	16.0	22.9	27.2
기타	165.6	143.4	180.6	195.8	30.8	38.5	51.8	53.8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2년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의 2009년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자본금 165.4백만원, 매출액 217.6백만원, 순이익 32.1백만원, 부채액 63.4백만원이나, 2010년에는 자본금 163.4백만원, 매출액 237.8백만원, 순이익 35.3백만원, 부채액 65.7백만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부채액도 증가하였음

## 다. 창업 현황

〈표 2-2-61〉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단위 : %)

구 분	오랫동안 안정적 으로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장애인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전 체	29.2	20.7	15.6	10.3
소상공인	29.9	21.7	16.4	7.3
소기업	19.3	9.0	8.0	44.3
중기업	32.5	15.0	5.0	32.5
제조업	28.9	11.6	8.8	26.9
도/소매업	30.4	22.8	15.0	5.4
숙박/음식점업	26.2	25.9	22.2	4.5
개인서비스업	33.4	21.0	19.3	6.2
기타	26.7	21.6	15.5	10.8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창업 동기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가 2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 20.7%, '장애인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15.6%,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커서'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인 경우는 개인서비스업(33.4%)에서, '장애인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서'인 경우는 숙박/음식점업(25.9%)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62〉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단위 : %)

구 分	6개월 이내	6개월~1년	1~1.5년	1.5~2년	2~2.5년	2.5~3년	3년 이상
전 체	40.7	31.6	10.4	4.9	1.9	1.7	8.8
소상공인	42.3	31.7	10.1	4.6	1.7	1.6	8.0
소기업	23.9	30.7	13.1	6.8	2.7	4.0	18.8
중기업	27.5	30.0	15.0	10.0	5.0	0.0	12.5
제조업	26.0	30.6	13.8	7.0	4.4	2.4	15.8
도/소매업	47.5	29.8	8.7	4.6	1.3	1.2	6.9
숙박/음식점업	35.3	47.3	10.7	3.7	0.3	0.3	2.4
개인서비스업	49.0	25.5	11.3	5.2	1.4	1.4	6.2
기타	40.7	27.8	9.3	4.2	1.9	3.4	12.7

주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창업/인수 결심 후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 이내’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31.6%, ‘1~1.5년’ 10.4%, ‘3년 이상’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준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소기업’(18.8%), ‘중기업’(1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63〉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구 분	매출부진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정보수집능력 미흡	(단위 : %)
전 체	40.3	38.5	5.9	4.4	
소상공인	40.8	39.0	5.5	4.4	
소기업	33.0	36.4	9.7	5.7	
중기업	45.0	20.0	10.0	0.0	
제조업	34.4	40.0	8.8	5.5	
도/소매업	41.5	37.7	5.5	5.5	
숙박/음식점업	46.0	36.1	5.6	2.9	
개인서비스업	39.9	41.1	5.4	3.4	
기타	39.4	38.4	4.3	3.4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표 2-2-64〉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구 분	자금조달 능력	경영/ 마케팅 능력	입지선정	제품의 품질	(단위 : %)
전 체	36.4	26.3	21.4	6.6	
소상공인	37.9	25.0	23.0	5.7	
소기업	20.5	38.6	5.7	17.6	
중기업	20.0	45.0	0.0	12.5	
제조업	31.7	28.9	9.8	14.0	
도/소매업	41.9	23.7	26.3	2.8	
숙박/음식점업	25.7	29.7	25.4	9.4	
개인서비스업	34.0	26.3	30.9	2.8	
기타	41.2	25.6	13.4	7.1	

주 1) 상위 4개 항목만을 표기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라.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표 2-2-65〉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구 분	경험률(있다)	계약형태				경험률(없다)
		일반경쟁	지역제한경쟁	지역경적경쟁	수의계약	
전 체	17.2	56.5	24.4	17.0	55.6	82.8
소상공인	13.9	53.5	22.6	17.0	56.0	86.1
소기업	51.7	62.6	28.9	16.5	59.3	48.3
중기업	52.5	76.2	33.3	19.0	33.3	47.5
제조업	44.6	55.4	27.9	17.2	62.7	55.4
도/소매업	10.6	58.9	22.2	16.7	52.2	89.4
개인서비스업	4.5	58.8	0.0	11.8	52.9	95.5
기타	7.6	55.6	11.1	11.1	55.6	92.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표 2-2-66〉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구 分	창업자금 지원	세금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창업절차 개선	(단위 : %)	
						기타	
전 체	76.5	8.8	5.8	4.7	2.9	1.3	
소상공인	76.7	8.6	5.6	5.0	2.8	1.3	
소기업	74.4	11.9	6.8	1.2	4.0	1.7	
중기업	72.5	7.5	12.5	2.5	5.0	0.0	
제조업	73.7	10.3	7.9	3.1	3.5	1.5	
도/소매업	74.9	10.0	4.2	6.7	2.8	1.4	
숙박/음식점업	75.1	5.3	12.6	4.3	2.7	0.0	
개인서비스업	82.2	5.9	2.5	5.9	2.3	1.2	
기타	78.9	10.3	3.7	1.9	3.3	1.9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3페이지 참조

☞ ‘장애인기업’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5. 고용서비스

### 가. 고용서비스 현황

〈표 2-2-67〉 연도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 分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2011년 3/4분기	2010년 3/4분기	2009년 3/4분기	2008년 3/4분기
구인 수	20,740	19,097	19,170	21,106	20,362	8,237
구직자 수	10,688	10,152	13,244	19,067	18,061	15,999
취업자 수	5,647	4,492	4,459	5,527	5,345	4,036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3/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2013년 3/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 수, 구인 수, 취업자 수 모두 증가함
  - 구인 수는 20,74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6% 증가, 구직자 수는 10,688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3% 증가, 취업자 수는 5,64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5.7% 증가함

〈표 2-2-68〉 구인구직 및 취업자 특성

(단위 : 명, %)

구 分	구인 수			구직자수			취업자 수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증감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증감	2013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증감	
전 체	20,740	19,097	8.6	10,688	10,152	5.3	5,647	4,492	25.7	
성별	남 성			7,361	7,111	3.5	3,716	3,009	23.5	
	여 성			3,327	3,041	9.4	1,931	1,483	30.2	
장애 정도별	중 증			5,373	5,180	3.7	2,849	2,133	33.6	
	경 증			5,315	4,972	6.9	2,798	2,359	18.6	
연령별	19세 이하			648	646	0.3	427	255	67.5	
	20~29세			2,542	2,430	4.6	1,410	1,167	20.8	
	30~39세			2,337	2,299	1.7	1,262	1,037	21.7	
	40~49세			2,068	1,978	4.6	1,022	886	15.3	
	50~59세			2,038	1,809	12.7	963	722	33.4	
	60세 이상			1,055	990	6.6	563	425	32.5	
교육 정도별	무학			204	257	-20.6	131	136	-3.7	
	초등졸업			763	735	3.8	406	313	29.7	
	중학졸업			1,724	1,661	3.8	967	671	44.1	
	고등졸업			5,477	5,272	3.9	2,876	2,402	19.7	
	대졸			2,447	2,159	13.3	1,240	931	33.2	
	대학원 이상			73	68	7.4	26	32	-18.8	
	미분류			-	-	-	1	7	-85.7	
임금별	50만 미만	146	129	13.2	72	84	-14.3	148	97	52.6
	50~99만	804	1,365	-41.1	1,041	1,821	-42.8	628	626	0.3
	100~149만	11,912	10,889	9.4	6,775	5,825	16.3	2,968	2,158	37.5
	150~199만	5,421	4,817	12.5	1,949	1,752	11.2	506	509	-0.6
	200만 이상	2,457	1,897	29.5	851	669	27.2	334	221	51.1
	미분류	-	-	-	-	1	0	1,063	881	20.7

주 1)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 개편으로 기준 장애인만 구인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도 구인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구인인원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구인인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취업자는 해당 분기에 취업한 인원임

3) 임금별 구직자 수는 희망임금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3/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설명 보기 : 367페이지 참조

## 나. 서비스 이용경험

〈표 2-2-69〉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 분	취업 유지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4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추정 수 전 체	675,778 100.0	61,750 100.0	53,786 100.0
	있 음	1.2	13.1	7.1
	없 음	98.8	86.9	92.9
				98.1
최근 7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추정 수 전 체	675,779 100.0	61,750 100.0	53,785 100.0
	있 음	19.2	41.5	33.3
	없 음	80.8	58.5	66.7
				85.2

주 1)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4차 조사(2011년)와 5차 조사(2012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표 2-2-70〉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전 체	2.205,517	923,369	38,068	1,244,080
	100.0	100.0	100.0	100.0
지난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있 음	2.3	1.7	39.8
	없 음	97.7	98.3	60.2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있 음	18.5	20.3	66.0
	없 음	81.5	79.7	34.0

주 : ‘최근 7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표 2-2-71〉 고용서비스 유형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414	314,468	82,625	292,320
취업알선	25.0	33.2	25.8	15.9
구직(직업)상담	36.0	28.4	42.2	42.3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5.0	6.2	3.2	4.2
취업정보 제공	14.6	16.3	22.3	10.5
직업능력 평가	1.1	0.7	0.1	1.9
정보화 교육	2.2	1.5	0.0	3.6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3.7	0.2	0.0	8.6
취업지원프로그램	0.4	0.2	0.6	0.6
보조공학기기 지원	1.2	0.6	0.0	2.2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보기들 중 일부는 생략되었음

3)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표 2-2-72〉 고용서비스 기관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414	314,468	82,625	292,320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3.6	24.3	25.4	2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9	27.6	18.7	19.0
장애인복지관	13.5	12.1	9.9	16.0
지방자치단체	25.0	22.3	37.1	24.5
장애인단체	2.8	1.4	1.9	4.6
기타	10.9	11.7	5.6	11.5
모름/응답거절	1.3	0.7	1.3	1.9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표 2-2-73〉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414	314,468	82,625	292,32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참여하지 않음	30.2	25.1	24.0	37.4
보통	14.6	15.2	15.1	13.8
참여함	55.2	59.7	60.9	48.7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페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표 2-2-74〉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 추정 수	689,414	314,468	82,625	292,32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도움되지 않음	41.9	62.9	62.8	36.3
보통	8.6	19.6	11.1	27.3
도움됨	49.5	17.4	26.2	36.5

주 1)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총수 기준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페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 설명 보기 : 368/369페이지 참조

- 고용서비스의 본인 참여정도 및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689,414건 중 55.2%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참여하였다고, 49.5%의 서비스가 취업 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취업자의 경우 59.7%가 서비스에 제대로 참여하였고 17.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고용서비스가 취업 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 다. 자격증 보유

〈표 2-2-75〉 자격증 보유

(단위 : 명, %)

구 分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4차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있 음	2.2	0.9	3.3	0.7
	없 음	97.8	99.1	96.7	99.3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추정 수	675,779	61,750	53,785	1,051,8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있 음	28.1	23.3	18.1	9.8
	없 음	71.9	76.7	81.9	90.2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5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경제활동상태 변동은 4차 조사(2011년)와 5차 조사(2012년)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표 2-2-76〉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2,205,517	923,369	38,068	1,244,080
	전 체	100.0	100.0	100.0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취득 여부	있 음	1.4	2.3	0.7
	없 음	98.6	97.7	99.3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있 음	17.8	28.0	10.0
	없 음	82.2	72.0	90.0

주 1)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5차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2)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자격증으로 간주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지난 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4%,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7.8%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77〉 자격증 도움정도

(단위 : 건, %)

구 분	신규 취득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
자격증 추정 수	34,403	601,558
전 체	100.0	100.0
전혀 도움 안됨	9.4	10.4
별로 도움 안됨	15.3	17.9
보통	28.7	12.8
다소 도움 됨	25.6	30.7
매우 도움 됨	21.0	28.1
모름/응답거절	0.0	0.1

주 1) 지난 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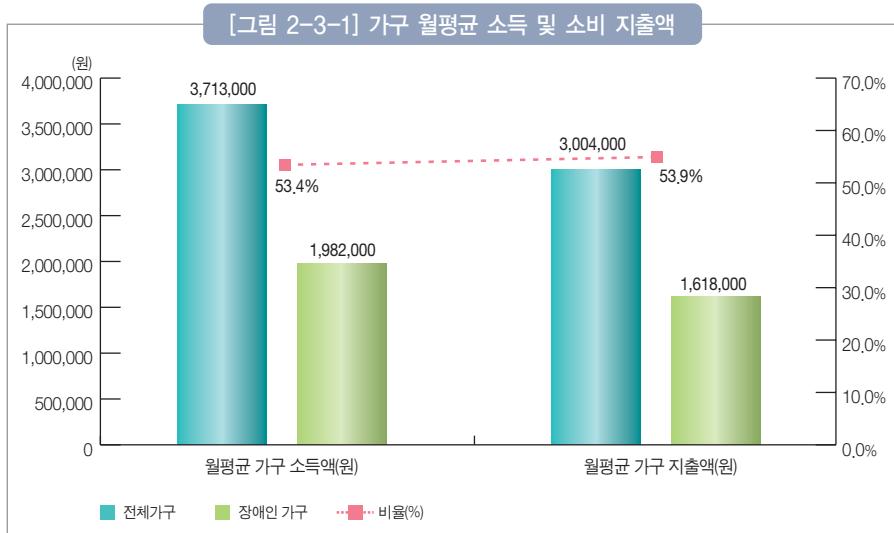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자격증 보유자가 갖고 있는 601,558개의 자격증 중 58.9%의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으며, 지난 조사 이후 신규로 취득한 34,403개 자격증의 중 46.6%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 제3절 경제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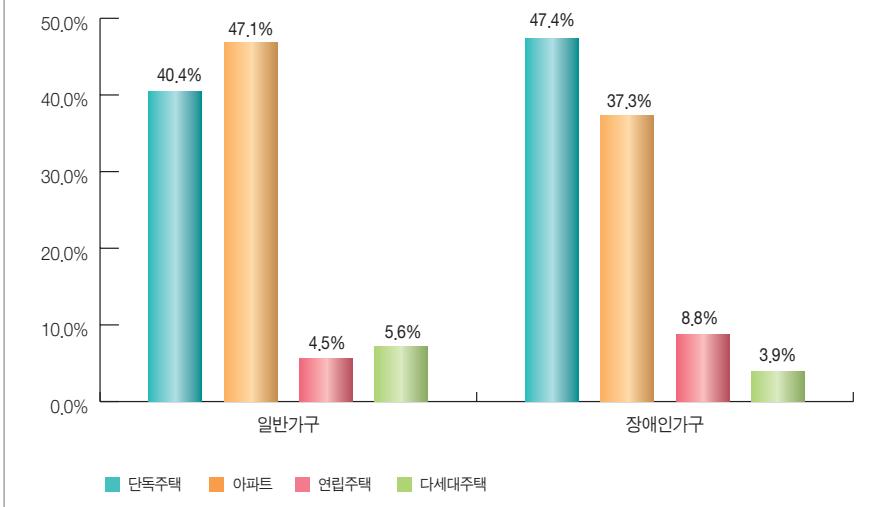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713천원)의 53.4% 수준이며, 월평균 지출은 1,618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004천원)의 53.9% 수준임

[그림 2-3-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그림 2-3-3]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일반가구는 2010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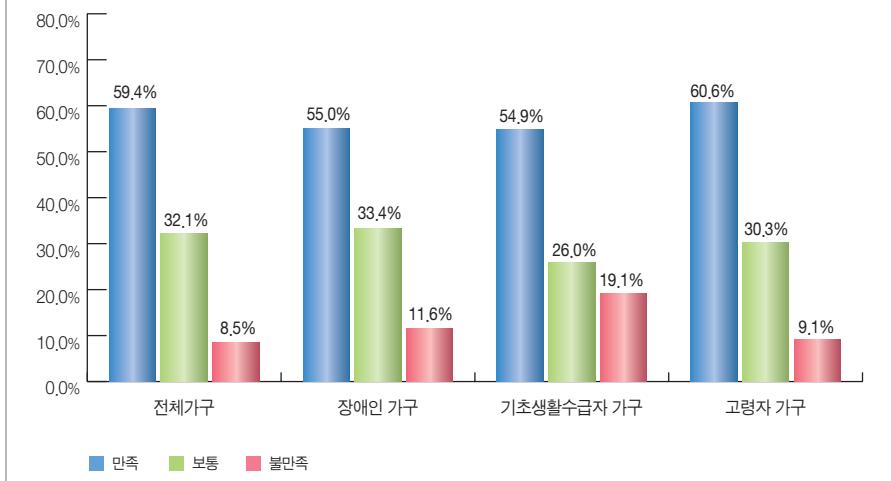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10 주거실태조사」, 20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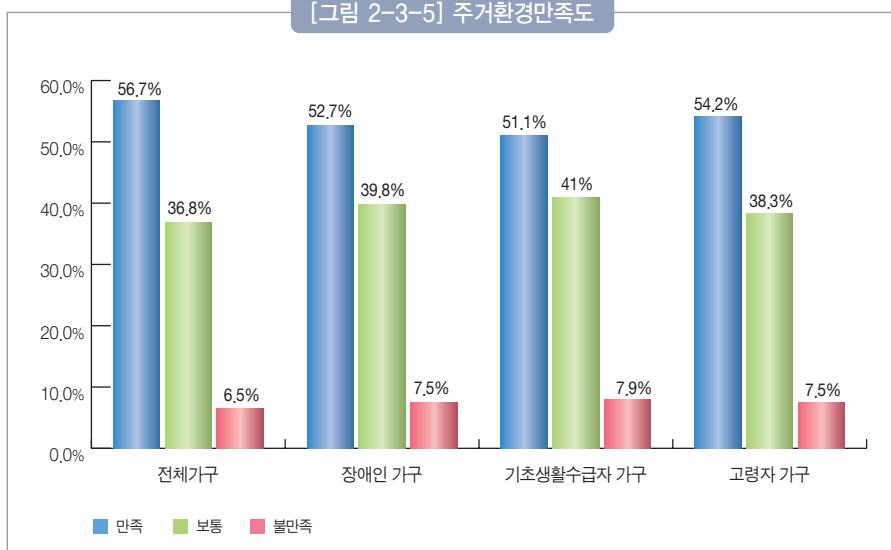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많고 일반가구(54.3%)에 비해 자가 비율(59.5%)은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일반가구 주거실태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태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4] 주택만족도



주 : 2012년 기준임

[그림 2-3-5] 주거환경만족도



주 : 2012년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주거실태조사」, 2013.



2012년 장애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5.0%, 주거환경만족도는 52.7%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6] 인터넷 이용율



주 1)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2) 인터넷 이용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함

자료 | 안전행정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5.5%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78.4%)보다 22.9%p 낮은 수준이나,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임

## 1. 경제수준

### 가. 소속계층

〈표 2-3-1〉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하 층	중 층	상 층
2005년	2,100,393	100.0	61.3	38.3	0.4
2008년	2,137,226	100.0	71.6	28.1	0.4
2011년	2,611,126	100.0	68.5	30.6	0.9
지    체	1,325,877	100.0	66.7	32.4	0.9
뇌 병 변	316,309	100.0	74.3	25.3	0.4
시    각	256,841	100.0	70.6	28.3	1.1
청    각	278,337	100.0	62.6	36.3	1.1
언    어	21,049	100.0	69.9	27.7	2.4
지    적	153,332	100.0	70.6	29.3	0.1
자 폐 성	16,238	100.0	51.7	48.3	0.0
정    신	103,894	100.0	81.0	17.2	1.7
신    장	58,500	100.0	64.1	34.4	1.6
심    장	18,508	100.0	79.7	20.3	0.0
호 흡 기	19,249	100.0	66.0	34.0	0.0
간	9,289	100.0	73.0	27.0	0.0
안    면	2,426	100.0	80.1	19.9	0.0
장루·요루	16,705	100.0	75.8	24.2	0.0
간    질	14,572	100.0	79.1	20.3	0.6

주 : 2011년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들의 주관적 소속계층을 살펴보면, '하층' 68.5%, '중층' 30.6%, '상층'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중층'의 비율은 2.5%p 증가하고, '하층'의 비율이 3.1%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소득과 지출

## 1) 소득과 지출 규모

〈표 2-3-2〉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단위 : %, 만원)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미만	25.3	20.7	16.2	13.4	12.3	11.7	10.3	9.0
50~99만원	27.2	33.3	22.8	25.8	24.8	25.2	20.7	23.9
100~149만원	19.4	23.2	17.3	20.6	16.3	18.6	15.2	18.0
150~199만원	12.1	12.3	13.5	15.5	11.2	13.8	12.7	15.2
200~249만원	6.6	6.1	10.2	12.1	10.4	11.7	11.7	13.0
250~299만원	3.0	2.0	5.9	4.5	5.9	6.8	6.9	6.5
300~349만원			5.9	4.7	6.3	5.1	7.8	6.6
350~399만원			2.1	1.1	4.1	2.4	3.9	2.5
400~449만원	6.2 <sup>1)</sup>	2.4 <sup>1)</sup>	1.9	1.3	4.1 <sup>2)</sup>	2.7 <sup>2)</sup>	3.4	2.6
450~499만원			0.9	0.1			1.6	0.8
500만원 이상			3.4	1.0	4.4	2.0	5.7	2.0
평균금액	108.2	98.9	157.2	134.5	181.9	155.5	198.2	161.8

주 : 1) 2000년의 경우 300만원 이상(300~349만원/350~3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500만원 이상) 비율임

2) 2008년의 경우 400~499만원(400~449만원/450~499만원)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설명 보기 : 370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71.3만원)의 53.4% 수준이며, 월평균 지출은 161.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00.4만원)의 53.9% 수준임
  - 전체 장애인 가구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지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가 32.9%를 보이고 있음

## 2) 소득수준

〈표 2-3-3〉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전 체	198.0	115.9	32.4	8.6	27.4	13.3	0.3
지 체	203.9	119.2	37.8	9.0	24.2	13.4	0.2
뇌 병 변	181.1	99.0	18.4	9.7	33.2	19.6	0.7
시 각	202.2	133.0	26.9	6.2	24.9	11.2	0.1
청 각	192.0	111.5	31.0	10.4	23.9	14.8	0.1
언 어	193.4	92.8	61.3	1.1	25.0	11.5	0.0
지 적	203.8	125.1	30.0	8.2	34.2	5.9	0.1
자 폐 성	309.8	265.2	29.0	0.1	14.3	1.3	0.0
정 신	148.2	69.4	20.9	3.9	44.9	9.0	0.0
신 장	221.1	124.7	37.1	10.6	37.0	11.1	0.7
심 장	194.5	126.1	13.9	6.9	34.6	13.0	0.0
호 흡 기	180.5	75.5	17.4	17.5	50.6	19.6	0.0
간	246.4	163.8	50.1	6.1	25.5	0.9	0.0
안 면	119.7	47.6	42.4	8.1	15.2	6.4	0.0
장루·요루	151.6	83.2	2.4	2.9	38.4	24.7	0.0
간 질	215.3	88.3	75.8	10.7	39.3	8.2	0.0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98만원인 것으로, 수입원별 평균금액은 ‘근로소득’115만 9천원, ‘사업·부업소득’32만 4천원, ‘공적이전소득’27만 4천원, ‘사적이전소득’13만 3천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8만 6천원, ‘기타소득’3천원으로 나타남

〈표 2-3-4〉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금액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
전 체	81.2	34.8	14.2	5.2	18.8	8.0	0.1
지 체	99.6	47.3	20.1	6.1	17.3	8.7	0.1
뇌 병 변	53.1	10.3	2.6	4.8	25.1	10.0	0.2
시 각	87.7	43.1	15.4	4.2	17.3	7.6	0.1
청 각	77.1	31.2	13.1	6.8	17.1	8.7	0.1
언 어	63.4	18.3	23.6	0.9	15.0	5.5	0.0
지 적	26.1	8.1	0.5	0.2	15.3	1.8	0.1
자 폐 성	6.4	0.3	0.0	0.0	5.9	0.1	0.0
정 신	37.5	5.0	1.2	0.7	26.5	4.2	0.0
신 장	82.3	24.5	14.3	7.2	29.1	7.2	0.0
심 장	62.0	30.7	1.2	4.8	20.0	5.3	0.0
호 흡 기	64.3	4.2	1.3	11.9	34.4	12.4	0.0
간	97.5	47.0	25.7	6.1	18.4	0.4	0.0
안 면	34.1	3.1	14.1	0.8	11.8	4.2	0.0
장루 · 요루	58.5	13.9	1.3	1.2	25.9	16.3	0.0
간 질	45.7	21.3	1.1	2.1	17.6	3.6	0.0

주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의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개인 총소득은 평균 81만 2천원으로,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34만 8천원, ‘공적이전소득’18만 8천원, ‘사업·부업소득’14만 2천원, ‘사적이전소득’8만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5만 2천원, ‘기타소득’1천원으로 나타남

## 3) 지출수준

〈표 2-3-5〉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

구 분	평균 금액	전 체	~50만 원	50~ 99만 원	100~ 149만 원	150~ 199만 원	200~ 249만 원	250~ 299만 원	300~ 349만 원	35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만 원~
2005년	137.8	100.0	13.4	25.8	20.6	15.5	12.1	4.5	4.7	1.1	2.4 <sup>2)</sup>	
2008년	137.9	100.0	8.9	27.8	22.7	14.0	12.6	5.9	5.0	1.1	1.4	0.8
2011년	154.0	100.0	5.2	24.9	22.1	16.0	13.9	5.4	6.7	1.8	2.3	1.7
지 체	157.5	100.0	5.2	24.0	21.9	15.1	14.1	6.1	7.6	2.1	2.0	1.8
뇌 병 변	152.2	100.0	4.4	28.7	21.6	16.7	11.6	4.0	7.4	1.5	1.4	2.6
시 각	149.4	100.0	6.9	24.6	22.1	17.3	12.3	5.6	5.7	1.0	2.7	1.8
청 각	139.6	100.0	6.8	25.9	23.9	16.2	14.6	4.1	4.3	1.7	1.9	0.6
언 어	159.2	100.0	0.6	15.4	22.3	33.9	19.2	4.6	0.5	1.0	0.0	2.3
지 적	168.4	100.0	4.1	18.7	23.4	17.2	16.9	4.0	7.4	2.9	4.4	1.1
자 폐 성	270.3	100.0	0.0	4.6	6.8	9.5	22.8	12.7	21.6	2.4	11.5	8.1
정 신	119.1	100.0	4.8	36.3	26.2	16.6	8.5	4.8	0.5	0.6	1.3	0.3
신 장	169.0	100.0	3.0	16.9	20.2	22.2	17.8	5.9	5.5	2.7	5.1	0.7
심 장	145.7	100.0	5.3	38.6	9.5	10.8	18.5	9.1	1.9	0.0	6.2	0.0
호흡 기	147.6	100.0	12.5	25.3	19.4	11.2	14.1	2.2	6.1	3.9	5.3	0.0
간	237.5	100.0	0.0	8.4	15.0	13.7	6.5	9.6	35.5	0.0	5.3	5.9
안 면	99.8	100.0	0.0	59.8	17.4	19.1	0.0	1.7	2.0	0.0	0.0	0.0
정류·요루	134.9	100.0	2.8	44.5	14.4	7.3	16.3	6.1	0.0	0.0	8.6	0.0
간 질	139.3	100.0	0.9	28.2	23.1	16.0	27.9	0.0	1.7	0.0	1.6	0.6

주 1) 최소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함

2) 400~499만원 + 500만원 이상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는 월평균 154만원으로 2008년 137만 9천원에 비해 16만 1천원 늘어남.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50~99만원 범주가 24.9%로 가장 많았으며, 100~149만원이 22.1%, 150~199만원이 16.0%, 200~249만원이 13.9%로 나타남

〈표 2-3-6〉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 체	157.9	155.4	158.7	160.7
교통비	29.1	22.9	17.8	22.8
의료비	83.3	90.2	57.3	56.8
보육·교육비	7.5	6.1	6.2	6.0
보호·간병인	9.6	11.8	9.9	14.1
재활기관 이용료	-	2.1	2.0	1.9
통신비	-	1.2	1.4	9.6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5.6	6.4	36.8	31.7
부모사후 대비비	-	8.8	6.2	5.4
기 타	4.2	6.0	21.2	12.3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설명 보기 : 370페이지 참조

- 2011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나 2008년의 68.5%보다 3.5%p 높아짐. 월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7백 원으로, 2008년 15만 8천 7백원보다 2,000원 증가함.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5만 6천 8백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만 1천 7백원임

## 4) 노후준비

〈표 2-3-7〉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노후 준비 비율		15.8	29.6	14.2	5.6
노후 준비 충분 정도	전혀 충분하지 않음	17.7	17.7	52.7	15.4
	충분하지 않음	62.0	64.7	29.9	53.6
	충분함	18.3	15.6	17.4	28.8
	매우 충분함	2.0	2.0	0.0	2.2
구 분		2차년도 (2009년)	3차년도 (2010년)	4차년도 (2011년)	5차년도 (2012년)
노후 준비방법 (1순위)	저축, 적금 등	26.6	23.5	20.1	21.3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47.0	56.0	59.0	58.2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6.4	4.4	4.7	6.1
	퇴직연금, 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6.3	4.5	3.8	3.0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0.6	0.2	0.8	0.7
	부동산 이용	5.4	5.9	5.0	5.2
	저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	7.3	5.5	6.4	5.6
	기타	0.3	0.0	0.1	0.0

주 1)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 노후준비충분정도, 노후준비방법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3) 노후준비충분정도는 2012년 기준이며 노후준비방법은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이 60세 이후의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는 비율은 전체의 15.8%로,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58.2%, '저축, 적금 등' 21.3%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현재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비율은 2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 경제적 생활수준

### 가. 주거 수준

#### 1) 주거 상황

〈표 2-3-8〉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단위 : %, 개, 만원)

구 분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유형	단독주택	40.4	59.9	33.5	18.8	47.4	51.9	36.0	35.5
	아파트	47.1	26.9	53.1	72.4	37.3	32.5	48.3	54.8
	연립주택	4.5	4.9	4.9	2.8	8.8	8.5	10.2	6.5
	다세대주택	5.6	5.6	6.2	4.0	3.9	4.0	4.0	1.6
점유형태	자가	54.3	46.9	54.0	69.5	59.5	53.2	73.6	83.3
	전세	21.7	16.8	25.1	23.0	12.8	13.2	11.9	9.9
	월세	21.4	32.6	18.6	6.1	19.2	23.7	9.0	3.7
가구당 주거면적	평균주거면적(m <sup>2</sup> )	68.7	56.4	69.8	90.4	67.5	61.0	79.0	108.6
가계수지	세후소득(a)	283.3	105.4	287.0	626.9	147.0	82.1	252.0	550.3
	생활비(b)	166.4	74.6	179.3	316.5	105.4	70.4	177.5	262.4
	주거비(c)	24.3	16.1	25.7	36.9	19.3	16.1	25.6	35.6
	주거비/세후소득(c/a)	8.6	15.3	9.0	5.9	13.1	19.6	10.1	6.5
대출금·임대료 부담정도	생필품 줄일 정도	6.4	11.3	4.5	1.7	21.1	25.5	12.0	4.8
	부담되나 낼 수 있음	27.9	26.1	30.5	25.0	20.1	16.4	29.9	25.9
	생계에 영향 없음	13.7	9.1	15.0	19.3	8.0	6.2	11.1	16.1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100.0% 되지 않을 수 있음

3) 일반가구는 2010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소득계층'/'주택'/'소득, 생활비' 설명 보기 : 370/371/372페이지 참조

○ 일반가구 주거실태(2010년)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태(2009년)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많고, 일반가구(54.3%)에 비해 자가 비율(59.5%)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68.7m<sup>2</sup>)보다 작은 67.5m<sup>2</sup>임

## 2) 주거 복지

〈표 2-3-9〉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구 분	인지율	경험률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13.3	1.3
전세금 저리융자	11.9	0.9
주거비보조	15.1	7.1
주택개조 비용 보조	6.6	0.9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28.0	5.8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	21.3	1.2
장기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	0.2
다가구매입임대 입주 우선권	5.7	0.2
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4.9	0.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7.7	0.2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10.6	0.0
국민임대 편의시설 무료설치	6.8	0.2
간단한 주택관리	9.9	3.5
간단한 집수리	13.7	4.7
개조 및 주거이동 정보제공	4.6	0.6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 내외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 국민임대 입주 우선권에 대한 인지율만 20%가 넘었으며, 주거비 보조(7.1%), 영구임대 입주 우선권제도(5.8%), 간단한 집수리(4.7%), 간단한 주택관리(3.5%) 순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음

〈표 2-3-10〉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주택구입 자금저리 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개조 비용보조	공공임대 주택입주 우선권부여	자립생활 을 위한 재가서비스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집수리	기타
전 체	100.0	14.9	38.5	7.9	5.9	3.8	7.3	21.8
저소득층	100.0	10.5	44.4	7.9	5.8	2.9	8.1	20.4
중소득층	100.0	25.4	25.7	8.0	6.7	5.6	4.7	23.9
고소득층	100.0	29.0	15.1	6.9	3.9	7.7	7.2	30.2
지 체	100.0	16.9	36.8	8.4	5.7	2.6	7.6	22.1
뇌 병 변	100.0	11.7	40.9	8.5	5.8	5.0	6.3	21.8
시 각	100.0	14.8	39.1	6.2	7.0	3.8	8.0	21.2
청 각	100.0	11.8	42.2	8.8	5.5	3.3	9.1	19.2
언 어	100.0	12.0	46.1	6.5	5.9	7.7	5.5	16.3
지 적	100.0	10.0	41.0	6.0	4.6	8.9	4.9	24.7
자 폐 성	100.0	17.8	25.3	2.8	9.1	15.8	2.8	26.5
정 신	100.0	9.5	44.5	7.1	4.5	9.5	5.3	19.7
신 장	100.0	21.2	33.5	5.7	6.6	3.4	7.4	22.4
심 장	100.0	14.0	45.2	6.2	7.2	0.7	6.2	20.5
호 흡 기	100.0	10.3	39.1	7.6	11.0	2.4	4.2	25.4
간	100.0	25.0	31.1	8.7	4.2	1.5	8.0	21.5
안 면	100.0	22.0	30.6	6.3	10.8	8.1	7.8	14.5
장루·요루	100.0	12.6	30.9	6.4	11.0	4.9	7.6	26.6
간 질	100.0	9.9	44.7	6.0	8.2	2.7	4.9	23.6

주 : 2009년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09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주거지원프로그램'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비보조'38.5%,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14.9%, '주택개조 비용 보조'7.9% 등의 순으로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보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장애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는 '자립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필요성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11〉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가구, %)

구 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전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고령자		
전 체	17,733,831 (100.0)	1,119,522 (100.0)	398,194 (100.0)	5,795,881 (100.0)	17,733,831 (100.0)	1,119,522 (100.0)	398,194 (100.0)	5,795,881 (100.0)
매우만족	599,669 (3.4)	42,869 (3.8)	15,836 (4.0)	219,348 (3.8)	755,697 (4.3)	41,755 (3.7)	16,257 (4.1)	239,441 (4.1)
만 족	9,931,791 (56.0)	573,569 (51.2)	202,849 (50.9)	3,294,354 (56.8)	9,310,160 (52.5)	548,695 (49.0)	187,177 (47.0)	2,904,070 (50.1)
보 통	5,690,168 (32.1)	373,207 (33.3)	103,526 (26.0)	1,754,728 (30.3)	6,519,348 (36.8)	445,241 (39.8)	163,623 (41.1)	2,214,768 (38.2)
불만족	1,391,105 (7.8)	115,034 (10.3)	69,217 (17.4)	480,758 (8.3)	1,023,389 (5.8)	78,567 (7.0)	27,349 (6.9)	372,860 (6.4)
매우불만족	121,098 (0.7)	14,845 (1.3)	6,770 (1.7)	46,693 (0.8)	125,237 (0.7)	5,265 (0.5)	3,787 (1.0)	64,743 (1.1)

주 1) 2012년 기준

2) 장애인: 가구주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고령자: 가구주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중 65세 이상자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주거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9페이지 참조

☞ '주거환경 만족도' 설명 보기 : 372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인가구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5.0%,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2.7%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가구도 장애인가구 만족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나. 소유 차량

〈표 2-3-12〉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있 다	없 다
2005년	2,100,729	100.0	48.9	51.1
2008년	2,137,226	100.0	49.3	50.7
2011년	2,611,126	100.0	52.7	47.3
지 체	1,325,877	100.0	56.7	43.3
뇌 병 변	316,309	100.0	48.2	51.8
시 각	256,841	100.0	50.1	49.9
청 각	278,337	100.0	47.7	52.3
언 어	21,049	100.0	51.6	48.4
지 적	153,332	100.0	55.3	44.7
자 폐 성	16,238	100.0	86.7	13.3
정 신	103,894	100.0	26.9	73.1
신 장	58,500	100.0	55.5	44.5
심 장	18,508	100.0	52.2	47.8
호 흡 기	19,249	100.0	63.8	36.2
간	9,289	100.0	86.6	13.4
안 면	2,426	100.0	26.9	73.1
장루 · 요루	16,705	100.0	35.9	64.1
간 질	14,572	100.0	29.8	70.2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가구 중 52.7%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조사의 49.3%보다 3.4%p 증가한 것임
  - 자폐성장애(86.7%)와 간장애(86.6%)는 가구 내 차량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3〉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단위 : %) 장류· 요루	간질
차 종	승용차	82.9	82.5	86.1	82.7	80.2	82.6	83.5	84.4	79.6	89.9	92.4	86.4	88.9	89.1	63.6	62.5
	승합차	9.4	9.0	10.5	9.8	11.6	0.0	6.7	9.4	12.8	6.2	7.6	11.7	4.8	10.9	28.2	19.2
	화물차	7.7	8.6	3.5	7.5	8.2	17.4	9.8	6.2	7.6	3.9	0.0	1.9	6.3	0.0	8.2	18.3
연료	휘발유	25.4	25.5	21.4	26.5	28.0	7.7	20.7	17.3	29.4	39.9	16.1	42.1	25.1	15.3	47.5	7.8
	LPG	50.6	50.5	58.4	48.2	45.1	72.8	49.4	56.7	48.8	42.0	63.7	44.0	59.5	66.4	29.0	68.1
	디젤	24.0	24.1	20.2	25.3	26.9	19.5	29.9	25.9	21.8	18.1	20.2	13.9	15.5	18.3	23.5	24.1
소 유 명 의	장애인	53.3	64.0	35.6	53.7	48.5	57.9	11.6	1.9	21.1	52.7	61.5	73.5	62.1	21.6	62.8	15.4
	보호자	20.5	17.8	18.4	24.1	25.5	34.6	23.3	36.8	37.5	20.9	20.6	12.0	26.1	0.0	27.8	40.5
	공동	23.6	16.1	44.2	19.6	22.1	5.5	58.3	61.3	34.6	23.5	17.9	11.6	11.8	78.4	1.4	34.5
	기타	2.7	2.0	1.8	2.6	3.8	2.0	6.9	0.0	6.8	2.8	0.0	2.9	0.0	0.0	8.0	9.6
용 도	출·퇴근	55.4	55.3	50.9	63.3	56.9	43.2	58.3	44.5	49.0	68.4	51.5	29.3	24.7	18.4	49.5	51.6
	통학	1.5	0.7	1.1	1.2	1.3	2.1	7.2	13.9	0.0	1.8	0.0	0.0	19.0	0.0	0.0	9.8
	사업용	9.1	9.9	4.6	7.7	12.8	26.4	6.9	7.0	18.1	5.1	0.0	1.6	3.6	0.0	2.0	6.8
	외출	33.8	33.9	43.1	27.8	29.1	28.3	27.5	34.6	32.8	24.7	48.5	69.0	52.7	81.6	48.5	31.8
운 전 자	기타	0.1	0.2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본인	42.6	56.2	15.3	40.1	39.6	37.1	0.5	0.0	6.0	36.6	39.7	61.2	49.9	6.3	43.0	2.0
	보호자	49.2	36.5	71.1	50.1	55.3	53.0	91.1	100.0	78.3	58.2	52.2	27.0	50.1	78.4	32.8	88.4
	기타	8.2	7.2	13.5	9.8	5.1	9.9	8.4	0.0	15.7	5.2	8.1	11.8	0.0	15.3	24.2	9.6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가구 내 소유하고 있는 제1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주로 차종은 승용차(82.9%), 연료는 LPG(50.6%), 자동차 소유현황은 '장애인 명의'(53.3%), 자동차의 사용 용도는 '주로 출·퇴근'(55.4%), 차량운전자는 보호자(49.2%)인 것으로 나타남

## 다. 정보와 통신

## 1) 정보통신기기

〈표 2-3-14〉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구 분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PC)	인터넷	(단위 : %)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사용률	
2005년	81.2	-	36.4	36.0	
2008년	66.7	-	26.7	25.7	
2011년	70.1	7.2	31.3	31.0	
지 체	78.7	9.7	35.8	35.5	
뇌 병 변	51.0	2.4	16.1	15.7	
시 각	78.7	7.6	31.2	31.0	
청 각	68.1	5.0	21.1	21.0	
언 어	71.8	0.5	45.2	45.2	
지 적	38.4	3.4	40.9	40.1	
자 폐 성	22.3	1.2	62.6	62.6	
정 신	45.8	4.1	16.0	16.0	
신 장	83.9	9.9	33.7	33.3	
심 장	75.0	0.4	57.5	57.5	
호흡기	74.5	1.8	38.0	38.0	
간	89.7	11.4	59.1	59.1	
안 면	60.0	19.0	52.2	52.2	
장루·요루	74.2	3.5	19.8	19.8	
간 질	66.8	11.5	42.1	42.1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정보기기 사용률은 '휴대폰'70.1%, '컴퓨터'31.3%, '인터넷'31.0%, '스마트폰'7.2% 순으로 2008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2) 컴퓨터 보유

〈표 2-3-15〉 컴퓨터 보유율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단위 : %, %p)
2003년	77.9	57.9		20.0
2004년	77.8	62.3		15.5
2005년	78.9	66.2		12.7
2006년	79.6	68.7		10.9
2007년	80.4	69.9		10.5
2008년	80.9	70.7		10.2
2009년	81.4	71.2		10.2
2010년	81.8	71.6		10.2
2011년	81.9	71.9		10.0
2012년	82.3	73.0		9.3

주 :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표 2-3-16〉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구 分	컴퓨터 보유율	구 分	컴퓨터 보유율	(단위 : %)
전체	73.0			
거주지규모별		월가구 소득별		
도시지역	73.3	100만원 미만	55.7	
군지역	70.3	100~199만원	73.7	
가구구성형태		200~299만원	87.0	
장애인 단독거주	55.9	300만원 이상	94.7	
일반인 공동거주	79.2			

주 : 2012년 기준임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3.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2.3%보다 9.3%p 낮은 수준임
  - 장애인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컴퓨터보유율을 보다는 여전히 낮음
- 군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단독거주보다 일반인 공동거주 시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컴퓨터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 인터넷 이용

〈표 2-3-17〉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격차	(단위 : %, %p)
2003년	65.5	27.6		37.9
2004년	70.2	34.8		35.4
2005년	72.8	41.0		31.8
2006년	74.8	46.6		28.2
2007년	76.3	49.9		26.4
2008년	77.1	51.8		25.3
2009년	77.6	52.7		24.9
2010년	78.3	53.5		24.8
2011년	78.3	54.4		23.9
2012년	78.4	55.5		22.9

주 1) 전체 국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기준임

2) 인터넷 이용자는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로 함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표 2-3-18〉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인터넷 이용률	구 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전 체	55.5	학력별	중졸이하	33.8
성 별			고졸	71.9
남 성	60.1		대졸이상	95.4
여 성	46.9			
장애유형별		월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34.0
지체장애	59.6		100~199만원	55.5
뇌병변장애	42.7		200~299만원	70.4
시각장애	47.5		300만원 이상	86.5
청각 /언어장애	51.0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세~ 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5.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8.4%보다 22.9%p 낮은 수준임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국민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이며, 여성보다 남성, 타 장애유형 대비 지체장애,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표 2-3-19〉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단위 : %)

구 분	일반국민	장애인	일반국민 대비수준
전체 평균	28.9	18.3	63.3
뉴스보기	43.1	30.8	71.5
자료 송수신	27.0	16.3	60.4
예약/예매	26.1	14.4	55.2
제품구매	28.5	17.9	62.8
정보검색/습득	52.7	39.9	75.7
행정업무	14.3	8.5	59.4
은행업무	21.3	12.4	58.2
원거리 의사소통	26.6	13.6	51.1
교제/대인관계	20.7	10.6	51.2

주 1) 인터넷 이용자 기준임

- 2) 일반국민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인터넷 활용비중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의 일반국민 대비 수준을 의미  
 3) 2011년 기준임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비중(인터넷 일상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3.3% 수준  
 - '뉴스보기' 및 '정보검색/습득' 활동의 인터넷 활용비중은 일반국민의 70% 이상이나, 타 활동은 일반국민의 50~60% 수준에 그침

## 4) 정보화 수준

〈표 2-3-20〉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단위 : 점)

구 분	종 합		접 근		역 량		활 용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격차지수	대비수준
2004년	42.5	57.5	27.0	73.0	58.9	41.1	51.9	48.1
2005년	34.8	65.2	22.4	77.6	50.0	50.0	42.9	57.1
2006년	26.1	73.9	14.6	85.4	39.0	61.0	33.9	66.1
2007년	24.0	76.0	11.2	88.8	36.6	63.4	33.3	66.7
2008년	21.2	78.8	7.4	92.6	34.0	66.0	31.2	68.8
2009년	19.7	80.3	7.3	92.7	27.8	72.2	29.4	70.6
2010년	18.7	81.3	6.6	93.4	27.2	72.8	28.3	71.7
2011년	17.8	82.2	6.5	93.5	24.9	75.1	27.1	72.9
2012년	16.6	83.4	6.1	93.9	21.0	79.0	25.9	74.1

- 주 1) 격차지수=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2) 대비수준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3) 종합격차지수 :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  
 4) 접근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 측정  
 5) 역량격차지수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측정

자료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30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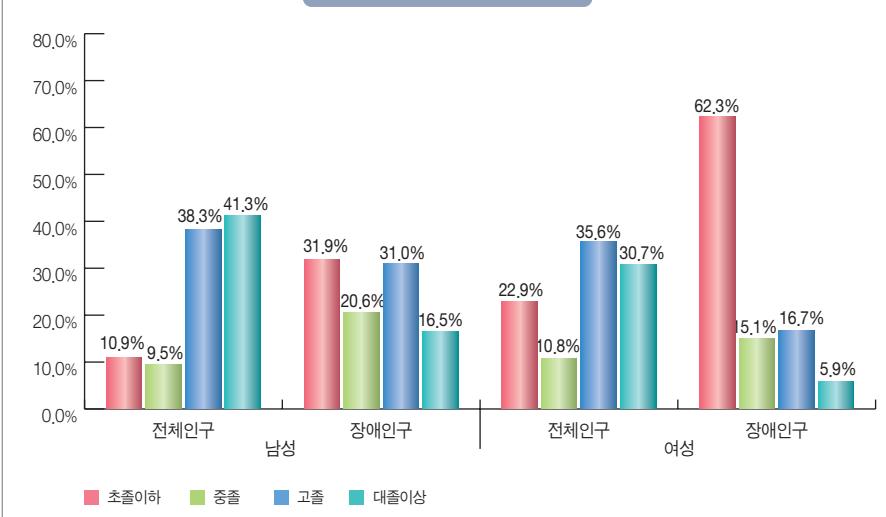
☞ '정보격차 지수' 설명 보기 : 373페이지 참조

-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장애인 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의 종합 측정 요약치인 종합 격차지수는 '11년 17.8점에서 '12년 16.6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 부문별 전년 대비 격차지수 감소폭은 활용 부문 1.2점, 접근 부문 0.4점, 역량 부문 3.9점 감소함

## 제4절 교육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4-1] 학력구성비



- 주 1) 전체인구는 25세 이상, 2010년 기준  
2) 장애인구는 미취학자 6세 미만 제외, 2011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37.0%이나 전체인구 기준(72.7%)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남성장애인의 고졸이상 비율(47.5%)에 비해 여성장애인은(22.6%)로 상당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2] 특수교육 규모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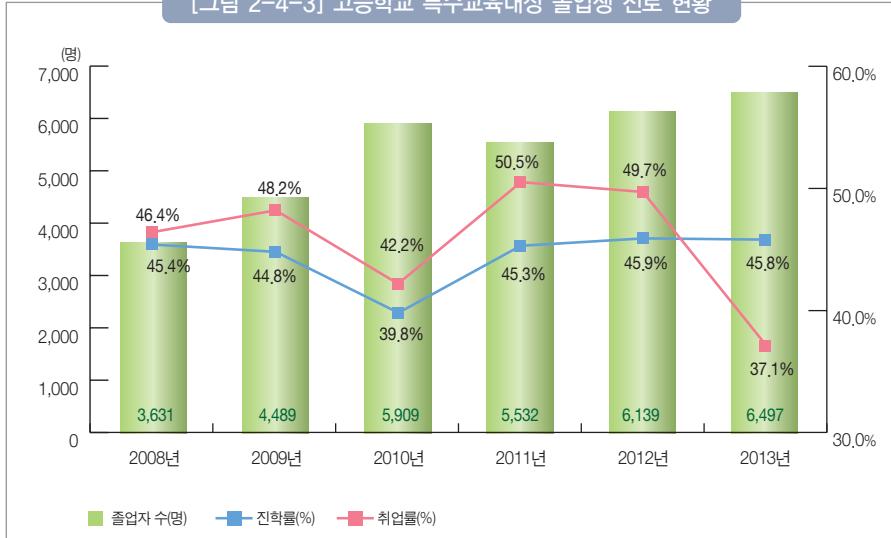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급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98학급이 증가함

- 2013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6,633명으로 전년 대비 1,621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서비스 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0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4.0 : 1)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5.4 : 1 → 2010년 5.2 : 1 → 2011년 5.2 : 1 → 2012년 5.1 : 1 → 2013년 5.0 : 1

[그림 2-4-3]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주 1)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임

2)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 × 100

3)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4) 취업률 기준 변경 : 2013년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체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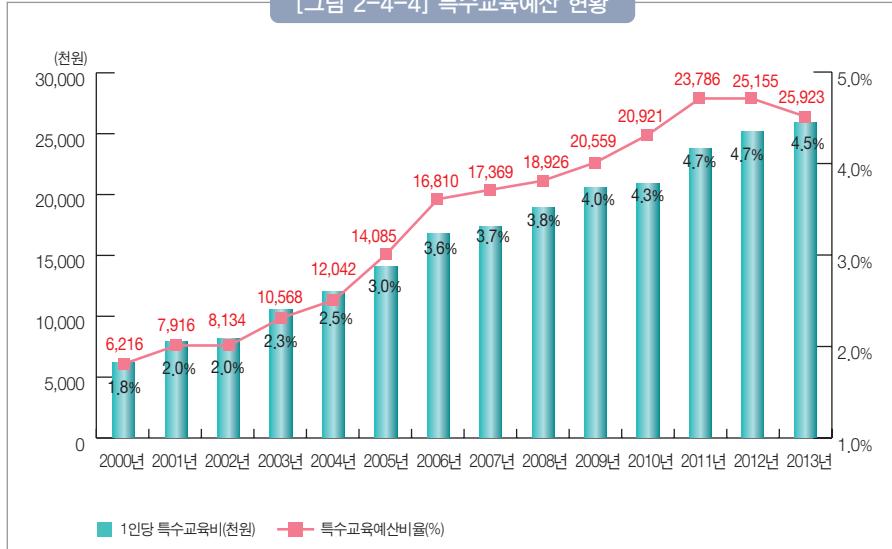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의 진학률은 2009년 44.8%, 2011년 45.3%, 2013년 45.8%로, 장애학생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진학률은 계속 증가함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2009년 48.2%, 2011년 50.5%, 2013년 37.1%로 감소함. 이는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체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4-4] 특수교육예산 현황



- 주 1) 교육부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임
- 2) 특수교육예산비율(%) = (특수교육예산/교육부 예산) × 100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2013년도 9월 현재 특수교육예산은 교육부 교육부문 예산의 4.5%를 차지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5,92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8천원 증액되었음

## 1. 교육수준

〈표 2-4-1〉 학력구성비

(단위 : %)

구 분		전 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 체	전체인구	100.0	17.1	10.2	36.9	35.8
	장애인구	100.0	44.7	18.3	25.0	12.0
남 성	전체인구	100.0	10.9	9.5	38.3	41.3
	장애인구	100.0	31.9	20.6	31.0	16.5
여 성	전체인구	100.0	22.9	10.8	35.6	30.6
	장애인구	100.0	62.3	15.1	16.6	5.9

주 1) 전체인구는 25세 이상, 2010년 기준

2) 장애인구는 미취학자 6세 미만 제외, 2011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8/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37.0%이나 전체인구 기준(72.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남성장애인의 고졸 이상 비율(47.5%)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22.5%로 상당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구 분	전 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 %) 대학이상
전 체	100.0	11.8	32.9	18.3	25.0	12.0
지 체	100.0	11.0	32.9	19.1	25.0	12.2
뇌 병 변	100.0	13.3	37.6	17.3	20.2	11.6
시 각	100.0	12.5	30.9	18.8	23.3	14.6
청 각	100.0	19.7	37.4	17.1	15.5	10.4
언 어	100.0	8.7	31.6	15.9	28.3	15.6
지 적	100.0	12.4	27.8	18.4	38.1	3.3
자 폐 성	100.0	10.3	49.0	8.2	27.5	4.9
정 신	100.0	3.4	18.5	18.5	46.2	13.5
신 장	100.0	4.9	21.3	21.1	34.2	18.4
심 장	100.0	4.2	43.6	15.6	16.3	20.2
호 흡 기	100.0	11.7	45.5	8.9	24.9	9.0
간	100.0	0.0	29.5	6.9	10.8	52.8
안 면	100.0	0.0	30.8	35.2	19.9	14.1
장루 · 요루	100.0	12.6	42.4	15.1	16.3	13.6
간 질	100.0	4.0	27.1	11.9	41.2	15.8

주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2) 미취학자 만6세 미만 제외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학교’32.9%, ‘고등학교’25.0%, ‘중학교’18.3%, ‘대학이상’ 12.0%, ‘무학’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청각장애인 무학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고, 간장애는 대학이상의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아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 가. 보육시설

〈표 2-4-3〉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 보육시설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다니지 않음
전 체	43,292	100.0	3.9	14.1	6.2	75.8
지 체	4,499	100.0	2.4	0.0	0.0	97.6
뇌 병 변	6,031	100.0	0.0	15.8	15.9	68.3
시 각	2,878	100.0	0.0	0.0	17.0	83.0
청 각	1,253	100.0	28.7	51.3	0.0	20.0
언 어	2,789	100.0	15.3	0.0	9.5	75.3
지 적	14,792	100.0	3.3	18.2	0.0	78.5
자 폐 성	8,090	100.0	1.4	22.2	12.1	64.3
정 신	-	-	-	-	-	-
신 장	216	100.0	100.0	0.0	0.0	0.0
심 장	2,467	100.0	0.0	0.0	0.0	100.0
호흡 기	206	100.0	0.0	0.0	0.0	100.0
간	-	-	-	-	-	-
안 면	71	100.0	0.0	0.0	0.0	100.0
장루 · 요루	-	-	-	-	-	-
간 질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아동의 75.8%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보육시설 형태는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14.1%,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6.2%, '일반보육시설' 3.9% 등의 순임

〈표 2-4-4〉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 만원)

구 분	1일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					
	평균시간	1~5시간	6~10시간	평균비용	무료	1~5만원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
전 체	4.9	46.9	53.1	1.0	89.1	4.8	3.6	-	2.5
지 체	5.0	100.0	0.0	2.0	0.0	100.0	0.0	-	0.0
뇌 병 변	4.1	63.7	36.3	2.8	86.2	0.0	0.0	-	13.8
시 각	1.3	100.0	0.0	0.0	100.0	0.0	0.0	-	0.0
청 각	8.1	0.0	100.0	0.0	100.0	0.0	0.0	-	0.0
언 어	6.6	0.0	100.0	0.0	100.0	0.0	0.0	-	0.0
지 적	4.4	54.5	45.5	1.2	88.3	0.0	11.7	-	0.0
자 폐 성	5.0	47.5	52.5	0.4	86.4	13.6	0.0	-	0.0
정 신	-	-	-	-	-	-	-	-	-
신 장	7.0	0.0	100.0	0.0	100.0	0.0	0.0	-	0.0
심 장	-	-	-	-	-	-	-	-	-
호 흡 기	-	-	-	-	-	-	-	-	-
간	-	-	-	-	-	-	-	-	-
안 면	-	-	-	-	-	-	-	-	-
장루·요루	-	-	-	-	-	-	-	-	-
간 질	-	-	-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4.9시간, 전체의 53.1%가 '6~10시간'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1만원으로 전체의 89.1%가 '무료'로 이용하고, '1~5만원'4.8%, '6~10만원'3.6%, '16~20만원'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5〉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장애인 전담시설			장애인 통합시설		
	시설 수	장애 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시설 수	장애 아동 수	종사자 수 장애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전 체	171	5,994	2,527	836	3,565	1,285
국·공립 보육어린이집	34	1,040	440	527	2,470	911
사회복지법인 보육어린이집	100	3,845	1,629	43	165	63
법인 단체등 보육어린이집	7	260	108	42	201	68
민간 개인 보육어린이집	28	813	337	195	672	230
가정 보육어린이집	2	36	13	26	46	9
부모협동 보육어린이집	-	-	-	1	3	1
직장 보육어린이집	-	-	-	2	8	3

- 주 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 2)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 3)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4)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5)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6)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7)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8)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 외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
- 9) 장애아동 수 : 아동자격이 영유아(장애인무상보육)인 아동 수
- 10) 2012년 12월 말 기준임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2013.
- ☞ 조사 설명 보기 : 345페이지 참조
- ☞ ‘보육시설’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2012년 12월 말 특수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수는 총 171개소이며 5,99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시설은 총 836개소로 3,56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음 – 설립주체별로 보면 시설 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561개소, ‘민간 개인 보육시설’ 223개소, ‘법인 보육시설’ 14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장애아동 수는 ‘법인 보육시설’ 4,010명, ‘국·공립 보육시설’ 3,510명, ‘민간 개인 보육시설’ 1,485명 등의 순임

## 나. 유치원

〈표 2-4-6〉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	다니지 않음
전 체	43,292	100.0	0.6	1.9	0.8	96.6
지 체	4,499	100.0	6.2	0.0	0.0	93.8
뇌 병 변	6,031	100.0	0.0	0.0	0.0	100.0
시 각	2,877	100.0	0.0	0.0	12.3	87.7
청 각	1,254	100.0	0.0	0.0	0.0	100.0
언 어	2,790	100.0	0.0	25.3	0.0	74.7
지 적	14,792	100.0	0.0	0.8	0.0	99.2
자 폐 성	8,089	100.0	0.0	0.0	0.0	100.0
정 신	-	-	-	-	-	-
신 장	216	100.0	0.0	0.0	0.0	100.0
심 장	2,467	100.0	0.0	0.0	0.0	100.0
호흡기	206	100.0	0.0	0.0	0.0	100.0
간	-	-	-	-	-	-
안 면	71	100.0	0.0	0.0	0.0	100.0
장루·요루	-	-	-	-	-	-
간 질	-	-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96.6%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형태로는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1.9%, '특수학교 유치원(부)' 0.8%, '일반유치원' 0.6%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지체장애 6.2%로 유일하고,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비율은 언어장애 25.3%로 가장 높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비율은 시각장애가 12.3%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7〉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 만원)

구 분	1일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
	평균시간	1~5시간	6~10시간	
전 체	5.1	80.9	19.1	100.0
지 체	7.0	0.0	100.0	100.0
뇌 병 변	-	-	-	-
시 각	4.0	100.0	0.0	100.0
청 각	-	-	-	-
언 어	5.0	100.0	0.0	100.0
지 적	4.0	100.0	0.0	100.0
자 폐 성	-	-	-	-
정 신	-	-	-	-
신 장	-	-	-	-
심 장	-	-	-	-
호흡기 간	-	-	-	-
안 면	-	-	-	-
장루·요루	-	-	-	-
간 질	-	-	-	-

주 1)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5.1시간으로 전체의 80.9%가 '1~5시간'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비용은 장애아동 무상교육제도 실시에 따라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다. 재활치료서비스

〈표 2-4-8〉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구 분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단위 : %) 기타치료
전 체	0.9	1.1	1.5	20.3	1.0	0.5	1.0	1.2
지 체	-	-	0.1	26.7	0.2	-	0.1	0.5
뇌 병 변	0.9	1.6	2.1	29.6	4.0	0.6	0.5	1.9
시 각	0.1	0.1	0.1	9.1	0.4	-	0.1	0.4
청 각	0.3	0.3	0.6	11.7	-	0.1	-	0.1
언 어	2.4	5.1	11.0	5.3	-	5.2	7.5	5.2
지 적	5.5	7.9	12.5	5.6	2.4	3.9	5.8	6.4
자 폐 성	22.1	23.6	45.3	-	12.1	11.9	8.8	23.1
정 신	6.4	4.6	0.3	7.6	3.1	-	8.8	2.3
신 장	-	-	-	4.7	-	-	-	-
심 장	-	-	-	11.5	-	-	-	-
호 흡 기	-	-	-	2.5	-	-	-	-
간	-	-	-	4.2	-	-	-	-
안 면	-	-	-	21.9	11.2	-	11.2	-
장루 · 요루	-	-	-	8.5	-	-	-	-
간 질	-	-	-	3.3	-	-	2.5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살펴보면 물리치료가 2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많은 장애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제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는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자폐성장애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을 다양하게 받는 반면,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는 주로 언어치료를 받고 내부장애는 주로 물리치료만 받음

〈표 2-4-9〉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단위 : 시간, 만원)

구 분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치료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전 체	1.82	7.83	1.76	6.76	1.83	12.99	2.37	4.35	3.43	11.15	2.72	6.87	1.47	10.22	2.94	11.10
지 체	-	-	2.00	26.00	2.00	16.47	2.23	3.96	2.51	17.96	-	-	1.00	1.00	4.03	5.68
뇌 병 변	2.80	2.31	2.44	2.80	2.52	16.99	3.24	6.99	2.82	9.31	3.05	7.17	1.14	14.75	3.70	9.12
시 각	2.00	24.00	1.00	3.00	1.00	6.00	1.85	3.56	1.00	20.00	-	-	1.00	2.45	5.00	1.00
청 각	1.00	4.00	1.00	-	1.58	9.4	2.03	1.93	-	-	1.00	5.00	-	-	1.00	6.00
언 어	1.00	6.78	1.25	18.42	1.69	6.69	2.07	4.35	-	-	1.24	7.30	1.17	3.42	2.00	14.54
지 적	1.55	8.78	1.37	6.98	1.65	10.15	1.59	7.33	7.52	10.19	2.35	5.13	1.54	11.34	2.31	12.52
자 폐 성	1.61	12.03	1.63	7.77	1.75	18.31	-	-	2.27	12.90	1.51	17.28	1.93	30.55	2.60	23.91
정 신	2.04	1.23	2.37	1.00	2.00	-	2.51	1.37	3.22	2.00	4.18	1.00	1.57	2.00	1.00	1.00
신 장	-	-	-	-	-	-	1.66	3.22	-	-	-	-	-	-	-	-
심 장	-	-	-	-	-	-	2.90	1.00	-	-	-	-	-	-	-	-
호흡기	-	-	-	-	-	-	2.19	1.00	-	-	-	-	-	-	-	-
간	-	-	-	-	-	-	2.00	-	-	-	-	-	-	-	-	-
안 면	-	-	-	-	-	-	3.45	-	1.00	-	-	-	-	1.00	-	-
장루·요루	-	-	-	-	-	-	2.98	4.83	-	-	-	-	-	-	-	-
간 질	-	-	-	-	-	-	1.94	180.0	-	-	-	-	-	2.00	-	-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작업치료' 3.43시간, '놀이치료' 2.72시간, '물리치료' 2.37시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약 2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비용(본인부담)은 '언어치료' 13만원, '작업치료' 11만 2천원, '심리·행동치료' 10만 2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 특수교육

#### 가. 특수교육 현황

〈표 2-4-10〉 특수교육 규모

(단위 : 교, 학급, 명)

구 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 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교원 수
			소 계	장애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2002년	136	3,953	54,470	-	1,809	32,006	11,356	8,491	808	8,695
2003년	137	4,102	53,404	-	1,932	30,838	11,055	8,779	800	9,175
2004년	141	4,366	55,374	-	2,677	30,329	11,326	10,207	835	9,846
2005년	142	4,697	58,362	-	3,057	31,064	12,493	10,756	992	10,429
2006년	143	5,204	62,538	-	3,243	32,263	13,972	11,851	1,209	11,259
2007년	144	5,753	65,940	-	3,125	32,752	15,267	13,349	1,447	12,249
2008년	149	6,352	71,484	-	3,236	33,974	16,833	15,686	1,755	13,165
2009년	150	6,924	75,187	288	3,303	34,035	17,946	17,553	2,062	13,997
2010년	150	7,792	79,711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15,244
2011년	155	8,415	82,66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15,934
2012년(A)	156	8,927	85,012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16,727
2013년(B)	162	9,343	86,63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17,446
B-A	6	416	1,621	175	515	-940	706	817	348	719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13년에 특수학교 6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416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598 학급이 증가함
  - 2013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86,633명으로 전년 대비 1,621명 증가함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0명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4.0:1)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2009년 5.4:1→2010년 5.2:1→2011년 5.2:1→2012년 5.1:1→2013년 5.0:1

〈표 2-4-11〉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단위: 명, %)

구 분	일반학교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2005년	8,368,134	58,362	0.7
2006년	8,325,384	62,538	0.8
2007년	8,276,312	65,940	0.8
2008년	8,155,806	71,484	0.9
2009년	7,967,419	75,187	0.9
2010년	7,745,551	79,711	1.0
2011년	7,646,178	82,665	1.1
2012년	7,336,244	85,012	1.2
2013년	7,152,702	86,633	1.2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일반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총 1.2%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4-12〉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소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2005년	58,362 (100.0)	23,449 (40.2)	34,913 (59.8)	29,803 (51.1)	5,110 (8.8)
2006년	62,538 (100.0)	23,291 (37.2)	39,247 (62.8)	32,506 (52.0)	6,741 (10.8)
2007년	65,940 (100.0)	22,963 (34.8)	42,977 (65.2)	35,340 (53.6)	7,637 (11.6)
2008년	71,484 (100.0)	23,400 (32.7)	48,084 (67.3)	37,857 (53.0)	10,227 (14.3)
2009년	75,187 (100.0)	23,801 (31.7)	51,386 (68.3)	39,380 (52.4)	12,006 (16.0)
2010년	79,711 (100.0)	23,944 (30.0)	55,767 (70.0)	42,021 (52.7)	13,746 (17.2)
2011년	82,665 (100.0)	24,741 (29.9)	57,924 (70.1)	43,183 (52.2)	14,741 (17.8)
2012년	85,012 (100.0)	24,932 (29.3)	60,080 (70.7)	44,433 (52.3)	15,647 (18.4)
2013년	86,633 (100.0)	25,522 (29.5)	61,111 (70.5)	45,181 (52.1)	15,930 (18.4)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2013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5,52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45,181명, '일반학교 일반학급' 15,930명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 확대에 의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표 2-4-1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	정서· 행동	자폐성	의사 소통	학습	건강	발달 지체
2005년	58,362 (100.0)	1,745 (3.0)	2,549 (4.4)	33,618 (57.6)	5,924 (10.2)	5,870 (10.1)	-	-	8,447 (14.5)	209 (0.4)	-
2006년	62,538 (100.0)	1,902 (3.0)	2,806 (4.5)	33,958 (54.3)	6,957 (11.1)	8,852 (14.2)	301 (0.5)	6,738 (10.8)	1,024 (1.6)	-	-
2007년	65,940 (100.0)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95 (11.7)	1,185 (1.8)	6,982 (10.6)	1,142 (1.7)	-	-
2008년	71,484 (100.0)	2,103 (2.9)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26 (1.7)	6,754 (9.4)	1,637 (2.3)	-	-
2009년	75,187 (100.0)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2010년	79,711 (100.0)	2,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2011년	82,665 (100.0)	2,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2012년	85,012 (100.0)	2,303 (2.7)	3,744 (4.4)	46,265 (54.4)	11,279 (13.3)	2,713 (3.2)	7,922 (9.3)	1,819 (2.1)	4,724 (5.6)	2,195 (2.6)	2,048 (2.4)
2013년	86,633 (100.0)	2,220 (2.6)	3,666 (4.2)	47,120 (54.4)	11,233 (13.0)	2,754 (3.2)	8,722 (10.1)	1,953 (2.3)	4,060 (4.7)	2,157 (2.5)	2,748 (3.2)

주 1) 건강장애 2005년~, 의사소통장애 2006년~, 발달지체 2009년~ 조사 실시

2) 2009년 이전까지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합하여 정서장애로 조사

3) 2009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2013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를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47,120명(54.4%)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11,233명(13.0%), 자폐성장애 8,722명(10.1%), 학습장애 4,060명(4.7%) 순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비율은 증가한 반면, 학습장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졸업생 진로 현황

〈표 2-4-14〉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졸업자수	진학자 수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률	미진학· 미취업자수
		소 계	전공과	전문대	대학				
2008년	전체	3,631	1,647	1,094	300	253	45.4	921	46.4
	특수학교	2,062	1,039	920	40	79	50.4	484	47.3
	특수학급	1,102	374	166	155	53	33.9	386	53.0
	일반학급	467	234	8	105	121	50.1	51	21.9
2009년	전체	4,489	2,013	1,258	383	372	44.8	1,193	48.2
	특수학교	2,181	1,099	968	47	84	50.4	534	49.4
	특수학급	1,641	524	250	174	100	31.9	588	52.6
	일반학급	667	390	40	162	188	58.5	71	25.6
2010년	전체	5,909	2,353	1,391	517	445	39.8	1,500	42.2
	특수학교	2,258	1,147	1,019	47	81	50.8	488	43.9
	특수학급	2,195	750	354	276	120	34.2	898	62.1
	일반학급	1,456	456	18	194	244	31.3	114	11.4
2011년	전체	5,532	2,504	1,577	532	395	45.3	1,528	50.5
	특수학교	2,365	1,205	1,085	40	80	51.0	492	42.4
	특수학급	2,273	790	462	250	78	34.8	903	60.9
	일반학급	894	509	30	242	237	56.9	133	34.5
2012년	전체	6,139	2,817	1,803	517	497	45.9	1,651	49.7
	특수학교	2,469	1,336	1,224	31	81	54.1	443	39.1
	특수학급	2,576	909	536	250	123	35.3	1,013	60.8
	일반학급	1,094	572	43	236	293	52.3	195	37.4
2013년	전체	6,497	2,974	1,967	-	1,007	45.8	1,306	37.1
	특수학교	2,471	1,358	1,232	-	126	55.0	237	21.3
	특수학급	2,891	1,046	704	-	342	36.2	841	45.6
	일반학급	1,135	570	31	-	539	50.2	228	40.4

주 1)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취업률 현황임

2)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3) 취업률 기준 변경 : '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4) 2013년부터 진학자수의 전문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으로 통합함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진학률, 취업률'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2013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의 진학률은 45.8%로, 특수학교(55.0%)에 속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의 취업률(40.4%)은 특수학급의 취업률(45.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1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단위: 명)

구 分		전 체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IT 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 관 등	기타
2007년	전 체	950	19	193	37	88	43	6	10	116	109	-	-	-	329
	특수학교	497	7	96	12	58	24	5	1	116	10	-	-	-	168
	특수학급	380	10	91	16	29	15	1	4	-	67	-	-	-	147
	일반학급	73	2	6	9	1	4	-	5	-	32	-	-	-	14
2008년	전 체	921	17	240	26	91	28	12	13	83	98	-	-	-	313
	특수학교	484	14	114	11	54	14	8	2	82	25	-	-	-	160
	특수학급	386	2	116	13	33	13	-	10	1	62	-	-	-	136
	일반학급	51	1	10	2	4	1	4	1	-	11	-	-	-	17
2009년	전 체	1,193	28	179	31	-	18	16	5	117	99	14	73	569	44
	특수학교	534	6	82	1	-	8	9	1	117	29	1	29	230	21
	특수학급	588	5	91	27	-	10	5	2	-	63	8	35	323	19
	일반학급	71	17	6	3	-	-	2	2	-	7	5	9	16	4
2010년	전 체	1,500	10	194	40	-	50	13	10	124	106	9	55	716	173
	특수학교	488	5	57	5	-	11	9	4	122	5	1	19	179	71
	특수학급	898	4	108	27	-	34	4	5	2	79	6	34	506	89
	일반학급	114	1	29	8	-	5	-	1	-	22	2	2	31	13
2011년	전 체	1,528	10	268	16	-	24	16	6	94	114	37	49	478	416
	특수학교	492	5	70	3	-	8	5	2	90	12	3	6	125	163
	특수학급	903	5	177	11	-	16	9	3	2	93	30	33	338	186
	일반학급	133	-	21	2	-	-	2	1	2	9	4	10	15	67
2012년	전 체	1,651	18	264	20	-	25	24	5	90	146	48	67	448	496
	특수학교	443	3	63	4	-	3	13	-	90	10	2	4	80	171
	특수학급	1,013	15	171	15	-	15	10	4	-	123	39	53	354	214
	일반학급	195	-	30	1	-	7	1	1	-	13	7	10	14	111
2013년	전 체	1,306	8	270	15	-	37	15	2	79	206	117	105	-	452
	특수학교	237	3	33	2	-	3	2	-	79	16	9	26	-	64
	특수학급	841	4	203	11	-	29	6	1	-	160	100	65	-	262
	일반학급	228	1	34	2	-	5	7	1	-	30	8	14	-	126

주 1)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프로그램

2)\*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표 2-4-1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구 분	전 체		전문대학		대학교	
	실시대학	학생 수	실시대학	학생 수	실시대학	학생 수
2005년	64	389	11	45	53	344
2006년	73	419	10	31	63	388
2007년	80(78)	518	9(7)	79	71(71)	439
2008년	82(72)	560	8(7)	100	74(65)	460
2009년	90(80)	561	10(10)	74	80(70)	498
2010년	99(87)	652	19(12)	51	80(75)	601
2011년	103(91)	634	14(14)	60	89(77)	574
2012년	106(100)	663	16(16)	97	90(84)	566
2013년	122(106)	834	25(17)	185	97(89)	649

주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수임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 설명 보기 : 374페이지 참조

- 2013년도에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대학은 전문대학 25개교와 4년제 대학교 97개교로 모두 122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전문대학 17개교 185명, 대학 89개교 649명으로 총 106개 대학 834명임

※ 1995년부터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다. 특수교육 예산

〈표 2-4-17〉 특수교육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 분	교육부 예산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예산비율	수혜 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0년	19,172,027,020	340,225,173	1.8	54,732	6,216
2001년	20,049,279,000	406,310,075	2.0	51,330	7,916
2002년	22,278,358,000	443,073,183	2.0	54,470	8,134
2003년	24,404,401,310	564,394,700	2.3	53,404	10,568
2004년	26,384,088,000	666,840,034	2.5	55,374	12,042
2005년	27,438,044,595	822,051,094	3.0	58,362	14,085
2006년	29,426,304,000	1,051,284,265	3.6	62,538	16,810
2007년	31,044,748,000	1,145,295,143	3.7	65,940	17,369
2008년	35,897,425,000	1,352,939,269	3.8	71,484	18,926
2009년	38,698,867,000	1,545,753,946	4.0	75,187	20,559
2010년	38,595,975,000	1,667,641,925	4.3	79,711	20,921
2011년	41,618,722,000	1,966,284,753	4.7	82,665	23,786
2012년	45,752,654,000	2,138,496,638	4.7	85,012	25,155
2013년	49,643,947,000	2,245,781,336	4.5	86,633	25,923

주 1) 교육부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임

2) 특수교육예산비율(%) = (특수교육예산/교육부 예산)×100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특수교육비'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2013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2조 2,458억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약 1,073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13년 9월 현재 교육부문 예산의 4.5%를 차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5,92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8천원 증가함

#### 4. 직업훈련

〈표 2-4-1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단위 : %)

구 分	경제활동상태 변동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4차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	추정 수 전 체	675,779 100.0	61,750 100.0	53,785 100.0	1,051,801 100.0
	있 음	0.3	1.7	0.0	0.3
	없 음	99.7	98.3	100.0	99.7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추정 수 전 체	675,778 100.0	61,750 100.0	53,786 100.0	1,051,801 100.0
	있 음	11.0	13.2	6.5	5.0
	없 음	89.0	86.8	93.5	95.0

주 : 직업능력개발 경험(누적)은 1차조사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 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표 2-4-19〉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

구 分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 정 수	2,205,517	923,369	38,068	1,244,080
	전 체	100.0	100.0	100.0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 음	7.9	11.1	19.4
	없 음	92.1	88.9	80.6

주 :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1차 조사(2008년)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 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함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1차 조사시 응답받은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의 경험을 합산하여 공공기관이나 학원 등의 사설 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7.9%임
  - 그 비율은 실업자가 19.4%로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4-20〉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단위 : %)
	구 분	비 율
	전 체	100.0
직업교육훈련 분야	농림어업, 광업분야	4.3
	섬유분야	2.0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3
	금속분야	0.8
	기계·장비 분야	14.6
	건설분야	3.5
	전기·전자 분야	5.8
	컴퓨터·정보·통신분야	20.6
	서비스 분야	19.5
	업무관리분야	3.0
	의료분야	5.8
	운송장비 제조 분야	4.6
	산업응용분야	1.9
	공예분야	2.5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0.2
	공무원, 고시준비	2.6
	예술 및 체육분야	1.1
	어학분야	3.0
	기타	3.4
	모름/응답거절	0.2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	25.1
	사설학원	38.5
	직업훈련법인	16.1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2.6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2.3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1.5
	복지관,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	8.2
	통신교육기관	0.3
	기타	5.4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표 2-4-21〉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단위 : %)			
구 分	전 체	구 分	전 체
참여정도	100.0	도움정도	100.0
참여하지 않음	6.4	도움되지 않음	26.0
보통	4.9	보통	9.6
참여함	88.7	도움됨	64.3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기초분석보고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28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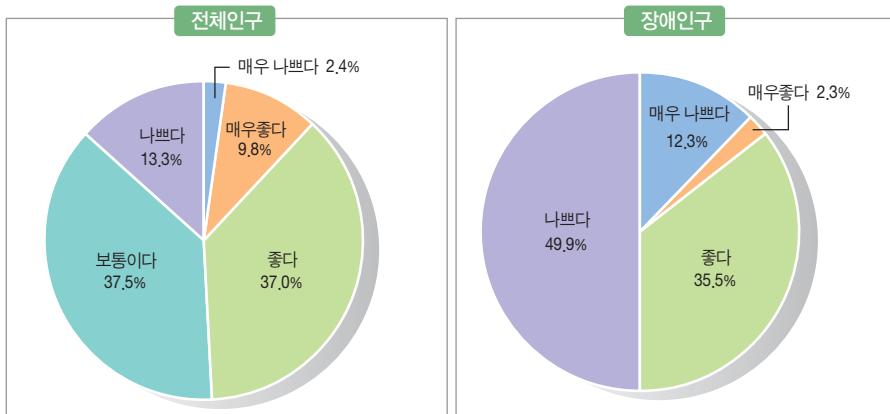
☞ ‘직업능력개발’ 설명 보기 : 375페이지 참조

-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한 비율은 88.7%인 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로 나타남

## 제5절 보건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5-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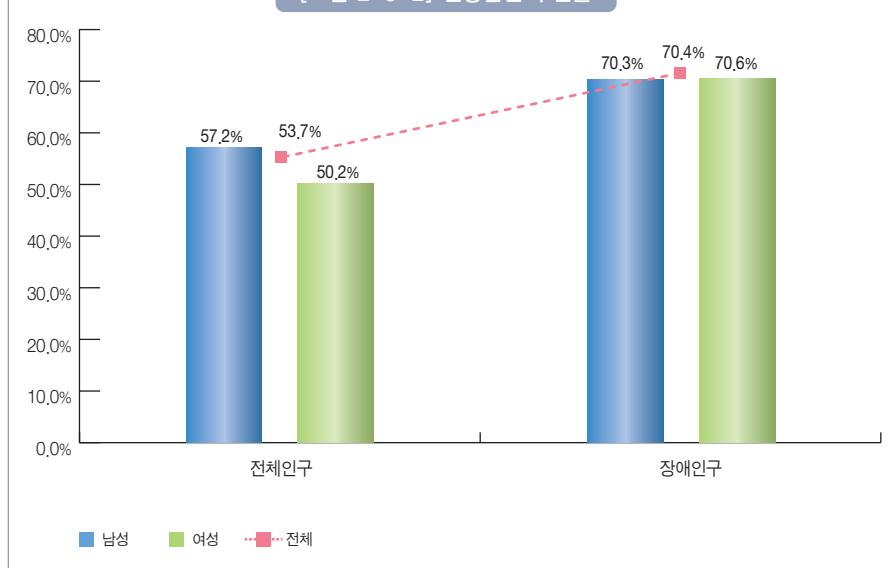


-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3) 장애인구는 4점 척도, 전체인구는 5점 척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장애인은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62.2%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체인구는 '좋다' 46.8%, '보통이다' 37.5%, '나쁘다' 15.7%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5-2] 건강검진 수진율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전체인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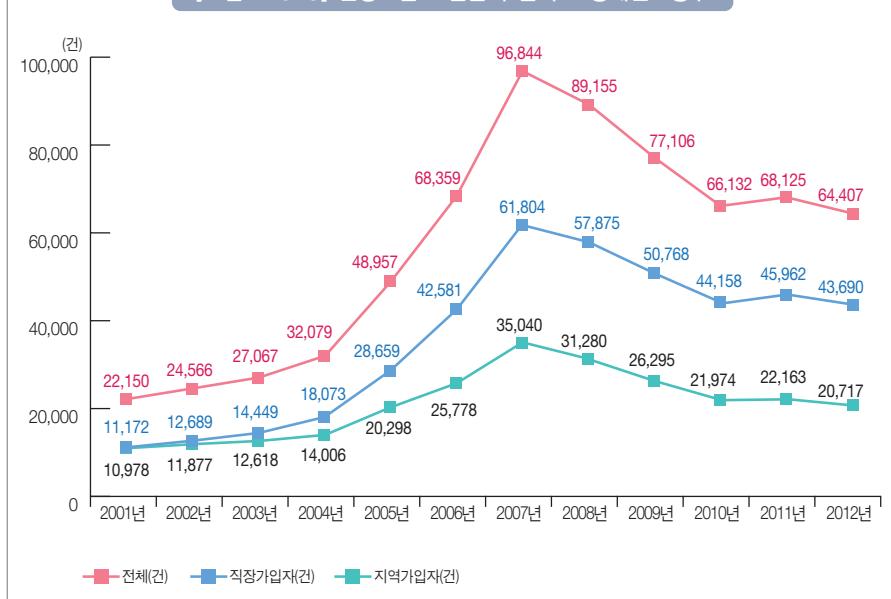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20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장애인구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4%로 전체인구의 건강검진 수진율 5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의 성별 건강검진 수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7.0%p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구의 성별 격차는 0.3%p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 확연한 분포 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2-5-3]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주 : 지급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2013.



건강보험 급여 실적 중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는 64,407건이며, 직장가입자는 43,690건, 지역가입자는 20,717건임



## 1. 건강상태 및 행태

### 가. 주관적 건강평가

〈표 2-5-1〉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

구 분	전 체	
	전체인구	장애인구
매우 좋음	9.8	2.3
좋음	37.0	35.5
보통이다	37.5	-
나쁨	13.3	49.9
매우 나쁨	2.4	12.3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3) 전체인구는 5점 척도 적용, 장애인구는 4점척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327페이지 참조

〈표 2-5-2〉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

구 분	전체인구	장애인구
매우 좋다	2.3	0.8
약간 좋다/건강한 편	17.3	8.8
보통이다	31.7	25.3
약간 나쁘다/나쁜 편이다	40.0	41.9
매우 나쁘다	8.7	23.2

주 : 1) 2008년 기준임

2) 201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건강평가는 조사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고서」,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41/327페이지 참조

- 2011년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장애인은 '나쁘다' 62.2%, '좋다' 37.8%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체인구는 '좋다' 46.8%, '보통이다' 37.5%, '나쁘다' 15.7% 등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3〉 평소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좋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005년	2,099,279	100.0	2.7	34.5	-	42.9	19.9
2008년	2,137,226	100.0	5.7	16.7	25.7	35.1	16.8
2011년	2,611,126	100.0	2.3	35.5	-	49.9	12.3
지 체	1,325,878	100.0	1.6	36.7	-	50.9	10.7
뇌 병 변	316,309	100.0	0.6	15.2	-	56.3	27.9
시 각	256,839	100.0	2.4	42.6	-	48.0	7.0
청 각	278,337	100.0	3.1	41.5	-	47.8	7.7
언 어	21,049	100.0	11.6	37.7	-	45.1	5.6
지 적	153,333	100.0	7.3	56.0	-	32.3	4.4
자 폐 성	16,237	100.0	18.5	67.8	-	13.8	-
정 신	103,893	100.0	4.1	34.6	-	52.2	9.1
신 장	58,500	100.0	-	16.2	-	56.0	27.8
심 장	18,509	100.0	-	34.6	-	53.0	12.4
호흡 기	19,249	100.0	-	8.3	-	56.6	35.0
간	9,289	100.0	-	41.2	-	26.2	32.6
안 면	2,427	100.0	-	41.8	-	47.0	11.2
장루 · 요루	16,705	100.0	-	10.7	-	63.5	25.8
간 질	14,572	100.0	-	19.8	-	66.8	13.5

주 : 2005년의 경우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62.2%로 2008년(51.9%)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장애(91.6%), 장루·요루장애(89.3%), 뇌병변장애(84.2%), 신장장애(83.8%)의 경우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폐성장애(86.3%), 지적장애(63.3%)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장애치료

〈표 2-5-4〉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체	2,611,126	100.0	72.4	27.6
지 체	1,325,877	100.0	67.7	32.3
뇌 병 변	316,309	100.0	87.4	12.6
시 각	256,841	100.0	70.3	29.7
청 각	278,337	100.0	70.5	29.5
언 어	21,049	100.0	72.0	28.0
지 적	153,332	100.0	49.7	50.3
자 폐 성	16,238	100.0	71.9	28.1
정 신	103,894	100.0	96.1	3.9
신 장	58,500	100.0	100.0	-
심 장	18,508	100.0	100.0	-
호흡 기	19,249	100.0	97.3	2.7
간	9,289	100.0	100.0	-
안 면	2,426	100.0	61.1	38.9
장루 · 요루	16,705	100.0	93.2	6.8
간 질	14,572	100.0	100.0	-

주 : 1) 2011년 기준

2)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치료’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현재 장애인들이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72.4%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장, 심장, 간 등 내부장애인이 경우 100% 진료를 받고 있어 다른 장애보다 월등하게 높아 차이를 보임

## 다. 만성질환

〈표 2-5-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70.0	30.0
지 체	1,325,877	100.0	68.3	31.7
뇌 병 변	316,309	100.0	88.1	11.9
시 각	256,841	100.0	64.7	35.3
청 각	278,337	100.0	70.7	29.3
언 어	21,049	100.0	56.1	43.9
지 적	153,332	100.0	36.1	63.9
자 폐 성	16,238	100.0	20.8	79.2
정 신	103,894	100.0	83.2	16.8
신 장	58,500	100.0	95.8	4.2
심 장	18,508	100.0	69.5	30.5
호흡기	19,249	100.0	96.6	3.4
간	9,289	100.0	70.0	30.0
안 면	2,426	100.0	57.9	42.1
장루·요루	16,705	100.0	81.1	18.9
간 질	14,572	100.0	100.0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전체 장애인의 70.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질장애가 10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96.6%, 신장장애 95.8%, 뇌병변장애 88.1%, 정신장애 83.2% 등의 순으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음

## 2. 보건의료이용

### 가. 예방

〈표 2-5-6〉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224,316	100.0	70.4	29.6
지 체	1,203,431	100.0	75.5	24.5
뇌 병 변	281,341	100.0	58.1	41.9
시 각	223,262	100.0	72.1	27.9
청 각	255,696	100.0	72.3	27.7
언 어	14,846	100.0	75.2	24.8
지 적	44,197	100.0	62.0	38.0
자 폐 성	-	-	-	-
정 신	77,523	100.0	51.2	48.8
신 장	51,541	100.0	49.1	50.9
심 장	15,277	100.0	74.2	25.8
호 흡 기	19,043	100.0	50.9	49.1
간	8,595	100.0	78.2	21.8
안 면	1,923	100.0	69.1	30.9
장루 · 요루	16,705	100.0	62.6	37.4
간 질	10,936	100.0	53.3	46.7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구의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진율은 70.4%로 2008에 비해 17.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78.2%), 지체장애(75.5%), 언어장애(75.2%), 심장애(74.2%)등이 건강 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았던 반면, 신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장애 등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표 2-5-7〉 건강검진 유형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건강검진 유형					
		소 계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건강검진	의료급여 대상	기 타
전 체	1,566,236	100.0	7.4	0.3	80.5	11.7	0.2
지 체	908,017	100.0	6.1	0.4	84.3	9.0	0.2
뇌 병 변	163,403	100.0	16.0	-	67.6	16.4	-
시 각	161,081	100.0	4.1	0.2	86.3	9.3	0.1
청 각	184,811	100.0	7.8	-	81.6	10.1	0.6
언 어	11,157	100.0	4.0	-	93.6	2.1	-
지 적	27,405	100.0	7.2	-	38.9	53.8	-
자 폐 성	-	-	-	-	-	-	-
정 신	39,667	100.0	1.4	-	61.1	37.5	-
신 장	25,310	100.0	18.1	-	71.4	10.5	-
심 장	11,341	100.0	6.3	-	72.5	21.2	-
호흡 기	9,702	100.0	6.5	-	67.0	26.5	-
간	6,724	100.0	33.7	-	48.5	17.8	-
안 면	1,329	100.0	-	-	80.4	19.6	-
장루 · 요루	10,460	100.0	18.7	-	77.4	4.0	-
간 질	5,829	100.0	-	-	58.7	41.3	-

주 1) 건강검진수진율 :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

2) 자폐성장애 무응답

3)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유형으로는 '건강보험 건강검진'80.5%, '의료급여 대상'11.7%,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53.8%, '간질장애'41.3%, '정신장애'37.5%가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고, '간장애'33.7%, '장루·요루장애'18.7%, '신장장애'18.1%, '뇌병변 장애'16.0%의 순으로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을 많이 받음

## 나. 외래

〈표 2-5-8〉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18.9	81.1
지 체	1,325,877	100.0	20.9	79.1
뇌 병 변	316,309	100.0	24.9	75.1
시 각	256,841	100.0	15.9	84.1
청 각	278,337	100.0	13.6	86.4
언 어	21,048	100.0	5.4	94.6
지 적	153,332	100.0	16.5	83.5
자 폐 성	16,238	100.0	27.0	73.0
정 신	103,894	100.0	10.3	89.7
신 장	58,501	100.0	7.4	92.6
심 장	18,508	100.0	5.8	94.2
호흡기	19,249	100.0	11.5	88.5
간	9,289	100.0	14.7	85.3
안 면	2,426	100.0	16.8	83.2
장루·요루	16,704	100.0	29.0	71.0
간 질	14,573	100.0	22.2	77.8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유무(치과 제외)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8.9%가 있다고 응답하여 진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루·요루장애' 29.0%, '자폐성장애' 27.0%, '뇌병변장애' 24.9%의 비율로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9〉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

구 분	병의원에 가지 못한이유							
	소 계	경제적인 이유	예약이 힘들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회망하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않음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가 싫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기타
전 체	100.0	58.7	1.9	18.7	8.8	4.1	4.4	3.4
지 체	100.0	61.3	1.6	14.7	11.7	4.8	3.6	2.3
뇌 병 변	100.0	43.6	2.6	38.2	2.9	2.3	2.1	8.3
시 각	100.0	63.4	1.2	13.5	7.5	1.9	10.9	1.7
청 각	100.0	56.3	4.6	25.8	5.2	3.6	3.7	0.7
언 어	100.0	63.8	-	-	-	-	36.2	-
지 적	100.0	67.3	2.3	5.4	3.4	6.2	10.0	5.4
자 폐 성	100.0	83.7	-	2.3	4.9	9.0	-	-
정 신	100.0	66.5	-	-	11.6	7.8	-	14.1
신 장	100.0	24.6	-	39.0	18.7	-	17.6	-
심 장	100.0	79.0	-	21.0	-	-	-	-
호흡 기	100.0	46.3	-	33.8	10.5	-	9.3	-
간	100.0	100.0	-	-	-	-	-	-
안 면	100.0	16.2	-	-	83.8	-	-	-
장루 · 요루	100.0	57.6	-	39.6	-	-	2.9	-
간 질	100.0	89.4	7.8	-	-	-	-	2.8

주 1)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최근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58.7%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통이 불편해서'가 18.7%로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1년동안 병원에 가지못했다고 '간장애' 100%, '간질장애' 89.4%, '자폐성장애' 83.7% 순으로 높게 보고함

## 다. 스트레스

〈표 2-5-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 일)

구 분	전국추정수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소 계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126	100.0	11.5	41.2	34.5	12.8
지 체	1,325,877	100.0	10.0	41.4	37.4	11.6
뇌 병 변	316,309	100.0	16.1	46.2	26.6	11.1
시 각	256,841	100.0	14.6	36.6	34.4	14.3
청 각	278,337	100.0	7.8	38.1	38.5	15.6
언 어	21,049	100.0	18.8	44.5	20.9	15.8
지 적	153,332	100.0	6.3	36.1	36.0	21.6
자 폐 성	16,238	100.0	19.9	45.2	23.9	11.1
정 신	103,894	100.0	18.0	44.0	21.8	16.2
신 장	58,500	100.0	19.3	43.4	31.5	5.7
심 장	18,508	100.0	6.1	68.6	24.7	0.7
호흡 기	19,249	100.0	10.7	52.7	24.3	12.3
간	9,289	100.0	19.9	19.3	35.9	24.9
안 면	2,426	100.0	23.9	31.0	30.1	15.0
장루 · 요루	16,705	100.0	13.1	48.0	30.8	8.2
간 질	14,572	100.0	22.5	57.9	13.9	5.7

주 :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87.2%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52.7%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안면장애, 간질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등이며, 지적장애, 간장애 등을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11〉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단위 : 만원,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전 체	2,611,126	100.0	21.0	79.0
지 체	1,325,877	100.0	17.6	82.1
뇌 병 변	316,309	100.0	33.2	66.8
시 각	256,841	100.0	17.4	82.6
청 각	278,337	100.0	14.3	85.7
언 어	21,049	100.0	12.4	87.6
지 적	153,332	100.0	14.1	85.9
자 폐 성	16,238	100.0	12.7	87.3
정 신	103,894	100.0	49.6	50.4
신 장	58,500	100.0	28.3	71.7
심 장	18,508	100.0	23.3	76.7
호 흡 기	19,249	100.0	26.1	73.9
간	9,289	100.0	38.8	61.2
안 면	2,426	100.0	25.3	74.7
장루 · 요루	16,705	100.0	22.1	77.9
간 질	14,572	100.0	58.0	42.0

주 1) 최근 1년동안 연속 2주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 지장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함
  -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다른 장애에 비해 슬픔,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라. 기타

〈표 2-5-12〉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구 분	(단위 : %)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합병원재활의학과	29.7	31.3	28.3	32.9	27.5	34.9	21.8	10.4	
재활전문병원	27.3	32.0	30.6	19.0	23.9	30.8	19.8	13.8	
요양병원	7.8	6.0	11.0	8.9	8.8	13.3	6.2	-	
낮 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3.3	3.4	3.0	3.0	3.3	-	3.4	3.7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13.4	12.9	19.4	10.0	13.8	8.2	12.8	11.6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등)	11.9	9.1	3.7	16.7	13.8	8.4	28.0	54.7	
주치의(단골의사)	6.5	5.1	3.9	9.0	8.5	4.5	7.9	5.8	
기타	0.2	0.1	0.1	0.6	0.5	-	0.2	-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정류요루	간질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5.5	33.2	26.6	35.9	15.1	46.5	26.6	31.0
재활전문병원	14.8	15.0	16.1	15.9	22	1.7	3.7	27.4
요양병원	20.0	5.2	-	10.6	3.1	-	15.5	1.4
낮 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1.7	5.0	4.8	3.8	5.3	11.2	8.6	1.6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12.0	13.0	3.8	14.4	9.0	6.8	16.7	10.5
특화서비스(여성전문, 치과, 소아등)	18.4	18.6	26.6	2.4	8.9	33.8	9.1	25.2
주치의(단골의사)	7.4	10.0	22.0	17.1	35.0	-	17.0	3.0
기타	0.3	-	-	-	1.0	-	2.8	-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로는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29.7%, '재활전문병원' 27.3%, '방문재활치료' 13.4%, '특화서비스' 11.9%, '요양병원'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각종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전문 병원에 대한 응답이 각각 32.0%, 30.6%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인(54.7%)과 지적장애인(28.0%)은 장애인 특화서비스를 다수 응답함

### 3. 보건의료제도

#### 가. 건강보험

〈표 2-5-13〉 건강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직장건강 보험	지역건강 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2005년	2,101,057	100.0	43.1	38.5	12.2	5.8	0.4
2008년	2,137,226	100.0	44.9	33.3	15.7	5.6	0.5
2011년	2,611,126	100.0	53.1	29.4	14.4	2.7	0.4
지 체	1,325,877	100.0	55.4	31.9	10.3	2.1	0.3
뇌 병 변	316,310	100.0	52.8	25.1	19.1	2.5	0.4
시 각	256,841	100.0	58.0	29.6	9.0	3.3	0.1
청 각	278,337	100.0	61.2	26.3	10.6	1.1	0.8
언 어	21,048	100.0	48.0	34.3	8.7	9.0	-
지 적	153,331	100.0	35.8	30.2	27.9	6.1	-
자 폐 성	16,239	100.0	64.6	24.8	6.6	4.0	-
정 신	103,894	100.0	22.1	20.4	49.1	7.9	0.5
신 장	58,500	100.0	41.0	38.3	18.6	1.5	0.7
심 장	18,509	100.0	57.8	10.4	23.9	7.9	-
호 흡 기	19,249	100.0	48.2	19.0	26.7	-	6.1
간	9,289	100.0	59.6	23.4	12.9	-	4.2
안 면	2,426	100.0	42.9	46.4	10.8	-	-
장루·요루	16,704	100.0	76.0	17.7	6.3	-	-
간 질	14,572	100.0	26.2	25.8	41.1	2.8	4.0

주 : 2005년의 경우 미가입의 비율을 기타로 분류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가입 여부’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82.5%, ‘의료급여대상자’ 17.1%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8년 조사결과와 유사함
- 장루·요루장애(93.7%), 자폐성장애(89.4%), 청각장애(87.5%), 지체장애(87.3%)가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57.0%)와 간질장애(43.9%)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14〉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131,654	136,696	150,278	164,293	183,659	214,392	245,755	263,798	299,682	337,963	360,559	373,340
현물급여비	130,461	135,547	149,181	163,185	182,241	212,890	243,830	261,659	296,415	332,996	354,484	366,744
- 요양급여	129,406	134,245	147,552	161,305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357,145
(본인부담액사전지급)	-	-	-	(66)	(300)	(293)	(509)	(1,236)	(1,009)	(850)	(1,157)	(1,478)
- 건강진단비	1,054	1,302	1,629	1,880	2,356	3,574	4,273	5,660	7,251	8,027	8,832	9,598
현금급여비	1,194	1,149	1,096	1,108	1,417	1,502	1,925	2,138	3,266	4,967	6,075	6,596
- 요양비	215	238	255	242	175	167	169	177	213	217	202	200
- 장제비	500	521	513	500	492	466	500	38	1	1	-	-
- 본인부담액보상금	414	323	257	280	276	199	204	29	5	2	1	1
- 장애인보장구	65	67	71	86	217	380	615	440	343	289	271	273
(본인부담액사후환급)	-	-	-	-	(257)	(290)	(436)	(1,455)	(1,690)	(3,268)	(3,935)	(4,016)
임신 출산전 진료비									1,014	1,191	1,664	2,104

주 1) 지급기준임

2) 반율립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3) 본인부담액상한계는 2004.7.1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2012년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37조 3,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781억원 증가함
  -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진단비) 36조 6,744억원,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등) 6,596억원임

〈표 2-5-15〉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단위 : 건, 천원)

구 分	전 체		직 장		지 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22,150	6,489,959	11,172	3,102,702	10,978	3,387,257
2002년	24,566	6,693,043	12,689	3,322,603	11,877	3,370,440
2003년	27,067	7,149,238	14,449	3,674,048	12,618	3,475,190
2004년	32,079	8,599,146	18,073	4,686,056	14,006	3,913,090
2005년	48,957	21,669,161	28,659	12,329,071	20,298	9,340,090
2006년	68,359	37,969,972	42,581	23,153,019	25,778	14,816,953
2007년	96,844	61,536,703	61,804	38,403,159	35,040	23,133,544
2008년	89,155	44,046,494	57,875	28,063,964	31,280	15,982,530
2009년	77,106	34,286,658	50,768	22,178,437	26,295	12,099,186
2010년	66,132	28,902,450	44,158	18,870,772	21,974	10,031,678
2011년	68,125	27,180,231	45,962	17,879,216	22,163	9,301,013
2012년	64,407	27,362,806	43,690	18,076,488	20,717	9,286,318

주 1) 지급기준임

2) 반율립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건강보험 급여 실적 중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지급건수는 64,407건이며, 지급금액은 27,362,806천원임

〈표 2-5-1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단위 : 일, 원)

구 分	전 체	1종				2종				
		소계	일반	행려자	노숙인	소계	일반	장애인 1차 진료	장애인 2차 진료	
전당 내원일수		1,43	1.51	1.50	16.83	0.99	1.12	1.07	1.00	2.52
전당 의료급여비용	66,680	74,985	74,665	921,884	62,584	34,703	30,577	20,907	166,870	
전당 기금부담금	65,613	74,257	73,936	921,884	62,584	32,333	28,689	19,847	149,651	
일당 의료	내 원	46,774	49,810	49,788	54,781	63,126	31,037	28,523	20,903	66,186
급여비용	요 양	10,239	10,662	10,623	49,158	5,069	7,702	6,553	12,095	27,376

주 1) 심사결정 기준임

2) 2012년 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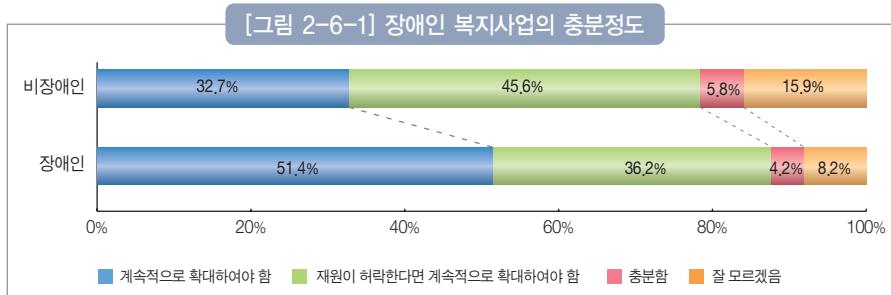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설명 보기 : 376페이지 참조

- 2012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전당 평균의료급여비용은 34,703원이며, 그 가운데 장애인 1차 진료 시 20,907원, 2차 진료 시 166,87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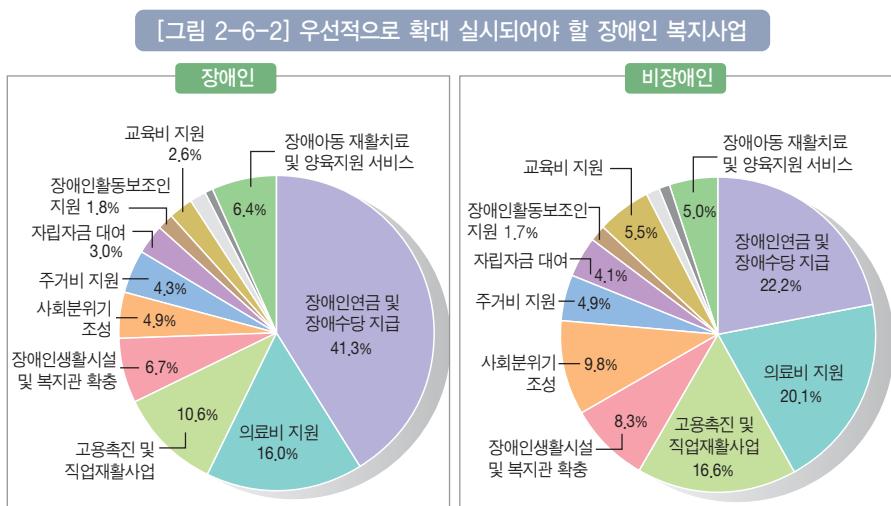
## 제6절 복지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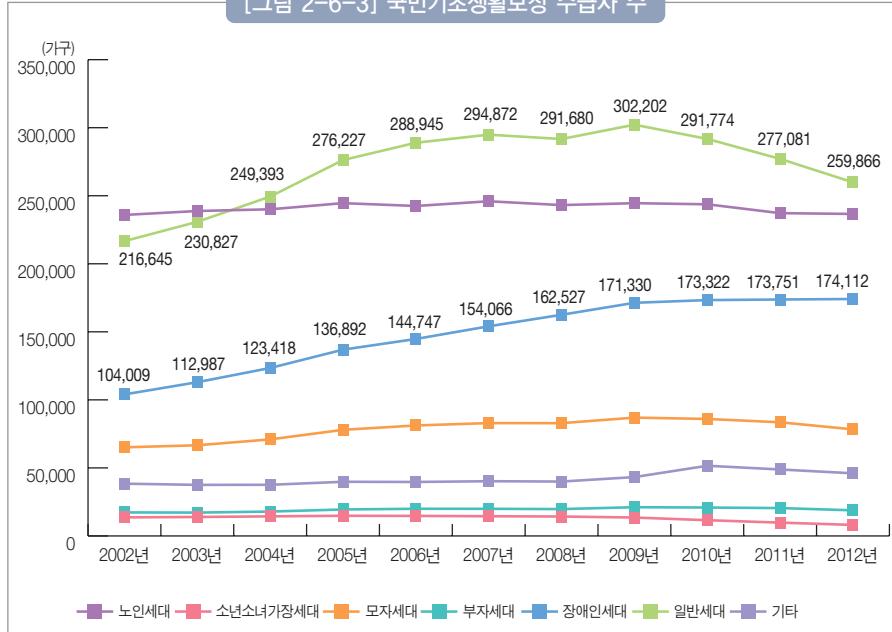
주 1)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주된 응답을 분석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의 경우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3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41.3%, '의료비 지원' 16.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10.6% 등의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주 :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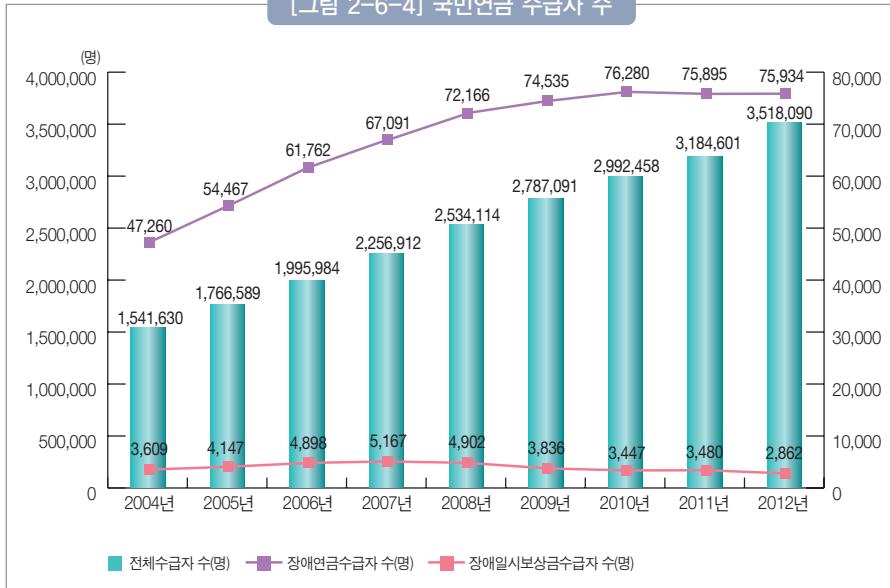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3.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2.8%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1.6%임

- 장애인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전체 일반수급자 821,879가구 중 21.2%인 174,112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6-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주 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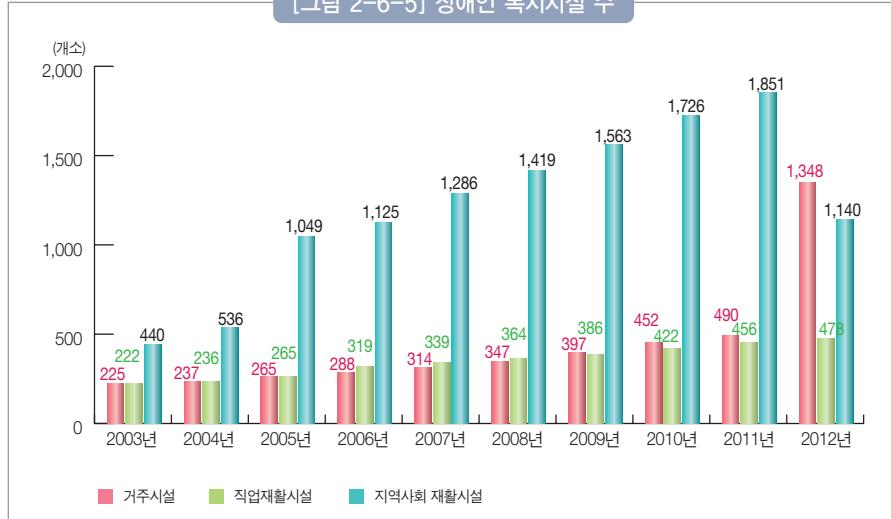
2)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3.



2012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자는 78,796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 수는 75,934명(96.4%)이며,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2,862명(3.6%)임

[그림 2-6-5] 장애인 복지시설 수



주 1)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2) 2012년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1,348개소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478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1,140개소임

## 1. 복지서비스

〈표 2-6-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많이 받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666,505	100.0	2.0	28.7	-	26.2	43.1
2008년	2,137,224	100.0	3.1	33.8	9.0	48.0	6.0
2011년	2,517,314	100.0	2.7	34.9	-	44.5	17.8
지 체	1,295,819	100.0	1.1	30.1	-	49.1	19.7
뇌 병 변	305,008	100.0	4.1	41.5	-	37.9	16.5
시 각	248,158	100.0	1.5	29.1	-	47.3	22.1
청 각	259,337	100.0	1.3	36.4	-	44.7	17.6
언 어	18,444	100.0	4.5	24.7	-	55.6	15.2
지 적	152,134	100.0	6.2	52.0	-	33.4	8.4
자 폐 성	15,793	100.0	5.3	42.9	-	40.4	11.3
정 신	99,803	100.0	5.8	53.5	-	30.9	9.8
신 장	56,600	100.0	19.0	49.4	-	22.7	8.9
심 장	12,864	100.0	8.4	45.8	-	37.3	8.5
호흡기	17,218	100.0	21.1	33.5	-	40.1	5.3
간	8,117	100.0	7.7	33.1	-	22.3	36.8
안 면	2,426	100.0	-	51.5	-	24.0	24.5
장루·요루	13,509	100.0	-	24.7	-	43.4	31.9
간 질	12,084	100.0	13.1	40.3	-	35.6	11.1

주 : 2005년 4점 척도, 2008년 5점 척도, 2011년 4점 척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는 '받고 있다'가 전체의 37.6%, '받지 못하고 있다'가 62.3%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음
  - 2008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0.7%p 늘어남.

## 가. 서비스 이용

〈표 2-6-2〉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구 분	이용경험률 (단위 : %)
장애인연금 지급	11.3
경증장애인수당	14.6
장애인아동수당	1.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6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1
장애인 의료비 지원	7.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4.3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4.9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1.2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8.2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5.4
세금공제 및 면제	24.5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4.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4.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45.6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6
장애인아동재활치료비우대	2.0
노인장기요양보험	3.8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써 장애인의 84.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장애인의 74.0%가 경험,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은 장애인의 45.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이용희망률

구 분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직업재활시설	1.8	12.0
장애인복지관	10.8	31.2
장애인 재활병·의원	2.4	26.3
주간·단기보호시설	0.6	10.0
장애인체육관	1.5	16.5
장애인심부름센터	0.6	18.8
수화통역센터	0.4	0.9
정신의료기관	2.5	2.7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0.4	1.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4	30.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9	15.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	13.5
점자도서관	0.3	0.6
정신보건센터	0.3	1.7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4.9	2.6
특수교육지원센터	0.8	2.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3	13.7
장애인아동 보육시설	1.0	0.7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8%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기관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용희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31.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0%, '장애인 재활병·의원'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서비스 욕구

〈표 2-6-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分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610,251	1,325,009	316,309	256,840	278,337	21,048	153,331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보장	38.2	39.5	32.9	38.5	35.9	24.6	43.4	12.5
의료보장	31.5	30.5	41.0	28.8	35.3	28.9	17.4	11.7
고용보장	8.6	9.2	5.6	8.6	8.7	20.6	10.5	8.2
주거보장	8.0	8.1	7.2	9.1	6.8	8.3	7.4	5.2
이동권보장	2.0	2.0	3.6	1.9	0.6	0.0	2.0	5.0
보육·교육 보장	2.4	1.6	1.2	2.2	2.5	5.4	9.5	29.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2.0	1.1	0.9	1.4	6.4	1.4	2.8
장애인 인권보장	3.3	2.9	2.3	4.6	3.2	5.8	5.7	16.4
장애인 인식개선	1.8	1.4	1.2	2.9	2.8	0.0	2.1	7.8
장애인 예방	1.0	1.1	1.2	1.1	0.9	0.0	0.1	0.6
기타	0.4	0.4	0.8	0.3	0.0	0.0	0.5	0.0
없음	1.2	1.1	1.9	1.2	2.0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 31.5%, '고용보장' 8.6% 등의 순임

〈표 2-6-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계속)

(단위 : 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103,894	58,499	18,508	19,249	9,287	2,426	16,705	14,57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보장	45.3	44.6	21.4	33.3	35.5	40.9	27.1	43.6
의료 보장	24.4	34.9	48.2	35.8	52.7	32.2	51.6	30.6
고용 보장	7.6	4.0	7.4	4.8	6.8	11.2	7.9	11.1
주거 보장	11.9	7.3	2.8	20.8	0.0	0.0	9.1	6.7
보육·교육보장	1.3	2.5	5.8	0.0	0.0	0.0	0.0	0.0
고용 보장	0.4	0.0	13.3	0.0	2.4	2.9	1.1	2.9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0.9	0.6	0.0	0.0	0.0	0.0	0.0	0.0
장애인인권 보장	3.2	4.6	0.0	1.9	0.0	10.8	1.5	0.9
장애인인식 개선	2.5	0.8	1.1	0.0	2.7	2.0	0.0	0.0
장애예방	1.7	0.2	0.0	1.3	0.0	0.0	0.7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4.0
없음	0.9	0.4	0.0	2.1	0.0	0.0	1.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등의 순임

〈표 2-6-5〉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단위 : %)

구 분	전 체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년	100.0	36.6	47.4	2.2	13.8
2009년	100.0	34.7	44.5	3.5	17.3
2011년	100.0	33.8	45.4	5.6	15.2
장애인	100.0	51.4	36.2	4.2	8.2
1~2급	100.0	64.1	29.7	2.7	3.6
3~4급	100.0	51.2	35.4	3.9	9.5
5~6급	100.0	46.4	39.6	5.0	9.0
비장애인	100.0	32.7	45.6	5.8	15.9

주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15세 이상 인구의 45.4%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의 경우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32.7%)보다 높게 나타남

〈표 2-6-6〉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단위 : %)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7.9	20.0	23.4	41.3	22.2
의료비 지원	21.3	19.0	20.0	16.0	20.1
교육비 지원	5.8	5.4	5.2	2.6	5.5
주거비 지원	5.4	5.3	4.8	4.3	4.9
자립자금 대여	4.2	5.5	4.0	3.0	4.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3.6	20.2	16.5	10.6	16.6
장애인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7.5	9.6	8.1	6.7	8.3
장애인보조기구 배부	1.4	1.6	1.3	1.4	1.3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1.6	1.9	1.7	1.8	1.7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0.4	0.7	0.4	0.9	0.5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10.7	10.8	9.5	4.9	9.8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서비스	-	-	5.0	6.4	5.0
기타	0.0	0.0	0.1	0.1	0.1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인 복지사업’ 설명 보기 : 377페이지 참조

-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지급’ 41.3%, ‘의료비 지원’ 16.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10.6% 등의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사회보장

### 가. 기초생활보장

〈표 2-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비대상 가구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의료·교육· 자활특례
2005년	2,101,057	100.0	83.4	14.4	0.8	1.4
2008년	2,137,226	100.0	80.9	18.3	0.4	0.4
2011년	2,611,126	100.0	83.0	16.2	0.7	0.0
지 체	1,325,877	100.0	87.7	11.8	0.5	0.0
뇌 병 변	316,309	100.0	78.5	20.8	0.7	0.0
시 각	256,841	100.0	87.8	11.2	1.0	0.0
청 각	278,337	100.0	87.9	11.7	0.4	0.0
언 어	21,049	100.0	82.3	12.6	5.1	0.0
지 적	153,332	100.0	67.0	31.3	1.7	0.0
자 폐 성	16,238	100.0	89.4	10.6	0.0	0.0
정 신	103,894	100.0	43.0	54.4	2.6	0.0
신 장	58,500	100.0	79.9	20.1	0.0	0.0
심 장	18,508	100.0	68.1	31.9	0.0	0.0
호 흡 기	19,249	100.0	73.3	26.7	0.0	0.0
간	9,289	100.0	87.1	12.9	0.0	0.0
안 면	2,426	100.0	89.2	10.8	0.0	0.0
장루 · 요루	16,705	100.0	93.7	1.7	0.0	4.6
간 질	14,572	100.0	56.0	42.1	1.9	0.0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장애인 중 16.2%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로 2008년(18.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는 0.7%로 미미하고, '의료·교육·자활 특례'는 0.0%임
- 정신장애(57.0%), 간질장애(44.0%), 지적장애(33.0%)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8〉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전 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 세대	기 타
2002년	691,018 (100.0)	235,893 (34.1)	13,638 (2.0)	65,132 (9.4)	17,289 (2.5)	104,009 (15.1)	216,645 (31.4)	38,412 (5.6)
2003년	717,861 (100.0)	238,790 (33.3)	13,932 (1.9)	66,636 (9.3)	17,158 (2.4)	112,987 (15.7)	230,827 (32.2)	37,531 (5.2)
2004년	753,681 (100.0)	240,030 (31.8)	14,387 (1.9)	70,951 (9.4)	17,916 (2.4)	123,418 (16.4)	249,393 (33.1)	37,586 (5.0)
2005년	809,745 (100.0)	244,565 (30.2)	14,823 (1.8)	77,985 (9.6)	19,450 (2.4)	136,892 (16.9)	276,227 (34.1)	39,803 (4.9)
2006년	831,692 (100.0)	242,470 (29.2)	14,713 (1.8)	81,189 (9.8)	19,963 (2.4)	144,747 (17.4)	288,945 (34.7)	39,665 (4.8)
2007년	852,420 (100.0)	245,935 (28.9)	14,475 (1.7)	82,920 (9.7)	19,934 (2.3)	154,066 (18.1)	294,872 (34.6)	40,218 (4.7)
2008년	854,205 (100.0)	243,132 (28.5)	14,276 (1.7)	82,880 (9.7)	19,744 (2.3)	162,527 (19.0)	291,680 (34.1)	39,966 (4.7)
2009년	882,925 (100.0)	244,529 (27.7)	13,533 (1.5)	86,961 (9.8)	21,115 (2.4)	171,330 (19.4)	302,202 (34.2)	43,255 (4.9)
2010년	878,799 (100.0)	243,708 (27.7)	11,565 (1.3)	85,970 (9.8)	20,879 (2.4)	173,322 (19.7)	291,774 (33.2)	51,581 (5.9)
2011년	850,689 (100.0)	237,213 (27.9)	9,798 (1.2)	83,525 (9.8)	20,479 (2.4)	173,751 (20.4)	277,081 (32.6)	48,842 (5.7)
2012년	821,879 (100.0)	236,617 (28.8)	8,105 (1.0)	78,333 (9.5)	18,820 (2.3)	174,112 (21.2)	259,866 (31.6)	46,026 (5.6)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2.8%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1.6%임

- 장애인세대는 전체 일반수급자 821,879가구 중 21.2%인 174,112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6-9〉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전체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전 체	821,879 (100.0)	236,617 (100.0)	8,105 (100.0)	78,333 (100.0)	18,820 (100.0)	174,112 (100.0)	259,866 (100.0)	46,026 (100.0)
1년 미만	102,033 (12.4)	28,200 (11.9)	584 (7.2)	10,894 (13.9)	2,991 (15.9)	15,852 (9.1)	35,043 (13.5)	8,469 (18.4)
1~2년 미만	119,097 (14.5)	33,269 (14.1)	922 (11.4)	12,793 (16.3)	3,309 (17.6)	21,165 (12.2)	39,806 (15.3)	7,833 (17.0)
2~3년 미만	73,890 (9.0)	17,491 (7.4)	638 (7.9)	9,020 (11.5)	2,214 (11.8)	13,999 (8.0)	24,398 (9.4)	6,130 (13.3)
3~4년 미만	60,683 (7.4)	14,747 (6.2)	591 (7.3)	6,778 (8.7)	1,830 (9.7)	10,893 (6.3)	22,302 (8.6)	3,542 (7.7)
4~5년 미만	45,290 (5.5)	10,604 (4.5)	626 (7.7)	5,091 (6.5)	1,225 (6.5)	8,485 (4.9)	17,207 (6.6)	2,052 (4.5)
5~6년 미만	50,226 (6.1)	12,372 (5.2)	755 (9.3)	5,479 (7.0)	1,231 (6.5)	9,918 (5.7)	17,982 (6.9)	2,489 (5.4)
6~8년 미만	96,818 (11.8)	22,488 (9.5)	1,549 (19.1)	10,685 (13.6)	2,326 (12.4)	20,736 (11.9)	34,243 (13.2)	4,791 (10.4)
8~10년 미만	72,170 (8.8)	18,967 (8.0)	1,159 (14.3)	7,714 (9.8)	1,459 (7.8)	17,427 (10.0)	22,180 (8.5)	3,264 (7.1)
10년 이상	201,672 (24.5)	78,479 (33.2)	1,281 (15.8)	9,879 (12.6)	2,235 (11.9)	55,637 (32.0)	46,705 (18.0)	7,456 (16.2)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6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가구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보면, 8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3.3%이며, 장애인 세대는 42.0%임

## 나.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표 2-6-10〉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구 분	예산액	지원인원
2006년	113,386	349,241
2007년	340,962	413,092
2008년	351,049	449,414
2009년	309,666	504,366
2010년	201,792	331,300
2011년	101,511	340,447
2012년	107,498	337,707

주 1) 20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2) 20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3)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4) 2010년 예산(6개월분) : 중증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2010.7월)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주요업무참고자료」, 2013.

☞ '장애인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예산은 107,498백만원이고 수급자 수는 337,707명임  
- 중증장애인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 및 지원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표 2-6-1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초생활	보장시설	차상위
2008년	433,413	328,422	40,153	64,838
2009년	486,642	349,088	41,238	96,316
2010년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년	316,861	210,471	10,381	96,009
2012년	314,894	204,717	11,839	98,338
서 울	45,006	30,778	1,448	12,780
부 산	25,690	19,130	709	5,851
대 구	17,245	12,247	821	4,177
인 천	14,422	10,331	491	3,600
광 주	10,729	6,674	332	3,723
대 전	9,283	6,260	494	2,529
울 산	3,987	2,560	99	1,328
경 기	44,288	29,446	1,698	13,144
강 원	16,132	9,224	460	6,448
충 북	12,707	7,629	933	4,145
충 남	14,014	8,833	637	4,544
전 북	22,875	14,032	818	8,025
전 남	24,887	13,414	749	10,724
경 북	25,170	16,047	917	8,206
경 남	22,960	14,731	789	7,440
제 주	4,495	2,884	307	1,304
세 종	1,004	497	137	370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지원대상임

2) 2010년 12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장애수당 수급자는 경증장애인만 해당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장애인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14,894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이 204,717명(65.0%), '차상위계층'이 98,338명(31.2%)임

〈표 2-6-12〉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 分	전 체	기초			보장시설			차상위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08년	16,001	11,724	7,821	3,903	-	-	-	4,277	3,036	1,241
2009년	17,724	12,181	7,789	4,392	-	-	-	5,543	3,724	1,819
2010년	23,057	12,637	7,982	4,665	4,112	3,231	881	6,308	4,229	2,079
2011년	23,586	12,493	7,833	4,660	4,120	3,216	904	6,973	4,670	2,303
2012년	22,813	11,541	7,104	4,437	4,182	3,186	996	7,090	4,664	2,426
서 울	3,453	1,715	1,094	621	678	536	142	1,060	722	338
부 산	1,523	785	483	302	325	245	80	413	292	121
대 구	1,376	715	432	283	292	229	63	369	232	137
인 천	1,194	601	377	224	164	127	37	429	284	145
광 주	1,092	559	373	186	181	125	56	352	251	101
대 전	843	426	262	164	166	129	37	251	164	87
울 산	363	160	100	60	90	83	7	113	71	42
경 기	3,917	1,871	1,211	660	580	394	186	1,466	954	512
강 원	959	493	276	217	151	122	29	315	199	116
충 북	1,096	440	242	198	350	270	80	306	191	115
충 남	994	566	357	209	153	123	30	275	188	87
전 북	1,435	801	466	335	248	185	63	386	253	133
전 남	1,226	693	434	259	169	125	44	364	229	135
경 북	1,551	820	482	338	310	237	73	421	272	149
경 남	1,307	629	370	259	238	188	50	440	289	151
제 주	442	235	126	109	87	68	19	120	66	54
세 종	42	32	19	13	0	0	0	10	7	3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임

2) 중증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3)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4) 시설 수급자의 경우 2009년도까지 장애수당 지급(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장애인수당, 장애 아동수당」 설명 보기 : 378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2,813명이며, 이 중 '기초수급계층'이 11,541명(50.6%), '차상위계층'이 7,090명(31.1%)임

## 다. 연금

〈표 2-6-13〉 가입한 연금 종류

구 분	미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단위 : %)	
							개인연금(사적)	기타
2005년	66.3	20.8	0.8	-	0.0	0.1	2.1	0.0
2008년	62.1	34.4	1.4	0.3	0.5	0.9	0.3	-
2011년	59.9	32.9	1.4	0.2	0.4	1.9	3.2	0.1
지 체	54.6	37.4	1.4	0.2	0.3	1.8	4.2	0.1
뇌 병 변	69.0	25.5	1.2	0.2	0.6	1.6	1.9	0.0
시 각	53.8	38.6	1.5	0.3	0.1	2.2	3.2	0.3
청 각	59.9	31.2	1.7	0.2	0.5	4.2	2.3	0.0
언 어	40.3	57.6	0.0	0.0	0.0	0.0	2.1	0.0
지 적	84.8	14.0	0.0	0.0	0.0	0.0	0.9	0.3
자 폐 성	100.0	0.0	0.0	0.0	0.0	0.0	0.0	0.0
정 신	88.6	10.4	0.0	0.0	0.0	0.0	1.0	0.0
신 장	54.6	32.8	4.1	0.0	2.7	3.6	2.2	0.0
심 장	79.2	18.8	0.0	2.0	0.0	0.0	0.0	0.0
호 흡 기	69.1	28.6	0.0	0.0	0.0	0.0	0.0	2.3
간	28.8	60.3	4.9	0.0	0.0	5.3	0.7	0.0
안 면	50.4	33.0	0.0	0.0	0.0	0.0	16.6	0.0
장루·요루	62.0	26.9	6.7	0.0	1.0	3.4	0.0	0.0
간 질	80.5	10.0	3.2	0.0	0.0	4.0	2.3	0.0

주 : 2005년의 경우는 중복응답, 2008년의 경우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 합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2.9%, '개인연금(사적)' 3.2%, '보훈연금' 1.9%, '공무원연금' 1.4%, '군인연금' 0.4%, '사립학교교원연금' 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가입자는 59.9%로 2008년에 비해 2.2%p 감소함

〈표 2-6-14〉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수급자수 금 액	1,541,630 2,914,015	1,766,589 3,584,901	1,995,984 4,360,239	2,256,912 5,182,611	2,534,114 6,180,804	2,787,091 7,471,934	2,992,458 8,635,467	3,184,601 9,819,295	3,518,090 11,550,754
노령연금	수급자수 금 액	1,156,098 1,987,451	1,349,626 2,531,536	1,517,649 3,103,161	1,731,560 3,857,709	1,949,867 4,765,528	2,149,168 5,814,825	2,330,128 6,861,876	2,489,614 7,905,479	2,748,455 9,327,086
장애인 연금	연금 금 액	47,260 163,629	54,467 193,931	61,762 225,607	67,091 245,877	72,166 268,101	74,535 287,016	76,280 296,305	75,895 305,547	75,934 314,462
일시 보상금	수급자수 금 액	3,609 29,297	4,147 35,714	4,898 44,240	5,167 48,325	4,902 47,921	3,836 40,940	3,447 37,299	3,480 41,918	2,862 34,653
유족연금	수급자수 금 액	226,806 417,886	254,116 484,577	286,656 570,601	320,377 645,401	353,594 731,358	388,458 844,649	424,180 949,239	459,700 1,062,312	496,073 1,195,694
반환 일시금	수급자수 금 액	100,296 303,194	96,618 324,885	116,058 400,674	121,800 368,374	138,456 348,026	154,835 460,476	142,080 465,123	137,422 475,050	176,531 648,045
사망 일시금	수급자수 금 액	7,561 12,558	7,615 14,259	8,961 15,957	10,917 16,924	15,129 19,871	16,259 24,027	16,343 25,625	18,490 29,286	18,235 30,812

주 1) 수급자 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2012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자는 78,796명으로 2011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 수는 75,934명(96.4%)이며,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는 2,862명(3.6%)임
  - 2012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액은 349,11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6-15〉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전 체	장 애 연 금				장애일시 보상금
			소 계	1 급	2 급	3 급	
전 체		수급자수 금 액	78,796 349,116	75,934 314,462	11,307 64,384	25,400 116,872	39,227 133,206
성 별	남 성	수급자수 금 액	67,043 301,731	64,659 272,049	9,807 56,429	21,714 101,529	33,138 114,091
	여 성	수급자수 금 액	11,753 47,384	11,275 42,412	1,500 7,955	3,686 15,343	6,089 19,114
연 령 별	20~24세	수급자수 금 액	47 218	35 128	14 66	13 41	8 21
	25~29세	수급자수 금 액	493 2,195	416 1,523	93 535	133 481	190 507
	30~34세	수급자수 금 액	2,081 8,827	1,895 6,949	353 1,835	600 2,347	942 2,767
	35~39세	수급자수 금 액	4,257 18,537	3,982 15,526	652 3,468	1,300 5,489	2,030 6,569
	40~44세	수급자수 금 액	7,306 32,126	6,933 27,686	1,058 5,830	2,069 9,114	3,806 12,742
	45~49세	수급자수 금 액	10,124 45,563	9,609 39,100	1,429 8,085	2,824 12,796	5,356 18,219
	50~54세	수급자수 금 액	15,454 70,032	14,743 60,587	2,028 11,451	4,452 20,677	8,263 28,459
	55~59세	수급자수 금 액	16,442 73,875	15,806 65,819	2,206 12,359	5,203 24,300	8,397 29,160
	60~64세	수급자수 금 액	11,282 47,849	11,205 47,257	1,798 10,626	4,202 19,676	5,205 16,955
	65~69세	수급자수 금 액	7,138 31,679	7,138 31,677	1,053 6,404	2,888 13,842	3,197 11,431
	70세이상	수급자수 금 액	4,172 18,210	4,172 18,205	623 3,729	1,716 8,106	1,833 6,370
							5

주 : 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47페이지 참조

☞ '장애인연금'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3. 복지시설

#### 가. 장애인 거주시설

〈표 2-6-1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설 수	213	225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입소자 수	592	472	462	479	1,696	1,965	2,070	1,835	4,760	6,480
퇴소자 수	330	223	295	375	1,221	1,224	1,252	1,342	1,272	1,182
연말현재 이용인원	17,959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성 별	남 성	10,618	10,975	11,267	11,860	12,416	13,149	13,447	14,148	14,929
	여 성	7,341	7,457	7,639	7,808	8,182	8,560	8,803	9,095	9,466
연 령 별	18세 남성	3,063	3,015	3,007	3,013	2,923	2,983	3,171	2,873	2,696
	미만 여성	2,147	2,083	1,997	1,947	1,950	1,971	1,842	1,876	1,672
	18세 남성	7,555	7,960	8,260	8,847	9,493	10,166	10,276	11,275	12,233
	이상 여성	5,194	5,374	5,642	5,861	6,232	6,589	6,961	7,219	7,794
장 애 유 형 별	지체	2,905	2,876	2,580	2,658	2,754	2,781	2,893	2,230	3,673
	시각	744	645	695	609	823	848	875	760	873
	청각/언어	732	551	519	459	454	422	479	519	386
	지적	10,182	11,361	10,989	11,550	12,948	13,685	13,493	9,539	14,338
	기타	3,396	2,999	4,123	4,392	3,619	3,973	4,510	10,195	5,125
										5,050

주 1) 정신지체→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장애인 거주시설」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2002년 213개소에서 2011년 490개소, 연말 이용인원은 2002년 17,959명에서 2011년 25,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61.1%,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60.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2-6-1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시설 수	225	237	265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입소인원	18,432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30,640
지체장애인	시설 수	32	31	31	30	33	33	38	40	39	40
	입소인원	2,374	2,357	2,332	2,281	2,283	2,292	2,230	2,055	2,102	2,057
시각장애인	시설 수	12	12	13	15	14	14	14	14	15	16
	입소인원	708	717	632	824	792	784	760	744	787	786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수	13	11	12	12	11	11	11	10	9	8
	입소인원	778	674	735	728	521	546	519	462	361	335
지적장애인	시설 수	90	96	110	122	131	144	172	196	226	278
	입소인원	7,685	7,750	8,015	8,408	9,325	9,192	9,539	10,178	10,788	11,748
중증장애인	시설 수	74	82	93	102	116	136	153	182	191	201
요양시설	입소인원	6,558	7,117	7,657	8,038	8,345	8,981	9,728	10,365	10,798	11,006
장애인영유아	시설 수	4	5	6	7	9	9	9	10	10	10
	입소인원	264	291	297	319	443	455	467	491	509	510
단기거주	시설 수	-	-	-	-	-	-	-	-	-	128
	입소인원	-	-	-	-	-	-	-	-	-	1,438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	-	-	-	-	-	-	-	-	667
	입소인원	-	-	-	-	-	-	-	-	-	2,760

주 1) 정신지체→지적장애로 용어 변경(2008.2)

2)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3) 2011년까지 시설수에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미포함, 2012년부터는 포함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

☞ '장애인 거주시설'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348개소, 30,640명의 장애인이 입소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시설이 667개소(49.5%)로 가장 많으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278개소(20.6%),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201개소(14.9%), 단기거주시설 128개소(9.5%)의 순임

## 나. 직업재활시설

〈표 2-6-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 체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시설 수	이용인원
2003년	222	6,987	202	3,890	20	1,107	-	1,642	-	348
2004년	236	7,486	143	4,091	19	1,178	64	1,857	10	360
2005년	265	7,684	153	4,214	25	1,252	76	1,889	11	329
2006년	319	9,481	177	4,835	24	1,246	107	3,019	11	381
2007년	339	10,059	189	5,238	29	1,344	109	3,074	12	403
2008년	364	10,422	212	5,559	31	1,422	108	3,029	13	412
2009년	386	11,048	250	6,574	33	1,516	90	2,533	13	425
2010년	422	11,932	377	10,115	45	1,817	-	-	-	-
2011년	456	12,870	403	10,680	53	2,190	-	-	-	-
2012년	478	13,758	422	11,374	56	2,384	-	-	-	-

주 :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입소인원은 478개소, 13,75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작업시설의 수와 입소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표 2-6-1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 체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체육관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센터	전자 도서관	점자도서 및 눈哑화설비	의료 재활시설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2003년	시설수	440	106	90	15	45	45	-	-	14	25	100
	종사자수	4,509	3,068	285	79	310	143	-	-	412	87	125
2004년	시설수	536	121	100	18	51	50	-	-	14	30	152
	종사자수	5,328	3,520	310	164	394	220	-	-	426	117	177
2005년	시설수	1,049	130	259	22	124	108	-	-	14	61	331
	종사자수	7,108	3,811	841	260	648	436	-	-	472	242	398
2006년	시설수	1,125	137	274	25	129	107	-	-	26	69	358
	종사자수	7,461	4,036	885	266	641	441	-	-	493	253	446
2007년	시설수	1,286	157	321	24	149	143	-	-	16	76	400
	종사자수	8,617	4,525	1,052	270	783	563	-	-	611	307	506
2008년	시설수	1,419	171	365	26	152	154	-	-	17	84	450
	종사자수	9,188	4,656	1,197	297	841	588	-	-	731	323	555
2009년	시설수	1,563	185	395	27	154	162	-	-	18	91	531
	종사자수	9,798	4,969	1,252	298	811	590	-	-	868	377	633
2010년	시설수	1,726	191	443	27	154	176	-	-	18	103	589
	종사자수	10,925	5,372	1,472	312	870	684	-	-	921	441	739
2011년	시설수	1,851	199	485	27	156	180	27	4	17	119	637
	종사자수	11,692	5,825	1,624	327	875	700	106	10	889	511	825
2012년	시설수	1,140	205	526	28	156	191	30	4	-	-	-
	종사자수	9,741	5,856	1,715	374	895	771	117	13	-	-	-

주 1)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2) 2011년까지 시설수에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포함되었고, 2012년부터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명 보기 : 379페이지 참조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2012년 1,140개이며, 법개정으로 의료 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감소함
  - 1,140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는 9,741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5,856명이 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음

## 라. 장애인 편의시설

〈표 2-6-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개, %)

구 분	2003년			2008년			증감 (%p)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법정의무 설치 수(A)	실제 설치 수(B)	설치율 (B/A)	
전 체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2.3
공원	1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6.9

주 1) 설치대상수(법정의무설치 수)가 2003년 대비 2008년 조사 시 5배 이상 많아진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설치율은 법정의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3) 도로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34페이지 참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2008년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 설치율 72.3%와 비교하여 5.2%p 증가하였음

〈표 2-6-2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개)

구 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 수
전 체		77.5	3,760,792	2,915,369
매개시설	접근로	82.9	861,707	714,499
	주차구역	67.4	269,025	181,360
	높이차이제거	71.7	212,108	151,984
	소 계	78.0	1,342,840	1,047,843
내부시설	출입구(문)	86.3	838,083	723,171
	복도	89.9	149,652	134,599
	계단	79.1	231,734	183,205
	승강기	87.5	289,640	253,551
	경사로	87.6	173,763	152,172
	소 계	86.0	1,682,872	1,446,698
위생시설	대변기	55.2	564,878	311,730
	소변기	56.6	16,504	9,342
	세면대	79.7	17,228	13,723
	욕실	78.3	5,100	3,992
	샤워실	78.1	5,100	3,982
	소 계	56.3	608,810	342,769
안내시설	점자블럭	50.6	35,652	18,035
	유도 안내 설비	24.8	5,612	1,389
	경보 피난설비	68.1	5,612	3,824
	소 계	49.6	46,876	23,248
기타시설	객실침실	63.0	51,096	32,197
	관람열람석	80.6	3,402	2,743
	접수작업대	79.7	22,346	17,801
	매표소 등	81.2	2,550	2,070
	소 계	69.0	79,394	54,811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09.

☞ 조사 설명 보기 : 334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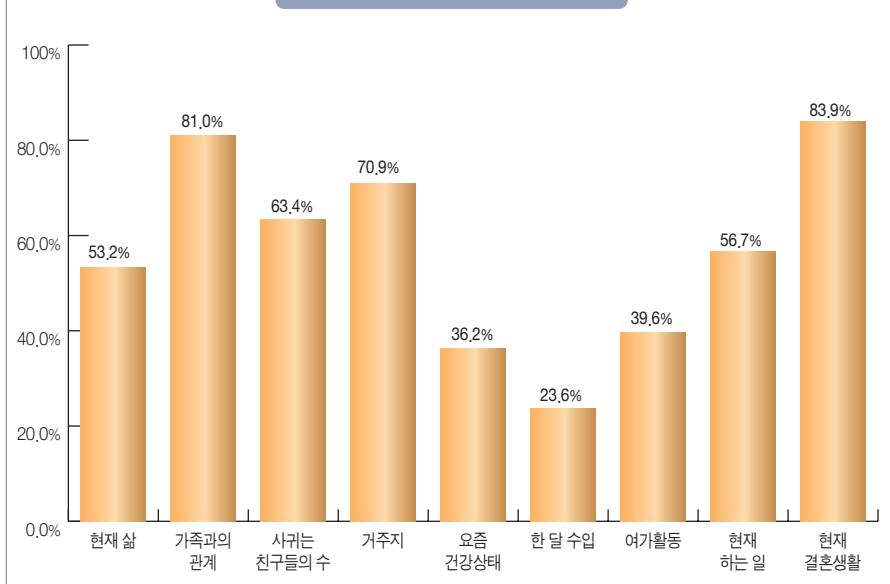
☞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내부시설이 가장 높은 설치율(86.0%)를 보이고 있으며, 안내시설이 49.6%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복도' 89.9%, '경사로' 87.6%, '승강기' 87.5% 등의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그림 2-7-1] 일상생활 만족정도



주 1)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만족하다' ('매우만족' + '약간만족')고 응답한 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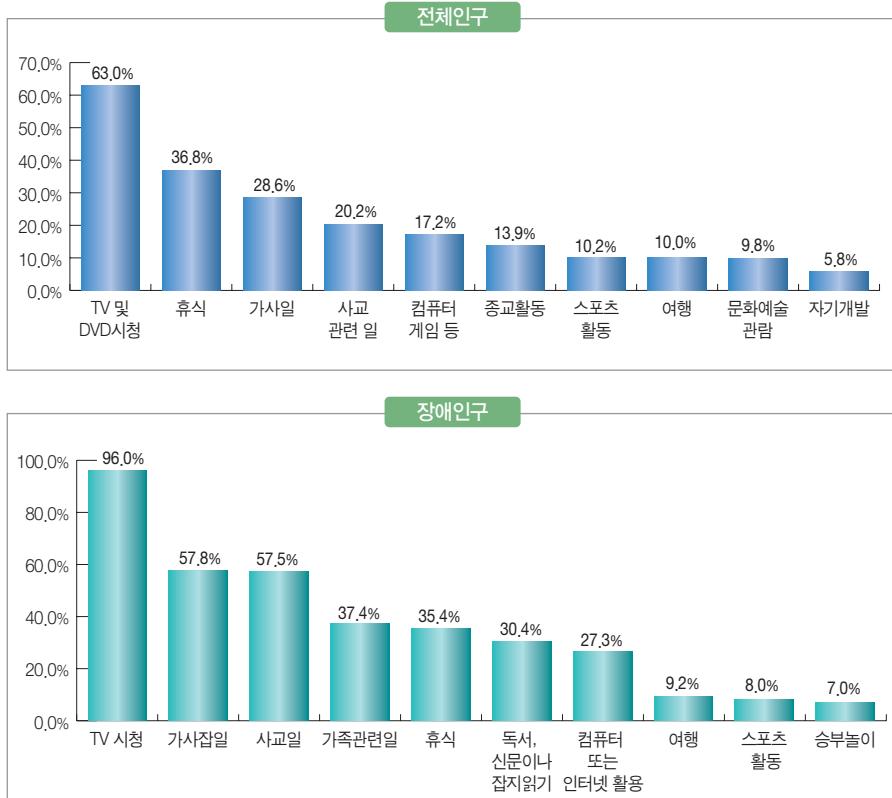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일상생활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결혼생활' 83.9%, '가족관의 관계' 81.0%, '거주지' 7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2] 여가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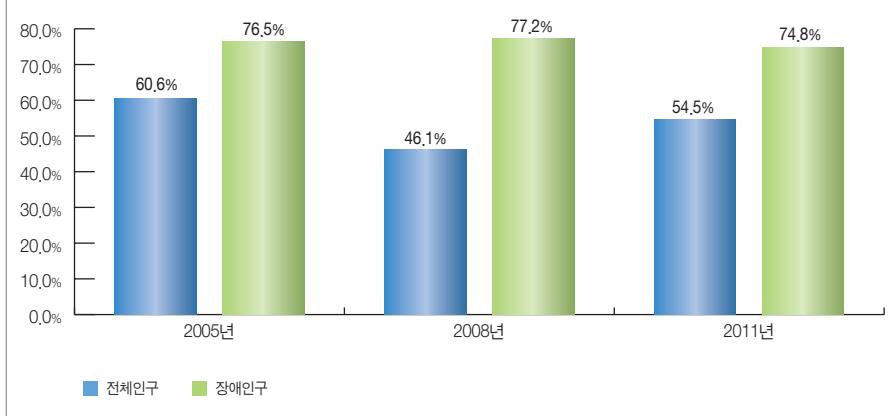
- 주 1) 전체인구는 13세 이상 대상,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복수응답)' 분석결과임
- 2) 장애인구는 지난 '1주일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분석결과임
- 3) 각 항목별 응답률 상위 10개 항목만을 제시하였음
- 4)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여가활용방법으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TV시청' 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7-3]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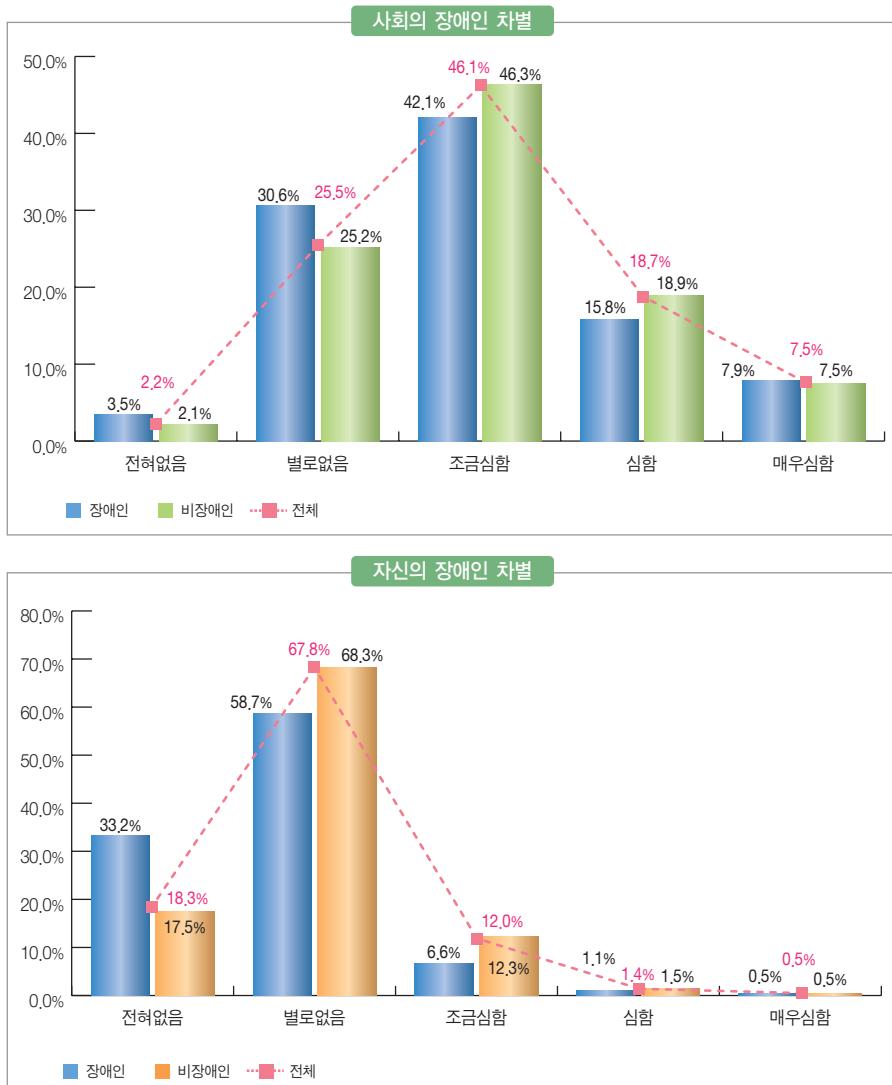
- 주 1) 2005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 제1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비율임  
2) 전체인구는 실제 투표율이나 장애인구는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3) 2008년, 2011년 장애인구의 투표율은 투표권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투표여부에 대한 비율을 재계산함

자료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2013 (원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의 경우 전체인구 투표율은 2005년 60.6%에서 2008년 46.1%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54.5%로 증가한 반면, 장애인구는 76.5%에서 77.2%로 증가하였다가 74.8%로 다소 감소함

[그림 2-7-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주 1) 13세 이상 기준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3%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6.1%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1. 일상생활

### 가. 일상생활 만족도

〈표 2-7-1〉 일상생활 만족정도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현재 삶	53.2	58.1	31.4	59.8	59.5	57.7	52.5	52.5
가족과의 관계	81.0	83.4	74.2	85.3	83.5	82.3	76.5	83.6
사귀는 친구들의 수	63.4	74.0	39.7	71.7	64.5	68.4	31.1	29.6
거주지(살고있는 집)	70.9	71.9	63.0	75.2	71.8	69.3	75.5	78.4
요즘 건강상태	36.2	35.7	13.4	46.7	42.8	52.2	62.4	82.3
한 달 수입	23.6	24.3	21.6	22.3	25.3	16.5	24.6	14.7
여가활동	39.6	41.6	22.6	44.6	44.8	46.6	43.3	47.0
현재 하는 일	56.7	56.8	68.0	61.3	48.6	42.5	66.0	100.0
현재 결혼생활	83.9	85.6	75.9	86.2	81.7	75.9	81.9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현재 삶	37.3	39.7	51.1	44.6	51.9	51.0	55.3	24.5
가족과의 관계	63.8	77.7	85.3	78.4	92.4	64.2	87.2	65.1
사귀는 친구들의 수	28.3	63.2	77.5	54.0	65.5	43.8	73.1	45.7
거주지(살고있는 집)	59.9	76.8	85.8	63.5	55.1	88.8	81.8	45.6
요즘 건강상태	35.9	24.9	38.4	7.9	40.5	55.1	15.9	12.9
한 달 수입	21.0	25.2	18.5	22.4	25.7	39.3	14.7	9.2
여가활동	39.2	35.2	51.5	20.1	35.8	21.5	34.3	22.0
현재 하는 일	34.0	62.8	50.3	60.9	73.1	45.5	32.4	50.3
현재 결혼생활	73.0	94.0	76.0	93.1	100.0	100.0	86.0	77.1

주 1)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적용하여 ‘만족하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응답한자의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결혼생활’83.9%, ‘가족과의 관계’81.0%, ‘거주지(살고있는 집)’70.9%, ‘사귀는 친구들의 수’6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표 2-7-2〉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005년	2,101,057	100.0	47.8	16.8	18.8	9.2	7.4
2008년	2,137,226	100.0	49.9	16.3	19.3	9.1	5.4
2011년	2,611,126	100.0	56.9	15.6	13.6	7.5	6.4
지 체	1,325,877	100.0	71.1	15.3	8.8	2.5	2.3
뇌 병 변	316,309	100.0	17.8	12.1	26.5	15.9	27.7
시 각	256,841	100.0	67.3	12.2	10.3	7.1	3.1
청 각	278,337	100.0	58.7	22.7	14.7	3.0	1.0
언 어	21,049	100.0	66.3	9.0	10.2	7.8	6.7
지 적	153,332	100.0	8.6	13.0	32.3	33.0	13.1
자 폐 성	16,238	100.0	0.0	0.4	17.4	58.1	24.0
정 신	103,894	100.0	34.8	21.7	16.1	19.2	8.1
신 장	58,500	100.0	67.8	15.9	12.0	2.0	2.2
심 장	18,508	100.0	65.5	27.2	7.3	0.0	0.0
호흡 기	19,249	100.0	35.6	26.2	25.3	3.9	9.1
간	9,289	100.0	82.5	10.6	1.7	0.0	5.3
안 면	2,426	100.0	72.4	27.6	0.0	0.0	0.0
장루 · 요루	16,705	100.0	62.8	21.9	3.4	1.8	10.1
간 질	14,572	100.0	63.5	17.5	13.9	3.9	1.1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전체의 56.9%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27.5%로 나타남
  -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3〉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도와주는 사람 유무		
		전체	있다	없다
전 체	1,124,682	100.0	84.0	16.0
지 체	382,949	100.0	72.0	28.0
뇌 병 변	260,026	100.0	94.0	6.0
시 각	83,996	100.0	84.4	15.6
청 각	115,023	100.0	82.4	17.6
언 어	7,087	100.0	90.0	10.0
지 적	140,516	100.0	96.9	3.1
자 폐 성	16,238	100.0	100.0	0.0
정 신	67,762	100.0	86.7	13.3
신 장	18,827	100.0	90.2	9.8
심 장	6,391	100.0	69.3	30.7
호흡기	12,403	100.0	77.7	22.3
간	1,629	100.0	100.0	0.0
안 면	669	100.0	10.6	89.4
장루·요루	6,214	100.0	72.5	27.5
간 질	5,312	100.0	85.4	14.6

주 1)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 ‘혼자서 스스로’ 응답한 경우와 무응답 제외함

2) 2011년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84.0%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간장애와 자폐성장애가 100.0%, 지적장애 96.9%, 뇌병변장애가 94.0%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4〉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필요없다
2005년	1,090,736	100.0	35.0	2.9	62.0
2008년	1,069,812	100.0	34.2	7.5	58.3
2011년	1,124,420	100.0	43.7	8.4	47.9
지 체	382,688	100.0	39.2	5.2	55.6
뇌 병 변	260,026	100.0	52.2	14.6	33.2
시 각	83,995	100.0	40.8	8.8	50.4
청 각	115,023	100.0	35.5	2.5	61.9
언 어	7,087	100.0	46.2	3.9	49.9
지 적	140,155	100.0	45.8	8.7	45.5
자 폐 성	16,237	100.0	62.4	18.0	19.5
정 신	67,763	100.0	46.4	11.1	42.5
신 장	18,828	100.0	49.8	3.8	46.4
심 장	6,392	100.0	28.3	0.0	71.7
호 흡 기	12,403	100.0	40.8	0.0	59.2
간	1,629	100.0	47.9	12.1	40.0
안 면	669	100.0	40.5	9.9	49.6
장루·요루	6,214	100.0	33.4	29.3	37.3
간 질	5,311	100.0	42.8	4.3	52.9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일상생활 도움’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가족을 제외하고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지만,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43.7%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에 따르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가 외부인의 도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고 특히, 장루·요루장애는 유급으로라도 봉사자를 이용할 의사가 29.3%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이용자 수	비 율
전 체	27,818	100.0	28,862	100.0	34,326	100.0
성별	남 성	16,854	60.6	17,526	60.7	20,987
	여 성	10,964	39.4	11,336	39.3	13,339
대상별	아동(만 6~18세)	8,210	29.5	7,641	26.5	9,353
	성인(만 18~65세)	19,608	70.5	21,221	73.5	24,973

주 1)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2007.4~2011.9)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10)로 변경

3)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백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설명 보기 : 380페이지 참조

○ 활동지원제도 이용자가 2009년 27,818명에서 2010년 28,862명, 2011년 34,326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이용자중 남성은 20,987명(61.1%), 여성은 13,339명(38.9%)이며, 대상별로 살펴보면 성인이 72.8%, 아동이 27.2%로 나타남

## 다. 외출 및 이동

## 1) 외출

〈표 2-7-6〉 외출의 빈도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혼자 외출 여부	외 출 빈 도					
			전 체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연 10회 이내	전혀외출않음
2005년	2,100,729	84.0	100.0	65.2	20.6	7.6	3.9	2.8
2008년	2,137,226	83.6	100.0	66.6	21.1	7.1	3.9	1.2
2011년	2,611,126	85.7	100.0	66.6	20.0	8.5	-	4.9
지 체	1,325,878	94.2	100.0	71.5	20.0	6.5	-	2.0
뇌 병 변	316,309	56.0	100.0	44.3	19.3	17.3	-	19.1
시 각	256,840	87.9	100.0	72.4	17.3	7.9	-	2.4
청 각	278,337	94.0	100.0	72.8	18.1	7.1	-	2.0
언 어	21,049	90.5	100.0	81.0	9.9	0.0	-	9.0
지 적	153,332	64.3	100.0	73.9	14.8	5.7	-	5.5
자 폐 성	16,238	27.1	100.0	89.0	8.5	2.4	-	0.0
정 신	103,894	73.6	100.0	45.4	23.5	15.7	-	15.4
신 장	58,500	90.6	100.0	43.0	53.4	3.0	-	0.6
심 장	18,508	100.0	100.0	79.2	11.6	5.4	-	3.8
호흡기	19,249	79.5	100.0	26.0	42.7	26.0	-	5.3
간	9,289	97.9	100.0	52.5	31.7	9.4	-	6.3
안 면	2,426	100.0	100.0	61.7	20.2	18.2	-	0.0
장루·요루	16,704	88.1	100.0	55.5	20.6	19.2	-	4.7
간 질	14,573	89.8	100.0	58.8	17.6	23.6	-	0.0

주 : 지난 1년간 평균 외출 횟수에 대한 응답 값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85.7%,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3%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66.6%, '주 1~3회' 20.0%, '월 1~3회'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등을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을 상대적으로 낮으며, 뇌병변장애, 정신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2-7-7〉 외출의 목적

(단위: 명, %)

구 分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66	1,299,201	255,832	250,620	272,854	19,149	144,897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근·통학	37.2	42.0	15.8	41.6	36.8	55.6	48.7	84.8
병원 진료	12.8	10.9	26.9	8.4	7.8	3.8	3.4	1.3
쇼핑(물건사기)	4.1	4.0	1.8	3.5	3.7	2.2	6.7	0.0
산책	23.3	19.7	38.5	20.9	23.8	18.1	23.6	6.9
친척, 친구, 이웃 방문	11.6	13.0	7.6	13.9	13.8	6.1	5.4	0.0
여행	0.1	0.0	0.5	0.0	0.2	0.0	0.0	0.0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9.4	8.8	8.1	10.2	12.6	12.5	11.1	4.7
일자리 구하기	0.8	1.0	0.3	0.8	1.0	1.7	0.0	2.3
기타	0.6	0.7	0.5	0.7	0.3	0.0	1.1	0.0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투	간질
전국추정수	87,887	58,144	17,797	18,227	8,701	2,426	15,921	14,57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근·통학	11.6	16.4	54.0	6.7	30.2	21.5	8.3	21.8
병원 진료	16.0	57.9	12.5	32.0	3.3	10.8	15.9	10.7
쇼핑(물건사기)	12.0	2.0	0.0	3.8	11.3	16.2	3.9	16.3
산책	37.9	15.2	15.5	34.4	35.5	36.3	47.6	30.5
친척, 친구, 이웃 방문	11.0	8.3	1.7	2.2	3.5	0.0	10.7	8.3
여행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시설 이용/행사참여	11.5	0.0	16.4	19.9	16.1	4.1	9.8	5.0
일자리 구하기	0.0	0.2	0.0	0.0	0.0	11.2	0.0	1.9
기타	0.0	0.0	0.0	1.0	0.0	0.0	3.7	5.6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통학'37.2%, '산책'23.3%, '병원진료'12.8%, '친구나 이웃 방문'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루·요투장애(47.6%), 뇌병변장애(38.5%), 정신장애(37.9%), 안면장애(36.3%), 간장애(35.5%)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산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신장장애는 외출의 주된 목적이 '병원 진료'(57.9%)인 것으로 나타남

## 2) 이동

〈표 2-7-8〉 교통수단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전국추정수	2,482,473	1,299,202	255,834	250,623	272,853	19,149	144,897	16,2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버스	32.1	31.9	19.0	38.1	36.0	31.9	34.1	3.5
일반택시	7.2	7.0	15.9	6.1	4.2	11.2	1.5	2.9
지하철·전철	13.3	12.3	9.8	18.6	14.6	14.8	9.4	12.3
장애인 콜택시	0.9	0.6	3.3	1.5	0.0	0.0	0.0	0.0
복지관버스	0.5	0.1	1.1	0.2	0.8	0.0	2.6	0.7
자가용	32.3	35.7	35.6	27.4	27.8	29.0	25.1	60.9
셔틀형 복지버스	0.3	0.1	0.5	0.2	1.2	0.0	0.5	0.0
전동휠체어	0.6	0.7	2.0	0.0	0.0	0.0	0.0	0.0
전동스쿠터	1.0	1.3	2.2	0.1	0.1	0.0	0.8	0.0
통학·통근버스	1.2	0.7	1.2	0.3	1.5	2.5	7.2	14.7
도보	6.7	5.4	7.7	4.3	8.6	9.8	16.0	5.0
기타	3.9	4.2	1.8	3.2	5.3	0.8	2.7	0.0

구 分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전국추정수	87,888	58,145	17,795	18,227	8,702	2,426	15,921	14,57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버스	41.0	40.8	33.0	23.0	17.3	5.8	44.4	45.4
일반택시	4.1	11.0	0.0	14.6	3.3	34.3	3.6	6.0
지하철·전철	21.6	7.0	22.4	14.2	25.5	25.3	21.8	25.4
장애인 콜택시	0.0	1.7	0.0	4.1	0.0	0.0	5.3	0.0
복지관버스	1.2	1.4	0.0	0.0	0.0	0.0	0.0	0.0
자가용	14.0	28.6	20.3	42.7	47.2	21.1	15.4	18.0
셔틀형 복지버스	0.1	0.0	0.0	0.0	5.6	0.0	0.0	0.0
전동휠체어	0.0	0.0	0.0	0.0	0.0	0.0	0.0	0.0
전동스쿠터	0.0	0.0	0.0	1.5	0.0	0.0	0.0	0.0
통학·통근버스	0.2	0.0	0.0	0.0	0.0	0.0	0.0	0.0
도보	14.3	1.5	14.3	0.0	1.1	10.8	5.6	0.0
기타	3.5	8.0	10.0	0.0	0.0	2.7	3.8	5.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2.3%, '일반버스'32.1%, '지하철·전철'13.3% 등임

〈표 2-7-9〉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 %, 대)

구 분	보급율	전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10.0	3,206	60	162	364	304	500	978	838
서울	19.3	1,468	35	67	194	108	260	482	322
부산	4.4	112	3	5	7	7	5	25	60
대구	7.7	128	2	5	10	20	30	35	26
인천	7.2	149	4	20	20	30	17	28	30
광주	6.9	62	2	10	10	10	8	12	10
대전	9.0	87	12	14	8	8	8	12	25
울산	7.8	50	2	3	10	7	10	6	12
경기	7.6	717	-	-	77	89	125	200	226
강원	14.3	79	-	-	6	6	12	18	37
충북	13.0	70	-	3	9	8	6	36	8
충남	2.0	14	-	-	-	-	3	5	6
전북	2.1	17	-	-	-	-	4	10	11
전남	2.5	17	-	-	-	1	-	5	3
경북	1.6	18	-	-	8	1	2	3	4
경남	13.8	208	-	30	-	9	10	101	58
제주	6.1	10	-	5	5	-	-	-	-

주: 2011년 기준임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1)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 : 381페이지 참조

-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3,206대임
  - 서울시가 전체 저상버스 대수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22.4%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표 2-7-10〉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단위 : 대, 명)

구 분	보급률		이용률	
	보급대수	지표값	연간 이용 장애인 수	지표값
전 국	1,476	-		-
서울	300	31.2	702,840	7.3
부산	100	25.5	229,057	5.9
대구	60	21.4	151,327	5.4
인천	112	39.3	310,379	10.9
광주	40	25.8	61,932	4.0
대전	60	36.7	82,584	5.1
울산	24	23.2	66,451	6.4
경기	212	18.6	114,077	0.7
강원	110	48.0	22,899	2.2
충북	61	27.8	21,979	2.9
충남	31	10.3	30,149	1.8
전북	77	26.6	28,968	6.4
전남	20	5.5	36,509	1.2
경북	55	13.8	39,776	1.2
경남	209	50.3	41,559	5.3
제주	5	6.3	7,910	2.6

주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용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동을 지원하는 것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등록장애인(1, 2급) 1만 명에 대하여 인허가 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대수로 산정함

3)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등록장애인(1, 2급) 대비 연간 이용 장애인 수(2009년)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35페이지 참조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설명 보기 : 381페이지 참조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8.0, 인천 39.3으로 분석됨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을 살펴보면 인천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7.3, 울산 및 전북이 6.4로 분석되었음

## 2. 문화 및 여가활동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6.0	6.1	3.2	6.7	4.7	11.2	10.2	14.3
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0	98.2	92.0	92.4	97.4	97.9	94.3	85.6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7.3	30.8	13.3	27.9	18.3	41.8	40.0	57.5
승부놀이(마독, 당구, 경마 등)	7.0	8.9	3.2	6.7	7.6	5.2	2.9	11.3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등)	4.5	3.5	1.4	6.0	4.1	18.0	11.0	24.6
독서, 신문이나 잡지읽기	30.4	36.1	16.1	28.1	29.7	28.4	11.4	26.4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8.0	8.1	2.6	10.3	6.9	20.6	14.0	38.9
학습활동(영어, 한문 등)	4.3	3.7	3.1	6.6	3.1	5.2	7.7	18.2
사회(자원)봉사 활동	5.3	6.8	1.3	6.4	4.5	7.6	4.2	0.0
여행(관광, 등산, 낚시 등)	9.2	10.7	2.7	11.7	11.4	18.0	6.5	17.6
사교일(친구모임 등)	57.5	65.6	34.0	69.5	60.3	59.5	37.6	27.1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4.1	5.3	2.1	4.7	4.0	7.1	1.1	3.7
가족 관련일(의식, 쇼핑 등)	37.4	40.8	22.2	42.2	36.9	31.4	40.9	53.5
가사잡일(장보기 포함)	57.8	64.9	30.1	66.3	64.1	61.7	33.3	20.6
휴식(사우나 등)	35.4	39.9	26.3	39.0	36.3	25.3	26.9	33.2
기타	0.8	0.8	1.1	1.1	0.3	0.0	1.0	0.0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표 2-7-1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계속)

(단위: 명, %)

구 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투요루	간질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7.8	5.4	4.1	0.0	9.3	0.0	1.1	6.9
TV신청(유선방송 포함)	90.6	99.1	92.1	89.6	96.2	88.8	89.9	93.4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15.4	30.0	48.4	20.7	52.7	36.0	19.8	34.0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1.4	3.0	6.2	7.0	8.9	15.8	8.2	5.1
창작적 취미(미술 등)	7.8	2.9	0.0	13.8	6.6	0.0	0.0	6.9
독서	26.8	41.7	43.3	33.9	55.7	69.2	26.2	27.9
스포츠(축구 등)	4.6	5.2	28.2	1.1	7.5	7.0	3.3	6.5
학습활동(영어 등)	2.7	4.5	18.7	2.6	11.2	30.3	1.1	0.6
사회봉사 활동	2.0	1.9	12.7	1.4	6.3	11.2	4.6	0.0
여행(관광 등)	4.1	5.3	0.0	2.5	20.1	8.7	9.1	0.0
사교일(친구모임 등)	33.0	44.9	55.5	41.6	66.1	47.5	54.0	54.1
해외여행(지난 1년동안)	0.9	1.5	0.0	0.0	6.3	0.0	0.0	2.6
가족 관련일(외식 등)	23.8	40.5	36.2	28.6	33.2	27.8	37.5	32.2
가사잡일(장보기 등)	44.8	71.6	84.4	42.6	68.4	77.0	53.7	69.4
휴식(사우나 등)	24.1	28.6	19.7	24.4	15.3	53.2	19.6	15.1
기타	1.3	0.0	0.0	0.0	0.0	0.0	0.0	0.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9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57.8%)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TV시청'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골고루 높게 답하고 있음

〈표 2-7-12〉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

구 분	생활체육 실행자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할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
2006년	4.4	42.1	37.4	16.1
2007년	5.4	70.0	15.3	9.3
2008년	6.3	55.5	24.3	13.9
2009년	7.0	62.8	19.5	10.7
2010년	8.3	56.0	23.0	12.8
2011년	9.6	60.8	15.9	13.7
2012년	10.6	49.0	25.7	14.7

주 1)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2)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안에서 운동하는 자  
3) 생활체육개념을 재활치료 목적이외의 운동으로 한정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2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6페이지 참조

☞ ‘생활체육 실행자’ 설명 보기 : 381페이지 참조

-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비율은 2008년 6.3%, 2009년 7.0%, 2010년 8.3%, 2011년 9.6%, 2012년 1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비율은 2011년 대비 1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동을 하지 않지만 운동할 의지가 있는 자의 비율은 2011년 대비 9.8%p 증가한 반면,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의 비율은 2011년 대비 1.0%p 증가함

〈표 2-7-13〉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전체		장애인 자료실 설치		장애인 코너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개관	%	개관	%	개관	%	개관	%
768	100.0	81	10.5	180	23.4	507	66.0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11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37페이지 참조

- 전체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된 곳은 10.5%(81개소)이며 장애인 코너가 설치된 기관은 23.4%(180개소)로 조사됨
-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자료실 및 코너의 설치비율이 아주 저조하므로, 향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표 2-7-14〉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2005년	2,091,882	100.0	2.1	9.9	30.6	33.4	24.0
2008년	2,137,225	100.0	4.4	14.8	39.3	26.9	14.5
2011년	2,611,126	100.0	4.3	35.2	-	38.7	21.8
지 체	1,325,877	100.0	4.5	37.0	-	40.9	17.6
뇌 병 변	316,309	100.0	1.6	21.6	-	33.6	43.2
시 각	256,841	100.0	7.5	35.8	-	39.7	17.0
청 각	278,337	100.0	3.7	41.1	-	37.2	17.9
언 어	21,049	100.0	1.3	44.2	-	30.2	24.3
지 적	153,332	100.0	5.5	37.8	-	34.5	22.2
자 폐 성	16,238	100.0	3.6	46.1	-	35.2	15.1
정 신	103,894	100.0	4.5	36.7	-	30.4	28.4
신 장	58,500	100.0	0.8	34.1	-	41.3	23.7
심 장	18,508	100.0	13.3	38.2	-	32.6	15.8
호 흡 기	19,249	100.0	0.0	17.6	-	60.3	22.1
간	9,289	100.0	6.0	24.5	-	53.8	15.8
안 면	2,426	100.0	0.0	21.5	-	31.0	47.5
장루 · 요루	16,705	100.0	0.0	34.8	-	40.2	25.1
간 질	14,572	100.0	0.0	17.3	-	44.3	38.4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로 나타나 불만족의 비율이 더 높음.
  - 간질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 사회참여

#### 가. 정치참여

〈표 2-7-15〉 선거 투표 여부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예	아니오	(단위: 명, %) 비해당 (투표권 없었음)
2005년	1,995,791	100.0	76.5	23.5	-
2008년	2,137,226	100.0	74.0	21.8	4.2
2011년	2,611,126	100.0	71.6	24.1	4.2
지 체	1,325,877	100.0	80.9	18.1	0.9
뇌 병 변	316,309	100.0	50.5	45.1	4.4
시 각	256,841	100.0	77.4	19.5	3.1
청 각	278,337	100.0	82.2	15.7	2.1
언 어	21,049	100.0	52.9	27.4	19.7
지 적	153,332	100.0	32.6	35.0	32.4
자 폐 성	16,238	100.0	8.7	12.8	78.5
정 신	103,894	100.0	48.4	50.9	0.6
신 장	58,500	100.0	72.5	27.1	0.4
심 장	18,508	100.0	70.6	16.1	13.3
호흡기	19,249	100.0	71.2	27.7	1.1
간	9,289	100.0	75.6	23.7	0.7
안 면	2,426	100.0	58.3	38.8	2.9
장루·요루	16,705	100.0	74.1	25.9	0.0
간 질	14,572	100.0	51.3	48.7	0.0

주 1) 2005년의 경우는 17대 국회위원 선거, 2008년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2011년의 경우 제 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05년의 경우는 비해당(투표권 없음) 255건 및 무응답 14건을 제외하고 비율을 제시함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2011년 제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가 82.2%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80.9%, 시각장애 77.4%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나. 사회의 인식

〈표 2-7-16〉 장애인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전 체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2007년	100.0	63.3	32.2	4.4
2009년	100.0	63.8	32.6	3.6
2011년	100.0	66.8	30.0	3.2
장애인	100.0	68.7	30.9	0.4
비장애인	100.0	66.7	30.0	3.3

주 :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6.8%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이 30.0%,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은 3.2%로 나타남
  -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표 2-7-17〉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전 체	전혀 문제되지 않음	반대는 하지 않음	반대하는 편	절대로 안 됨
2007년	100.0	34.4	59.8	5.4	0.4
2009년	100.0	37.9	55.4	6.2	0.5
2011년	100.0	35.9	57.9	5.7	0.5
장애인	100.0	54.9	43.5	1.4	0.2
비장애인	100.0	34.9	58.6	5.9	0.5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접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의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35.9%, '반대는 하지 않음' 57.9%,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됨' 6.2%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반대는 하지 않음'이 98.4%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은 93.5%로 나타나 상호간 다소 견해차를 보임

〈표 2-7-18〉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단위 : 교, %)

구 분		학교 수	비 율
유치원	전 체	8,499	100.0
	연2회 이상	7,521	88.5
	연1회	978	11.5
초등학교	전 체	5,975	100.0
	연2회 이상	5,691	95.2
	연1회	284	4.8
중학교	전 체	3,158	100.0
	연2회 이상	2,956	93.6
	연1회	202	6.4
고등학교	전 체	2,303	100.0
	연2회 이상	2,122	92.1
	연1회	181	7.9

주 1)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함

2) 2012년 기준임

자료 : 교육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8페이지 참조

- 모든 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유치원’88.5%, ‘초등학교’95.2%, ‘중학교’93.6%, ‘고등학교’92.1%임

## 다. 차별

## 1) 차별인식

〈표 2-7-19〉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구 분	전 체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 합	매우심함	(단위 : %)
사회의 장애인 차별							
2007년	100.0	2.3	21.5	43.4	22.7	10.2	
2009년	100.0	1.8	21.8	48.1	19.9	8.4	
2011년	100.0	2.2	25.5	46.1	18.7	7.5	
장애인	100.0	3.5	30.6	42.1	15.8	7.9	
1~2급	100.0	3.1	27.5	38.1	20.1	11.2	
3~4급	100.0	3.7	32.1	41.8	14.5	7.8	
5~6급	100.0	3.6	30.5	43.9	15.3	6.7	
비장애인	100.0	2.1	25.2	46.3	18.9	7.5	
자신의 장애인 차별							
2007년	100.0	18.4	70.3	9.6	1.2	0.4	
2009년	100.0	19.3	73.1	6.4	0.9	0.3	
2011년	100.0	18.3	67.8	12.0	1.4	0.5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41페이지 참조

-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3%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6.1%로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20〉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전 체	2,611,126	100.0	8.7	31.2	36.4	23.7
지 체	1,325,877	100.0	5.8	27.3	38.4	28.6
뇌 병 변	316,309	100.0	11.1	35.2	38.4	15.4
시 각	256,841	100.0	7.9	30.6	34.9	26.5
청 각	278,337	100.0	10.5	39.7	36.5	13.3
언 어	21,049	100.0	27.7	40.8	25.8	5.7
지 적	153,332	100.0	18.1	40.5	24.5	16.9
자 폐 성	16,238	100.0	29.5	31.6	17.0	21.9
정 신	103,894	100.0	18.7	38.6	28.5	14.2
신 장	58,500	100.0	5.1	24.4	36.2	34.3
심 장	18,508	100.0	1.1	23.3	30.3	45.3
호흡 기	19,249	100.0	4.9	26.1	46.6	22.5
간	9,289	100.0	7.8	27.0	40.6	24.5
안 면	2,426	100.0	25.9	72.4	0.0	1.7
장루 · 요루	16,705	100.0	10.0	17.2	47.1	25.7
간 질	14,572	100.0	19.4	39.1	34.3	7.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전체의 39.9%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함
  - 안면장애인의 98.3%가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은 반면, 심장장애인의 경우 24.4%로 나타났다.

〈표 2-7-2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 체	2,611,126	100.0	0.8	18.5	48.3	32.4
지 체	1,325,877	100.0	1.0	20.0	48.3	30.7
뇌 병 변	316,309	100.0	0.7	16.9	47.1	35.2
시 각	256,841	100.0	0.9	15.6	50.9	32.6
청 각	278,337	100.0	0.6	20.1	51.1	28.2
언 어	21,049	100.0	1.1	16.5	27.1	55.2
지 적	153,332	100.0	1.4	10.5	45.0	43.1
자 폐 성	16,238	100.0	0.0	1.6	41.2	57.2
정 신	103,894	100.0	0.3	17.5	45.6	36.6
신 장	58,500	100.0	0.0	20.8	43.9	35.3
심 장	18,508	100.0	0.0	28.4	44.8	26.8
호흡 기	19,249	100.0	0.0	20.1	62.2	17.7
간	9,289	100.0	0.0	9.6	66.8	23.6
안 면	2,426	100.0	0.0	0.0	61.2	38.8
장루·요루	16,705	100.0	0.0	34.1	52.2	13.8
간 질	14,572	100.0	0.0	12.6	49.0	38.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8.3%, '매우 많다'가 32.4%, '별로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5%, '전혀 없다'는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80.7%로 사회조직에서 장애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안면장애(100.0%)와 자폐성장애(98.4%)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차별이 '없다'는 경우는 장루·요루장애가 34.1%로 가장 많음

## 2) 사회적 차별 경험

〈표 2-7-2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구 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학교 생활	유치원(보육시설)	30.5	24.6	28.3	13.5	28.6	13.6	40.4
	초등학교	34.2	33.4	36.7	21.8	34.0	32.5	40.5
	중학교	29.8	27.0	33.0	19.1	28.7	53.9	35.9
	고등학교	29.3	23.7	32.9	16.0	33.0	62.6	39.7
	대학교	16.3	14.4	7.5	13.9	20.9	58.5	30.7
	교사로부터	21.4	9.4	21.8	16.7	23.7	30.8	40.2
	또래학생으로부터	49.2	45.8	41.1	27.4	39.7	82.5	69.0
	학부모로부터	15.1	7.2	25.4	5.7	10.9	18.4	31.1
결혼		26.5	23.5	18.0	19.1	28.4	40.9	69.4
취업		34.0	31.6	42.0	27.7	30.5	75.0	62.8
직장 생활	소득	20.7	18.7	26.4	14.7	20.7	34.7	54.6
	동료와의 관계	16.9	12.5	22.4	12.0	26.3	41.5	43.4
	승진	14.2	11.1	17.6	10.9	18.6	36.8	36.8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14.3	10.4	12.8	31.4	11.7	11.0	76.0
보험제도(계약 시)		53.7	52.7	64.1	40.8	39.8	65.5	78.5
의료기관 이용 시		3.7	2.7	4.6	3.0	5.0	6.7	7.2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2.0	0.3	1.2	6.6	7.3	7.3	2.0
지역사회생활		7.8	4.8	11.0	8.1	6.9	15.0	22.6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보험제도 계약 시」(53.7%)이며, 그 다음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34.2%)순임

〈표 2-7-2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계속)

(단위: %)

구 분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류· 요루	간질
입학	유치원(보육시설)	40.3	49.5	0.0	0.0	0.0	0.0	0.0	-	0.0
	초등학교	45.2	33.5	0.0	0.0	73.6	0.0	100.0	-	36.0
전학	중학교	47.8	46.8	40.3	0.0	0.0	-	-	-	30.6
	고등학교	27.5	57.6	0.0	0.0	0.0	-	-	-	38.2
학교 생활	대학교	0.0	57.0	0.0	0.0	-	0.0	0.0	-	0.0
	교사로부터	42.1	42.4	0.0	0.0	0.0	0.0	7.7	-	6.0
	또래학생으로부터	66.5	76.1	38.7	1.6	73.6	0.0	62.9	-	44.0
	학부모로부터	28.5	23.4	0.0	0.0	85.5	0.0	0.0	-	15.0
결혼		100.0	50.9	21.4	0.0	18.6	0.0	100.0	0.0	41.9
취업		5.5	59.5	24.2	34.1	28.6	27.1	95.8	6.7	43.8
직장 생활	소득	10.9	35.8	19.2	19.0	11.7	5.6	94.2	5.3	31.2
	동료와의 관계	10.9	44.8	6.9	7.9	6.4	0.0	94.2	6.2	29.7
	승진	10.9	25.2	19.8	13.9	0.0	16.8	94.2	7.1	33.3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	31.1	24.5	36.7	0.0	0.0	0.0	0.0	0.0
보험제도(계약시)		74.1	60.3	82.4	55.9	40.6	86.0	100.0	38.5	71.2
의료기관 이용 시		19.4	5.2	4.6	4.5	3.5	0.0	0.0	2.4	1.6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1.3	1.1	1.5	0.0	0.0	0.0	0.0	0.3	0.6
지역사회생활		43.1	10.0	7.1	3.5	13.9	0.0	24.6	7.6	13.1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안면장애는 '보험제도상(계약 시) 차별' 경험이 100.0%로 가장 높고, 간장애는 86.0%, 신장장애 8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2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전 체	2,611,126	100.0	7.8	21.3	70.8
지 체	1,325,877	100.0	8.6	24.1	67.3
뇌 병 변	316,309	100.0	5.3	17.7	77.0
시 각	256,841	100.0	8.5	21.9	69.6
청 각	278,337	100.0	5.8	14.5	79.7
언 어	21,049	100.0	9.8	15.6	74.6
지 적	153,332	100.0	7.5	17.9	74.6
자 폐 성	16,238	100.0	16.6	31.8	51.6
정 신	103,894	100.0	4.7	15.7	79.6
신 장	58,500	100.0	11.8	25.9	62.3
심 장	18,508	100.0	7.9	10.4	81.7
호흡기	19,249	100.0	6.9	37.0	56.1
간	9,289	100.0	24.7	35.9	39.4
안 면	2,426	100.0	15.3	17.0	67.7
장루·요루	16,705	100.0	2.0	20.9	77.2
간 질	14,572	100.0	13.2	8.4	78.4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27페이지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가 70.8%,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21.3%, '알고 있다'가 7.8%로 나타남.
  - 심장장애(81.7%), 청각장애(79.7%), 정신장애(79.6%)의 순으로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음



# 3

## Chapter

# 해외 장애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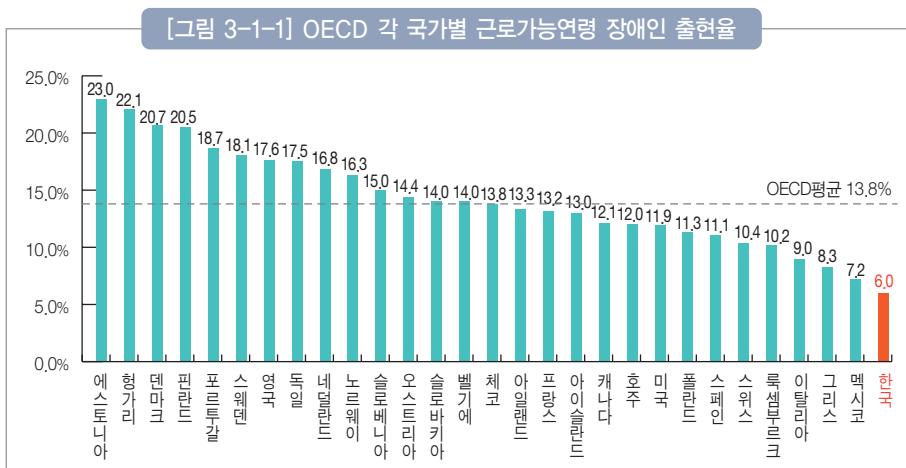
- 제1절 OECD
- 제2절 독일
- 제3절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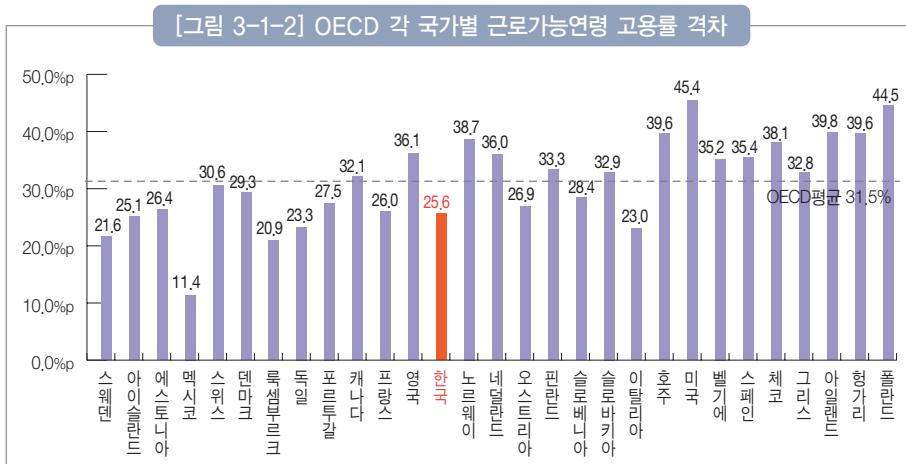
# 제3장 해외 장애인 통계

## 제1절 OECD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 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기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외)



-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임  
2) OECD 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기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 Breaking the Barriers」, 2010.



## 1. 장애인구

〈표 3-1-1〉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구 분	(단위 : %)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포르투갈	18.7
스웨덴	18.1
영국	17.6
독일	17.5
네덜란드	16.8
노르웨이	16.3
슬로베니아	15.0
오스트리아	14.4
슬로바키아	14.0
벨기에	14.0
체코	13.8
아일랜드	13.3
프랑스	13.2
아이슬란드	13.0
캐나다	12.1
호주	12.0
미국	11.9
폴란드	11.3
스페인	11.1
스위스	10.4
룩셈부르크	10.2
이탈리아	9.0
그리스	8.3
멕시코	7.2
한국	6.0
OECD-27	13.8

- 주 1)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원자료를 참조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부터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
  - 덴마크·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
  -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
  -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장애인’ 설명 보기 : 382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20~64세 인구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3.8%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구 분	20~34세	35~49세	50~64세	(단위 : %)
한국	2.6	5.1		13.3
멕시코	4.5	6.8		13.9
이탈리아	3.5	8.0		15.8
아이슬란드	10.3	13.5		16.2
스위스	5.0	9.7		16.9
그리스	2.4	7.0		16.9
룩셈부르크	4.0	10.1		17.2
미국	6.1	10.5		19.8
캐나다	5.6	11.1		19.9
스페인	4.7	10.3		20.9
벨기에	6.4	13.4		21.9
프랑스	6.3	11.1		23.0
호주	5.2	10.4		23.2
아일랜드	6.7	11.3		23.6
체코	5.7	11.6		23.6
스웨덴	10.6	18.1		25.5
폴란드	3.2	7.9		26.0
네덜란드	9.0	15.5		26.1
슬로베니아	5.6	12.8		26.5
슬로바키아	5.2	11.1		26.5
오스트리아	5.7	11.6		26.8
노르웨이	8.5	13.2		27.2
영국	8.8	15.4		29.5
덴마크	12.7	18.6		29.9
독일	7.1	14.2		30.4
핀란드	10.5	17.4		32.4
포르투갈	7.5	15.4		35.9
헝가리	6.8	17.9		41.5
에스토니아	10.3	19.1		42.8
OECD-27	6.5	12.1		23.8

주 1) 2000년대 후반 연령별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장애개념 및 원자료는 〈표 3-1-1〉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 경제

〈표 3-1-3〉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단위 : 1.0 대비 점수)

구 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2000년대 중반
멕시코	-	1.03	1.03
아이슬란드	-	-	0.98
스위스	0.94	0.90	0.95
스웨덴	0.95	0.94	0.93
핀란드	0.89	0.83	0.91
노르웨이	-	-	0.91
슬로바키아	-	-	0.91
룩셈부르크	-	-	0.90
오스트리아	0.94	0.92	0.89
프랑스	0.89	0.88	0.89
덴마크	0.90	0.90	0.88
캐나다	0.79	0.83	0.87
네덜란드	0.93	0.93	0.87
그리스	0.80	0.76	0.87
독일	0.97	0.95	0.86
체코	-	-	0.86
이탈리아	0.87	0.88	0.85
슬로베니아	-	-	0.85
헝가리	-	-	0.84
스페인	0.77	0.73	0.84
폴란드	-	0.86	0.83
한국	-	-	0.80
포르투갈	0.82	0.80	0.80
벨기에	0.96	1.07	0.79
에스토니아	-	-	0.76
영국	-	0.77	0.73
아일랜드	0.89	0.79	0.71
미국	0.67	0.66	0.69
호주	0.73	-	0.68
OECD-27	-	-	0.85

- 주 1)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전체 소득수준을 1로 가정)  
 2) 소득은 가구크기에 상응하는 개인당 가져분소득을 말함  
 3)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5(Wave 2)

ECHP 2000, 1995 (Waves 7,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SLID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2005, 2000, 1995

덴마크 - SFI 데이터베이스 2005, 2002, 1995

핀란드 - IDS 데이터베이스 2005, 2000, 1995

한국 - 2006 한국복지페널연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2000, 1996

노르웨이 - EU-SILC 2004

폴란드 - HBS(Household Budget Survey) 2004, 2000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SHS(Swiss Health Survey) 2002, 1997

영국 - FRS(Family Resource Survey) 2004, 2002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4, 2001, 1996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OECD 국가의 20~64세 장애인의 소득은 국가 평균에서 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구 분	취업자	실업자	(단위 : 1.0 대비 점수)	
			비경제활동인구	
멕시코	1.1	1.0	0.9	
스웨덴	1.0	0.8	0.9	
핀란드	1.0	0.7	0.9	
노르웨이	1.1	0.6	0.8	
슬로바키아	1.0	0.6	0.9	
스위스	1.0	0.8	0.8	
룩셈부르크	1.0	0.5	0.8	
오스트리아	0.9	0.7	0.9	
프랑스	1.0	0.8	0.8	
덴마크	1.0	0.7	0.7	
캐나다	1.1	0.5	0.7	
네덜란드	1.0	0.7	0.8	
그리스	1.0	0.6	0.8	
독일	1.1	0.6	0.8	
체코	1.1	0.6	0.8	
이탈리아	1.0	0.6	0.8	
헝가리	0.9	0.6	0.8	
스페인	1.0	0.7	0.8	
폴란드	1.4	0.5	0.8	
한국	0.9	0.5	0.7	
포르투갈	0.9	0.8	0.7	
벨기에	0.9	0.6	0.7	
영국	0.9	0.5	0.6	
아일랜드	0.9	0.5	0.6	
미국	0.9	0.7	0.6	
호주	1.0	0.5	0.5	
OECD-26	1.0	0.6	0.8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인구의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 수준임

2) OECD-26은 26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3) 소득 개념 및 원자료는 〈표 3-1-3〉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표 3-1-5〉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미국	47.6	24.0
호주	44.7	16.6
아일랜드	36.8	14.5
한국	35.6	14.6
캐나다	32.2	17.2
에스토니아	26.9	14.1
멕시코	25.5	23.9
포르투갈	25.5	15.1
슬로베니아	24.8	14.1
덴마크	24.8	15.0
스페인	24.1	17.4
영국	23.6	11.6
핀란드	21.6	12.6
이탈리아	21.2	15.4
독일	20.7	11.1
그리스	19.5	15.4
벨기에	18.8	10.8
폴란드	18.6	15.5
오스트리아	17.7	10.8
헝가리	17.5	12.5
프랑스	17.1	11.1
아이슬란드	16.4	15.8
룩셈부르크	16.0	10.8
체코	14.1	9.2
스위스	13.7	11.8
네덜란드	11.5	11.0
슬로바키아	11.3	12.1
노르웨이	10.8	11.4
스웨덴	10.4	12.2
OECD-27	22.1	14.1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3-1-3〉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3. 고용

〈표 3-1-6〉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19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스웨덴	54.6	53.6	62.3	77.7	80.1	83.9
아이슬란드	-	-	61.3	-	-	86.4
에스토니아	-	-	55.8	-	-	82.2
멕시코	47.2	60.2	55.4	61.1	65.8	66.8
스위스	-	-	54.9	-	-	85.5
덴마크	55.7	50.1	52.3	79.1	81.6	81.6
룩셈부르크	-	49.7	50.4	-	71.7	71.3
독일	52.4	60.4	50.4	74.0	77.2	73.7
포르투갈	50.2	51.8	47.9	75.7	79.3	75.4
캐나다	-	43.8	46.9	-	76.9	79.0
프랑스	45.9	49.1	45.8	68.5	70.0	71.8
영국	38.0	42.1	45.3	81.2	80.9	81.4
한국	43.9	44.7	44.7	71.5	68.8	70.3
노르웨이	-	47.1	44.7	-	86.0	83.4
네덜란드	40.2	48.5	44.5	65.5	74.8	80.5
오스트리아	48.9	48.7	43.9	74.8	76.7	70.8
핀란드	48.4	54.4	43.5	69.7	77.3	76.8
슬로베니아	-	-	41.3	-	-	69.7
슬로바키아	-	-	41.1	-	-	74.0
이탈리아	34.9	32.8	40.7	58.3	59.1	63.7
호주	41.9	-	39.8	76.6	-	79.4
미국	40.4	35.1	38.5	84.7	83.6	83.9
벨기에	38.6	43.9	36.3	67.5	70.6	71.5
스페인	27.0	25.5	35.7	56.3	63.0	71.1
체코	-	-	35.0	-	-	73.1
그리스	35.0	31.7	34.2	62.5	65.0	67.0
아일랜드	25.7	33.6	32.9	60.0	71.5	72.7
헝가리	-	-	31.7	-	-	71.3
폴란드	24.8	21.0	17.6	70.7	66.7	62.1
OECD-27	-	-	43.6	-	-	75.1

주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률과 19개국의 대략 지난 10년간에 걸친 상대적인 고용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평균을 말함(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로 봄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ECHP 1995(Wave 2)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1998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 LFS 2005, 1995

핀란드 - ECHP 199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199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1996

네덜란드 - LFS 2006, 1995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1996

스웨덴 - ECHP 1997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1998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1996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00년대 중반 OECD 27개국의 평균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3.6%, 비장애인은 75.1%로 나타나 장애인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70.3%로 나타남

〈표 3-1-7〉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네덜란드	41.1	26.9
스위스	39.0	23.9
아일랜드	38.4	23.9
노르웨이	36.3	16.8
폴란드	33.3	9.8
미국	33.1	14.6
호주	32.8	20.8
영국	27.4	20.0
벨기에	26.9	15.9
독일	25.7	20.3
스웨덴	22.0	7.4
캐나다	21.8	12.5
룩셈부르크	21.6	14.8
프랑스	21.4	12.4
멕시코	18.8	13.2
아이슬란드	18.0	7.2
한국	17.3	10.6
이탈리아	16.7	12.4
오스트리아	15.6	15.0
덴마크	14.5	6.7
그리스	14.3	10.6
핀란드	13.4	9.2
포르투갈	12.4	5.3
슬로베니아	11.6	2.6
스페인	10.2	8.8
슬로바키아	9.5	1.6
헝가리	8.4	3.2
체코	8.4	1.7
에스토니아	7.2	5.0
OECD-27	22.1	12.8

- 주 1) 시간제 근로란 일반적으로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를 말함. 단, 미국의 경우 지난 4주간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를 말함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2000년 후반 기준임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한국 - 장애인 실태조사(2005)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노르웨이 - LFS 2005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00년대 후반 OECD 27개국의 평균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은 22.1%, 비장애인은 12.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은 17.3%, 비장애인은 10.6%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체코	28.3	9.4
벨기에	27.7	9.3
독일	23.1	9.2
폴란드	21.8	19.0
스페인	21.7	9.5
아일랜드	20.1	7.3
핀란드	19.5	8.4
오스트리아	18.7	6.6
그리스	18.0	9.4
프랑스	17.7	8.5
포르투갈	15.7	9.5
헝가리	14.4	9.6
슬로바키아	14.1	8.0
룩셈부르크	12.8	3.9
이탈리아	11.6	8.5
한국	11.3	3.6
캐나다	9.0	5.8
스위스	8.4	2.7
슬로베니아	27.4	9.8
네덜란드	8.0	3.4
호주	7.8	4.2
스웨덴	7.6	3.7
덴마크	7.6	4.5
영국	7.4	4.2
노르웨이	6.9	3.7
미국	6.5	4.7
에스토니아	8.2	4.6
멕시코	2.7	2.5
아이슬란드	1.2	1.0
OECD-27	13.7	6.7

주 1)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2000년대 중반 20~64세 기준임

3) 원자료는 〈표 3-1-6〉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4. 교육

〈표 3-1-9〉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 %)
포르투갈	86.8	64.4	
그리스	69.1	34.2	
스페인	67.4	42.9	
아일랜드	65.3	30.5	
이탈리아	62.1	43.9	
프랑스	46.5	24.4	
룩셈부르크	44.7	32.3	
호주	44.7	28.1	
덴마크	42.3	23.7	
벨기에	39.8	18.0	
네덜란드	39.6	22.1	
아이슬란드	39.1	27.6	
슬로베니아	32.7	16.5	
노르웨이	32.0	20.5	
핀란드	29.7	16.2	
헝가리	29.3	15.4	
영국	28.2	12.6	
오스트리아	27.4	14.7	
스위스	27.0	12.2	
캐나다	25.5	13.9	
폴란드	25.3	10.5	
에스토니아	21.0	9.7	
미국	20.3	10.0	
스웨덴	19.8	11.8	
체코	19.4	8.0	
독일	18.7	13.5	
슬로바키아	14.1	5.0	
OECD-25	38.6	22.2	

주 1) 2000년대 후반 낮은 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을 가진 근로기능연령 인구(20~64세)의 비율임

2) OECD-25는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원자료는 〈표 3-1-1〉 참조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 5. 복지

〈표 3-1-10〉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단위 : %)

구 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 상병급여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1990년	2000년	2007년
호주	1.1	1.2	1.2	0.4	1.7	1.2	1.5	2.9	2.4
오스트리아	2.1	2.2	1.6	1.3	1.1	1.0	3.4	3.3	2.6
벨기에	1.4	1.2	1.3	1.4	0.7	0.8	2.8	1.9	2.1
캐나다	0.4	0.4	0.4	0.1	0.1	0.1	0.5	0.5	0.5
체코	1.2	1.1	1.2	1.0	1.2	0.9	2.3	2.3	2.2
덴마크	1.6	1.5	1.8	1.4	1.1	1.4	2.9	2.6	3.1
핀란드	2.1	1.9	1.8	1.5	1.2	1.2	3.7	3.0	2.9
프랑스	0.9	0.8	0.7	0.6	0.7	0.7	1.6	1.5	1.4
독일	1.3	1.3	1.1	1.9	1.6	1.3	3.2	2.9	2.4
그리스	1.0	0.7	0.7	0.8	0.7	0.5	1.9	1.4	1.2
헝가리	-	0.2	1.3	-	0.7	0.6	-	1.0	1.9
아이슬란드	0.9	1.7	2.1	1.5	1.4	1.5	2.3	3.1	3.6
아일랜드	0.5	0.6	0.8	0.8	0.6	0.8	1.3	1.1	1.6
이탈리아	1.2	0.9	0.7	0.9	0.7	0.5	2.1	1.6	1.2
일본	0.3	0.3	0.4	0.1	0.1	0.1	0.4	0.4	0.4
한국	0.1	0.2	0.2	0.1	0.1	0.1	0.2	0.3	0.3
룩셈부르크	2.0	1.7	1.0	0.6	0.6	0.8	2.6	2.3	1.8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0.0
네덜란드	4.7	2.7	2.1	2.9	2.2	1.6	7.6	4.9	3.7
뉴질랜드	0.6	0.9	0.9	0.3	0.3	0.3	0.9	1.2	1.3
노르웨이	2.5	2.3	2.5	2.6	2.7	2.3	5.1	5.1	4.8
폴란드	2.1	2.0	1.2	0.7	0.7	0.6	2.8	2.7	1.8
포르투갈	1.7	1.7	1.7	0.0	0.0	0.0	1.7	1.7	1.7
슬로바키아	-	0.9	0.8	-	1.0	0.3	-	1.9	1.2
스페인	1.2	1.2	1.2	1.0	1.0	1.1	2.2	2.2	2.3
스웨덴	1.9	2.0	2.2	3.1	2.0	1.4	5.0	4.1	3.6
스위스	1.0	1.8	1.9	1.2	1.1	1.0	2.2	2.8	2.9
터키	0.1	0.1	0.1	0.0	0.0	0.0	0.1	0.2	0.1
영국	1.6	2.0	1.9	0.6	0.7	0.4	2.2	2.8	2.3
미국	0.7	0.9	1.0	0.8	0.6	0.7	1.5	1.5	1.7
OECD	1.3	1.2	1.2	1.0	0.9	0.8	2.3	2.1	2.0

- 주 1) 장애급여는 공공 및 민간 장애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상병급여는 공공 및 병가 프로그램(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및 기타 질병에 의한 일일 비용)으로 지출되는 민간급여를 모두 포함함  
2) 2007년 호주 자료는 2005년 자료로 대체함  
3)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는 장애 지정과 지역 사회보조수당에 대한 지출(대략 지출수치의 2배가 되는)과 자발적인 민간의 장기적 장애계획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07년 OECD 국가의 장애보상에 대한 지출은 GDP의 1.2% 수준(상병급여까지 합치면 2%)인 반면, 한국은 0.2%(상병급여까지 합치면 0.3%)로 낮은 수준임

〈표 3-1-11〉 OECD 각 국가별 근로기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구 분	연 도	비 율	연 도	(단위 : %)
				비 율
헝가리	2000년	12.2	2008년	11.6
스웨덴	1995년	8.2	2008년	10.3
노르웨이	1995년	7.7	2008년	10.3
핀란드	1995년	10.0	2008년	8.5
에스토니아	1995년	6.2	2008년	8.3
네덜란드	1999년	9.4	2008년	8.2
덴마크	1995년	7.4	2008년	7.2
폴란드	2004년	9.2	2007년	7.2
체코	1995년	6.8	2008년	7.0
영국	1995년	7.0	2007년	7.0
아일랜드	2001년	5.2	2008년	6.5
미국	1995년	4.7	2008년	6.2
벨기에	1996년	4.8	2008년	6.1
슬로바키아	1995년	6.7	2007년	5.5
호주	1995년	4.2	2008년	5.4
스위스	1995년	3.7	2008년	5.3
그리스	2005년	4.2	2008년	5.1
슬로베니아	2000년	4.7	2008년	5.0
이스라엘	1999년	4.1	2007년	4.9
룩셈부르크	1995년	7.2	2005년	4.9
포르투갈	1995년	6.5	2008년	4.6
오스트리아	1995년	4.9	2007년	4.6
캐나다	1996년	4.3	2007년	4.4
독일	1995년	4.2	2008년	3.9
뉴질랜드	1995년	2.4	2008년	3.8
스페인	1995년	3.1	2007년	3.8
프랑스	1995년	2.9	2007년	3.7
이탈리아	2000년	3.2	2007년	3.3
일본	2003년	1.9	2008년	2.1
한국	1995년	0.1	2008년	1.6
멕시코	1995년	0.7	2008년	0.6
OECD-28	-	5.5	2008년(최근년도)	5.7

- 주 1) 1990년대 중반과 가능한 최근 연도의 28개 OECD 회원국과 3개 가맹국의 20~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임  
2) OECD-28은 28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  
3)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계당국에 의해 그리고 그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됨. OECD에 의한 자료의 사용은 국제법의 조건 아래서 골란고원, 동부 예루살렘, 웨스트뱅크(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지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사용됨  
4) 형가리에 대한 데이터는 심각한 건강상 장애를 요하고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다른 비-기여 급여들 모두를 포함함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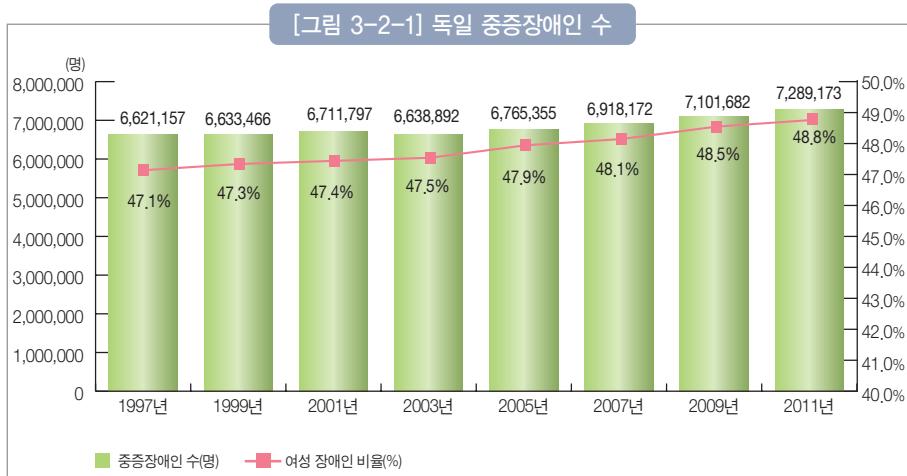
☞ 조사 설명 보기 : 349페이지 참조

- 2008년(또는 최근년도) OECD 20~64세 인구의 약 6%가 장애급여를 받고 있으며, 한국, 멕시코는 2% 이하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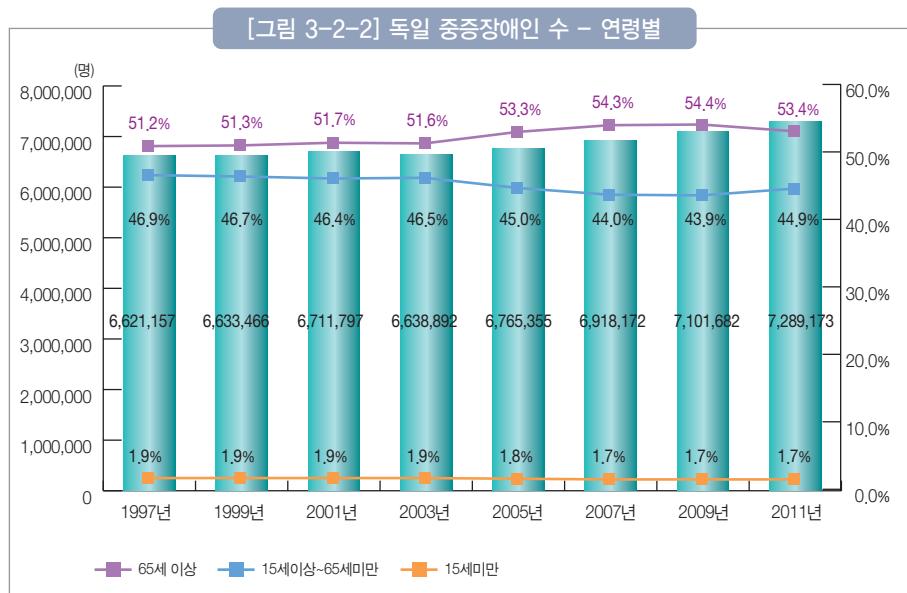
## 제2절 독일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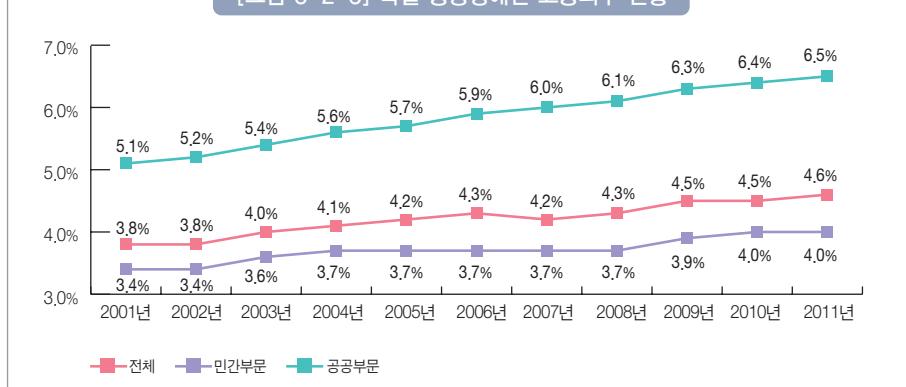
주 :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함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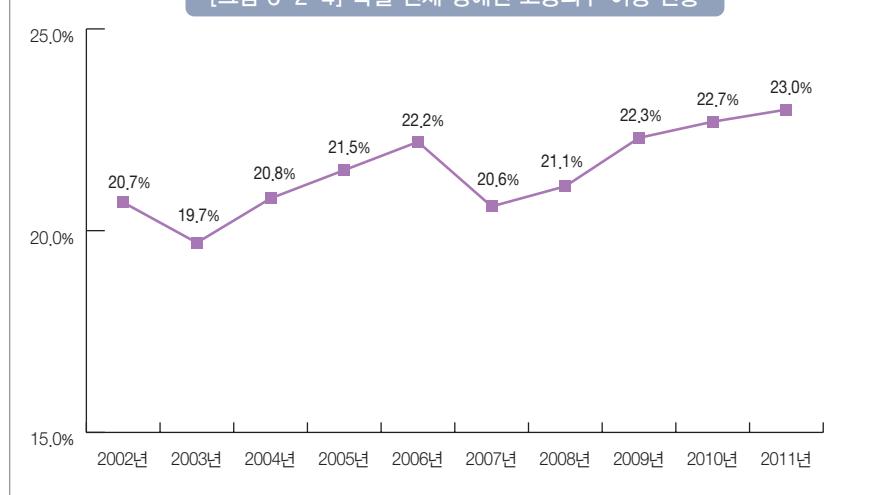
[그림 3-2-3]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주 :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일부 공공기관 6%)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그림 3-2-4] 독일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f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1. 장애인구

〈표 3-2-1〉 독일 중증장애인 수

(단위 : 명)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남 성	3,501,132	3,497,458	3,530,018	3,485,341	3,527,983	3,587,250	3,658,107	3,733,913
여 성	3,120,025	3,136,008	3,181,779	3,153,551	3,237,372	3,330,922	3,443,575	3,555,260

주 :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에 따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다.

-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주로 의학적 판단)
- 준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Arbeitsamt)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접근)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 2011년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7,289,173명으로 전체인구의 8.9%에 해당하고 남성은 3,733,913명 (51%), 여성은 3,555,260(49%)명으로 나타남

〈표 3-2-2〉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단위 : 명) 2011년
전 체	6,621,157	6,633,466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15세 미만	126,347	127,431	127,161	123,985	120,213	120,227	123,319	126,558
15~24세	128,186	132,596	138,987	146,680	153,064	157,075	160,405	162,679
25~34세	268,036	247,819	227,247	210,406	200,061	200,510	210,081	223,679
35~44세	415,801	442,721	464,455	476,492	468,581	447,270	417,603	390,234
45~54세	661,851	665,975	734,219	770,516	794,660	826,264	874,509	916,329
55~64세	1,632,117	1,611,454	1,552,336	1,485,261	1,424,805	1,410,756	1,452,236	1,579,000
65세 이상	3,388,819	3,405,470	3,467,392	3,425,552	3,603,971	3,756,070	3,863,529	3,890,694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2-3〉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구 分	중증장애인 수	비 율
전 체	7,289,173	100.0
팔다리의 일부 혹은 전체 손실	64,332	0.9
팔다리 기능 장애	976,663	13.4
척추, 몸통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67,029	11.9
시각 장애	350,655	4.8
언어 장애, 청각 장애, 평형감각 장애	305,135	4.2
한쪽 또는 양쪽 유방 손실, 기타 유방 장애	179,391	2.5
내부기관 장애	1,806,355	24.8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 장애, 중독 장애	1,459,841	20.0
기타 장애	1,279,772	17.6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1.7%, '15~24세' 2.2%, '25~34세' 3.0%, '35~44세' 5.4%, '45~54세' 12.6%, '55~64세' 21.7%, '65세 이상' 53.4%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50	60	70	80	90	100
1999년	중증장애인 수	6,633,466	1,942,333	1,065,083	775,890	855,724	355,969	1,638,467
	비 율	100.0	29.3	16.1	11.7	12.9	5.4	24.7
2001년	중증장애인 수	6,711,797	2,005,326	1,071,372	772,737	840,886	353,681	1,667,795
	비 율	100.0	29.9	16.0	11.5	12.5	5.3	24.8
2003년	중증장애인 수	6,638,892	2,039,827	1,062,939	756,466	815,512	343,392	1,620,756
	비 율	100.0	30.7	16.0	11.4	12.3	5.2	24.4
2005년	중증장애인 수	6,765,355	2,044,599	1,098,587	770,049	828,419	351,423	1,672,278
	비 율	100.0	30.2	16.2	11.4	12.2	5.2	24.7
2007년	중증장애인 수	6,918,172	2,093,757	1,119,760	778,112	842,713	359,683	1,724,417
	비 율	100.0	30.3	16.2	11.2	12.2	5.2	24.9
2009년	중증장애인 수	7,101,682	2,170,575	1,143,002	791,562	861,327	369,167	1,766,049
	비 율	100.0	30.6	16.1	11.1	12.1	5.2	24.9
2011년	중증장애인 수	7,289,173	2,286,617	1,173,261	809,208	876,456	375,098	1,768,533
	비 율	100.0	31.4	16.1	11.1	12.0	5.1	24.3

주 1)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는 50에서 100으로 갈수록 중증임

2)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2011년 독일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24.3%가 장애정도(GdB) 100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장애정도별 비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3-2-5〉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단위 : 명, %)

구 분	중증장애인 수	비 율
전 체	7,289,173	100.0
선천적 원인	301,368	4.1
일반적 질병	6,079,359	83.4
산업재해 및 직업병	69,069	0.9
교통사고	38,925	0.5
가정 내 사고	7,322	0.1
그밖의 사고	25,175	0.3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중 상해	46,357	0.6
기타	721,588	9.9

주 : 201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장애의 원인을 보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83.4%가 ‘일반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선천적 원인’은 4.1%임

## 2. 고용

### 가. 경제활동상태

〈표 3-2-6〉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 율
2002년	4,061,345	156,909	3.9
2003년	4,376,795	167,877	3.8
2004년	4,381,281	173,948	4.0
2005년	4,860,880	194,000	4.0
2006년	4,487,057	197,000	4.4
2007년	3,776,425	176,991	4.7
2008년	3,267,943	164,138	5.0
2009년	3,423,283	167,379	4.9
2010년	3,238,421	175,254	5.4
2011년	2,975,823	180,307	6.1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나. 고용서비스

〈표 3-2-7〉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393.13	351.23	341.99	334.13	369.80	396.96
노동시장 프로그램	14.51	11.16	6.86	11.44	15.83	24.86
중증장애인	26.13	24.22	25.02	27.30	30.93	33.53
고용주 지원	156.69	145.01	131.65	123.13	139.24	150.77
통합 프로젝트	46.85	46.73	45.94	47.65	56.41	56.93
기관지원	138.96	114.67	124.23	115.68	117.96	118.51
교육과 홍보	5.25	4.97	4.52	4.99	5.45	4.62
연구	2.92	2.46	1.87	2.20	3.76	5.30
기타	1.82	2.01	1.89	1.74	2.22	2.44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3. 고용의무 현황

〈표 3-2-8〉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3.8	4.0	4.1	4.2	4.3	4.2	4.3	4.5	4.5	4.6
민간부문	3.4	3.6	3.7	3.7	3.7	3.7	3.7	3.9	4.0	4.0
공공부문	5.2	5.4	5.6	5.7	5.9	6.0	6.1	6.3	6.4	6.5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2-9〉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分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5.4	5.6	5.7	5.9	6.0	6.1	6.3	6.4	6.5	
연방 최고기관	5.3	5.2	5.9	5.9	5.9	6.5	6.5	6.7	6.9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7.9	-	7.3	8.5	8.6	8.9	9.1	9.3	9.5	
주(州) 최고기관	4.8	4.9	5.1	5.3	5.4	5.5	5.7	5.8	6.0	
기타 공공기관	5.6	5.7	5.9	6.0	6.1	6.2	6.3	6.4	6.5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8.1	8.0	8.4	8.2	8.2	8.4	8.3	8.6	9.0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은 아래의 기관을 의미함

- 모든 최고연방기관과 그 하위기관, 연방대통령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의 사무처, 연방현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검찰청, 연방철도청
- 모든 최고 주(州)기관과 정무 및 주지사청, 그 하위기관, 주(州)의회의 사무처, 감사원, 주(州)현법기관과 기타 인사행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주(州)기관
- 기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단체의 연합체
- 기타 모든 공법(公法) 상 법인(法人), 공단(公團), 재단(財團)을 의미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2-10〉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구 분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3.8	4.0	4.1	4.2	4.3	4.2	4.3	4.5	4.5	4.6
20~40인 미만	2.6	2.6	2.7	2.7	2.8	2.6	2.7	2.8	2.8	2.8
40~60인 미만	2.8	2.8	2.9	2.9	3.0	2.8	2.9	3.0	3.0	3.0
60~250인 미만	3.2	3.4	3.4	3.5	3.5	3.4	3.5	3.6	3.7	3.7
250~500인 미만	3.7	3.9	4.0	4.0	4.0	4.0	4.0	4.2	4.2	4.2
500~1,000인 미만	3.9	4.1	4.3	4.3	4.4	4.4	4.4	4.6	4.7	4.7
1,000~1,250인 미만						4.5	4.7	4.8	4.9	4.8
1,250~1,500인 미만					4.4 <sup>3)</sup>	4.2	4.3	4.5	4.6	4.8
1,500~2,000인 미만	4.2 <sup>3)</sup>	4.3 <sup>3)</sup>	4.4 <sup>3)</sup>	4.6 <sup>3)</sup>		4.3	4.3	4.8	4.8	4.8
2,000~3,000인 미만					4.8	5.0	5.0	5.2	5.4	5.3
3,000~5,000인 미만					5.0	4.9	5.0	5.3	5.4	5.4
5,000~10,000인 미만	4.4	4.6	5.3	4.9	5.0	4.9	4.9	5.1	5.4	5.4
10,000~50,000인 미만	4.6	4.8	4.7	5.0	5.1	5.4	5.6	5.8	6.0	5.9
50,000~100,000인 미만	4.1	4.8	5.0	4.5	4.7	4.9	5.0	5.3	5.3	5.1
100,000인 이상	4.8	5.2	5.4	5.8	6.0	5.9	6.0	6.2	6.4	6.5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연도별로 규모 분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비교 시 유의

- 2001년 1,000~10,000인 미만, 2002~2005년 1,000~5,000인 미만, 2006년 1,000~2,000인 미만 분류 적용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의 경우 2,000인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5%가 넘는 것으로 보임

〈표 3-2-11〉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 2011년
전 체	4.0	4.1	4.2	4.3	4.2	4.3	4.5	4.5	4.6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3.0	3.1	3.2	4.2	2.9	2.8	2.9	3.0	3.0
광업	10.0	14.6	10.9	11.1	5.8	6.0	6.3	6.6	6.8
제조업	3.8	3.9	4.0	4.1	4.1	4.1	4.3	4.4	4.4
에너지 산업	5.0	5.1	5.1	5.4	5.4	5.3	5.4	5.6	5.7
수도사업 및 청소업							5.2	5.5	5.6
건설업	2.7	2.8	3.0	3.1	2.7	2.8	2.9	3.0	3.0
도·소매업,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3.1	3.1	3.8	3.2	2.9	2.9	3.1	3.1	3.1
숙박업	2.3	2.3	2.4	2.6	2.3	2.5	3.1	2.6	2.8
운수 및 보관업	3.8	4.2	4.2	4.3	3.9	3.7	4.5	4.7 <sup>6)</sup>	4.1
정보통신업								3.1 <sup>6)</sup>	3.1
금융 및 보험업(신용 및 보험업)	3.5	3.6	3.7	3.8	3.9	3.9	4.1	4.2	4.3
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업·임대업, 기업대상 서비스업)	2.8	2.7	2.7	2.7	3.1	4.5	4.6	4.8	4.7
학문, 기술 서비스	-	-	-	-	3.0	3.3	4.1 <sup>4)</sup>	4.2	4.4
기타 경제 서비스	-	-	-	-	-	-	2.7 <sup>4)</sup>	2.7	2.7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5.9	5.9	6.1	6.4	6.2	6.4	6.6	6.7	6.8
교육 및 교육업	4.3	4.5	4.5	4.6	4.5	4.4	4.5	4.4	4.4
예술, 여가 산업	4.6	4.7	4.8	4.9	4.9	4.8	3.8 <sup>5)</sup>	3.8	3.8
보건, 복지 부문(공공서비스부문)	-	-	-	-	-	-	4.9 <sup>5)</sup>	5.0	5.1
기타(개인서비스부문)	4.3	4.4	4.4	4.6	5.3	5.1	4.5	3.3	4.6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 )안은 과거 산업분류 기준으로, 2007년부터 현 산업분류를 적용함에 따라 자료 비교 시 유의  
- 교육-/기술=/경제서비스의 경우 2007년 적용된 산업분류임에 따라 과거 자료 없음

4)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뮤여 있었음. 자료 비교 시 유의

5) 2009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뮤여 있었음. 자료 비교 시 유의

6) 2010년 이전엔 한 항목으로 뮤여 있었음. 자료 비교 시 유의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험’, ‘광업’, ‘에너지·수도사업’, ‘보건·복지부문’이 법정 고용의무율 5%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단위 : 명, %)

구 분	고용주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142,847	21,145,088	1,021,042	964,457	4.6
민간부문	131,635	16,303,687	778,252	650,227	4.0
공공부문	11,212	4,841,401	242,790	314,230	6.5

주 1)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2-13〉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단위 : 명, %)

구 分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4,841,401	242,790	314,230	6.5
연방 최고기관	110,214	5,498	7,612	6.9
연방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67,823	10,067	16,010	9.5
주(州) 최고기관	1,762,904	88,142	105,139	6.0
기타 공공기관	2,654,659	130,406	172,314	6.5
기타 공공기관(고용의무율 6% 기관)	145,801	8,677	13,157	9.0

주 1)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6%이며, 그 외는 5%를 적용함

2) 공공부문의 범위는 〈표 3-2-9〉 참조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연방노동공단’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독일의 2010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4.5%로 법정 고용의무율(5~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6.4%로 민간부문의 고용률 4.0%에 비해 약 2.4%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4〉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151,865	132,091	123,972	119,162	113,485	131,919	135,525	137,244	139,555	142,847
전체 고용의무 고용주 가운데 고용률 0% 고용주 수	58,210	39,766	35,078	32,341	30,820	37,955	37,816	37,550	37,574	37,363
고용률 0% 고용주 비율	38.3	30.1	28.3	27.1	27.2	28.8	27.9	27.4	26.9	26.2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표 3-2-15〉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단위: 명, %)

구 分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증장애인 고용률	3.8	4.0	4.1	4.2	4.3	4.2	4.3	4.5	4.5	4.6
고용주 수	151,865	132,091	123,972	119,162	113,485	131,919	135,525	137,244	139,555	142,847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수	120,385	106,013	98,243	93,505	88,189	104,710	106,872	106,653	107,914	110,039
고용의무 미이행 고용주 비율	79.3	80.3	79.2	78.5	77.8	79.4	78.9	77.7	77.3	77.0

주 : 고용의무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고용주도 매월 미고용된 부분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함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중증장애인' 설명 보기 : 383페이지 참조

☞ '조정금'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표 3-2-16〉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구 分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정금	573.19	525.78	489.71	466.33	478.89	519.5	518.15	466.50	478.98

주 : 조정금 수입 규모는 조정금 기금으로 이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연례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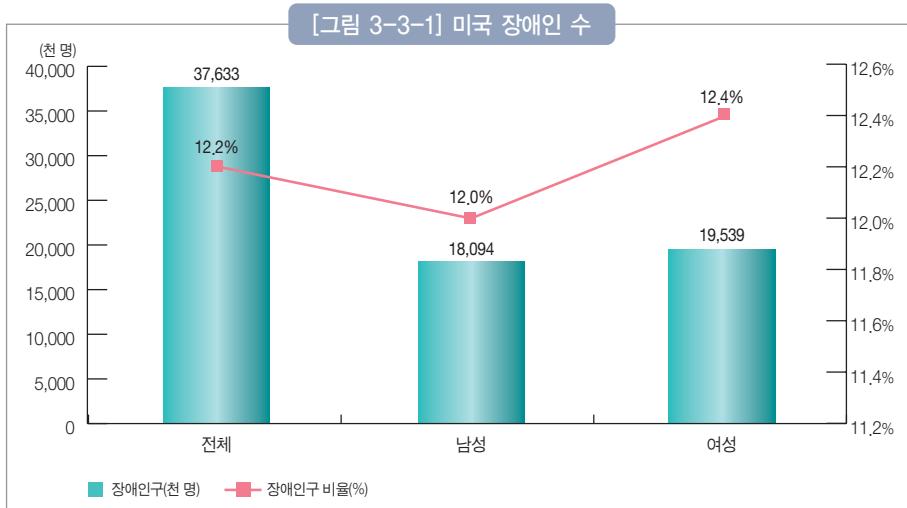
☞ 조사 설명 보기 : 350페이지 참조

☞ '조정금'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 고용률이 0%인 고용주는 2002년 38.3%에서 2011년 26.2%로 감소하였으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2002년 79.3%에서 2011년에는 77.0%로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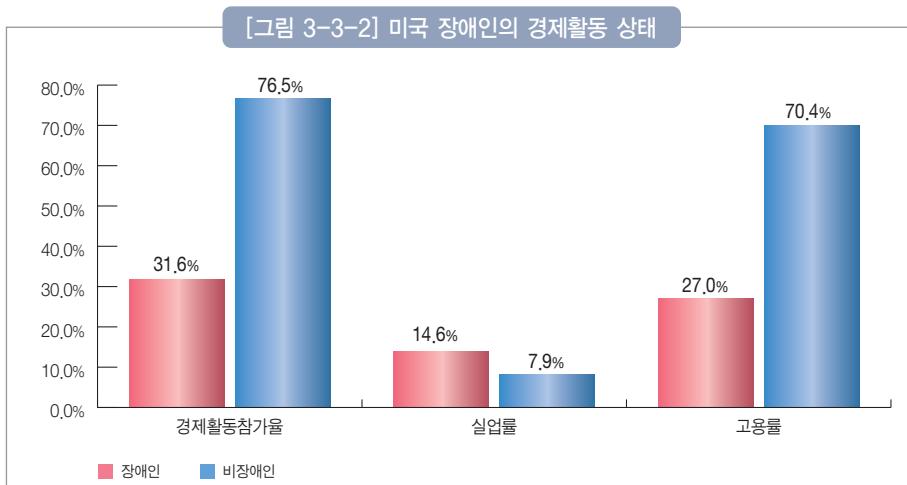
### 제3절 미국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1)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  
2) 2012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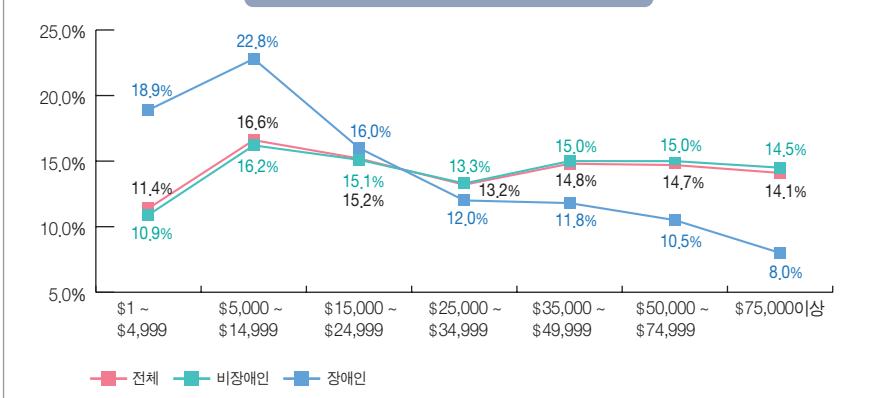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주 :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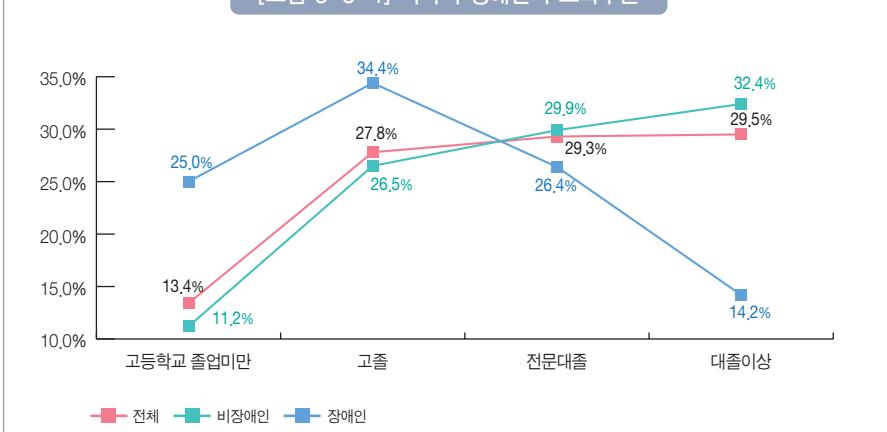
[그림 3-3-3]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 주 1) 소득은 지난 12개월간 소득전체를 말함
- 2)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물가조정 달리임
-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그림 3-3-4] 미국의 장애인의 교육수준



-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 2) 2012년 기준임
- 3) GED : 미국 · 캐나다에서 정규 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
- 4) Associate's Degree :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의 하위단계학위. 보통 full time으로 2년제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에게 부여됨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1. 장애인구

〈표 3-3-1〉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08,896,460(100.0)	37,633,020(100.0)	271,263,440(100.0)
남 성	150,789,440(48.8)	18,093,894(48.1)	132,695,546(48.9)
여 성	158,107,020(51.2)	19,539,126(51.9)	138,567,894(51.1)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표 3-3-2〉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308,896,460(100.0)	37,633,020(100.0)	271,263,440(100.0)
5세 미만	19,907,090(6.4)	167,847(0.4)	19,739,243(7.3)
5~17세	53,670,414(17.4)	2,850,468(7.6)	50,819,946(18.7)
18~64세	193,478,987(62.6)	19,606,506(52.1)	173,872,481(64.1)
65세 이상	41,839,969(13.5)	15,008,199(39.9)	26,831,770(9.9)

주 1)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장애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2012년 장애인의 수는 37,633,020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거주 인구의 12.2%를 차지함
  - 전체 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1.2%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은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3-3-3〉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인 원	비 율
청 각	10,564,595	14.5
시 각	6,692,650	9.2
인 지	14,311,641	19.6
보 행	20,024,912	27.4
자기관리	7,742,285	10.6
자립생활	13,611,369	18.7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표 3-3-4〉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 分	전 체		5세 미만		5~17세 미만		18~64세 미만		65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청 각	10,564,595	100.0	111,183	1.1	339,548	3.2	3,964,136	37.5	6,149,728	58.2
시 각	6,692,650	100.0	103,607	1.5	430,869	6.4	3,424,125	51.2	2,734,049	40.9
인 지	14,311,641	100.0	-	-	2,153,873	15.0	8,265,823	57.8	3,891,945	27.2
보 행	20,024,912	100.0	-	-	344,654	1.7	10,004,843	50.0	9,675,415	48.3
자기관리	7,742,285	100.0	-	-	516,527	6.7	3,596,066	46.4	3,629,692	46.9
자립생활	13,611,369	100.0	-	-	-	-	6,984,240	51.3	6,627,129	48.7

주 1)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임

2) 각 수치는 추정치임

3) 중복장애인 포함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행장애(27.4%)가 다른 장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각장애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은 반면 인지장애는 27.2%로 차이를 보임

## 2. 경제

〈표 3-3-5〉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16세 이상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전 체	241,065,292	100		34,972,993	100.0	206,092,299	100.0
100% 미만	33,749,141	14.0		7,729,031	22.1	26,020,110	12.5
100~149%	22,178,007	9.2		5,036,111	14.4	17,141,896	8.3
150% 이상	185,138,144	76.8		22,207,851	63.5	162,930,293	79.1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2년 기준임

3) 2013년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연방빈곤수준의 100%(2인가족 기준: \$15,510, 3인가족 기준: \$19,530, 4인가족 기준: \$23,550)

연방빈곤수준의 150%(2인가족 기준: \$23,265, 3인가족 기준: \$29,295, 4인가족 기준: \$35,325)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표 3-3-6〉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16세 이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159,460,549	100.0		9,405,956	100.0	150,054,593	100.0
\$1~\$4,999 미만	18,178,503	11.4		1,777,726	18.9	16,400,777	10.9
\$5,000~\$14,999	26,470,451	16.6		2,144,558	22.8	24,325,893	16.2
\$15,000~\$24,999	24,238,003	15.2		1,504,953	16.0	22,733,050	15.1
\$25,000~\$34,999	21,048,792	13.2		1,128,715	12.0	19,920,078	13.3
\$35,000~\$49,999	23,600,161	14.8		1,109,903	11.8	22,490,258	15.0
\$50,000~\$74,999	23,440,701	14.7		987,625	10.5	22,453,075	15.0
\$75,000 이상	22,483,937	14.1		752,476	8.0	21,731,461	14.5

주 1) 소득은 지난 12개월간 소득전체를 말함

2)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물가조정 달려임

3)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수입, 빈곤층’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 〈표 3-3-7〉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단위 : 달러)

구 분	전 체
장애인	20,184
비장애인	30,660

주 1) 소득은 16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일정하게 얻는 수입으로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제구입비, 노조회비, 의료보험공제 등 공제 전 급여 또는 임금을 말함

2) 지난 12개월 중위소득임

3)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물가조정 달러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표 3-3-8〉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단위 : 명, %)

구 分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 체	2,954,635 (100.0)	71,062,889 (100.0)	19,048,426 (100.0)	172,089,634 (100.0)	14,351,651 (100.0)	24,780,601 (100.0)
건강보험 적용	2,800,867 (94.8)	65,298,269 (91.9)	15,630,151 (82.1)	134,605,179 (78.2)	14,251,969 (99.3)	24,493,179 (98.8)
개인의료보험	1,279,601	42,834,116	8,183,188	121,885,962	8,820,803	17,264,874
공공의료보험	1,786,195	24,828,882	9,621,163	16,277,332	14,114,632	23,746,855
건강보험 비적용	153,768 (5.2)	5,764,620 (8.1)	3,418,275 (17.9)	37,484,455 (21.8)	99,682 (0.7)	287,422 (1.2)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 중위소득을 보면, 장애인은 20,184달러, 비장애인은 30,660달러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8~64세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82.1%, 비장애인은 78.2%로 장애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고용

〈표 3-3-9〉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명, %)

구 分	16~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전 채	201,416	147,247	135,224	12,023	54,167	73.1	8.2	67.1
장애인	15,339	4,854	4,146	708	10,484	31.6	14.6	27.0
비장애인	186,077	142,393	131,078	11,315	43,683	76.5	7.9	70.4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16~64세 이상 인구)×100

4) 2012년 기준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2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표 3-3-10〉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

구 分	18~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청 각	3,924,360	2,253,198	1,928,750	324,448	1,671,162	57.4	14.4	49.1
시 각	3,209,067	1,476,245	1,194,184	282,061	1,732,822	46	19.1	37.2
인 지	7,943,002	2,597,495	1,855,059	742,436	5,345,507	32.7	28.6	23.4
보 행	9,856,708	3,015,239	2,405,715	609,524	6,841,469	30.6	20.2	24.4
자기관리	3,444,202	711,152	563,110	148,042	2,733,050	20.6	20.8	16.3
자립생활	6,648,058	1,404,072	1,051,918	352,154	5,243,986	21.1	25.1	15.8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8~64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18~64세 이상 인구)×100

4) 2010년 기준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

-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73.1%, 67.1%, 8.2%인 반면 장애인은 31.6%, 27.0%, 14.6%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76.5%, 70.4%, 7.9%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인지장애의 실업률(28.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립생활장애(25.1%), 자기관리장애(20.8%), 보행장애(20.2%), 시각장애(19.1%), 청각장애(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11〉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단위 : 천명, %)

구 分	16세 이상 장애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 계	취업자	실업자				
2012. 1.	27,482	5,502	4,792	710	21,979	20.0	12.9	17.4
2012. 2.	27,822	5,542	4,665	878	22,280	19.9	15.8	16.8
2012. 3.	28,158	5,671	4,810	861	22,487	20.1	15.2	17.1
2012. 4.	28,209	5,736	5,021	715	22,473	20.3	12.5	17.8
2012. 5.	28,059	5,821	5,068	752	22,238	20.7	12.9	18.1
2012. 6.	28,097	5755	4,987	768	22,342	20.5	13.3	17.7
2012. 7.	28,007	5791	5,004	787	22,216	20.7	13.6	17.9
2012. 8.	28,191	5878	5,064	814	22,313	20.9	13.8	18.0
2012. 9.	28,776	6060	5,241	819	22,717	21.1	13.5	18.2
2012. 10.	28,613	6148	5,357	791	22,466	21.5	12.9	18.7
2012. 11.	28,888	5990	5,230	761	22,898	20.7	12.7	18.1
2012. 12.	28,705	5893	5,202	691	22,812	20.5	11.7	18.1
2013. 1.	28,573	5950	5,134	816	22,623	20.8	13.7	18.0
2013. 2.	28,655	5929	5,198	732	22,726	20.7	12.3	18.1
2013. 3.	28,936	5979	5,203	776	22,957	20.7	13.0	18.0
2013. 4.	28,908	5985	5,215	770	22,922	20.7	12.9	18.0
2013. 5.	28,552	5903	5,099	805	22,649	20.7	13.6	17.9
2013. 6.	28,491	5768	4,950	818	22,724	20.2	14.2	17.4
2013. 7.	28,406	5778	4,926	852	22,628	20.3	14.7	17.3
2013. 8.	28,726	5884	5,053	831	22,842	20.5	14.1	17.6

주 1) 계절조정 안함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고용률(%)=(취업자/16세 이상 인구)×100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3.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84페이지 참조

## 4. 교육

〈표 3-3-12〉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 分	전 체		장애인		비장애인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5세 이상						
전 체	204,673,635	100.0	32,905,929	100.0	171,767,706	100.0
고등학교 졸업 미만	27,426,267	13.4	8,226,482	25.0	19,199,785	11.2
고등학교 졸업(GED포함)	56,899,271	27.8	11,319,640	34.4	45,579,631	26.5
전문대 졸업(Associate's Degree포함)	59,969,375	29.3	8,687,165	26.4	51,282,210	29.9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60,378,722	29.5	4,672,642	14.2	55,706,080	32.4

주 1)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2012년 기준임

3) GED: 미국·캐나다에서 정규 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 인증서,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

4) Associate's Degree: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의 하위 단계 학위. 보통 full time으로 2년제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에게 부여됨

자료 : U.S. Census Bureau,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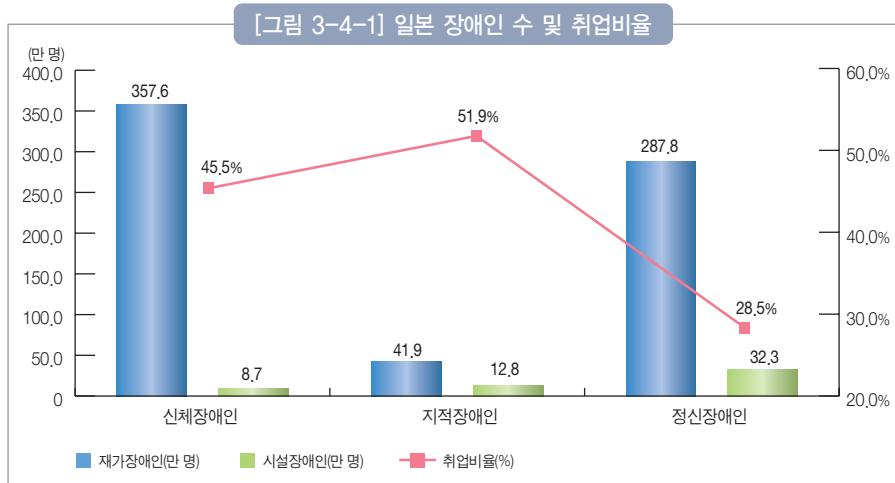
☞ 조사 설명 보기 : 351페이지 참조

- 미국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32,905,929명 중 24,679,447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34.4%로 가장 높고, '전문대 졸업'(26.4%), '고등학교 졸업 미만'(25.0%),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4절 일본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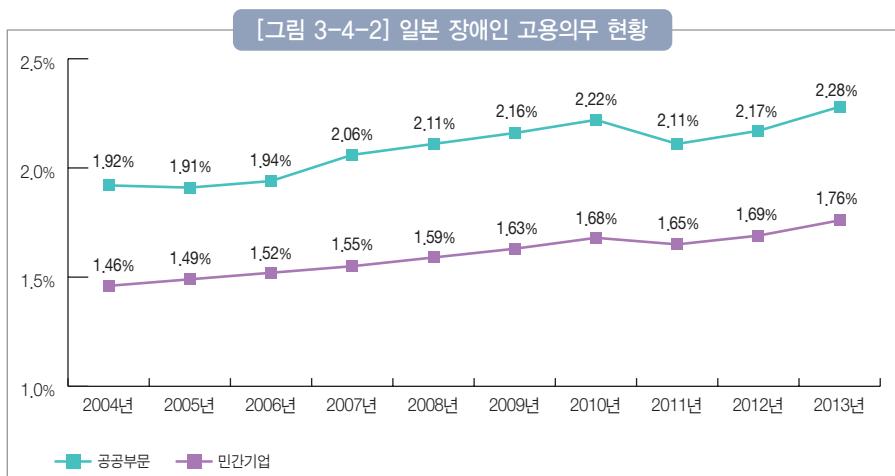


주 1) 신체장애인 2006년, 지적장애인 2005년, 정신장애인 2011년 기준임

2) 취업비율은 15~64세 인구대상,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주 : 공공부문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2~2.3%, 민간기업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0%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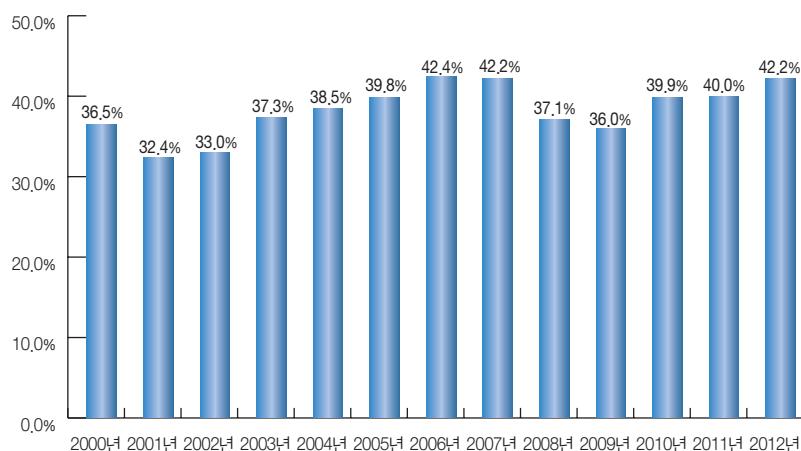
[그림 3-4-3]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주) 1) 민간기업 법정 고용의무율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이전은 1.8%, 56명 이상)  
2) 각년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그림 3-4-4] 일본의 Hello Work 취직률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 5. 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1. 장애인구

〈표 3-4-1〉 일본 장애인 수

구 분		전 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단위 : 만명)
신체장애인 (2006년)	전 체	366.3	357.6	8.7	
	18세 미만	9.8	9.3	0.5	
	18세 이상	356.4	348.3	8.1	
지적장애인 (2005년)	전 체	54.7	41.9	12.8	
	18세 미만	12.5	11.7	0.8	
	18세 이상	41.0	29.0	12.0	
정신장애인 (20011년)	연령 미상	1.2	1.2	0.0	
	전 체	320.1	287.8	32.3	
	20세 미만	17.9	17.6	0.3	
	20세 이상	301.1	269.2	31.9	
	연령 미상	1.1	1.0	0.1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간질과 알츠하이머환자 수를 더한 결과임

2) 신체장애인의 시설장애인 수에는 노인 관련 시설입소자는 포함하여 있지 않음

3) 자료가 반율립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이하 같은 자료에서 동일)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 신체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인(인) 실태조사」, 2006.

- 신체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6.

- 지적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지적장애인(인) 실태조사」, 2005.

- 지적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5.

- 정신장애인(재가, 시설) -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2011.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 일본의 신체장애인 수는 366.3만명(2006년 기준), 지적장애인 수는 54.7만명(2005년 기준), 정신장애인 수는 320.1만명(2011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2〉 일본 신체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전 체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시각장애	33.6	31.3	35.7	31.1	30.6	31.5
청각장애	31.7	36.8	36.9	36.6	36.1	36.0
지체장애	112.7	151.3	160.2	169.8	179.7	181.0
내부장애	19.7	31.2	47.6	63.9	86.3	109.1

주 1) 1980년은 신체장애아(0~17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표 3-4-3〉 일본 지적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전체	최중증	중증	중간	경증	미상
전체	41.9	6.2	10.2	10.7	9.8	5.0
18세 미만	11.7	2.2	2.8	2.6	3.3	0.8
18세 이상	29.0	4.0	7.4	7.9	6.3	3.4
미상	1.2	0.1	0.0	0.2	0.1	0.8

주 : 재가장애인에 한하며, 2005년 기준임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표 3-4-4〉 일본 정신장애인 수

(단위 : 만명)

구 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전체	223.9	267.5	290.1	287.8
간질	25.1	26.6	21.2	20.9
알츠하이머	7.0	14.7	20.7	32.5
그 외 정신 및 행동장애	9.1	11.1	15.0	16.2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장애 및 신체표현성장애	49.4	58.0	58.4	56.5
기분(감정) 장애(조울증 포함)	68.5	89.6	101.2	92.9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53.1	55.8	60.8	53.9
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에 의한 행동장애 포함)	3.8	4.3	5.2	6.5
혈관성 및 원인불명의 인지 장애	8.4	9.1	9.9	10.7

주 : 재가장애인(외래 정신질환 환자)에 한하며, 질환명은 조사시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 2. 취업현황

### 가. 취업현황

〈표 3-4-5〉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단위 : %)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취업	미취업	무용답	취업	미취업	무용답	취업	미취업	무용답
전 체	45.5	53.1	1.4	51.9	47.0	1.1	28.5	69.5	2.0
15~19세	11.9	85.6	2.6	27.1	72.6	0.3	29.6	66.7	3.7
20~24세	57.8	41.1	1.1	73.0	26.5	0.5	42.7	57.3	-
25~29세	61.1	38.6	0.3	69.5	29.9	0.6	42.2	57.1	0.6
30~34세	63.6	35.1	1.3	62.8	36.7	0.5	36.8	62.5	0.7
35~39세	59.3	39.8	1.0	57.2	42.0	0.8	34.7	63.9	1.4
40~44세	55.0	43.7	1.3	50.9	47.3	1.8	32.5	64.8	2.7
45~49세	54.9	44.3	1.2	49.1	49.1	1.8	31.3	67.7	1.0
50~54세	53.5	45.3	1.2	43.2	51.9	4.9	19.6	76.7	3.7
55~59세	47.2	51.6	1.1	29.8	68.4	1.8	20.8	76.5	2.6
60~64세	32.4	66.1	1.5	27.5	72.0	0.5	14.1	83.8	2.2

주 1) 15~64세 인구 대상임

2)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표 3-4-6〉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	미취업	무응답
신체장애인	소 계	45.5	53.1	1.4
	중 증	36.8	61.8	1.4
	경 증	54.9	44.0	1.1
	기 타	49.7	44.4	5.8
지적장애인	소 계	51.9	47.0	1.1
	중 증	39.8	59.1	1.1
	경 증	62.4	36.9	0.7
	기 타	38.8	53.7	7.4
정신장애인	소 계	28.5	69.5	2.0
	1급	14.8	84.2	0.9
	2급	27.8	70.1	2.1
	3급	38.0	60.2	1.8
	기타	25.4	68.4	6.1

주 1)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갈수록 장애정도가 경함

2) 15~64세 인구 대상임

3)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4) 기타의 경우 수첩의 급수 불명확자 및 등급 무응답자를 말함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일본의 신체장애인 취업비율은 45.5%, 지적장애인은 51.9%, 정신장애인은 28.5%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취업비율도 높음

## 나. 취업자 특성

〈표 3-4-7〉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전 체	100.0	100.0
관리직	7.3	1.1
전문직 및 기술직	13.2	7.9
사무직	19.6	9.6
판매직	5.1	4.4
서비스직	10.2	10.6
보안직	0.8	1.0
생산 공정	9.5	11.3
수송·기계운전	2.7	0.6
건설 및 광산	3.1	0.6
운반·청소·포장	3.7	9.7
농업, 임업, 어업	3.5	2.7
안마, 마사지, 침구	2.5	-
기타	12.9	29.7
무응답	5.9	10.7

주 1) 2011년 11월 1일 기준임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종별 취업자 현황은 조사되지 않아 함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신체장애인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의 1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 기술직' 13.2%, '서비스직' 10.2%, '생산 공정'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신장애인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생산 공정'이 전체의 1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직' 10.6%, '운반·청소·포장' 9.7%, '사무직'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8〉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 체	100.0	100.0	100.0
상용 고용	53.0	20.1	32.4
상용 고용 이외	소계	45.7	77.8
	자영업	12.8	0.4
	가족종업원(자영업보조)	3.6	2.0
	회사, 단체의 임원	10.5	-
	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	3.5	3.9
	부업, 재택취업	1.8	-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5.9	46.0
	지역활동지원센터 등	2.5	18.4
	기타	5.1	7.1
무응답	1.1	2.2	2.7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상용고용'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표 3-4-9〉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단위 : %)

구 分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 체	100.0	100.0	100.0
20시간 미만	5.8	5.5	13.5
20~29시간	13.6	20.4	26.3
30시간 이상	77.9	72.4	52.6
무응답	2.8	1.7	7.5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상용고용' 설명 보기 : 385페이지 참조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고용자의 비율은 신체장애인 53.0%, 지적장애인 20.1%, 정신장애인 32.4%로 나타났으며, 상용고용 이외의 취업형태 중에서는 신체장애인은 '자영업'이 12.8%,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취로이행지원사업 등'이 각각 46.0%,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가 신체장애인 77.9%, 지적장애인 72.4%, 정신장애인 52.6%로 나타남

## 다. 미취업자 특성

〈표 3-4-10〉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100.0	
취업을 희망	50.4	38.8	52.8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	40.5	54.7	39.5	
무응답	9.1	6.6	7.8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표 3-4-11〉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구 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단위 : %)
전 체	100.0	100.0	100.0	
상용고용	42.2	28.5	37.5	
상용고용 이외	54.5	69.1	59.0	
임시·아르바이트	10.8	5.1	7.9	
자영업	7.4	3.2	6.7	
재택취업 등	16.6	-	11.3	
취로이행지원사업 등	5.8	43.5	14.3	
기타	13.9	17.3	18.8	
무응답	3.2	2.5	3.6	

주 : 2011년 11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미취업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의 50.4%, 지적장애인의 38.8%, 정신장애인의 52.8%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희망하는 지적장애인 미취업자 중 43.5%가 ‘취로이행지원사업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용고용’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고용의무 현황

#### 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2〉 일본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기관 및 기업 수	공무원 및 근로자 수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88,325	25,945,069	471,196.5	1.82	38,828	44.0
국 가	40	301,817	7,371	2.44	39	97.5
지방자치단체	2,528	1,384,002	32,928	2.38	2,091	82.7
교육위원회	125	676,557	13,581	2.01	72	57.6
정부부문	2,693	2,362,376	53,880	2.28	2,202	81.8
공공기관	318	369,292	8,369	2.27	213	67.0
민간기업	85,314	23,213,401	408,947.5	1.76	36,413	42.7
민간부문	85,632	23,582,693	417,316.5	1.77	36,626	42.8

- 주 1) 2013년 4월 1일부터 법정 고용의무율은 국가(법·행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기관, 시정촌 기관), 공공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은 2.3%,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민간기업은 2.0%임
- 2) 공공기관이란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 등을 말함
- 3)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 4)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 수는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을 더블카운트한 것이며,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로 계산함
- 5)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3년 6월 기준 일본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관 및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471,196.5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1.82%이며, 전체 고용의무 대상 기관 및 기업 88,325개소 중 현재 38,325개소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달성을 44.0% 수준임

#### 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3〉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01,817.0	7,371.0	2.44	39/40	97.5
행정기관	273,402.5	6,667.0	2.44	30/31	96.8
입법기관	3,536.0	82.5	2.33	5/ 5	100.0
사법기관	24,878.5	621.5	2.50	4/ 4	100.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표 3-4-14〉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명, %, 기관)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22,458.5	8,136.0	2.52	144/156	92.3
도도부현 지사부국	255,526.0	6,501.5	2.54	46/ 47	97.9
기타 도도부현 기관	66,932.5	1,634.5	2.44	98/109	89.9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히카이도(北海道), 교도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3년 일본의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44%로 고용의무율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40개 기관 중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제외한 39개 기관이 현재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고용의무 달성을 97.5%로 상대적으로 높음
-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고, 국가기관보다 높지만, 아직까지 12개 기관이 고용의무에 미달하고 있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3-4-15〉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시정촌 기관	1,061,543.5	24,792.0	2.34	1,947/2,372	82.1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표 3-4-16〉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676,557.0	13,581.0	2.01	72/125	57.6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576,612.5	11,634.5	2.02	12/ 47	25.5
시정촌 교육위원회	99,944.5	1,946.5	1.95	60/ 78	76.9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의무율은 2.2%임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표 3-4-17〉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개소)

구 분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 체	369,292.0	8,369.0	2.27	213/318	67.0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 제외)	180,015.5	4,267.0	2.37	76/100	76.0
국립대학법인	137,104.5	3,142.5	2.29	64/ 90	71.1
지방독립행정법인 등	52,172.0	959.5	1.84	73/128	57.0

주 1)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말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고용의무율은 2.3%임

3)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34%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으나,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2.01%)와 공공기관(2.27%)은 아직까지 미달성 상태임

## 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3-4-18〉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비율
1995년	247,077	1.45	50.6
1996년	247,982	1.47	50.5
1997년	250,030	1.47	50.2
1998년	251,443	1.48	50.1
1999년	254,562(249,920)	1.49(1.48)	44.7
2000년	252,836	1.49	44.3
2001년	252,870	1.49	43.7
2002년	246,284	1.47	42.5
2003년	247,093	1.48	42.5
2004년	257,939	1.46	41.7
2005년	269,066	1.49	42.1
2006년	283,750.5(281,833)	1.52(1.51)	43.4
2007년	302,716	1.55	43.8
2008년	325,603	1.59	44.9
2009년	332,811.5	1.63	45.5
2010년	342,973.5	1.68	47.0
2011년	366,199.0	1.65	45.3
2012년	382,363.5	1.69	46.8
2013년	408,947.5(404,459.0)	1.76(1.76)	42.7

주 1) 민간기업 법정 고용의무율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1.8%, 56명 이상)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1993년~2005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2006년~2010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2011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3) 각년도 6월 1일 기준이며, ( ) 안은 각각 제도개정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수치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3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법정 고용의무율 2.00%에 못 미치며, 달성비율은 42.7%임

〈표 3-4-19〉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 分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85,314	23,213,401.0	408,947.5	1.76	36,413	42.7
50~55명	5,470	288,097.0	4,488.5	1.56	1,885	34.5
56~99명	32,603	2,367,396.0	32,921.5	1.39	14,514	44.5
100~299명	33,497	5,156,348.0	78,157.5	1.52	14,585	43.5
300~499명	6,385	2,272,784.5	38,773.5	1.71	2,537	39.7
500~1,000명	4,274	2,757,609.0	48,791.5	1.77	1,605	37.6
1,000명 이상	3,085	10,371,166.5	205,815.0	1.98	1,287	41.7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표 3-4-20〉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分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전 체	85,314	23,213,401.0	408,947.5	1.76	36,413	42.7
농·임·어업	287	31,759.5	580.5	1.83	149	51.9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55	9,050.0	154.0	1.70	28	50.9
건설업	3,056	642,390.5	10,137.0	1.58	1,317	43.1
제조업	22,501	6,623,557.5	123,015.5	1.86	11,384	50.6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25	220,266.5	4,261.0	1.93	92	40.9
정보통신업	4,200	1,314,825.5	19,437.0	1.48	929	22.1
운수업, 우편업	6,172	1,445,952.5	26,378.5	1.82	2,957	47.9
도·소매업	14,125	3,974,103.5	62,019.5	1.56	4,496	31.8
금융·보험업	1,337	1,148,971.0	21,022.0	1.83	449	33.6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437	357,461.0	5,128.0	1.43	429	29.9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2,230	686,214.5	11,056.5	1.61	664	29.8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2,529	712,280.5	11,939.0	1.68	981	38.8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727	513,764.5	10,197.5	1.98	979	35.9
교육, 학습지원업	1,785	408,149.5	5,901.5	1.45	648	36.3
의료, 복지	13,564	2,371,611.0	48,709.5	2.05	7,284	53.7
복합서비스사업	931	300,024.0	4,893.0	1.63	387	41.6
서비스업	8,153	2,453,019.5	44,117.5	1.80	3,240	39.7

주)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표 3-4-21〉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단위 : 개소)

구 분	전 체	50~55명	56~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전체 기업 수	85,314	5,470	32,603	33,497	6,385	4,274	3,085
미달성 기업 수	48,901	3,585	18,089	18,912	3,848	2,669	1,798
부족 0.5명 또는 1명	30,361	3,585	18,089	7,136	888	480	183
부족 1.5명 또는 2명	10,492	-	-	8,878	912	492	210
부족 2.5명 또는 3명	3,769	-	-	2,281	797	494	197
부족 3.5명 또는 4명	1,941	-	-	530	705	467	239
인원 4.5명 이상 9명 이하	1,971	-	-	87	546	694	644
인원 9.5명 이상 20명 이하	291	-	-	-	-	42	249
인원 20.5명 이상 50명 이하	67	-	-	-	-	-	67
인원 50.5명 이상	9	-	-	-	-	-	9
고용 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29,147	3,474	17,521	8,081	65	6	0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13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2013년 민간 기업(50명 이상 기업, 의무고용률 2.0%)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408,947.5명으로 전년보다 7.0%(26,584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근로자 중 신체장애인이 303,798.5명(전년 대비 4.4%p 증가), 지적장애인이 82,930.5명(11.0%p 증가), 정신장애인이 22,218.5명(33.8%p 증가)으로 정신장애인의 증가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컸음
- 민간 기업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전년도 1.69%에 비해 0.07%p 증가하였으며, 기업 규모 별로는 2013년부터 새로이 자료 제출대상이 된 50~55명 규모의 기업이 1.56%, 기존의 자료 제출대상이었던 56~100명 미만이 1.39%(전년도 1.39%), 100~300명 미만이 1.52%(전년도 1.44%), 300~500명 미만이 1.71%(전년도 1.63%), 500~1,000명 미만이 1.77%(전년도 1.70%), 1,000명 이상이 1.98%(전년도 1.90%)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2.7%로 전년도 46.8%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달성 기업 48,901개소 가운데 59.6%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

〈표 3-4-22〉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 중증신체·지적 장애인	Ⓑ 중증신체·지적 단시간	Ⓒ 중증 이외 신체·지적 및 정신장애인	Ⓓ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 및 정신장애 단시간	Ⓔ 계 (Ⓐ×2)+Ⓑ+Ⓒ+(Ⓓ×0.5)
380	20,018.0	6,715	85	6,864	199	20,478.5
(349)	(17,456.5)	(5,932)	(85)	(5,714)	(161)	(17,743.5)

- 주 1) 일본의 '특례 자회사'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 3) 장애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은 1명으로,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도 1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함
- 2) 2013년 6월 1일 기준이며, ( )는 2012년 6월 현황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3.

#### 4. 고용서비스

〈표 3-4-23〉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유효구직건수	취직건수	취업률
1999년	76,432	126,254	26,446	34.6
2000년	77,612	131,957	28,361	36.5
2001년	83,557	143,777	27,072	32.4
2002년	85,996	155,180	28,354	33.0
2003년	88,272	153,544	32,885	37.3
2004년	93,182	153,984	35,871	38.5
2005년	97,626	146,679	38,882	39.8
2006년	103,637	151,897	43,987	42.4
2007년	107,906	140,791	45,565	42.2
2008년	119,765	143,533	44,463	37.1
2009년	125,888	157,892	45,257	36.0
2010년	132,734	169,116	52,931	39.9
2011년	148,358	182,535	59,367	40.0
2012년	161,941	198,755	68,321	42.2

주 1) Hello Work는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지원국 소속의 직업소개기관이며,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함  
 2)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100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 2012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신규구직 신청건수는 161,941건, 유효구직 신청건수는 198,755건, 취업건수는 68,321건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함

- 취업률은 42.2%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던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여 현재 2008년 이전 수준까지 도달함

〈표 3-4-24〉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2001년	83,557	61,548	25,839	16,357	3,382	5,386	266
2002년	85,996	62,888	26,514	16,511	3,156	6,289	308
2003년	88,272	62,450	25,944	17,602	3,292	7,799	421
2004년	93,182	63,305	26,790	18,953	3,245	10,467	457
2005년	97,626	62,458	26,203	20,316	3,525	14,095	757
2006년	103,637	62,217	26,298	21,607	3,919	18,918	895
2007년	107,906	61,445	26,120	22,273	3,983	22,804	1,384
2008년	119,765	65,207	26,836	24,381	4,299	28,483	1,694
2009년	125,888	65,142	26,507	25,034	4,244	33,277	2,435
2010년	132,734	64,098	26,237	25,815	4,411	39,649	3,172
2011년	148,358	67,379	27,478	27,748	4,856	48,777	4,454
2012년	161,941	68,798	27,986	30,224	5,017	57,353	5,566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표 3-4-25〉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단위 : 건)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2001년	143,777	103,605	43,448	28,794	7,657	10,885	493
2002년	155,180	110,807	46,783	31,317	8,265	12,553	503
2003년	153,544	107,113	45,209	31,544	8,261	14,333	554
2004년	153,984	104,580	44,711	32,220	8,079	16,667	517
2005년	146,679	95,571	41,053	31,320	7,872	19,149	639
2006년	151,897	94,109	40,820	32,870	8,385	24,092	826
2007년	140,791	82,017	35,925	30,561	7,820	27,101	1,112
2008년	143,533	80,313	34,505	30,200	7,692	31,655	1,365
2009년	157,892	84,953	35,982	32,526	8,161	38,488	1,925
2010년	169,116	86,694	36,543	34,078	8,684	45,756	2,588
2011년	182,535	89,018	37,673	36,061	9,225	53,994	3,462
2012년	198,755	92,096	39,146	38,739	9,713	63,392	4,528

자료 : 후생노동성,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표 3-4-26〉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2000년	28,361	19,244	7,693	7,414	1,962	1,614	89
2001년	27,072	18,299	7,480	7,069	1,797	1,629	75
2002년	28,354	19,104	7,402	7,269	1,749	1,890	91
2003년	32,885	22,011	8,678	8,249	1,966	2,493	132
2004년	35,871	22,992	9,210	9,102	2,126	3,592	185
2005년	38,882	23,834	9,427	10,154	2,270	4,665	229
2006년	43,987	25,490	10,024	11,441	2,823	6,739	317
2007년	45,565	24,535	9,835	12,186	3,090	8,479	365
2008년	44,463	22,623	8,884	11,889	3,010	9,456	495
2009년	45,257	22,172	8,460	11,440	2,869	10,929	716
2010년	52,931	24,241	9,289	13,164	3,211	14,555	971
2011년	59,367	24,864	9,678	14,327	3,547	18,845	1,331
2012년	68,321	26,573	10,296	16,030	3,940	23,861	1,857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표 3-4-27〉 일본 Hello Work 취직률

(단위 : %)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소 계	중증장애인	소 계	중증장애인		
2000년	36.5	33.5	31.8	49.0	62.6	33.6	32.6
2001년	32.4	29.7	28.9	43.2	53.1	30.2	28.2
2002년	33.0	30.4	27.9	44.0	55.4	30.1	29.5
2003년	37.3	35.2	33.4	46.9	59.7	32.0	31.4
2004년	38.5	36.3	34.4	48.0	65.5	34.3	40.5
2005년	39.8	38.2	36.0	50.0	64.4	33.1	30.3
2006년	42.4	41.0	38.1	53.0	72.0	35.6	35.4
2007년	42.2	39.9	37.7	54.7	77.6	37.2	26.4
2008년	37.1	34.7	33.1	48.8	70.0	33.2	29.2
2009년	36.0	34.0	31.9	45.7	67.6	32.8	29.4
2010년	39.9	37.8	35.4	51.0	72.8	36.7	30.6
2011년	40.0	36.9	35.2	51.6	73.0	38.6	29.9
2012년	42.2	38.6	36.8	53.0	78.5	41.6	33.4

주) 취업률(%)=(취직건수/신규구직신청건수)×100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표 3-4-28〉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단위 : 건, %)

구 분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 체	68,321	100.0	26,573	100.0	16,030	100.0	23,861	100.0	1,857
농·임·어업	1,220	1.8	278	1.0	390	2.4	511	2.1	41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20	0.0	14	0.1	2	0.0	4	0.0	0
건설업	2,233	3.3	1,141	4.3	303	1.9	725	3.0	64
제조업	9,589	14.0	3,788	14.3	2,856	17.8	2,691	11.3	254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103	0.2	73	0.3	3	0.0	25	0.1	2
정보통신업	1,301	1.9	619	2.3	85	0.5	545	2.3	52
운송업, 우편업	3,795	5.6	1,788	6.7	755	4.7	1,149	4.8	103
도·소매업	10,308	15.1	3,249	12.2	2,902	18.1	3,857	16.2	300
금융·보험업	1,069	1.6	838	3.2	60	0.4	157	0.7	14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849	1.2	396	1.5	153	1.0	273	1.1	27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1,540	2.3	721	2.7	175	1.1	575	2.4	69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399	5.0	1,031	3.9	1,145	7.1	1,145	4.8	78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2,038	3.0	714	2.7	601	3.7	675	2.8	48
교육, 학습지원업	1,300	1.9	593	2.2	240	1.5	430	1.8	37
의료, 복지	18,753	27.4	6,713	25.3	4,042	25.2	7,565	31.7	433
복합 서비스사업	826	1.2	341	1.3	150	0.9	310	1.3	25
서비스업	8,047	11.8	3,332	12.5	1,825	11.4	2,670	11.2	220
공무·기타	1,931	2.8	944	3.6	343	2.1	554	2.3	90

주) 2012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 2011년 Hello Work 서비스를 통한 취업건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27.4%가 '의료, 복지업'에 취업하였으며, '도·소매업' 15.1%, '제조업' 14.0%, '서비스업'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공통적으로 '의료, 복지업'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신체장애인은 제조업 취업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9〉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단위 : 건, %)

구 分	전 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기 타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 체	68,321	100.0	26,573	100.0	16,030	100.0	23,861	100.0	1,857
관리직	50	0.1	33	0.1	1	0.0	13	0.1	3
전문·기술직	5,003	7.3	3,020	11.4	205	1.3	1,611	6.8	167
사무직	13,993	20.5	7,666	28.8	1,122	7.0	4,733	19.8	472
판매직	4,300	6.3	1,253	4.7	1,280	8.0	1,619	6.8	148
서비스직	8,170	12.0	2,752	10.4	2,118	13.2	3,040	12.7	260
보안직	1,105	1.6	723	2.7	77	0.5	276	1.2	29
농림어업직	2,495	3.7	553	2.1	788	4.9	1,095	4.6	59
생산공정직	8,457	12.4	2,925	11.0	2,481	15.5	2,795	11.7	256
운송·기계운전직	2,181	3.2	1,553	5.8	64	0.4	506	2.1	58
건설·채굴직	913	1.3	382	1.4	176	1.1	328	1.4	27
운반·청소·포장 등	21,654	31.7	5,713	21.5	7,718	48.1	7,845	32.9	378

주) 2012년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12년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3.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 조사 설명 보기 : 353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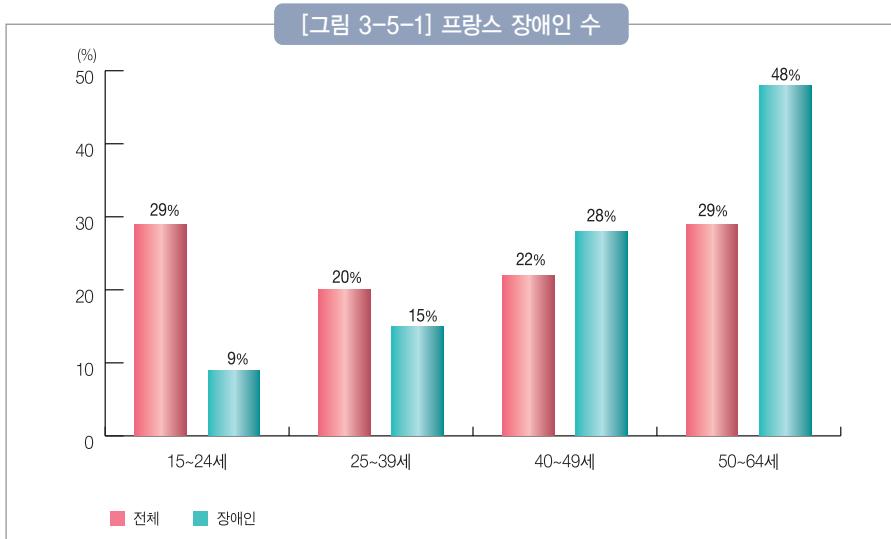
☞ 'Hello Work' 설명 보기 : 386페이지 참조

- 2012년 Hello Work를 통한 취업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의 31.7%가 '운반·청소·포장 등'의 직업에 취업하였고, '사무직' 20.5%, '생산공정직' 12.4%, '서비스직' 12.0%, '전문·기술직'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사무직'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운반·청소·포장 등'의 직업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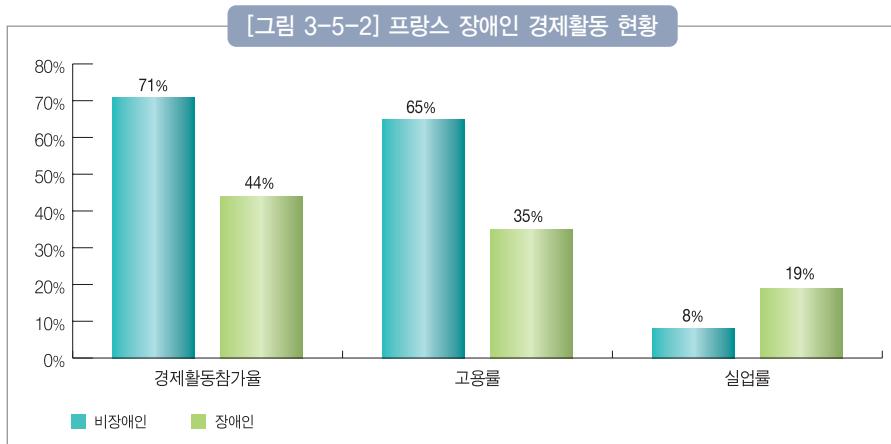
## 제5절 프랑스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2008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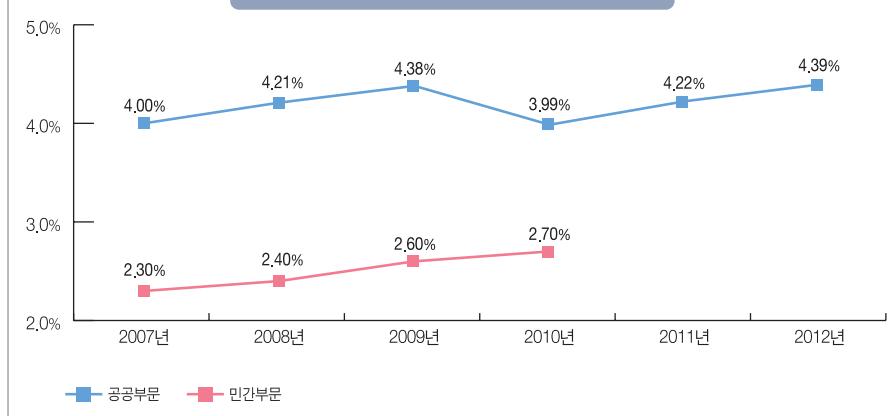
자료 | Drees ; Insee.



주 : 2007년 기준,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와 Cotorep/CDAPH로부터 인정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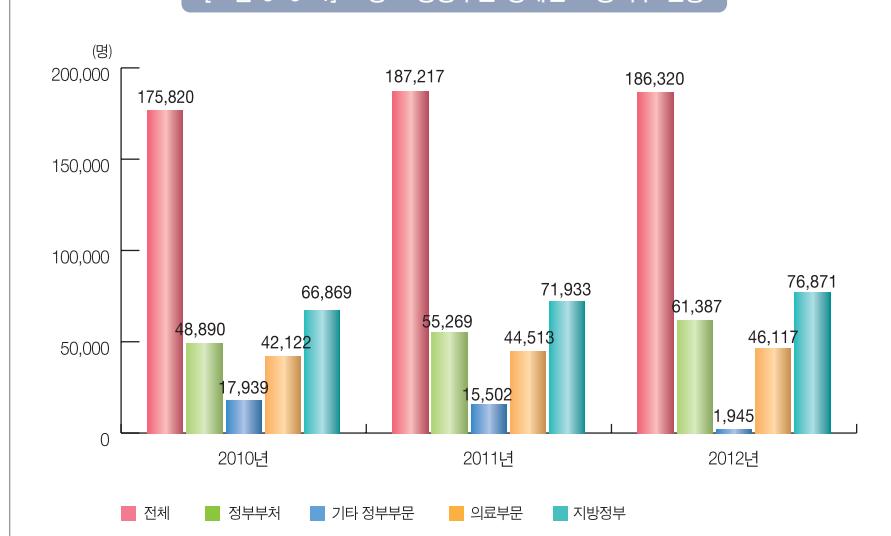
[그림 3-5-3]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주 : 매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2013.

[그림 3-5-4]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주 1) 의무고용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2) 매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2013.

## 1. 장애인구

〈표 3-5-1〉 프랑스 장애인 수

(단위 : 만 명, %)

구 분		전 체	장애인
인 구 수		4,100	250
성별	남 성	49	56
	여 성	51	44
연령별	15~24세	29	9
	25~39세	20	15
	40~49세	22	28
	50~64세	29	48
교육정도별	전문대졸 이상	27	10
	고졸	17	9
	CAP-BEP(직업과정)	25	30
	중등교육 수료	31	51

주 1) 대상 :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

- 2)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 / CDAPH에서 인정함
- 3) CAP-BEP : 프랑스의 직업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CAP(직업과정)이나 BEP(직업교육수료증)이라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직업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음
- 4) 2008년 기준임

자료 : Drees ; Insee.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2008년 기준 프랑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경제활동인구)는 4,100만명, 이중 장애인은 약 250만 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6%임
  - 장애인의 변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64세 비율이 48%이며, 전체의 51%가 중등교육수료자임

〈표 3-5-2〉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구 분	취업 장애인	(단위 : %)	
		실업 장애인	100
전 체	100		100
Cotorep/CDAPH의 RQTH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	70		76
산업재해 장애인	19		11
연금수혜 장애인	8		13
상이군인 및 그에 준하는 자	3		0.4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2008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국립통계경제연구원, 「HID(Handicaps-Incapacités-Dépendance : 장애, 노동 불능, 의존) 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Cotorep/CDAPH' 설명 보기 : 387페이지 참조

## 2. 고용

### 가. 경제활동상태

〈표 3-5-3〉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근로자 수	1,813	9,595	39,390
경제활동 참가율	44	70	71
고 용 율	35	65	65
실 업 율	19	7	8

주 1) 넓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일시적 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2)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고용률 : 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 15세~64세)

실업률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

3) 2007년 기준임

자료 : Insee 프랑스 통계 및 경제연구소.

원자료 : Dares, 2007년 고용 관련 보완 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표 3-5-4〉 프랑스 장애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구 분	15~64세 전체인구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	71	75	67	44	48	39
15~24세	41	43	38	59	62	57
25~39세	89	96	82	63	68	56
40~49세	90	95	86	57	61	53
50~64세	56	60	53	28	32	23
고용률	65	70	60	35	39	31
15~24세	33	36	29	28	38	17
25~39세	82	89	74	51	56	45
40~49세	85	90	81	48	51	45
50~64세	53	57	50	23	27	18
실업률	8	7	9	19	18	22
15~24세	20	17	23	-	-	-
25~39세	8	7	10	18	17	20
40~49세	6	5	6	16	17	16
50~64세	5	5	6	19	18	20

주 1) 장애 인정 : 16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부족 또는 저하로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된 사람, 노동 불능률이 80% 이하인 경우에 Cotorep/CDAPH에서 인정함

2)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

    고용률 : 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 15세~64세)

    실업률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율

3) 프랑스 전체 15~64세 인구 대상임

4) 2007년 기준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원자료 :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 「고용실태 보강조사」, 2007.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인구' 설명 보기 : 388페이지 참조

○ 프랑스 15~64세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 고용률은 65%, 실업률은 8%인 반면, 2005년 법에 의해 Cotorep/CDAPH로부터 인정된 장애인은 각각 44%, 35%, 19%로 나타남

## 나. 취업자 특성

〈표 3-5-5〉 프랑스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무고용사업체수	97,100	96,900	97,200	100,100
전체상시근로자 수	9,188,400	8,964,300	8,848,800	9,264,700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	265,500	307,800	336,900	370,900

주1) 의무고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민간기업, 산업 및 상업분야의 공공부문

주2) 기준년도 2011년이 장애인고용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 : Dares-Analyese Novembre N 070.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표 3-5-6〉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성 별	남 성	61	58
	여 성	39	42
연령별	15~24세	2	7
	25~39세	20	39
	40~49세	32	29
	50세 이상	45	26
종사상 지위	상 용 직	89	90
	계 약 직	7	6
	기 타	4	4
근로 형태	전 일 제	74	87
	시 간 제	26	13
산업별	농 업	1	1
	산 업	31	27
	제 조	6	6
	서비스업	63	66
직위별	임원 이상	6	22
	중간관리자	16	26
	일반사무직	32	23
	생산직 노동자	46	29
근속기간별	1년 미만	11	13
	1년 ~ 2년	7	7
	2년 ~ 5년	15	17
	5년 ~ 10년	16	17
	10년 이상	52	46

주 : 기준년도 2011년의 장애인고용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임

자료 : Dares-Analyses Novembre N 070.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다. 미취업자 특성

〈표 3-5-7〉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전체구직자	3,501,194	4,193,879	4,351,883	4,584,152	4,977,082	5,192,920	최근 1년간 +7.3%
장애인 구직자	213,445	231,227	259,516	295,611	370,674	403,071	최근 1년간 +12.3%
장애인 비율	6.1	5.6	6.0	6.4	7.4	7.7	-

주 : 12월 말 기준

자료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2011.

공공부문 장애인고용기금(FIPHFP)과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과 고용-주요 통계」 2012.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보도자료 「장애인과 고용과 Agefiph의 활동」 2013.6.19.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12년 Agefiph 연례보고서」 2013.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 고용과 실업 주요 통계, N°45- 2013년 12월 말 현재(2013년 9월 말 기준), (TABLEAU DE BORD, Les chiffres de l'emploi et du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N°45 - Bilan à fin décembre 2013, (données janvier-septembre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원자료: Pôle emploi(프랑스 고용센터)

〈표 3-5-8〉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단위 : 명, %)

구 分		구직자	취업자
	전체 인원	81,671	41,237
연령별	만26세 이하	8.2	7.8
	만26-39세	31.9	35.3
	만40-49세	35.0	36.3
	만50세 이상	24.9	20.7
주 장애별	이동	50.7	54.3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	24.0	23.0
	정신질환	8.0	5.2
	감각장애	6.7	8.3
	지적장애	3.1	3.6
	기타(중복장애, 외상성뇌손상 등)	7.4	5.7
교육수준별	V단계	21.0	17.3
	Vbis단계	11.5	10.4
	V단계	46.7	48.9
	IV단계	13.2	15.2
	I-III단계	7.6	8.2
장애인정별	Cotorep/CDAPH	89.7	96.3
	장애인정 대기	3.9	1.0
	기타	6.4	2.7
고용상태별	고용중	6.9	10.5
	실업기간 6개월 미만	25.2	29.5
	실업기간 6-12개월	14.1	14.4
	실업기간 1-2년	16.4	15.5
	실업기간 2년 이상	33.0	26.2
	취업경험 없음	4.4	3.9

주 1) 2006년 Cap Emploi(지방차원에서 CDAPH, Pôle emploi 및 기타 장애인고용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장애인 취업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실적임

## 2) 교육수준

- V단계-의무교육 이수.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만15세까지임(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 Vbis-중등교육 제1과정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수료
- V단계-CAP-BEP(직업과정)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이수
- IV단계-고졸(상업 및 공업고교 포함) 학력 이수
- I-III단계-전문대졸 이상 이수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 'Cap Emploi' 설명 보기 : 389페이지 참조

### 3. 고용의무 현황

〈표 3-5-9〉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분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공부문	4.00	4.21	4.38	3.99	4.22	4.39
민간부문	2.30	2.40	2.6	2.7	-	-

주 1) 매년 1월1일 기준임

2) 고용률에는 간접고용 비율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2013.

☞ ‘장애인 고용’ 설명 보기 : 389페이지 참조

〈표 3-5-10〉 프랑스 공공부문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구 分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체	4.00	4.21	4.38	3.99	4.22	4.39
정부부문	3.88	3.99	4.12	3.10	3.31	3.33
공공의료부문	4.08	4.45	4.68	4.83	4.99	5.10
지방정부	4.17	4.41	4.62	4.86	5.10	5.32

주 1) 매년 1월1일 기준임

2) 고용률에는 간접고용 비율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2008 Atlas National」, 2009.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2013.

☞ ‘장애인 고용’ 설명 보기 : 389페이지 참조

## 〈표 3-5-11〉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전 체	9,991	4,691,350	175,820	10,213	4,714,657	187,217	10,447	4,481,685	186,320
정부부처	351	1,924,388	48,890	340	1,949,607	55,269	432	1,926,372	61,387
기타 정부부문	370	372,842	17,939	360	317,275	15,502	289	69,833	1,945
의료부문	2,253	920,970	42,122	2,267	939,261	44,513	2,259	950,663	46,117
지방정부	7,017	1,473,150	66,869	7,246	1,508,514	71,933	7,467	1,534,817	76,871

주 1) 의무고용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2) 매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 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2012,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4페이지 참조

## 〈표 3-5-12〉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分	2006년	2007년	2008년
고용의무 사업체수	122,800	126,200	129,100
총근로자 수	9,021,100	9,368,000	9,456,000
장애인근로자 수	482,000	498,800	502,800
지체장애 근로자	233,200	262,700	284,000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200,200	226,600	243,300

자료 : 「2008년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장애인고용 현황」 Dares, 2010년

Dares,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es établissements de 20 salariés ou plus du secteur privé, bilan de l'année 2008」, 2010

원자료 : 장애인고용의무현황 보고서, Dares, 2010년

Dares, DOETH (Déclaration Obligatoire de l'Emploi de Travailleurs Handicapés). 장애인 고용 의무 신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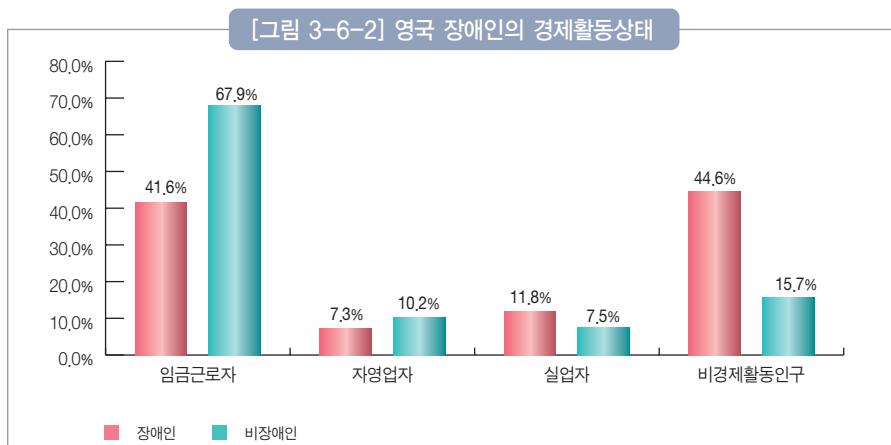
## 제6절 영국

###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주 :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차별법에 의해서 분류하나, 분류되지 않는 장애 개념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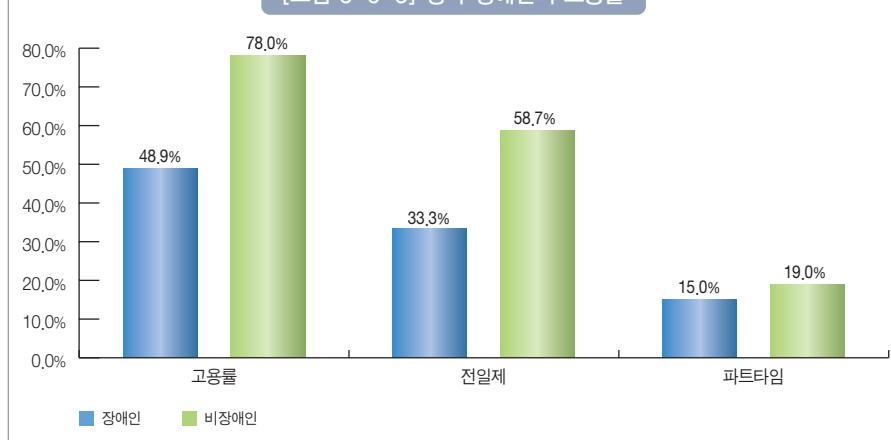
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2」.



- 주 1) 근로 가능한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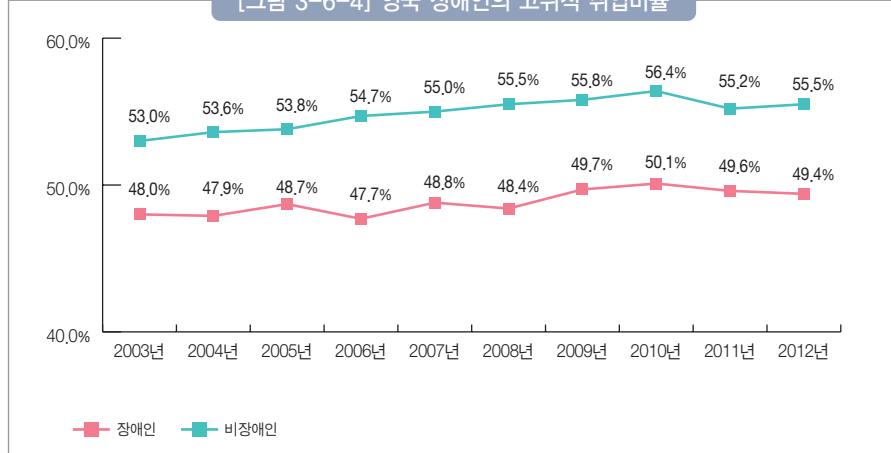
[그림 3-6-3]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장애는 장애인차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2) 2012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그림 3-6-4]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비율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고위직이라 함은 전문 직종에서 관리자, 중간 책임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를 뜻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 1. 장애인구

〈표 3-6-1〉 영국 장애인 수

(단위 : 백만명)

구 분	전 체	성 인	아 동
2004년	10.1	9.5	0.7
2005년	10.1	9.5	0.7
2006년	10.8	10.1	0.7
2007년	10.4	9.8	0.7
2008년	10.6	9.8	0.8
2009년	10.9	10.1	0.7
2010년	11.0	10.2	0.8
2011년	11.2	10.4	0.8

주 1)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함

2)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하나, 분류되지 않는 장애 개념도 있음

3)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6페이지 참조

☞ ‘장애인구’ 설명 보기 : 390페이지 참조

〈표 3-6-2〉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단위 : 백만명)

구 分	전 체	남 성	여 성
2004년	10.1	4.8	5.3
2005년	10.1	4.9	5.3
2006년	10.8	5.2	5.7
2007년	10.4	4.9	5.5
2008년	10.6	5.0	5.6
2009년	10.9	5.1	5.8
2010년	11.0	5.1	5.8
2011년	11.2	5.3	5.9

주 1) 장애 개념은 〈표 3-6-1〉 참조

2) 각 항목의 수치는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2」.

☞ 조사 설명 보기 : 356페이지 참조

〈표 3-6-3〉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단위 : 백만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0.1	10.1	10.8	10.4	10.6	10.9	11.0	11.2
이동능력	6.2	6.0	6.2	6.2	6.3	6.4	6.3	6.4
들어올리기, 나르기	5.9	6.0	6.1	6.0	6.0	6.1	6.0	6.1
손기능	2.6	2.5	2.5	2.6	2.6	2.7	2.6	2.7
억제능력	1.3	1.2	1.6	1.5	1.5	1.5	1.5	1.7
의사소통	1.7	1.9	2.0	1.9	2.0	2.0	2.1	2.0
기억력/집중력/학습	2.0	2.0	2.0	1.9	2.0	2.2	2.2	2.3
위험에 대한 지각력	0.6	0.6	0.6	0.7	0.7	0.7	0.7	0.8
신체협응력	-	2.2	2.2	2.4	2.4	2.4	2.4	2.6
기타	1.9	2.8	3.2	3.2	3.4	3.5	3.8	3.9

주 1) 장애유형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활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말함

2) 중복장애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3) 전체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전체 장애인 수를 말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prevalence factsheet」.

원자료 : 노동연금부, 「FRS(Family Resources Survey : 가족자원조사) 2011/12, June 2013」.

☞ 조사 설명 보기 : 356페이지 참조

- 2011년 영국의 장애인 수는 11.2백만명으로, 성인은 10.4백만명, 아동은 0.8백만명이며, 남성은 5.3백만명, 여성은 5.9백만명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이동능력, 들어올리기/나르기, 손기능 등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2. 고용

〈표 3-6-4〉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2003년	39.2	6.2	7.3	51.0	71.1	9.6	4.5	15.5
2004년	40.2	6.6	6.4	50.0	70.8	9.7	4.5	15.7
2005년	40.8	6.2	7.1	49.4	71.0	9.5	4.3	15.9
2006년	40.7	6.8	8.4	48.2	70.7	9.5	5.0	15.5
2007년	40.7	6.5	8.4	48.4	70.3	9.7	4.9	15.9
2008년	41.6	6.7	8.6	47.1	70.3	9.8	5.0	15.8
2009년	40.9	6.6	10.1	47.2	68.1	9.7	7.5	16.0
2010년	41.5	6.9	11.1	45.6	67.9	9.6	7.5	16.2
2011년	41.6	7.2	10.9	45.2	67.9	9.5	7.6	16.2
2012년	41.6	7.3	11.8	44.6	67.9	10.2	7.5	15.7

주 1) 근로 가능한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 '경제활동상태' 설명 보기 : 390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대체적으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음

- 2012년 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4.6%이나 비장애인은 15.7%로 약 2.8배 높게 나타남

〈표 3-6-5〉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단위 : %)

구 분	장애인 고용률			비장애인 고용률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전 체	전일제	파트타임
2003년	45.4	31.9	13.5	80.7	61.4	19.2
2004년	46.8	32.4	14.3	80.5	61.4	19.0
2005년	47.0	33.3	13.6	80.4	61.6	18.8
2006년	47.4	33.3	14.1	80.2	61.7	18.4
2007년	47.2	32.8	14.4	80.0	61.7	18.2
2008년	48.3	34.3	14.0	80.0	61.7	18.3
2009년	47.5	32.9	14.4	77.7	59.3	18.3
2010년	48.4	33.5	14.8	77.5	58.5	18.8
2011년	48.8	33.1	15.6	77.5	58.9	18.5
2012년	48.9	33.3	15.0	78.0	58.7	19.0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2년 현재 48.9%로 비장애인 고용률 7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장애인 중 파트타임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15.0%이며,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33.3%임

〈표 3-6-6〉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팔, 손	49.5	50.6	53.6	49.7	52.8	50.4	50.2	51.7	55.8	52.0
다리, 발	41.7	43.6	44.2	42.6	45.2	44.7	44.2	46.3	46.2	50.5
등, 목	42.8	43.0	40.5	44.8	43.9	45.6	45.6	46.9	47.6	50.1
시각	37.9	48.9	47.2	45.4	54.9	54.4	47.3	51.2	48.6	55.5
청각	66.1	66.3	69.4	68.2	66.0	67.3	69.2	55.5	64.2	57.6
심한 손상 <small>과부질환 알레르기</small>	76.7	71.8	74.8	78.7	69.0	78.0	75.4	74.2	80.0	69.4
가슴, 호흡문제, 천식, 기관지염	64.8	65.3	67.3	66.5	65.7	65.8	65.9	65.1	63.8	63.9
심장, 혈압, 순환기계	55.1	58.7	59.4	60.9	62.2	62.2	59.8	62.0	65.6	65.0
위, 간, 신장, 소화기관	52.5	58.8	58.9	63.7	55.2	61.8	61.4	64.2	63.8	62.8
당뇨	69.3	71.1	69.5	71.9	69.8	75.0	71.1	70.5	70.1	69.7
우울증, 신경과민 불안감	24.5	23.4	26.0	25.8	26.7	29.0	28.3	34.3	31.1	36.6
간질	48.2	40.7	55.6	47.1	43.9	47.4	51.3	48.9	44.6	43.7
학습장애	22.4	26.1	22.4	18.1	19.8	24.6	24.6	19.0	16.7	14.1
정신질환, 공포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14.6	15.8	12.1	14.0	14.0	15.5	16.3	19.3	17.7	17.2
진행성 질환	45.1	47.6	47.3	41.2	47.2	45.8	50.2	47.8	52.1	49.1
기타	55.0	57.0	57.3	58.0	56.8	57.6	57.7	55.3	61.2	59.9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주요 장애를 식별하도록 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고용률에서는 2012년 현재 ‘당뇨’ 69.7%, ‘과부질환’ 69.4%, ‘심장, 혈압, 순환기계’ 65.0% 등의 순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습장애’ 14.1%, ‘정신질환’ 1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임

### 3. 취업자 특성

〈표 3-6-7〉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구 분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48.0	47.9	48.7	47.7	48.8	48.4	49.7	50.1	49.6	49.4
비장애인	53.0	53.6	53.8	54.7	55.0	55.5	55.8	56.4	55.2	55.5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고위직이라 함은 전문 직종에서 관리자, 중간 책임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를 뜻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표 3-6-8〉 영국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

구 分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7.5	6.9	8.3	8.3	7.9	9.2	11.4	10.5	11.1	12.9
비장애인	7.0	6.7	7.0	7.0	7.2	7.6	9.6	10.2	10.2	10.9

주 1) 보수의 기본 수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4) 최근 조사 인구에 대한 재추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표된 LFS(Labor Force Survey)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있음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 2011년 현재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은 49.4%로 비장애인 55.5%에 비해 6.1%p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의 비율은 12.9%, 비장애인은 10.9%로 장애인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6-9〉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단위 : 파운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	9.20	9.54	9.80	10.39	10.60	11.31	11.67	12.23	11.94	12.15
비장애인	10.06	10.67	10.94	11.37	11.97	12.23	12.73	12.95	13.14	13.25

주 1) 취업(자영업 포함) 중이라고 응답한 모든 근로가능연령 성인(남성 16~64세, 여성 16~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현재 장애에 대해서 보고한 응답자는 「장애인 차별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한 장애의 개념과 일치함

3) 시간당 급여 계산 시 초과근무는 포함되지만 자영업, 공무원, 훈련프로그램, 무급가족종사자, 부업은 제외함

자료 :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equality indicators」.

원자료 : 통계청, 「Labor Force Survey, Q2 : 2분기 노동력조사」.

☞ 조사 설명 보기 : 355페이지 참조

-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는 2012년 현재 12.15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13.25 파운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수준은 대체적으로 조사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부 록

- 1. 수록 통계 소개
- 2. 주요 용어 해설



## 1. 수록 통계 소개

### 가. 국내통계

#### 1) 조사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Disabilities Survey, 제11732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조사목적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1980년 이후 5년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조사대상	- 표본의 크기 :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조사구당 평균 223가구) - 조사완료가구 및 가구원수 : 38,231가구의 가구원 수는 105,496명 - 조사장애인수 : 6,010명
조사내용	- 가구 및 장애 판별 조사 - 장애인 개별 조사(재가장애인 조사)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조사방법	- 가구부문 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조사 : 사회복지통합망 행복e음을 통해 조사
조사기간	- 2011. 5. 30 ~ 2011. 8. 18 (약 3개월)
조사항목	<장애인 개별조사> - 일반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특성(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 <사회복지시설 조사> - 시설 일반사항(시설명, 시설종류, 시설 거주자 등), 시설장애인 특성(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역사회 내 공동생활가정 전이 여부)
조사체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2-2023-8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02-380-8387)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제383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년)

조사목적	- 장애인의 생애경제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직업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조사연혁 및 주기	- 2007년 패널구축조사 실시 -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09년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10년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11년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 2012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실시 완료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자 표기 가구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가구 및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명부 - 표본의 크기 :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5~75세 5,092명 등록장애인(제주 제외) - 조사완료 : 총 4,297명
조사방법	-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2. 4. 30 - 조사기간 : 2012. 5 ~ 2012. 7 (3개월)
조사항목	- 패널의 인적사항 및 장애정보,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현재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하고 있는 주업의 일자리,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인소득, 가구 일반사항, 직업력 ※ 지난 조사 결과 재확인 및 지난 조사 이후의 변화와 경험, 현재 상태, 지난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파악하는 직업력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57)
정보출처	- <a href="http://edi.lead.or.kr">http://edi.lead.or.kr</a>

○ 「주거실태조사 (Korean Housing Survey, 제09008호)」,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2012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 및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주택법 제5조 1항과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li>- 2007년 특수(노인가구, 장년가구, 시설거주 노인)조사 실시</li> <li>- 2008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li>- 2009년 특수(장애인가구)조사 실시</li> <li>- 2010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li>- 2011년 특수(임대주택가구)조사 실시</li> <li>- 2012년 일반(가구)조사 실시</li> </ul> <p>※ 일반조사는 짹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 실시</p>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수 : 33,000가구</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을 활용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6. 28 ~ 2012. 8. 31</li> <li>- 조사기준 시점 : 2012. 5. 31</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042-866-8532)</li> </ul> <p>※ 2012년 이전 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함</p>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molit.go.kr">www.molit.go.kr</a></li> <li>- <a href="http://www.onmara.go.kr">www.onmara.go.kr</a></li> </ul>

○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and Status, 제12017호)」,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2년)

조사목적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주기적 파악 · 분석을 통해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과 정책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음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부터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정보격차 조사 실시 ※ 2006년까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매년,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조사</li> <li>- 2004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li> <li>- 2007년부터 일반국민 및 4개 모든 취약계층 대상의 조사 매년 추진 ※ 종합 보고서와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현황보고서 등 총 5종의 보고서 발간</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7~69세 재가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li> <li>- 조사 모집단 : 2012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장애)</li> <li>- 조사완료 : 전국 16개 광역시도 3,000명</li> </ul>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준시점 : 2012. 8. 1</li> <li>- 조사기간 : 2012. 8 ~ 2012. 10</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li> <li>- 정보이용 및 비이용 특성 :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도, 인터넷 이용 · 비이용 형태 및 특성, 정책ニ즈 파악 등</li> <li>- 정보격차지수 산출 : 접근, 역량, 양적활용, 질적활용</li> </ul>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안전행정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행정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문화과(02-2100-4075)</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기획부(02-3660-2707)</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www.nia.or.kr">http://www.nia.or.kr</a>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Disabled Persons, 제10003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년)

조사목적	- 장애인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대상의 기준 및 규모를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장애인 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 및 실시</li> <li>- 2013년 통계청 매년 실시 승인</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 2013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 거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li> <li>- 조사 모집단 : 2012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및 접근 불가능한 요양소 수용자 제외)</li> <li>- 조사완료 : 총 8,000명</li> </ul>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실시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 2013. 5. 12 ~ 2013. 5. 18 [1주간]</li> <li>- 사전조사기간 : 2013. 5. 2 ~ 2013. 5. 12 ※ 경제활동상태 사전 파악</li> <li>- 본조사 : 2013. 5. 21 ~ 2013. 7. 8 [7주간]</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특성(성별, 생년월일, 가족구성원 등),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가구정보(가구주 파악, 총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li> <li>- 경제활동상태 판별(지난 주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 휴직 여부 및 이유,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종사상 지위, 근무직종, 근무환경 등), 실업자(취업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향후 희망 취업 관련 등), 비경제활동인구(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및 과거 취업 경험, 향후 취업의사 등)</li> <li>- 평소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서비스 욕구</li> </ul>
조사체계	- 조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51)
정보출처	- <a href="http://edi.kead.or.kr">http://edi.kead.or.kr</a>

○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제3830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관련 규모의 추정과 고용실태, 고용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근거</li> </ul>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li> <li>-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li> <li>-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는 조사목적과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로 구성</li> <li>- 기본조사의 기업체 수는 30,003개이며, 심층조사의 기업체 수는 6,286개임(결과 비교를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체 5,262개와 미고용기업체 1,024개로 구성)</li> <li>- 본 조사에서 표본은 통계청의 '2010년 기업체 명부'에서 법인기업체(회사 및 회사 이외 법인)를, '2010년 경제총조사 명부'에서 개인기업체를 추출하여 모집단 범위 작성</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인단체, 상시근로자 0명인 기업체는 제외</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조사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li> <li>- 심층조사 :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타계 방식</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조사 : 2012. 8 ~ 2012. 10</li> <li>- 심층조사 : 2012. 10 ~ 2012. 11</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현황, 모집과 채용, 채용계획, 노무관리, 업무환경, 교육과 훈련, 장애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법·제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고용 인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62)</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edi.kead.or.kr">http://edi.kead.or.kr</a></li> </ul>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The survey on the disabled enterprises, 제14214호)」, 중소기업청(2011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 근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실시</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li> <li>- 조사 모집단 : 2009년도 조사모집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규등록기업 가운데 조사시점 현재 유효 장애인기업 리스트</li> <li>- 조사완료 : 2,500개 장애인기업</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9 ~ 2011. 10</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현황(일반적 현황, 인력, 대표자 현황)</li> <li>- 재무관련 현황(재무정도, 자금 조달방법, 자금사정)</li> <li>- 창업관련 사항(창업배경, 창업지원, 창업 시 어려움/수요)</li> <li>- 경영활동사항(판매 및 마케팅, 공공구매, 사업확대, 조직화 현황, 경영 애로사항, 향후 경영활동계획)</li> <li>- 지원정책사항(기업활동 지원정책,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정책, 정책수요)</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청</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0)</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mba.go.kr">http://www.smba.go.kr</a></li> </ul>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Report 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제11735호)」,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8년)

조사목적	-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 및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세분화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근거
조사연혁 및 주기	- 1998년 제1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2003년 제2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2008년 제3차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	- 목표 모집단 :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조사 모집단 : 편의증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07,730개소
조사방법	- 대상건축물 방문 현황실측조사
조사기간	- 2008. 7 ~ 2009. 4 (10개월)
조사항목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접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조사체계	- 시·도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52)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국토교통부(2011년)

조사목적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
조사연혁	- 2006년 교육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표본조사(전국) -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 200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전국) - 2009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7대도시) - 2010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9개 지방자치단체) - 201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조사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 7대 특별 및 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등
조사항목	-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장래예측,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지하철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현황 등
조사체계	- 시 · 군 · 구 ⇌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8)
정보출처	- <a href="http://weak.motm.go.kr">http://weak.motm.go.kr</a>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Survey on participation in sports for Disabled, 제11320호)」,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2년)

조사목적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죄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책기초자료 수집
조사연혁 및 주기	- 2008년 12월 16일 작성승인 -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전국의 등록장애인 - 조사 대상 : 전국의 10~69세 등록장애인 - 조사규모 : 1,5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대인면접 등을 병행 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2. 11. 20 ~ 2012. 12. 20
조사항목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및 비실행 비율, 운동의 목적, 운동의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생활체육 비참여 실태(운동에 대한 의지, 희망하는 운동 종목,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장애인 생활체육관련 정보 신뢰성, 장애인 운동의 효과,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 장애인 전문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기타 의견) -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
조사체계	- 조사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체육과(02-3704-9898)
정보출처	-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 - <a href="http://www.kosad.or.kr">http://www.kosad.or.kr</a>

## ○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국립중앙도서관(2011년)

조사목적	-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특수학교도서관, 청각장애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관종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장애인서비스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장서 개발, 시설, 직원, 예산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총 817개관(공공도서관 776개관, 점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5개관) - 조사결과 : 총 809개관(공공도서관 768개관, 점자도서관 36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5개관)
조사방법	- Fax 및 E-mail을 활용한 조사(단, 전화 면담을 통해 응답 유도)
조사기간	- 2011. 1. 16 ~ 2011. 2. 8
조사항목	- 설치 여부 및 위치(장애인 도서관(자료실) 설치 여부, 장애인 코너 설치 여부, 도서관 위치) - 전답인력 운영 현황(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운영 여부) - 시설 현황(자료열람 및 대체자료 제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 장서 현황(일반자료 소장 현황, 대체자료 소장 현황, 연간 증가 자료 수, 대체자료 제작 현황) - 이용 및 정보 서비스 현황(등록 회원 수, 방문 이용자 수, 자료대출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 예산 현황(도서관(복지관) 총예산, 예산 지출 내역, 예산 수입 내역)
조사체계	- 조사기관↔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02-3483-8855)
정보출처	- <a href="http://www.nl.go.kr">http://www.nl.go.kr</a>

## ○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Housing Census, 제10101호)」, 통계청(2010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li> <li>-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2000.7.1.제정) 근거</li> </ul>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총조사 : 1925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18차에 해당</li> <li>- 주택총조사 : 1960년 이후 5년 주기로 조사, 2005년은 10차에 해당</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 2010. 11. 1 ~ 2010. 11. 15 (15일간)</li> <li>- 조사기준시점 : 2010. 11. 1 0시 현재</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두 인구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li> <li>- 이 중 10% 표본조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에 관한 사항 : 아동보육, 5년 전 거주지, 활동제약, 통근통학 여부, 통근 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년월, 총 출생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li> <li>· 가구에 관한 사항 :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시설, 임차료 등</li> <li>· 주택에 관한 사항 : 거처의 종류, 연건평, 대지면적, 방수, 건축년도 등</li> </ul> </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 통계청</li> <li>-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조사구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 조사관리자 ⇔ 조사원</li> <li>·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 · 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li> </ul> </li> </ul>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042-481-3739)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 「인구동향조사(Vital Statistics, 제10103호)」, 통계청(2013년)

조사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조사연혁	- 신라시대부터 호적제도 존재 - 1938년 조선총독부 총독령에 의한 조선인구동태조사 규칙제정 - 1970년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 일원화 - 1997년 8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 채택 - 2004년 1월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인터넷웹기반으로 전환 운영 - 2008년 1월 인구동태조사규칙 시행(제정 2007.12.28 재정경제부령 591호) - 2008년 10월 통계 명칭 변경(인구동태조사→인구동향조사)
조사주기	- 매월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써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를 한 자
조사방법	-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공무원이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PC를 이용하여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입력
조사기간	- 매월 1일 ~ 말일
조사항목	- 출생신고(신고일, 출생자에 관한 사항, 혼인신고 시 성·본 협의서 제출 여부,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모의 총 출산아수) - 사망신고(신고일, 사망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최종졸업 학교, 발병(사고)당시 직업, 혼인상태, 사망종류, 사고종류, 사고 발생지역, 사고 발생장소, 사망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사망원인 진단자) - 혼인신고(신고일,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전혼인해소 일자, 성·본 협의서 제출여부,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최종졸업학교, 직업) - 이혼신고(신고일,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실제이혼연월일,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 최종졸업학교, 직업)
조사체계	- 읍·면·동, 시·구↔시·도 및 군↔통계청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042-481-2258)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제10104호)」, 통계청  
(2013년)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연혁	- 1963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 - 2005년 7월 : 공식 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 - 2007년 9월 :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준, 32,580→32,000가구) - 2008년 1월 :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 - 2009년 7월 :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조사주기	- 매월
조사대상	- 조사 모집단 : 조사대상 월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혼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 - 표본의 크기 : 약 32,000가구
조사방법	-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 -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 -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 인터넷조사(CASI) 조사 ※ 준비조사 기간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가구 변동내용을 미리 파악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조사실시기간 :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조사항목	- 기본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관계 - 확인항목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 월간의 구직여부 - 세부사항 : 부업여부, 취업시간, 구직기간,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3939)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

## ○ 「사회조사(Social Survey, 제10118호)」, 통계청(2011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li> </ul> <p>※ 통계법 제 17조 1항 근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년 이후 매년 조사</li> <li>- 1996년 지정통계 지정</li> <li>- 2008년 사회통계조사를 사회조사로 명칭 변경</li> <li>- 조사 주기 : 연간(각 부문별 2년 주기)</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li> </ul>
조사기간	<p>(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시점 : 2011. 7. 15</li> <li>- 조사기간 : 2011. 7. 15 ~ 2011. 7. 29 (15일간)</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순환조사</li> <li>- 2011년 조사부문(5개) : 문화와 여가, 복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담당자↔지방청(사무소)↔통계청</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042-481-2272)</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kosis.kr">http://www.kosis.kr</a></li> </ul>

○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11702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p>※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근거</p>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영양조사와 국민건강조사를 통합하여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li> <li>-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제4기(2007~2009년), 제5기(2010~2012년), 조사 실시</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모집단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국민</li> <li>- 표본의 크기 : 매년 192개 조사구, 3,384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1,520명</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조사(영양조사) 및 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 1. 1 ~ 12. 31</li> <li>- 조사실시기간 : 연중 매주 3일간 전국 4개 지역 조사(연중조사체계)</li> </ul>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설문조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비만 및 체중조절, 활동제한, 삶의 질, 손상, 이환, 의료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li> <li>- 검진조사 :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 검사, 흉부X-선검사,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li> <li>- 영양조사 :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식품섭취조사</li> </ul>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3)</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li> </ul>

## 2) 보고통계

## ○ 「등록장애인현황(Registered Disabled Persons, 제11761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등록장애인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
작성대상	- 전국의 등록장애인
작성사항	-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시도별 현황, 연령별 유형별 성별 현황, 연령별 등급별 성별 현황(15개 장애유형별 구분), 연령별 지역별 성별 현황 등
작성주기	- 분기
작성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등록장애인 현황 결과표를 집계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통계연보(매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Present Status on the Oblig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제11830호)」,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민간부문의 부담금 징수누락 확인, 장애인 고용정책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정부부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민간부문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작성사항	- 정부부문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유형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 민간부문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근로자 명부 등
작성주기	- 반기
작성체계	- 정부부문 : 중앙인사기관장, 광역지자체장, 지방교육청장↔고용노동부장관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제출 명령↔상시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집계↔고용노동부 보고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보고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기상황 보고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
공표방법	- 언론(보도자료)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장애인고용과(044-202-748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국 기업지원부(031-728-7238)
정보출처	-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 <a href="http://www.lead.or.kr">http://www.lead.or.kr</a>

○ 「산재보험통계(Repor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제11811호)」,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작성목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수,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요율 조정, 징수 등의 현황 파악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산재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작성사항	- 사업종류별 월말 적용 사업장 수, 신규적용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 수, 산재보험 징수 결정액, 충당액, 수납액 및 결손액 - 업종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및 지급건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금액 현황
작성주기	- 매월
작성체계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담당자(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처리)↔근로복지공단 본부(매월 취합하여 마감처리)↔고용노동부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산재보험사업연보 - 산재보험 및 고용징수 실적 분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2-2110-7219)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연구2부(02-2670-0249)
정보출처	-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 <a href="http://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a>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Quarterly Analysis Report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제38301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작성목적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의 특성·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자료 및 기초 통계로 활용
작성대상	- 취업지원관련 기관(공단,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투게더( <a href="http://www.worktogether.or.kr">www.worktogether.or.kr</a> )를 통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
작성사항	- 공통사항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대별, 직종별, 지역별 구인인원, 구직자수 및 취업건수 - 구인사항 : 규모별, 산업별 구인인원 및 취업건수 - 구직사항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등급별 구직자수 및 취업건수
작성주기	- 매분기
작성체계	-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간의 연계(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전산 처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취합하여 마감처리)↔고용노동부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 취업지원부(031-728-7053)
정보출처	- <a href="http://www.kead.or.kr">http://www.kead.or.kr</a>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Statistics on childcare facilities and users, 제15407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보육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전국 보육시설(일반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작성사항	- 보육시설 수·보육아동 수·종사자 현황, 장애아 전담시설 수 및 아동현황, 장애아 통합시설 수 및 아동현황, 종사자, 아동현원 남녀구분, 정부인건비지원시설 현황, 보육시설 미설치지역현황, 보육료지원대상 자격요건, 일반시설(특수보육 지정시설 외) 시간연장형 등 특수보육 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 전국 시군구 및 보육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 활용
공표방법	- 간행물, 국가모니터링 시스템에 공표
통계간행물명	- 보육통계 - 보건복지통계연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02-2023-8931)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건강보험통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제92006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건강보험 적용인구
작성사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요양기관, 건강보험재정현황, 급여실적, 건강보험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자료, 의료급여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함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건강보험통계연보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분석팀(02-3270-984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통계정보공개부(02-2182-2541)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Livelihood Protection Recipients Statistics, 제11714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작성사항	-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 보건복지부↔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행정정보망의 복지행정시스템 정책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통계연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31)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장애인 수급자 현황(Allowance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Recipient, 제11762호),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장애수당 수급자 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수립 및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이상 전체 등록 장애인
작성사항	- 전국 장애수당 예산액 및 수급자 수
작성주기	- 반기
작성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행복e음’ 통계자료 추출 및 읍·면·동(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자료) 활용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보건복지통계연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054)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국민연금통계(National Pension Statistics, 제32202호), 국민연금공단」

작성목적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작성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작성사항	- 가입자현황 : 종별 가입자,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등 - 징수현황 : 월별징수 현황 등 - 급여현황 :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등 - 심사청구현황 : 사안별 심사청구 처리 현황 등 - 기금현황 : 기금조성, 운용 현황
작성주기	- 1년
작성체계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심사청구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지사(제신고서 접수 및 입력)↔국민연금공단 - 기금 현황 :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공단
공표방법	- 간행물과 전산망(인터넷) 게재
통계간행물명	- 국민연금통계연보
담당부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02-3218-8615)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a href="http://www.nps.or.kr">http://www.nps.or.kr</a>

## 3) 그 외

##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작성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내용 수록
작성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급) 기관 관리자 등
작성사항	- 특수학교 현황(교직원, 학급 수, 학생 현황 등),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특수학급 수 및 학생 수, 교원 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등) - 고등부 졸업생 취업 현황 등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복지국 특수교육지원과(02-2100-6561)
정보출처	- <a href="https://www.knise.kr">https://www.knise.kr</a>

##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작성목적	-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대상	- 국내외 보건복지분야
작성사항	-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정보출처	-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

## ○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작성목적	-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 추이를 통한 예산 확보 및 기초자료 활용
작성대상	-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작성사항	- 영역별, 대상별 장애인 정책(소득보장, 직업재활, 고용정책,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건축 및 이동편의, 인권증진,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여성장애인, 노인장애인 등)
작성주기	- 1년
담당부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부
정보출처	- <a href="http://www.koddi.or.kr/">http://www.koddi.or.kr/</a>

## 나. 해외통계

### 1) OECD

#### ○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OECD

조사설명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els/disability">http://www.oecd.org/els/disability</a>

## 2) 독일

## ○ 「중증장애인 통계(Statistik der schwerbehinderten Menschen)」, 독일 연방 통계청

조사설명	- 「사회법전 제9권」제131조(장애인의 생활과 사회참여)와 연방통계법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조사 - 사회정치적, 정책적인 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조사주기	- 2년(끌자리 홀수연도에 시행)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주(州)별,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중증장애인 현황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사회법전 제9권」에 따른 장애정도 50이상)
조사 방법 및 배포	- 조사된 내용이 사회보장청에서 지방통계청으로 제공되면 지방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관청에 등록된 기록과 검토됨. 연방통계청은 16개 지방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정보출처	- <a href="http://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a>

## ○ 「중증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Statistik aus dem Anzeigeverfahren gemäß §80 Abs.2 SGB IX)」, 독일 연방 노동공단

조사설명	- 「사회법전 제9권」제80조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 통계
조사기관	- 연방 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조사주기	- 매년 실시
조사내용	- 상시근로 20인 이상 고용주 수, 공공 및 민간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준 중증장애인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률별 현황, 고용주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산업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성별/연령별/장애 정도별/지역별/산업분야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 (민간 및 공공부문)

## ○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독일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

조사기관	-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부조사무소 연합체(BIH ;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조사주기	- 매년 실시
조사내용	- 각 주(州)별 조정금 징수 및 지출에 관련한 통계, 중증장애인 해고 등의 관련 통계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고용주(민간 및 공공부문)
참고사항	- 통계보고서 아님. 연례보고서 안에 중증장애인 관련 통계자료가 들어있음

## 3) 미국

## ○ 「American Community Survey」, U.S. Census Bureau

조사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 프로그램의 추산과 행정을 위해 연방, 주, 지방정부 정보 제공</li> <li>- 매년 중요한 경제, 사회, 인구통계 및 주택정보를 제공</li> <li>-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센서스는 단순히 인구의 수만 파악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센서스조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ACS를 사용</li> </ul>
조사기관	- U.S. Census Bureau
조사주기	- 매년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의 질문에 기초하고 있음. 다음 질문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하되,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장애는 5세 이상, 자립생활장애는 18세 이상에 한함</li> <li>1) hearing disability(청각장애) :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2) vision disability(시각장애) :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3) cognitive disability(인지장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4) ambulatory disability(보행장애) :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5) self-care disability(자기관리장애) :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li> <li>6) 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장애) :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www.census.gov">http://www.census.gov</a>

## ○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조사설명	- 미국의 노동력 통계 및 소득 통계에 관한 정보 제공 - 2008년 6월 16세 이상 장애인(시설입소자 제외)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 추가
조사기관	- U.S. Bureau of Labor
조사주기	- 매월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는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6개 질문 세트를 이용함. 다음 질문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라는 응답을 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별</li> <li>▣ 이번 달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일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응답.</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각장애 또는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2) 맹인이거나 또는 안경을 썼음에도 시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3)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인하여 집중,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4)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가?</li> <li>5)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li> <li>6)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쇼핑 같은 일을 혼자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li> </ol>
정보출처	- <a href="http://www.bls.gov/cps/cpsdisability.htm">http://www.bls.gov/cps/cpsdisability.htm</a>

#### 4) 일본

##### ○ 「장애인 백서」, 내각부

조사기관	- 내각부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주소 : <a href="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index-w.html</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5hakusho/zenbun/index-w.html">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5hakusho/zenbun/index-w.html</a></li> </ul>

##### ○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후생노동성

조사설명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취업, 미취업, 취업형태, 직종, 구직활동 등 취업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연혁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조사 발표(2008. 1. 18)</li> <li>- 2008년 11월 1일부터 실시 예정</li> </ul>
조사대상	- 전국의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수첩, 정신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 후생노동성 ↔ 민간조사기관 ↔ 조사사업소(우편방식)
조사기준시기	- 2011. 11. 1.
담당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주소: <a href="http://www.mhlw.go.jp/seisakuunitsuite/bunya/koyou_ruchi/koyou/shougishakoya/ruchi/hl30909-1.html">http://www.mhlw.go.jp/seisakuunitsuite/bunya/koyou_ruchi/koyou/shougishakoya/ruchi/hl30909-1.html</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mhlw.go.jp/houdou/2008/01/dl/h0118-2b.pdf">http://www.mhlw.go.jp/houdou/2008/01/dl/h0118-2b.pdf</a></li> </ul>

#####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장애인 고용 현황</li> <li>- 웹주소 : <a href="http://www.mhlw.go.jp/stf/houdou/0000029691.html">http://www.mhlw.go.jp/stf/houdou/0000029691.html</a></li> <li>- 파일 주소 : <a href="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704000-Shokugyouantei_kyokukoureishougaikoyoutaisakubu-shougaishakoyoutaisakuka/251119_syougaikoyoujoukyou.pdf">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704000-Shokugyouantei_kyokukoureishougaikoyoutaisakubu-shougaishakoyoutaisakuka/251119_syougaikoyoujoukyou.pdf</a></li> </ul>

##### ○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후생노동성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lt;2012년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gt;(2012.5.15. 후생노동성 보도자료)</li> <li>- 웹주소 : <a href="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31ock.html">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31ock.html</a></li> <li>- 파일주소 : <a href="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31ock-att/2r98520000031oga.pdf">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31ock-att/2r98520000031oga.pdf</a></li> </ul>

## 5) 프랑스

## ○ 「2008 Atlas National」, Agefiph

조사설명	- 프랑스 전국의 장애인 실태를 다루고 있는 자료집 - 주요 단체의 통계조사를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 제시하고 시대에 따라 비교함
담당기관	-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정보출처	- 웹주소 : <a href="http://www.Agefiph.fr">http://www.Agefiph.fr</a>

## ○ 기타 조사

ANPE	-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국가고용사무소 - 구직자와 구인 사업체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자료 생산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 월말 구직 : ANPE에 월말 등록된 구직자 - 등록 구직 : 일정기간 실직 등록된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 - 실직탈출 구직 : 일정기간 실직에서 벗어난자의 구직 동향 집계 자료 - 등록 구인 : ANPE에 등록된 구인 집계 자료
Drees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 - 보건 및 사회의료분야의 분석 및 조사 실시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 Cotorep/CDAPH의 활동 :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으로 추출 - 사회기반 설문조사 : 4년에 한번 근로지원센터, 보호작업장, 장애아동 및 성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편설문조사 - 사회보건기관 국가색인 : 이를 이용하여 Drees 및지방, 현 사회보건국이 사업 우영 중인 기관과 재정 지원되는 기관의 수 파악, 또한 이 색인 사회기관 설문 조사의 기초자료로 쓰이며 온라인 자료서비스인 "Statiss 2007"에 자료 지원
Dares	-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 - 프랑스 노동부 내에서 노동, 고용, 직업훈련분야 통계의 생산, 분석, 보급을 담당
Insee	- 프랑스 국립경제연구원 - 프랑스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 보급 - 아틀란스에 사용된 자료 - 2002, 2007년 고용 설문조사 자료 - 1998~2001년까지의 설문조사 '장애 무능력 의존'의 결과 -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평가 -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생성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Agefiph 연례보고서」	- 프랑스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gefiph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관련 통계를 포함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 (FIPHFP) 「FIPHFP 연례보고서」	- 프랑스 공공부문(중앙정부 부분, 지자체 부분, 의료부분)의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fiphfp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이행 관련 통계를 포함 (정보출처 : <a href="http://www.fiphfp.fr">http://www.fiphfp.fr</a> )

## 6) 영국

## ○ 「LFS(Labor Force Survey)」, 영국 통계청

조사설명	-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발효 이전에 장애정도와 근로 조건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기관	- 영국 통계청
조사형태	- 가구조사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애 : 모든 유형</li> <li>- 대상인구 : 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16~64세 연령대 남성, 16~59세 연령대 여성)</li> <li>- 모집단 포함범위 : 62.5%(전체인구에서의 근로연령인구 비율)</li> <li>- 경제활동 : 모든 경제활동</li> <li>- 고용상태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li> <li>- 고용지위 : 근로자, 자영업자, 공공근로나 공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자, 무급가족 종사자</li> <li>- 사업체 : 모든 형태와 규모</li> <li>- 지역 : 전국</li> <li>- 제한사항 : 조사 샘플에는 지역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호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li> </ul>
장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로 쓰이는 용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근로제약이 있는 장애</li> <li>-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 정신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불리한 장기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상의 문제</li> <li>- 근로제약 :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li> <li>- 용어의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법(1995년)</li> <li>- 장애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 1년</li> </ul>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분류체계 : 근로연령 범주 내에서의 모든 연령대 구분)</li> <li>- 교육수준(분류체계 : ISCED 국제 표준교육분류)</li> <li>- 기타 개인 특성(분류체계 :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li> <li>- 생활상태 종류(분류체계 :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li> <li>- 고용상의 지위(분류체계 : ILO 기준 적용)</li> <li>- 직업(분류체계 : 기본직업분류)</li> <li>- 경제활동(분류체계 : ILO 기준)</li> </ul>
교차변수	- 장애 변수는 모든 변수별로 교차분석이 가능함
배포	- 정부간행물 : 노동시장경향 - 계간 부록

○ 「FRS(Family Resources Survey)」, 영국 노동연금부

조사설명	- 개인가구의 환경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실시
조사기관	- 영국 노동연금부(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조사방법	- 영국 전역 2만 9천 가구를 뽑아 표본조사로 실시
조사주기	- 매 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연금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li> <li>·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포함한 개인의 소득, 주택 가격, 자산과 저축, 경제 상태 등을 파악</li> <li>·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종별 장애인 수에 대한 자료 파악 가능. 단, 영국 전체의 가구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님.</li> <li>· 조사의 표본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조사함</li> </ul>
장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li> <li>·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li> <li>·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li> <li>·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li> <li>·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li> </ul>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보고서 발행</li> <li>- <a href="http://www.dwp.gov.uk/asd/frs">http://www.dwp.gov.uk/asd/frs</a></li> </ul>

## 2. 주요 용어 해설

### 가. 국내통계

#### 1) 장애인구

##### ○ 등록장애인

사용통계	- 등록장애인현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li> <li>- 장애인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li> <li>·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li> </ul> </li> <li>- 장애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가지로 분류</li> <li>· 1999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차 확대</li> <li>· 2003년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2차 확대</li> </ul> </li> <li>- 장애유형 및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1~3급, 5급)</li> <li>·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2~4급)</li> <li>·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li> <li>·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li> <li>·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2급, 5급)</li> <li>·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li> <li>·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핵물,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2~4급)</li> <li>·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3~4급)</li> <li>· 자폐성장애 : 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1~3급)</li> <li>· 장루·요루장애 :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2~5급)</li> <li>·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1~3급)</li> <li>·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1급~3급)</li> <li>· 지체장애 : 결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1급~6급)</li> <li>·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급~6급)</li> <li>·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1~3급)</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출현율에 의한 실제 장애인 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중증장애인

사용통계	- 등록장애인현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단,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호흡기, 간질 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li> </ul>

### ○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li> <li>- 가구원 :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음.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에 포함된 사람 : 여행, 출장 등으로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사람, 기도원, 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사람, 공익근무, 1개월 미만의 기출자, 미결수, 선박·항공기·철도 탑승승무원,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하숙인·자취인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li> <li>·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에 살고 있는 사람,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양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장애인가구 :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 보육원, 양로원, 수도원 등의 특수사회시설 및 각종 기숙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가구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음

### ○ 중증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이 1, 2급인 장애인
이용 상 유의점	- 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가구주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함</li> <li>·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li> </ul>
이용 상 유의점	- 호주 또는 세대주와 가구주는 상이한 개념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혼인상태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15세 이상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li> <li>· 미혼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li> <li>· 유배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li> <li>· 사별 :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li>· 이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li>· 별거 : 이혼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li> </ul>

###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일상 생활동작 :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동작 즉,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에 가기, 목욕하기, 위생처리하기 등 개인적인 독립에 기초한 하루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하는 동작들</li> <li>- 수단적 일상 생활동작 : 보다 진보된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그리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동작들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과제에는 가정관리와 지역사회 생활기술, 건강관리, 안정관리 등이 포함됨</li> </ul>

###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li> <li>·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까지는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보조기구’라는 용어로 대체됨</li> </ul>

## 2) 고용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인구 :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제외자(현역군인, 재소자 등)를 제외한 인구로 노동가구 인구로 볼</li> <li>-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li> <li>-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li> <li>·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li> </ul> </li> <li>-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li> <li>-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 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li> <li>-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li> <li>-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li>-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li>-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념과 기준을 적용함</li> <li>- 무급으로 동일가구 내 비혈연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돋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음</li> <li>- 일시휴직자는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하며,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복귀가 확실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명한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인 경우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판단함</li> <li>- 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직활동은 적극적 구직활동의 개념을 적용하며 대상 기간은 4주임</li> <li>- 발령예상일이 30일 미만인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간주하며, 30일 이상의 발령대기자는 구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함</li> </ul>

## ○ 종사상 지위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li> <li>-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li> <li>·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li> <li>·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종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li> </ul> </li> <li>-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li> <li>·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li> <li>·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함</li> <li>-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자영자로 분류함</li> <li>-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됨</li> <li>- 직위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주 또는 자영자이나 법인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li> </ul>

## ○ 산업, 직업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말함</li> </ul> </li> <li>-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의 종류 : 조사대상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명, 직위와는 다르며, 직무 또는 직업을 의미함</li> </ul> </li> </ul>

### ○ 취업시간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일한 시간</li> <li>- 취업시간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li> <li>· 정규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li> <li>·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li> <li>·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 0.5시간(30분)이상은 반올림하여 한 시간으로 간주</li> <li>·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li> <li>·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li> </ul> </li> <li>-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통근소요시간</li> <li>· 사적 용무를 본 시간</li> <li>· 집안일(가사)에만 종사한 시간</li> <li>· 무보수 봉사와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매일 일거리가 변하여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계산함

### ○ 근속기간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현 직장 취업년월을 이용하여 2013년 5월까지의 근무기간을 개월로 환산

### ○ 구직기간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li> </ul> </li> <li>- 구직기간 계산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 첫 시작일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마지막날(土)까지</li> <li>· 구직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반올림하여 1개월로 계산</li> <li>· 최소 구직기간은 1개월이 되도록, 15일 미만도 1개월로 기입</li> <li>·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음</li> <li>- 실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됨</li> </ul>

### ○ 평균임금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세금, 적금, 기부금(후원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는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 ○ 근로형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li> <li>- 비정규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li> <li>&gt;&gt; 비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li> </ul> </li> <li>.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li> <li>. 비전형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파견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li> <li>&gt;&gt; 용역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li> <li>&gt;&gt; 특수형태근로 :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li> <li>&gt;&gt; 가정 내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li> <li>&gt;&gt; 일일(단기)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li> </ul> </li> </ul> </li> </ul>

###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조건은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li> <li>·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li> <li>·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li> </ul> </li> <li>- 활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 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학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분류함</li> <li>· 가사 :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해당됨</li> <li>· 통학 :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사업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외)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됨. 중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함</li> <li>· 취업준비 :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li> <li>· 진학준비 :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li> <li>· 연로 : 조사대상기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가사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해당됨</li> <li>· 심신장애 : 정신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li> <li>· 결혼준비 : 결혼을 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사람</li> <li>· 쉬었음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li> </ul> </li> </ul>

### ○ 구직단념자

사용통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li> <li>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li> <li>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li> </ul> </li> </ul> <p>- EDI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li> <li>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li> <li>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li> <li>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li> </ul>
이용 상 유의점	- EDI 구직단념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것으로 전체 인구 비교가 어려움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사용통계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용어설명	<p>-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년도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00년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li> <li>‘04년도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을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주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li> <li>‘06년도부터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li> <li>‘07년부터는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공사설적액 기준에서 실제 근로자 수로 변경</li> <li>‘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의무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li> <li>‘10년부터 민간부문 고용의무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그 외 2.3%로 상향조정</li> <li>‘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시행</li> </ul> <p>- 고용의무인원(명)=적용대상인원(명)×고용의무율(2~3%) (소수점 이하 절사)</p> <p>- 장애인 고용률(%)=(장애인 수(명)/적용대상인원(명))×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p>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부문의 장애인 수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의 장애인 공무원 수임으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아님</li> <li>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의무 사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률로 간주할 수 없음</li> </ul>

### ○ 기업체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사업주 단위의 기업(enterprise)을 의미함. 따라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장)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기업체는 법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법인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회사이외법인(사단, 재단, 학교), 실체를 갖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의 비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개인 기업체가 있음

### ○ 상시근로자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의미함

### ○ 장애인 근로자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로 한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정부기관과 국공립교원은 제외됨
이용 상 유의점	- 타 통계수치와 비교 시 주의 필요

### ○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사용통계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채용(공개채용, 특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만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함께 제공된 채용 기회에 대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용전형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함</li> <li>· 채용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 최종 합격자 수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 이외의 배려(가산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학력제한 완화, 추가 테스트 시간 배정, 보조도구나 편의시설 제공, 수화통역사를 비롯한 지원인력 배치 등)를 제공한 경우도 일반 공개채용으로 인정</li> </ul> </li> <li>- 장애인 할당채용(또는 구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채용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는 제도</li> </ul> </li> <li>- 장애인 특별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만을 채용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채용 전형</li> </ul> </li> </ul>

## ○ 산재보험 장해급여

사용통계	- 산재보험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掌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li> <li>- 장해급여 :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li> <li>· 수급자 :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말함</li> <li>· 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연금 : 제1급(329일분) ~ 제7급(138일분)</li> <li>&gt;&gt; 일시금 : 제8급(495일분)~제14급(55일분)</li> <li>&gt;&gt;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제4급~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년도 재해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 수에 포함됨</li> </ul>

## ○ 장애인기업

사용통계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li> <li>-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제외)이 장애인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규정</li> </ul>

## ○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사용통계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인인원 수</li> <li>- 구직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구직인원수</li> <li>- 취업수 : 해당 분기 내에 신규로 등록된 취업인원수</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구인, 구직 및 취업확정 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며, 2006년 4/4분기부터는 노동부 워크넷의 자료가 포함됨</li> <li>- 장애인 노동시장의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함</li> </ul>

## ○ 고용서비스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페널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할 사회복지재단이 취업알선, 직업상담, 보장구 지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전반적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li> <li>- 고용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직업)상담 : 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일자리 선택의 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것</li> <li>· 취업정보제공 : 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맞는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li> <li>· 직업능력평가 : 자신의 직업적성이나 능력을 알고 싶을 때,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실시되는 평가</li> <li>· 직업탐색 : 구직장애인의 장애특성(장애유형 및 정도)과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li> <li>· 진로지도 : 구직장애인의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li> <li>· 취업알선 :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li> <li>· 취업 후 지도 :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환경적용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서비스</li> <li>· 창업자금융자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융자 서비스</li> <li>· 영업장소전대지원 :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업장을 임대하여 빌려주는 제도</li> <li>· 통근차량융자(자동차구입 자금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직업생활안정 자금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시설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li> <li>· 시설자금무상지원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나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li> <li>· 운영자금융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li> <li>·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li> <li>· 고용관리 비용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사업장에 위촉 또는 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li> </ul> </li> </ul>
용어설명	

## ○ 고용서비스(계속)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폐널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서비스 종류(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 장려금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고용의무율(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li> <li>· 장애인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중증장애인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기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li> <li>·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무지도원등을 배치하는 프로그램.</li> <li>·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 장애인이 적성, 희망,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 직업재활훈련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및 신체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훈련</li> <li>· 자립생활훈련 :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li> </ul> </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교육 : 장애인이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li> <li>· 보호고용 : 보호된 작업환경 속에서 장애인 개인에게 근로경험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나가도록 도와주는 고용 방법 (예: 보조작업장, 재택고용, 기업내 집단고용)</li> <li>· 활동보조인 및 근로지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활동보조인 : 장애인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자로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육체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함</li> <li>&gt;&gt; 근로지원인 : 장애인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을 지원하는 보조자로서, 이들은 장애인의 직무 중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함</li> </ul> </li> <li>· 직업적응훈련 :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li> <li>·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직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작업보조기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i> </ul>

### 3) 경제

#### ○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지출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월평균 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3개월간 벼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li> <li>-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li> <li>- 농가의 경우 ‘연간 쌀 몇 가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재 살 가격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계산</li> <li>- 가구 월평균 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편의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li> <li>-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함</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은 가구지출액에서 제외, 부채나 이자 지출은 포함</li> </ul>

####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은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며, 재활보조기구, 컴퓨터 구입과 같은 일회성 비용은 내구기한을 고려하여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함</li> </ul>

#### ○ 소득계층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 소득증가율 3.90%를 적용하여 소득범위를 결정</li> <li>- 소득증가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1인가구 이상 전가구의 명목소득에서 비경상소득과 비소비지출을 빼 소득의 2007년과 2008년 사이 증가율을 적용</li> <li>-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li> <li>- 저소득층 : 185만원 이하(1~4분위)</li> <li>- 중소득층 : 185만원 초과 363만원 이하(5~8분위)</li> <li>- 고소득층 : 363만원 초과(9~10분위)</li> </ul>

## ○ 주택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li> <li>- 가구가 돋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li> <li>·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li> <li>·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li> </ul> </li> <li>- 주택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li> <li>·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돋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li> <li>·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li>·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math>660\text{m}^2</math>(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ul> </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 · 비닐하우스 · 웜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li> <li>- 점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li> <li>·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li> <li>·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li> <li>·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li> <li>·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li> </ul> </li> </ul>

### ○ 소득, 생활비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 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됨(상여금 등 포함)</li> <li>·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자산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실제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미포함)</li> <li>·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단,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미포함)</li> <li>· 기타소득 : 사회보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돈,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지원금, 보험금, 퇴직금, 복권 탄 돈, 중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돈이 포함됨</li> </ul> </li> <li>- 생활비 : 매달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 가구 가사 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를 의미함(단, 주택임대료 및 저축,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li> <li>- 주거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 · 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됨(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 · 유지비는 제외)</li> </ul>

### ○ 주거환경 만족도

사용통계	- 주거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차여건 ② 집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③ 시장·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이용 편리 ④ 각종 사회복지 시설 여건(노인 및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문화 센터, 구민 회관 등) 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 ⑥ 치안, 범죄 등 방법 상태 ⑦ 미취학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동네 환경 ⑧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환경, 학군 ⑨ 병원, 보건소 등 의료 시설에 가깝고 이용 편리 ⑩ 집 주변의 소음 상태 ⑪ 주변 자연 환경(녹지 공간, 공원, 산책로 등) 여건 ⑫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li> </ul> </li> </ul>

## ○ 주거지원프로그램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li> <li>-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 포함</li> <li>-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li> <li>·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li> </ul> </li> <li>-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임(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li> <li>-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li> </ul>
용어설명	

## ○ 정보격차 지수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장애인</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격차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 지표</li> <li>-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격차 산출</li> <li>-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함</li> <li>- 지수 산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지수=필요시 접근가능성×0.6+정보기기 성능×0.2+정보기기 보유정도×0.2</li> <li>· 역량지수=컴퓨터 사용능력×0.5+인터넷 사용능력×0.5</li> <li>· 활용지수=양적 활용지수×0.6+질적 활용지수×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양적 활용지수=PC·인터넷 사용여부×0.7+PC·인터넷 사용시간×0.3</li> <li>&gt;&gt; 질적 활용지수=일상생활 도움정보×0.6+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0.4</li> </ul> </li> <li>· 종합지수 = 접근지수 × 0.3 + 역량지수 × 0.2 + 활용지수 × 0.5</li> <li>· 정보격차 지수 ={1-(장애인의 지수 원점수/일반국민의 지수 원점수)}×100</li> </ul> </li> </ul>

#### 4) 고용

##### ○ 보육시설

사용통계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시설</li> <li>-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li> <li>-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li> <li>-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가정 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직장 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li> <li>· 민간 보육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li> </ul> </li> <li>-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li> </ul>

##### ○ 특수교육

사용통계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li> <li>-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li> <li>-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지원 등</li> <li>-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li> <li>-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li> <li>-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li> </ul>

### ○ 진학률, 취업률

사용통계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 × 100</li> </ul> </li> <li>-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li> </ul> </li> <li>- 전공과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li> </ul>

### ○ 특수교육비

사용통계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직원의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li> </ul>

### ○ 직업능력개발

사용통계	- 장애인고용페널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고자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워드 자격증 준비, 토플 및 토익학습, 텔레마케터를 위한 전화예절 교육, 지게차 운전면허교육, 창업교육 등</li> </ul> </li> <li>-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li> <li>·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벤트성, 인성 관련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길 찾기 등의 훈련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함</li> </ul> </li> </ul> </li> </ul>

## 5) 보건

### ○ 장애 치료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재활관련 기관의 의사 또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 등 주된 장애의 치료를 위해 이용한 기관을 모두 포함함

### ○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사용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입 :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li> <li>- 직장건강보험 :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공무원,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li> <li>- 지역건강보험 :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li> <li>- 의료급여 1종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1종에 가입된 경우</li> <li>- 의료급여 2종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2종에 가입된 경우</li> </ul>

###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사용통계	- 건강보험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장구 현금급여 : 등록장애인의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장구(휠체어 등 77종) 구입 시 상한액의 80% 지급</li> <li>-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타법에 의한 지원자 : 이제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li> <li>&gt;&gt; 행려환자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li> </ul> </li> <li>·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li> </ul> </li> </ul>

## 6) 복지

### ○ 장애인 복지사업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조사</li> <li>- 장애수당의 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li> <li>-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li> <li>-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li> <li>- 자립자금 대여(창업자금 대여 등)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li> <li>-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 장애인 고용의무, 직업재활시설운영 등</li> <li>- 기타 : 장애인 고용의무, 무료법률 구조제도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업</li> <li>- 실시 주체별 복지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활품 판매 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 험 급여(의료보험)실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li> <li>· 기타 중앙행정 기관 시행사업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혜택,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중여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 고용의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의 감면</li> <li>·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면제·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 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li> <li>· 지방이양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재활 병·의원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과정사업 등</li> <li>· 기타기관 시행사업 : 전화요금 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특별분양 알선, 무료법률구조제도,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li> </ul> </li> </ul>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급가구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li> <li>-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조건부 수급자 가구 포함)</li> <li>· 의료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li> <li>· 교육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li> <li>· 자활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li> </ul> </li> </ul>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li> <li>-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 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li> <li>- 수급자 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는 가구(세대)의 모든 세대원 수이며,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이외의 수급자</li> <li>·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급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사용</li> </ul>

###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li> <li>-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 아동 중 장애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해당년도의 월평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것임</li> </ul>

### ○ 장애연금

사용통계	- 국민연금통계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li> <li>- 장애일시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li> </ul>

### ○ 장애인 거주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li> <li>-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lt;별표 5&gt;</li> <li>· 주요내용 :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li> <li>- 지방자치단체 입소의뢰에 따라 입소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li> </ul>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li> <li>-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li> <li>- 보호고용 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직정임금 및 최저임금)를 지급받는 장애인</li> </ul>
이용 상 유의점	-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소, 각 시 · 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용통계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lt;별표 4&gt;</li> <li>· 주요내용 :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등</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므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 할 수 없음

### ○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말함</li> <li>-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li> <li>· 규정내용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포함한 시설임</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수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li> </ul>

### 7)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 ○ 일상생활 도움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실태조사</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시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주관적인 도움 정도를 파악</li> <li>- 대가 지불 여부 :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보호(수발)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파악함. 장애인이 형제나 부모에게 자신을 보호(수발) 또는 간병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li> </ul>

#### ○ 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백서</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li> <li>-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 대상임</li> <li>- 신청 장애인에 따라 월 42~10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이면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80시간까지 추가 지원됨</li> <li>-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8,300원이며, 기초수급자 : 무료, 차상위계층 : 2만원, 차상위 초과(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은 기본급여액의 6~15% 본인이 부담해야 함</li> </ul>

###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사용통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li> <li>-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li> </ul>

### ○ 생활체육 실행자

사용통계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li> <li>-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안에서 운동하는 자</li> </ul>

## 나. 해외통계

## 1) OECD

## ○ 장애인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가별 개별 통계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li> <li>·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li> <li>·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li> <li>· 덴마크 · 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li> <li>·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li> <li>·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li> <li>· 네덜란드 : LFS 2006</li> <li>· 폴란드 : LFS 2004</li> <li>· 스위스 : LFS 2008</li> <li>· 영국 : LFS 2006</li> <li>·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li> </ul> </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li> <li>·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li> <li>· 덴마크 · 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li> <li>·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li> <li>·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li> <li>·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li> <li>·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li> <li>·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li> <li>·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li> <li>·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li> </ul> </li> </ul>
이용 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인은 자기 판정을 통해 구별됨</li> <li>-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장애관련 조사 설문지는 비슷하나, 국가별 비교가능성은 설문지의 번역상의 문화적 차이와 자기 판정의 주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음</li> </ul>

## 2) 독일

### ○ 연방노동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 창출, 실업 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li> <li>· 고용주 자문 및 지원</li> <li>· 준 중증장애인 인정 및 취소</li> <li>· 고용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감독</li> <li>· 장애인작업장 선정 및 취소</li> <li>· 통합전문가(서비스)의 선정 및 재정적 지원</li> </ul> </li> <li>- 연방노동공단은 각 주(州)별로 주노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총 10개의 주노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li> </ul>
------	---

### ○ 중증장애인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정도(Gdb)가 50/100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한편 장애정도가 30/100~50/100 미만인 장애인 가운데 노동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사람(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li> <li>-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음. 장애정도는 각 장애 영역별로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음</li> </ul>
------	---

###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까지는 16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이상 고용해야 함</li> <li>- 2001년부터 법정 고용의무율을 인하하여 일부 연방 정부기관(6%)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li> <li>- 독일 「사회법전 제9권」을 일부 개정하여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li> </ul>
------	---

### ○ 조정금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까지는 법정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율 6%를 미달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중증장애인 미고용 1인당 월 200마르크의 조정금을 납부해야했음. 그러나 2001년부터 중증장애인 실제 고용률에 따라 조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0~2%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260유로</li> <li>· 고용률 2~3%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180유로</li> <li>· 고용률 3~5% 미만 : 미고용 1인당 월 105유로</li> </ul> </li> </ul>
------	--

### 3) 미국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Current Population Survey)</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인구(Employed person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기간동안 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 또는 15시간 이상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li> <li>2) 직업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 문제, 노동 분쟁, 모성/부성 휴가 또는 다른 가족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쉬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지에 대해서는 불문함) 각각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 명의 취업인구로 계산됨.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집안일, 폐인트칠, 수선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자선 활동 등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의 활동의 경우는 제외함</li> </ol> </li> <li>- 실업인구(Unemployed persons)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기간 동안 일을 가지지 않으며</li> <li>2) 일시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li> <li>3)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 동안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구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을 뜻함. 입사대기자의 경우에는 실업인구로 분류</li> </ol> </li> <li>-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 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 사람 모두를 뜻함</li> <li>-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인구의 비율</li> <li>-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li> <li>-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전체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li> <li>-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li> </ul>

### ○ 수입, 빈곤층

사용통계	-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봉급, 수수료, 보너스와 텁의 총액</li> <li>· 소유와 동업을 포함한 비농업과 농업 사업의 자영업 수입</li> <li>· 토지와 신탁으로 부터의 얻는 이자, 배당금, 순임대료, 이용</li> <li>· 사회보장연금과 철도퇴직금; 보충적소득보장제도(SSI)</li> <li>· 주 그리고 지방 복지사무소로부터 얻는 생활보호와 보조금</li> <li>· 퇴직, 유가족, 장애 연금</li> <li>· 퇴역군인인금(VA), 실업수당, 자녀양육과 이혼수당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다른 수입</li> </ul> </li> <li>- 빈곤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관리예산국에서 빈곤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li> <li>· 미국인구조사국은 가족 수와 구성으로 하여 달려 기준으로 소득수준 이용</li> <li>· 가족 총수입이 평균 소득수준 보다 적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됨</li> </ul> </li> </ul>

### 4) 일본

#### ○ 장애인 및 장애정도

사용통계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 신체장애인 수첩 1, 2급인 자</li> <li>· 경증 : 신체장애인 수첩 3~6급인 자</li> </ul> </li> <li>- 지적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 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A1, A2, 1급, 2급 등인 자</li> <li>· 경증 : 요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B1, B2, C, 3급, 4급인 자</li> </ul> </li> </ul>

#### ○ 상용고용

사용통계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용어설명	- 1주의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 단,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자 및 1년 이상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

### ○ 고용의무현황, 고용률

사용통계	-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법정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 - 일반 민간기업(50명 이상 규모의 기업) : 2.0%</li> <li>· 공공기관(43.5명 이상 규모의 특수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 2.3%</li> <li>·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43.5명 이상 규모의 기관) : 2.3%</li> <li>·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45.5명 이상 규모의 기관) : 2.2%</li> </ul> </li> <li>※ ( ) 안은 각각의 비율(법정 고용률)에 의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기업 등의 규모임</li> <li>※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을 고용했을 때 2명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됨</li> <li>※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으로 인정하고, 중증 이외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와 정신장애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0.5명으로 계산함</li> <li>- 근로자 수(법정 고용 장애인 수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율에 상당하는 인원(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로 곱해서 얻은 수)을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함</li> <li>- 실고용률 : 장애인 수/근로자 수×100</li> </ul>

### ○ Hello Work

사용통계	- Hello Work 취업 현황 보고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공공 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 수행)</li> <li>- 일본의 고용안정서비스의 대민 접촉 창구이자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기관</li> <li>- 전국에 545개소(출장소, 분소 등 108개소 포함) 설치·운영</li> </ul>

## 5) 프랑스

### ○ Agefiph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 : 1987년 7월 10일 법에 따라 Agefiph는 장애인의 일반고용 시장 진출과 고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li> <li>- 재정 지원 대상 : 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민간부문 사업체(20인 이하도 포함), 교육기관, 직업재활 담당자 등</li> <li>- 주요 사업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교육,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고용유지, 장애수당 지급(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li> </ul>
------	--

### ○ Cotorep/CDAPH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년 법령에 의거하여 창설된 Cotorep은 연령이 최소 20세인 성인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위기관으로 특수교육 위원회(CDES)를 대체함. 2005년 법령에 의거하여 CDAPH(장애인의 권리 및 독립위원회)가 각 도에 있는 CDES와 Cotorep을 대체할 것임</li> <li>- 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취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손실 또는 결손의 보상을 위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전대 취업, 경제적 독립, 주거, 제3자의 도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해당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음</li> <li>-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및 직업 교육 : 장애인 근로자 자격의 인정, 인정 기한(2~10년 및 카테고리 명시, A, B 또는 C)</li> <li>· 직업 지도 : 직업 교육 (수련, 직업 재배치 연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반직업 환경 또는 보호직업환경 내 배치(보호작업장, 직업에 따른 원조센터 등), 공직 취업</li> <li>· 사회경제적 원조 : 관련자의 장애율 평가 및 장애자카드 부여, 성인 장애인에게 보조금 부여, 제3자를 위한 보상 수당, 직업 비용을 위한 보상 수당, 보조인 노후 보장, 사회기관이나 사회-의료기관, 또는 특수업무기관 내 가입 허가, 유럽 주차카드 발급</li> </ul> </li> </ul>
------	--

### ○ 경제활동인구

사용통계	- Insee, 2007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비율 : 전체 해당 인구에 대한 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의 수</li> <li>- 취업자 비율 : 전체 개인에 대한 취업자의 수. 전체인구에 대해서 비율을 구할 수도 있으나, 노동연령의 인구에 한정해서 주로 측정됨 (15~64세로 주로 정의 됨) 또는 하위범위로 노동연령인구를 설정함(예, 25~29세 여성)</li> <li>- 실업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의 백분율</li> </ul>

### ○ 고용 수요

사용통계	- ANPE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수요의 카테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테고리 1~3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함.(임시 또는 한달에 78시간 이하의 축소된 경제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1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상근직을 구하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2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구하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3 : 직업이 없어 즉시 취업 가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정 기한 임시직 또는 계절직, 단기 고용직을 구하는 사람</li> </ul> </li> <li>· 카테고리 4~5 :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자신들의 요구를 갱신할 수 없는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4 : 직업이 없고 즉시 취업 불가능한 구직자</li> <li>&gt;&gt; 카테고리 5 : 직업이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구직자</li> </ul> </li> <li>· 카테고리 6~8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 또는 한 달에 78시간 이하의 경제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고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gt; 카테고리 6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상근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7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무기한 파트타임직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li>&gt;&gt; 카테고리 8 : 즉시 취업 불가능하고 임시직, 계절직, 단기 고용직 등 한정 기한의 다른 직업을 찾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li> </ul> </li> <li>- 구직활동인구의 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PE, 자료는 실업의 유출입과 관련된 항시적 변동 상태에 있음</li> <li>· DEFM(월말 고용 수요)는 정확한 날짜 대개는 월말에 산출된 고용 수요의 수치를 산출한 것</li> </ul> </li> </ul> </li> </ul>

### ○ Cap Emploi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fiph의 지원으로 형성된 취업알선 기관들의 네트워크</li> <li>-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취업알선을 목표로 함</li> <li>- 각 지자체의 장애인 취업 관련 파트너와 연계하여 활동함</li> </ul>
------	--

### ○ 장애인 고용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는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li> <li>- 고용의무사업체(민간부문)는 관련법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직접고용 혹은</li> <li>·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과의 연계고용 체결 혹은</li> <li>·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혹은</li> <li>· 장애인 고용협약 체결(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협약을 맺는 경우 장애인 고용노력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이 경감됨. 단,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년 간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대기업이 대상이며 Agefiph와 맺음)</li> </ul> </li> <li>- 장애인의 대우를 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APH(구 Cotorep) 및 MDPH의 권리위원회가 승인한 장애인 근로자</li> <li>· 산재근로자</li> <li>· 직업병근로자</li> <li>· 상이군경 및 상이연금 수령자</li> <li>· 상이군인 연금을 수령하는 전쟁 상이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li> <li>· 20세 이하의 전쟁고아</li> <li>· 군인인 남편의 사망 후 재혼하였으나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미망인</li> <li>·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 이상을 겪어 격리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배우자</li> <li>· 임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소방관</li> <li>· 장애인카드 소지자</li> <li>· 성인 장애수당 수령자</li> </ul> </li> </ul>
------	---

## 6) 영국

### ○ 장애인구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S(Family Resource Survey)</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보유자 포함(Disability, including long standing ill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삶의 1가지 이상의 영역에 확실한 어려움을 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라고 정의됨</li> <li>·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차별법 (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서 분류</li> <li>· 장애인차별법에 의하여 분류해 내지 못하는 장애 개념도 있음</li> <li>· 본 장애 개념은 경제활동 상태에서 사용하는 장애 개념과는 다름</li> </ul> </li> <li>- 성인(Adult) : 비록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6세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봄</li> <li>- 어린이(Child) :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함. 16세~19세 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면 어린이라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하지 않았고, 시민동반자(Civil Partnership)도 아니고, 동반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li> <li>· 동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li> <li>· 전 시간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무급 정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li> </ul> </li> </ul>

### ○ 경제활동상태

사용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FS(Labor Force Survey)</li> </ul>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근로자(Employee) :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한 번만 계산</li> <li>- 자영업자(Self-employed) : 스스로 자영업주라 일컫는 자로서 주로 작업하는 일자리가 자신의 경영하에 있는 경우,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li> <li>- 취업자(In employment) : 고용인, 자영업주와 정부의 훈련계획의 참가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li> <li>- 실업자(Unemployed) : ILO 기준에 의하면, 현재 직업이 없으나 향후 2주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미 일자리를 구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li> <li>-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 취업자와 ILO기준 실업자를 합함</li> <li>-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 취업 중에 있지 않고 실업 중에 있지 않음. 가정에서 돌봄을 받거나, 은퇴하거나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li> </ul>

조사통계 2013-04

## 2013 장애인 통계

---

발행일 2013년 12월 19일

발행인 권기돈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소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전화 (031) 728-7108

팩스 (031) 728-7143

홈페이지 (고용개발원) <http://edi.lead.or.kr>  
(공단) <http://www.lead.or.kr>

전자우편 [survey@lead.or.kr](mailto:survey@lead.or.kr)

I S B N 978-89-5813-945-4 93330

편집 및 인쇄처 빛크리에이션 (02)2266-6208

---

\*비매품

